

제1편

## 산업입지 관련 제도

- I. 산업입지 개요
- II. 산업단지 개발제도
- III.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제도
- IV. 산업단지 리모델링 관련 제도



# I. 산업입지 개요

## 1. 산업입지의 개념

- 산업입지(産業立地, location of industry)란 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며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책(産業立地政策, industrial location policy)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입지정책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산업입지정책 관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 산업입지의 유형

- 산업입지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계획입지와 기업이 스스로 공장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개별입지로 분류됨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를 크게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산업단지 외 지역에서의 공장입지)로 구분하고 있음

(1) 계획입지

-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입지를 의미함
- 지역별 계획입지 개발은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도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함

< 지역별 계획입지(산업단지) 개발 방향 >

지 역	개 발 방 향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산업단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하되, 수도권내 중소기업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제한적으로 개발
강 원 도	동해안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내륙지역에는 중소기업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입지를 장려하고, 내륙지역에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산업단지를 개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내륙지역에는 중소기업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

- 계획입지는 기업이 산업용지를 쉽고 간편하게 확보하도록 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방지, 기반시설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산업의 협동화·계열화 촉진 등을 위해 유용한 입지로 이러한 계획입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한정된 국토를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며 지역간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에 기여함
  - 유사업종 또는 관련 산업을 집단화함으로써 산업의 협동화와 계열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제조시설과 관련된 연구·교육·유통·복지 시설 등을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도로·항만·용수·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반시설 투자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녹지공간과 각종 지원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임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산업입지와 관련된 오염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 관련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및 용지의 수용이 가능하며 국·공유지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음

## (2) 개별입지

- 개별입지는 사업상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와 기업가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지역을 말함
- 개별입지 제도는 산업단지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입지의 자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개별입지의 지정 개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개별입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 (3)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교

- 입지유형에 따라 설립절차, 입지여건, 토지이용의 용이성, 기반시설의 정비,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있어서 상대적인 강·약점을 지니고 있음

구 분	계 획 입 지	개 별 입 지
목 적	국가, 지방의 계획적인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기업입지 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유희토지의 적기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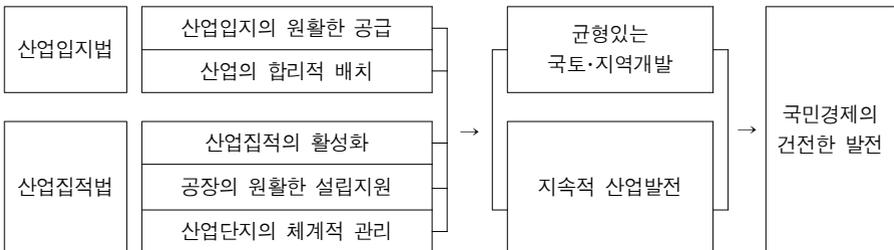
구 분	계 획 입 지	개 별 입 지
Strength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li> <li>-산업기반시설 등 SOC 여건 양호</li> <li>-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 용이</li> <li>-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적용</li> <li>-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 면제</li> <li>-공동방치시설 설치로 공해배출업종의 입주 용이</li> <li>-집단화로 기업상호간 정보·기술교환 용이</li> <li>-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렴한 토지확보 가능</li> <li>-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li> <li>-제품판매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가능</li> <li>-계획입지에 비해 업종 제약 약함</li> <li>-소규모 입지 선택 가능(탄력적인 입지확보)</li> <li>-공장용지의 처분, 확장 용이</li> <li>-첨단기술업종의 경우, 쾌적한 환경을 갖춘 입지로 선택이 용이</li> </ul>
Weakness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간 단지개발로 적기·적소에 확보 곤란</li> <li>-개별입지에 비해 높은 분양가격</li> <li>-입주 후 공장 등 시설확장 곤란</li> <li>-입주업종 제한</li> <li>-공장부지의 매각 등 처분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절차 복잡</li> <li>-공장부지의 용도전용이 어려움</li> <li>-기업간 정보교환에 제약</li> <li>-계획입지에 비해 각종 조세 감면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부족</li> <li>-산업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및 교육·문화 등 지원시설 미비</li> <li>-입지주변의 환경요소 통제 곤란</li> </ul>
Opportunity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러스터 활성화 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로 시너지 효과 기대</li> <li>-산업집적으로 인한 상권 형성, 경제적·문화적 혜택</li> <li>-신개념 산업단지(복합산업단지 등) 등장시 분양률 및 고용증가 기대</li> <li>-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li> <li>-공장시설의 집단적 배치로 사회적 비용·환경문제의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규제완화 등 공장설립규제의 완화</li> <li>-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의 지자체별 지원</li> <li>-지역균형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지원책 강화</li> <li>-입지관련 규제법령의 완화추세</li> <li>-구직인력의 증가</li> </ul>
Threat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공장과의 임금수준 및 후생시설 등의 차이로 종업원의 불만이 나타날 수 있음</li> <li>-인근 기업의 노사분규 파급 우려</li> <li>-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산업단지 분양률 저하 우려</li> <li>-분양률 저하 장기화될 경우 금융비용 증대</li> <li>-산업단지가 다양화됨에 따라 입주업무의 일관성 저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경기 불안정에 따른 지가변동</li> <li>-공장설립 반대 민원의 소지(마찰시 장기간 소요)</li> <li>-해외이전 등에 따른 제조업의 공동화 등 사기 저하</li> <li>-환경관련 법규의 강화와 오염원의 개별 처리비용 증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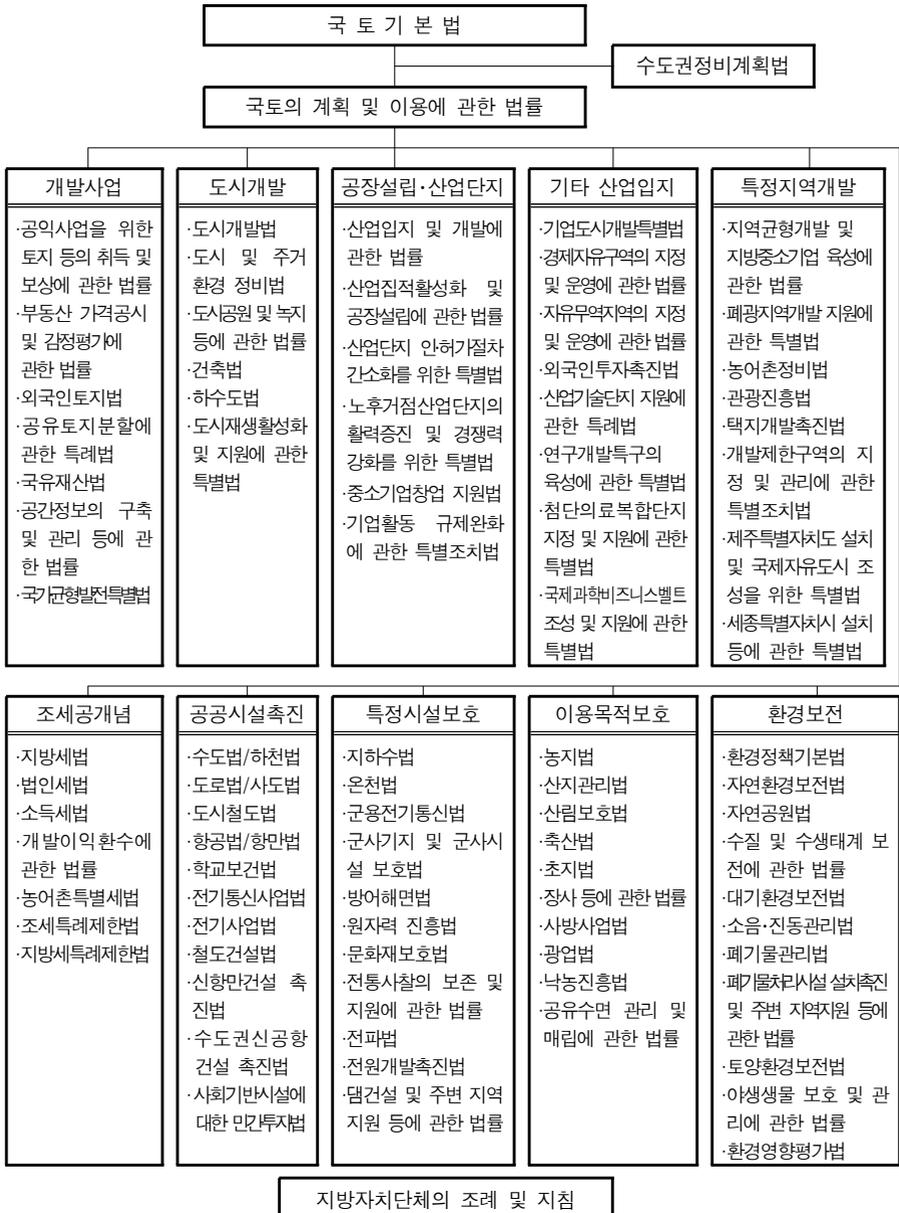
### 3. 산업입지제도 체계

#### (1) 산업입지 관련 법률체계

- 산업입지와 관련된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관련 개별법이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 및 관련 법령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각 부처에서 법률을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산업입지 관련 제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산업입지 제도의 근간을 구성하는 두 법률 중 「산업입지법」은 주로 계획입지의 지정과 개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의 관리와 개별입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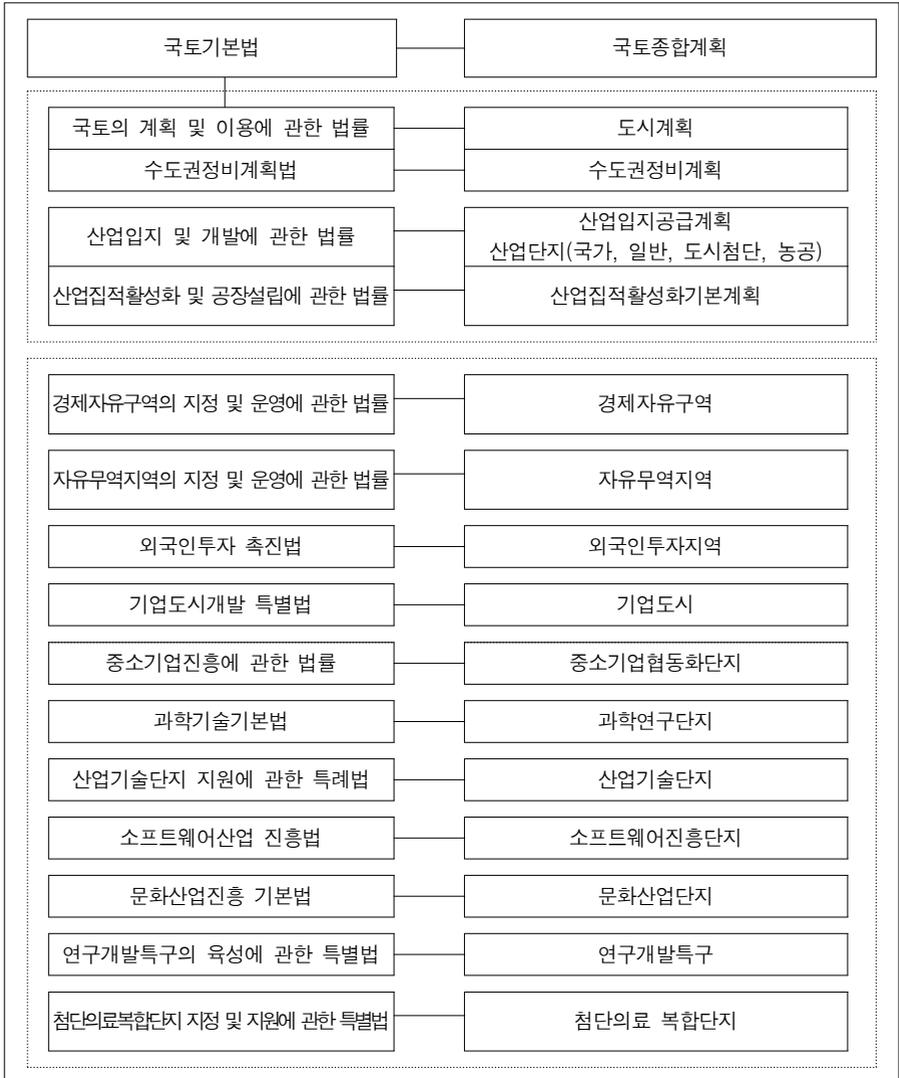




- 이외에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조성·관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진흥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경우 산업단지 형태의 입지시설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입지법」의 절차와 규정을, 관리는 「산업집적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양 법이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주로 제조업 중심의 단지로서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를 포괄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 목적의 단지가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특수 목적 단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중복적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지정되더라도 개발과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편 단지형 산업입지 외에 지역, 지구, 구역 등의 형식으로 산업입지가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들 지역 등은 단지형과는 독립적인 유형으로 산업입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호 교차 중복되어 단지형의 상위 개념이거나 하위 개념이 될 수 있음
  - 즉, 지역 등에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도 있고, 산업단지에 구역 등이 지정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기존 단지 내에서 지정되는 형식이며,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필요에 따라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음
- 특수 목적 단지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연구단지가 있으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등이 있음

○ 개별 관련법에 의해 시행 가능한 계획입지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산업입지 관련법 및 입지유형 >



- 이러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은 각각의 산업육성을 위한 입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정하였으며, 지정목적은 아래와 같음

< 산업입지의 종류와 지정목적 >

구 분	지정목적	근거법률
과학연구단지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 유치하거나 육성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산업기술단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 창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
문화산업단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산업 진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성과확산 및 사업화 촉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다른 지역보다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 영업활동 활성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연구개발업 등의 지식산업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집적 활성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첨단의료 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2) 산업입지 관련 정책 추진체계

### 1)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산업입지수급계획

-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구성·운영하는 심의기구로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함
  - －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의 지정·변경·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 －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 －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
  - －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경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송부할 의무가 있음
- 시·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2)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지식기반산업,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 －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

토고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II. 산업단지 개발제도

### 1. 산업단지 개발의 개요

#### (1) 산업단지 개념

-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 (2)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의의

- 산업단지 개발제도는 산업단지 개발을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에서부터 개발된 토지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과정에 필요하고 준수되어야 할 제반장치를 말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함
  -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도로·철도·항만·케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 건설사업
-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공급시설사업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 시설사업
- 기타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3) 산업단지관련 법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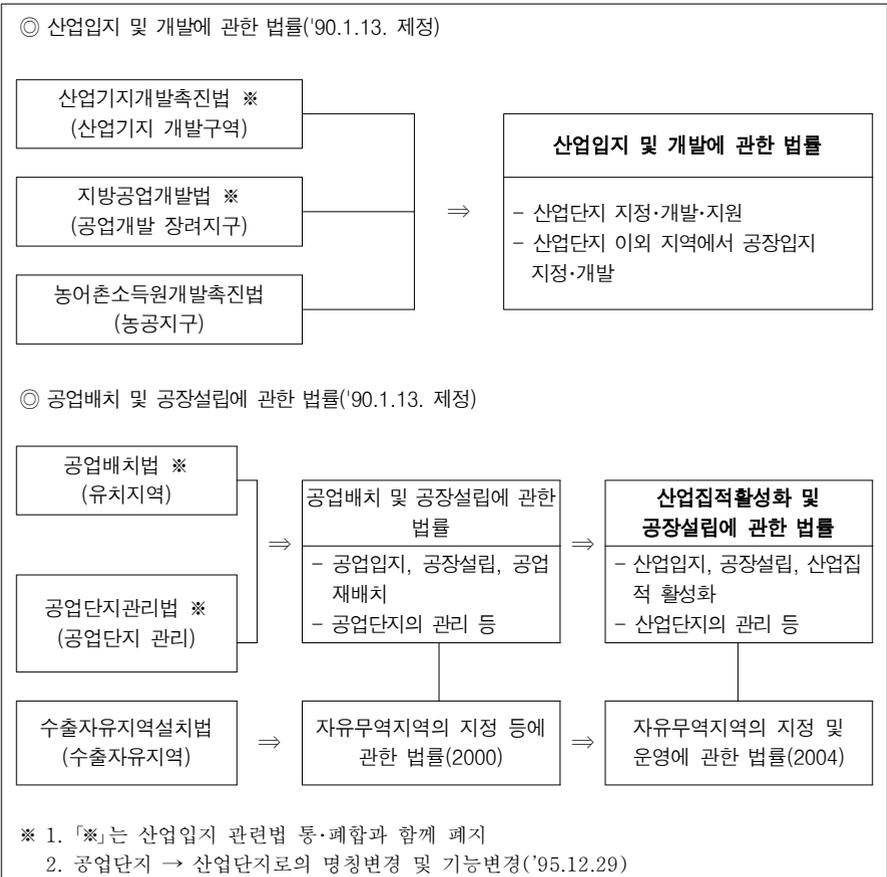
- 산업단지관련 법률은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공단개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관련 법률이 양산되면서 복잡다기(複雜多技)한 체계를 이루다가 1991년 1월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3.7.1 개정)의 양대법 체계로 통·폐합되었음
- 산업입지와 관련한 법률의 체계는 상위법으로서의 「국토기본법」이 있으며 그 밑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4) 산업단지관련 법률의 통·폐합

- 산업단지개발 근거법으로는 지금은 폐지된 「지방공업개발법」(197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83) 등 3개 법률을 통합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이 제정되었음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었고, 별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이 신규 제정됨

- 「공업배치법」(1977), 「공업단지관리법」(1975)이 통합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0)이 신규 제정되었음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3)로 개정됨

< 산업단지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



(5)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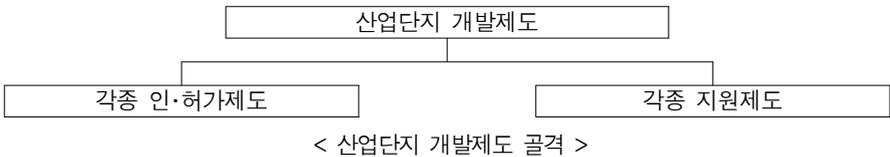
- 산업단지 개발제도는 산업용지 공급의 원활화를 통하여 산업용지 수요급증에 대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됨
- 산업단지의 특성은 산업용지의 대량공급을 통한 집단화에 있으며, 그 목적은 계획적인 집적이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음

< 산업입지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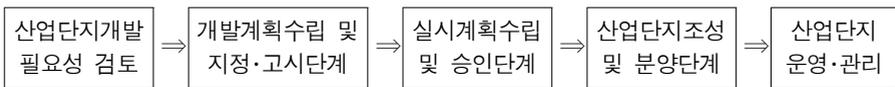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책 대상	-계획입지 개발 시도	-수도권 내 산업 집중	-지역적 불균형 심화	-개별입지 증대 -첨단산업 입지 수요공급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 -기존단지의 경쟁력 제고	-산업간 융복합 -신산업육성 및 확대
정책 기초	-수출위주 경공업 입지	-수도권 억제 -대규모 산업 단지 조성	-산업단지 내실화 -농공단지 개발	-입자유형 다양화 -입지구제 완화 -구조조정 촉진	-전문화된 집적 지구 -지식기반경제 구축지원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추진	-과학과 ICT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 -융복합·신성장동력·미래 산업 육성
관련 법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지방공업개발법 -국도이용관리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진흥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 -국도이용관리법(개정) -산업기술단지지원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보화촉진법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집적법 개정 -문화산업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집적법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제 완화
산업 구조	-경공업 우선 정책 -섬유·합판·전기제품·신발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석유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 기계	-기술집약적 산업 수출 산업화 -반도체, 전자공업, 자동차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반도체, 정밀화학, 자동차 프로그램 개발	-지식집약적 산업, 미래산업의 성장 -정보통신·게임·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첨단융복합산업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창조산업
비고	-울산공업센터 조성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동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수출자유지역 개발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개발 -아파트형공장 조성	-산업단지 명칭 변경 -개발절차 간소화 -개별입지 증대 -테크노파크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클러스터 시범단지	-복합용도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구조고도화 & 노후산업재생 -혁신단지 -재생단지

## (6)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구조

- 산업단지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총 5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즉,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제도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부담 등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단지 개발관련 인·허가 행위는 산업단지 지정에서부터 개발된 토지를 처분할 때까지의 각 단계마다 발생하며, 단계별 연계는 단지지정 요청 → 개발계획 승인 → 실시계획의 승인 → 준공 → 분양 절차로 이어짐
- 인·허가제도는 산업단지개발 행위 시 상급기관의 승인 등 수직적 행정행위에 관한 것과 개발계획내용 및 승인사항 등에 대한 수평적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됨
  - 모든 산업단지 개발에는 지정단계, 실시계획 승인단계, 준공단계에서 필히 승인절차가 수반되며, 수평적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으로는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장과의 협의, 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가 있음



&lt; 산업단지 개발의 흐름도 &gt;

- 지원제도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비용 지원과 분양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있음

## 2. 산업단지 유형과 개발방식

### (1) 산업단지 유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유형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구분은 개발주체와 조성목적에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주체임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에 지정하여 개발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이며,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라 할 수 있음
-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별개로 조성되는 산업지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단의 공업지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등이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음

## &lt; 산업단지의 유형 &gt;

구분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업지역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 지역	경제자유 구역
지정 목적	국가기간 산업 및 첨단과학 기술산업 육성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문화·정보 통신 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농어민 소득증대	공장의 집단 설치를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추구	중소기업의 협동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	외국인투 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
지정 권자	국토교통 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국토교통 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 부 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대상 지역	개발촉진 필요한 낙후지역, 기간산업 첨단산업 입지로 양호한 지역	시·도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양호한 도시지역	시·군 내에서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 협동화 사업을 위한 지역	산업단지 및 외국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화물처리 능력, 사회간접 자본시설, 통제시설 등이 충분하거나 예정된 지역	외국인 유치 및 정주환경,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지역

주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함

## (2) 산업단지 지정

## 1) 지정 시 검토기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 산업단지 개발 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 공업용수·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 산업단지 개발 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
-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수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

## 2) 산업단지 내 행위제한(산업입지법 제12조, 영 제14조)

-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 그러나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와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기타 대통령령(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음

## 3)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산업입지법 제13조, 영 제15조)

-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아래의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기간	5년	3년	2년

-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와 준공(부분 준공 포함)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 상황과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서도 산업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가 가능함
  -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제사유·내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여야 함)

※ 산업단지 지정해제 시 고시내용

- ① 산업단지의 명칭
- ②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③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 ⑤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예외)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

### (3) 산업단지 개발방식

- 산업단지 개발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추진하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토목기술이 필요하므로 자금동원능력과 토목기술을 보유한 자 중에서 각급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정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공사 준공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책임을 지므로 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또는 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30% 이상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
    - 실 수요자 또는 산업단지 개발능력이 있는 자
    - 민·관 등 산업단지 개발능력자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20% 이상 지분보유)
    - 산업단지 개발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신탁업자
    -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 또는 설립 조합
-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단독 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방식에는 공영개발방식, 민간개발방식, 절충방식, 위탁시행방식 등이 있음

## &lt; 산업단지 개발방식 &gt;

개발방식	협력내용
공영개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방식, 대부분의 산업단지개발이 이 방식임</li> <li>· 국가산업단지개발 : 국가가 정부투자기관에 의뢰하여 개발</li> <li>· 일반, 농공단지개발 : 지자체가 정부투자기관 등에 의뢰하여 개발</li> </ul>
민간개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수요자(민간) 또는 민간건설업자, 신탁회사 등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방식</li> </ul>
절충방식 · 제3섹터방식 · 공동개발방식 · 합동개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과 민간이 여러 형태로 협력하여 개발하는 방식</li> <li>·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발하는 방식</li> <li>·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li> <li>· 공공개발에 민간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방식</li> </ul>
위탁시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정부분을 국가나 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li> <li>· 항만, 공업용수도,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li> <li>· 용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탁시행</li> </ul>

## 3. 산업단지 개발절차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조성은 지정 → 실시계획 승인 → 단지조성 및 준공 등 3단계를 거쳐 사업이 종료됨
- 지정단계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승인이 나면 토지매입에 들어감.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분양계획을 수립함
- 단지조성 및 준공단계에서 준공 전 사용허가와 분양을 추진하며, 분양된 토지에 공장을 건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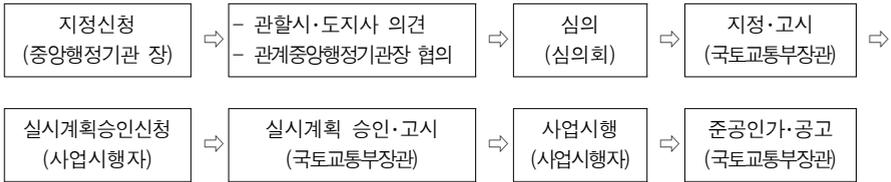


### 1) 국가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과 특정산업의 집산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 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 지정함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지정권, 실시계획 승인권, 준공 인가권 등 일체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산업단지는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 제한이 있음

-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지정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주민의견청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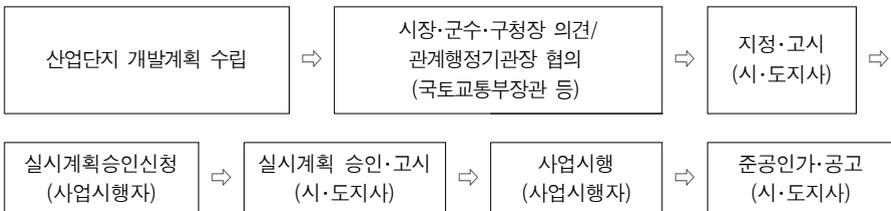
< 국가산업단지 개발절차 >



## 2) 일반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산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음
- 서울시·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 및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산업단지는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 제한이 있음
-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등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함

< 일반산업단지 개발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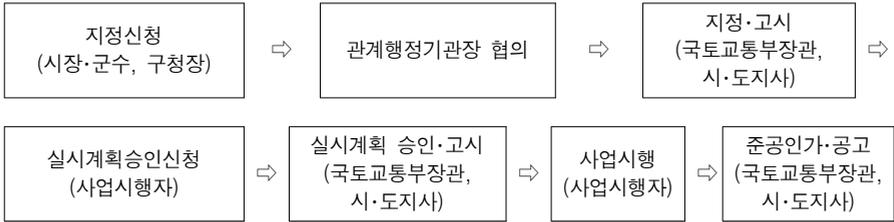
## 3) 도시첨단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음
  -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 및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직접 지정할 수 있음
- 시·도별로 면적의 330만㎡ 이상이거나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제한이 있으며,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지정할 수 없음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특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정특례 사업지역·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특례 사업지역·지구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예정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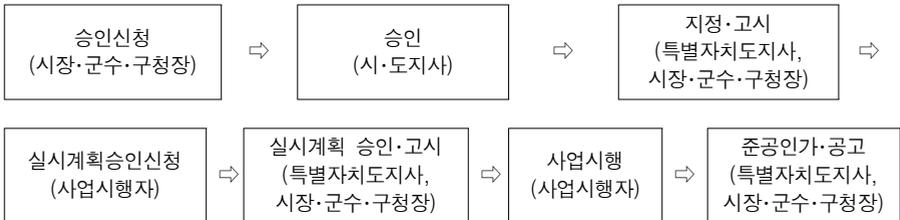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절차 >



4) 농공단지

- 농공단지는 지정승인권만 시·도지사에게 있을 뿐 지정권, 실시계획 승인권, 준공 인가권 등 일체의 인·허가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음
  - 시·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또는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시·군·구별로 100만㎡부터 200만㎡까지의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제한이 있음
- 농공단지개발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됨
  - 동 지침은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개발지원·관리·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농공단지 개발절차 >



< 산업단지 지정·개발 제도 현황 >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 * 30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도 지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10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도 지정 가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승인)
지정목적	국가기간산업·과학 기술산업 육성, 낙후 지역 개발	산업의 적정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개발 촉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유치 육성
개별단지 규모제한	제한없음	3만㎡ 이상	1만㎡ 이상	3만㎡ 이상 33만㎡ 이하
지역별 지정 총면적 제한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도별 330만㎡ 이내	시·군·구별 100만㎡~ 200만㎡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미분양율에 의한 제한	시·도별로 미분양율 15% 이상	시·도별로 미분양율 30% 이상	시·도별로 미분양율 30% 이상	시·도별로 미분양율 30% 이상
지정지역	제한없음	좌동	도시계획구역안 * 서울 제외	농어촌지역에 지정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 의의

- 정부는 산업단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1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하였으며(‘08.3.13), 규제개선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08.6.5)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종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절차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소요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전의 산업단지 개발절차가 종적으로 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는 각각의 유사절차를 분야별로 통합하여 횡적으로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 주요내용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만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계획수립이 시급한 경우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1개의 계획(산업단지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분야별 유사절차를 통합시행
  -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분야마다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 심의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통합 시행함
-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관련절차 간소화
  - 도시기본계획 등의 사전변경 요구로 절차가 지연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15만㎡ 이상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함
    - \* 15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시행
    - \* 이원화되어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12.22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 지원센터를 통한 산업단지개발 지원 및 관계기관 이견조정
  - 민간투자자는 직접 관계기관을 개별 방문하며 의견협의를 하고, 사소한 분야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인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윈스톱 서비스, 협의절차마다 기한을 설정하고 관계기관간 이견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함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관계

- 산업단지 개발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면적이 1,000만㎡ 이상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단지면적이 500만㎡ 이상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함 (특례법 시행령 제2조)
- 그러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편의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절차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11.8.4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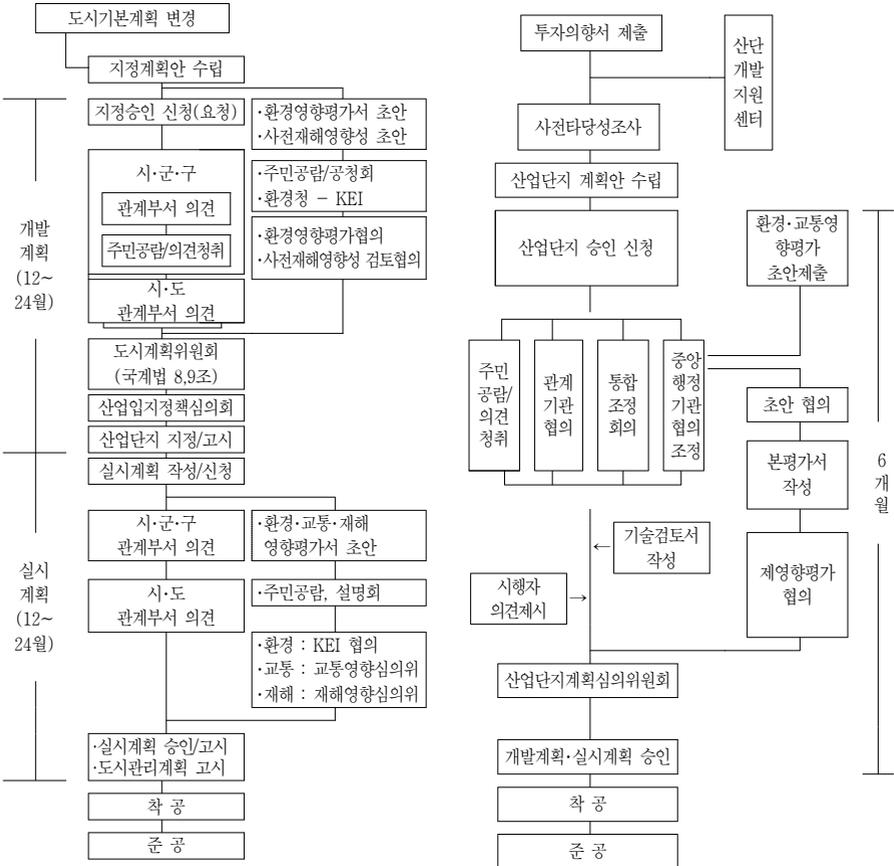
\* 산업입지법 절차 :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별도 수립  
 \* 특례법 절차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동시에 통합수립

- 종전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일 ('08.9.6)이후에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모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방식(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분리)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맞춰 적절한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

< 산업입지법상 개발절차(左)와 특례법상 개발절차(右) 비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3)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산업입지법 제38조, 산업집적법 제36조)

-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개발자)는 개발된 토지를 처분(매각)하게 되는데, 산업입지법 제38조와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 개발된 토지의 처분방법에는 분양, 임대, 양도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 필요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개발된 토지·시설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
- 분양과 임대는 정당한 가격으로 실수요기업에게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방법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1) 산업단지 분양

① 분양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수요기업에게 분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분양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② 분양가격 결정

## ○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함.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음

※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의 15%의 범위에서 각각의 사업시행자 구분에 따른 이윤을 곱하여 산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또는 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농어촌공사 : 자본비용 및 개발대행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에 연 5%의 이자율 범위 내
- 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30% 이상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 실수요자 또는 산업단지 개발능력이 있는 자, 민·관 등 산업단지 개발능력자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20% 이상 지분보유), 산업단지 개발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신탁업자,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 또는 설립 조합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

-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해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특수지역개발사업 제외)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또는 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농어촌공사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실 수요자 또는 산업단지 개발능력이 있는 자 중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은 용지에 대해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나, 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로 공급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산업시설용지 이외 용지의 분양가격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 학교시설용지·어린이집용지·공공의료시설용지·공공청사용지·공공문화시설용지·공공복지시설용지·국민주택용지(60㎡이하의 용지에 한함)·임대주택

- 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 제외) : 경쟁입찰 낙찰가격
  -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공유 재산은 제외)
-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비용항목
-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표 (산업입지법 시행령 별표1) >

조성원가항목	내역
용지비	-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용지부담금	-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성비	-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기반시설 설치비	-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
직접인건비	-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자본비용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2) 산업단지 임대

-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1조)
  -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 등의 명세
  - 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
  -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 임대료 등의 산정기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
  - 임대보증금 :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 임대하고자하는 토지·시설 등의 임대료 : 결정된 분양가격에 1년 정기 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 \* 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 평균
  - 임대기간 : 10년 이내

## (4)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산업입지법 제21조)

- 산업단지와 같은 토지개발에는 여러 가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각각의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이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은 그만큼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개발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하고 있음
- 사전협의로 인·허가 처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lt; 사전 협의로 의제처리 되는 사항 &gt;

관련법령		인·허가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56조 86조 88조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개발행위의 허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11조, 17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수도법	17조, 49조 52조, 54조	· 일반수도사업 및 농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하수도법	11조, 16조 24조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 시행허가 ·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 17조 28조, 33조 35조, 38조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공유수면 매립면허, 면허고시 · 매립의 협의, 승인, 실시계획 승인·고시
항만법	7조 9조2항 10조2항	·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 실시계획의 승인
하천법	6조 25조, 27조 30조 33조, 50조	·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수의 사용허가
도로법	36조, 61조 107조	·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농지법	31조 34조	· 농업진흥지역 해제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산지관리법	14조, 15조 15조의2 25조	·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9조 11조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14조, 20조	·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지정의 해제

관련법령		인·허가 사항
초지법	21조2, 23조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초지전용허가
사도법	4조	· 사도개설 허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5조 86조	· 지도 등의 간행 심사 ·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광업법	24조, 34조	· 불허가처분,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	·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농어촌정비법	23조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국유재산법	30조, 40조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1조, 20조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용·수익허가
소하천정비법	5조, 6조, 8조, 10조, 14조	· 관리청과의 협의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소하천점용의 허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0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전기사업법	62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폐기물관리법	2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건축법	11조, 14조, 16조 20조, 29조	· 건축허가, 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건축협의
골재채취법	22조	· 골재채취의 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산업단지 실수요기업이 직접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유통산업발전법	8조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집단에너지사업법	4조	·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2조	· 사업계획의 승인
택지개발촉진법	8조 9조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9조	·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관광진흥법	52조, 54조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 (5) 산업단지의 전환(산업입지법 제1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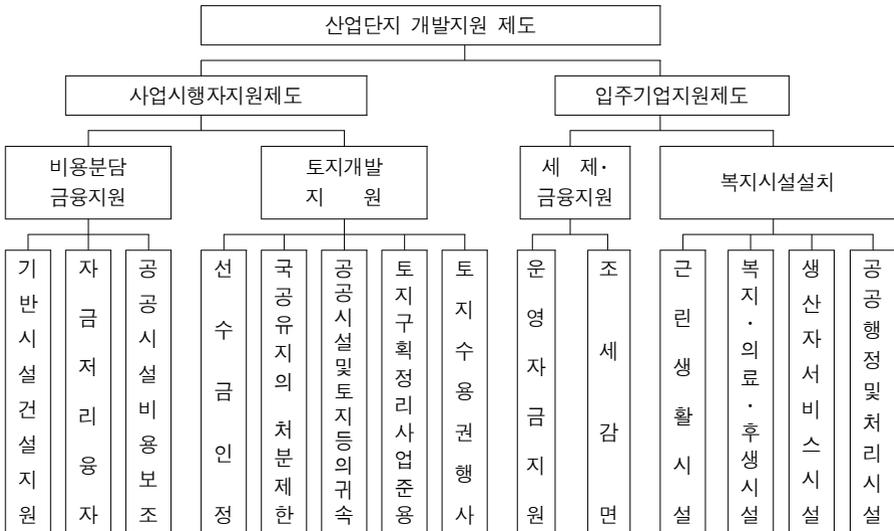
-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음
-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하며, 전환요건은 아래와 같음
  -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단지 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할 경우 1만㎡ 이상이어야 함
- 기존의 산업단지 중 일부를 전환하려는 경우 전환대상 산업단지를 제외한 잔여 산업단지의 면적은 국가, 일반, 농공단지의 경우 3만㎡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1만㎡ 이상이어야 함
-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또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전환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협의요청을 받은 기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협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 기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신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 전환을 하여야 함
-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 신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함

## 4. 산업단지 개발지원 제도

### (1) 지원제도의 체계

-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지원 제도의 체계는 크게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 제도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로 나뉨
-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개발비용부담, 자금지원 등 사업시행자의 비용분담 금융지원과 토지의 취득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토지 개발지원으로 나뉘고,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세제·금융상의 지원과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나뉨

< 산업단지 개발지원 제도의 체계 >



## (2)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

- 산업단지 개발지원 제도의 대부분은 사업시행자를 위한 제도로 개발비용 부담, 자금지원 등 사업시행자의 비용분담 금융지원, 토지의 취득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토지개발지원 등이 있음

## &lt; 사업시행자 지원제도 &gt;

구분	관련 법률 및 조항
비용부담	산업입지법 제28조, 영 제26조
기반시설 우선 지원	산업입지법 제29조, 영 제27조
조세 및 자금지원	산업입지법 제45조, 제46조
토지개발지원	산업입지법 제22조 내지 제27조

## 1) 비용부담(산업입지법 제28조, 영 제26조)

- 산업단지는 도로나 철도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원칙만을 따를 경우 산업입지조건이 열악한 곳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없고, 더욱이 산업단지 개발에는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됨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비용부담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장치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표와 같이 산업단지 내의 도로, 녹지,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과 이주대책 사업비가 있으며, 임대용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경우는 용지매입비도 포함하고 있음

< 지원대상 및 비용보조율 >

지원대상	비용보조율
·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 및 녹지시설 건설비	50%
· 용수공급시설 건설비	50%
· 이주대책 사업비	50%
·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50%
·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50%
·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50%
·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50%
·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100%
· 문화재조사비*	100%
·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내의 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100%
·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100%

주 : \*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일률적으로 50%이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기반시설 우선 지원(산업입지법 제29조, 영 제27조)

-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 &lt; 기반시설 및 대상단지 &gt;

기 반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도로 및 철도</li> <li>○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li> <li>○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li> <li>○ 산업단지의 공동구</li> <li>○ 집단에너지공급시설</li> <li>○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li> </ul>
대 상 단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li> <li>- 산업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li> <li>-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일 것</li> </ul> </li> <li>○ 그 외의 산업단지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li> </ul>

- 산업단지 개발에는 단지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 장치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사항의 일부를 준용함

## &lt;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 &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li> <li>○ 가스·유류의 공급시설사업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 사업</li> <li>○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결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li> <li>○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li> <li>○ 하천 정비사업</li> <li>○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사업</li> </ul>
---

3) 조세 및 자금지원(산업입지법 제45조, 제46조)

- 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용부담, 기반 시설의 우선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이 필요함
  - 산업단지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압박을 덜어주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임대전용산업단지 포함)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 \* 산업단지 개발 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50% 감면(수도권 제외)
- 자금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조세 및 자금지원 내용 >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2016년 12월 31일까지)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증축하여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사업 또는 벤처기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37.5% 감면	지특법 제58조의2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 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2016년 12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35% 감면, 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35% 감면(수도권 외 지역 60%)</li> <li>* 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함</li> <li>- 사업시행자가 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35% 감면 (수도권 외 지역 60%)</li> <li>-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의 35% 감면,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 감면(수도권 외 지역 60%)</li> <li>* 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함</li> </ul>	지특법 제78조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60%, 재산세의 50% 감면 (수도권 외의 지역 재산세 75%)</li> </ul>	지특법 제78조

4) 토지개발지원(산업입지법 제22조 내지 제27조)

- 산업단지 개발 시 토지와 관련되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특히 토지매입과정이 그러하며 토지매입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물론 추가비용이 수반됨
  - 또한 지정지역 내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 국·공유지 등의 사용 문제도 발생하게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변경, 임해지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이용계획과 상충문제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야기됨
- 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여러 지원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토지개발에 따른 지원장치 >

구분	내용
토지수용 (산업입지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li> <li>-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 또는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li> <li>-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음</li> </u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산업입지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봄</li> <li>-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봄</li> <li>-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li> </ul>

구분	내용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산업입지법 제24조)	-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공장·지식산업 관련시설·문화산업 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또는 자원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음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산업입지법 제25조)	-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산업입지법 제26조)	-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공기업)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 - 그 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자체 소유의 재산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가능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산업입지법 제27조)	- 산업단지 내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목적 외로 매각·양도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음

### 5)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 기반시설의 지원과 더불어 국가는 산업단지 개발 시 필요한 각종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먼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이 준공 처리 될 경우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준공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정부는 의제 처리 및 타 법률의 적용 특례와 더불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확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음
  -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해서는 「토

지수용법」이 적용되며, 사업인정고시·재결신청 등에 관해서는 「토지수용법」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민간일 경우에는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안의 국·공유재산은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농공단지 지원

- 단지조성비의 지원(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별표2)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국비보조 및 지방비의 보조기준과 조건은 아래와 같음

< 국비보조 교부조건 >

용도별		세부내용	
부 지 조 성	용지취득비	-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지시공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산업단지 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 등) · 산업단지 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 등	
	부 대 시 설	진입도로	- 산업단지 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 등
		공동이용건축물	- 종시원 1,000명당 330㎡이내
		전력, 통신, 용수 기타시설	- 산업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산업단지 외 용·배수시설, 가로등 -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 등
기타	-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 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9조)
  -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

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 포함),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폐수처리시설은 제외)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3)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 1) 세제지원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대장치가 있는데, 그 중 각종 세제 우대조치가 가장 일반적임. 이러한 세제지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입주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시키고 단지입지 유도에 기여하고 있음
- 주로, 조특법 및 지특법에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관련 조세제도 >

##### [산업단지 관련]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부동산 취득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 감면 -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 경감 - 위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 (수도권 외 산업단지는 75%) 감면	지특법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나주·김제지평선·장흥바이오식품·북평·나주혁신·강진 환경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조특법 제64조

[외국인투자 관련]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외국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li> <li>-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li> <li>-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사업개시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 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의 전액</li> <li>-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 감면</li> </ul>	조특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3)년 이내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의 전액</li> <li>- 그 다음 2년 이내는 감면대상 세액의 50% 감면</li> <li>-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의 전액,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를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li> </ul>	조특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의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 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li> <li>-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li> </ul>	조특법 제121조의3

[창업관련]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창업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18년 12월 31일 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li> </ul>	조특법 제6조

## [지방이전관련]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공장의 지방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면제</li> <li>-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li> <li>-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감면</li> </ul>	지특법 제8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불산입</li> <li>-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li> </ul>	조특법 제60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불산입</li> <li>-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li> </ul>	조특법 제61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li> <li>-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li> </ul>	조특법 제63조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2017년 12월 31일까지)</li> <li>-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li> <li>-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50% 감면</li> </ul>	조특법 제63조의2
법인의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면제</li> <li>-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li> <li>-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li> <li>-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li> </ul>	지특법 제79조

## 2) 금융지원

###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국가기간산업,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사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관련 개발법에 의한 금융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저리융자 등

###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

-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자금을 관리·운영함
-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 등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규정」 및 동 기금의 용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년 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자금’의 용자계획을 공고함

### Ⅲ.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제도

#### 1. 산업단지 관리의 개요

- “산업단지 관리”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말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와 관한 업무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관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2. 산업단지 관리체계

### (1) 관리주체

- 산업단지의 관리주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권자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있음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위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함

관 리 권 자	관 리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li> <li>·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li> <li>· 농 공 단 지 : 시장·군수·구청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권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li> <li>·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li> <li>· 입주기업체협의회</li> <li>·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li> <li>· 중소기업협동조합</li> <li>·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li> <li>·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시행자</li> <li>·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li> </ul>

- 관리기관의 설립요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8조)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면적이 150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 수가 30개사 이상</li> <li>· 산업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 수가 10개사 이상</li> <li>· 산업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li> <li>·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70% 이상이 회원이거나, 가동업체의 90% 이상이 회원일 것)</li> </ul>

## &lt;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지정현황 &gt;

(2015년 9월말 기준)

구 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합계
단지수 <sup>1)</sup>	27개	6개	7개	1개	41개
관리면적 (천㎡)	326,173	39,728	101,312	70,477	537,690
단지명	한국수출산업(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명지·녹산(녹산), 남동, 광주첨단과학, 울산·미포, 온산, 반월특수지역, 파주출판, 파주탄현, 아산(포승, 고대, 부곡), 북평국가(북평), 오송생명과학, 대구국가, 석문, 군산, 군산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여수, 대불(산업, 외국인), 구미1, 구미(2-4), 창원, 안정, 포항블루밸리, 진해, 포항, 광양(연관)	보은, 대죽자원비축, 장항국가생태, 옥포, 죽도, 지세포자원비축, 명지·녹산(명지), 빛그린(광주), 아산(원정, 우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빛그린(전남구역), 고성, 삼일자원비축, 구미하이테크밸리, 월성전원, 제주첨단과학기술, 군산2(군산자유무역), 북평국가(동해자유무역), 대불(자유무역), 포항(철강2, 청림)	광양(제철), 명지· <u>녹산(녹산지구)-미지정</u>	

주 1) 관리기관이 둘 이상 나뉘어져있는 경우(광양, 대불, 명지녹산, 아산, 북평, 포항), 단지수는 관리면적이 큰 쪽으로 포함하여 산출함(밑줄로 표시된 단지명이 해당)

## (2) 산업단지 관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함(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 －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상기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 인근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함(농공단지는 시·도지사의 승인)

###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1) 수립목적 및 성격

-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자격, 산업배치계획, 사후관리 계획 등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서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 2부터 제7조의 4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수립하여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승인, 고시로 운영됨
- 관리기본계획 수립내용(산업집적법 제33조5항)
  -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입주 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상기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2) 관리기본계획 상 용도별 구역 관리

-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구역은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여 관리하며, 이때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 전력시설용도,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재생산업시설용도, 친환경기술촉진시설용도,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관리하되,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산업시설구역 일부를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며,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단,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업종별 배치계획은 다음의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산업용지 최초 분양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 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 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지원시설 구역의 면적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확대하여 고시할 수 없음(다만, 관리대상이 되는 산업용지면적의 증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면적확대는 제외함)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안의 용지 중 용도별 구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을 제외한 녹지구역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함
  -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lt; 용도별 구역 개념 및 건축허용 범위 &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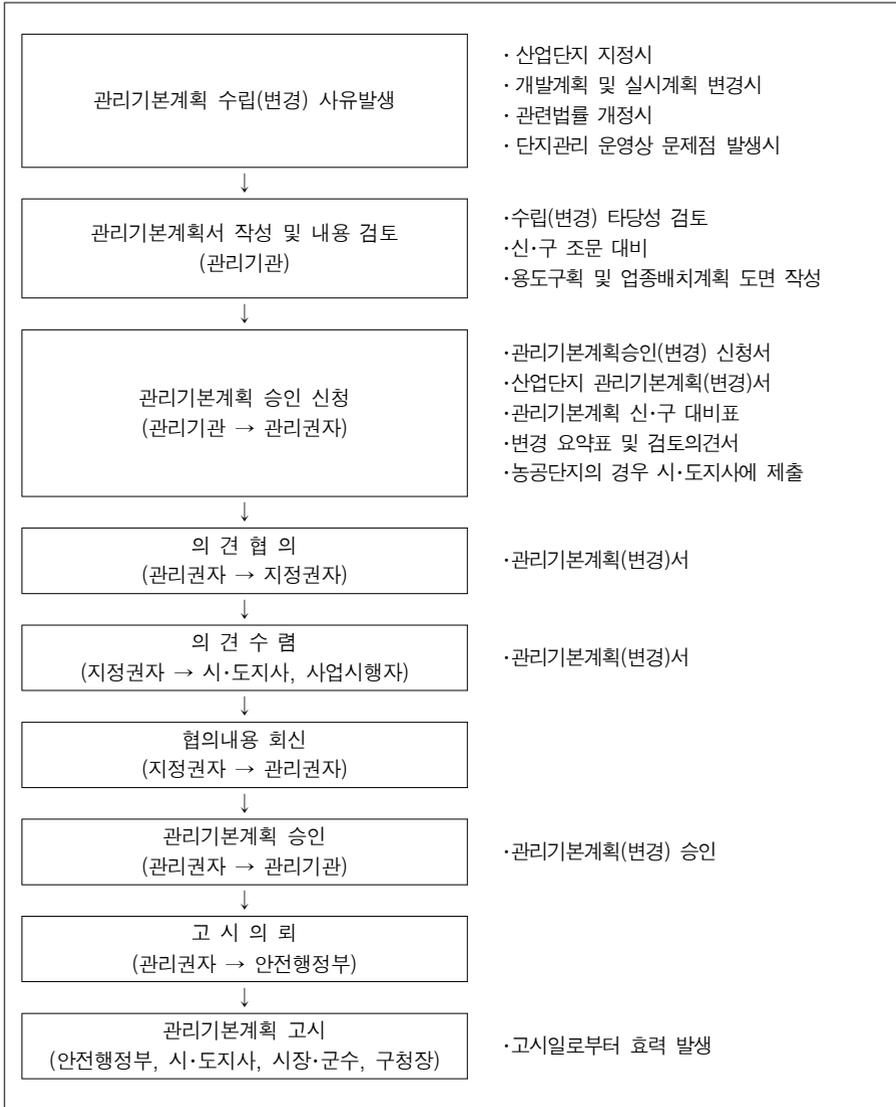
구분	개 념	건 축 허 용 범 위	
		용 도	세 부 내 역
산업 시설 구역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 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공장시설	· 산집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에서 규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
		지식산업시설	· 지식산업, 벤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정보통신 산업시설	· 정보통신산업, 벤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자원비축 시설	·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물류시설	· 창고·화물터미널, 운송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관련 시설(여객운송업은 제외)
		지역특화산업 (농공단지단)	·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전력시설	· 발전소 시설 등 전력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법 제2조제4항)
		재생산업 시설용도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 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친환경 신기술촉진 시설용도	· 친환경 신기술과 연관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 진하기 위한 시설
지원 시설 구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 체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 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구역	-	· 산집법 제2조 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 는 건축물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 고 인정하는 건축물

구분	개 념	건 축 허 용 범 위	
		용 도	세 부 내 역
공공 시설 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 로 설치된 시설구역	-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 따른 공공시설로, 산업단지 진입 및 간선도로, 녹지, 공원, 용지공급·하수도·전기·통신·폐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 공동방지사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및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주차장, 운 동장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 이집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 3호)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녹지 구역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 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복 합 구역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설치된 구역		※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lt;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비교 &gt;

구 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
목 적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근 거	산업집적법 제33조 ·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	산업입지법 제8조 ·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내 용	·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방법 ·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설치 계획 · 자원조달계획 · 수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절 차		
· 입안	관리기관 → 관리권자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 협의	관리권자 → 지정권자	지정권자 → 중앙행정기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승인	관리권자	지정권자
· 고시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권자(일반·농공)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권자(일반·농공)
운영주체	관리기관	지정권자, 사업시행자
유효기간	산업단지 존속시까지	산업단지 개발 종료까지
효 력	계획에 의한 입주유치 및 사후관리	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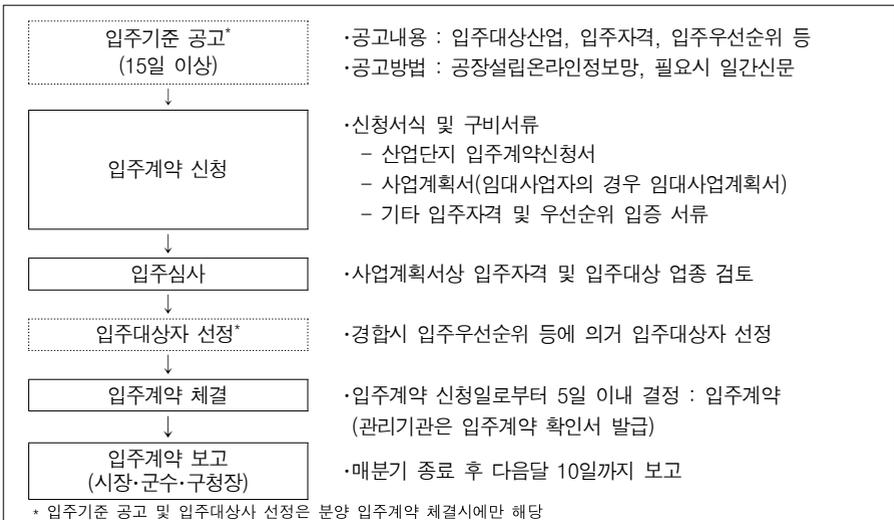


## 4.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사후관리

### (1) 입주계약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처리기준
  - 해당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여부 확인(시행령 제6조)
  -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 경합 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선정
-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입주계약체결 절차 >



## (2) 입주기업체 사후관리

### □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산업집적법 제39조)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 처분
  -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아래의 유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음

\* 유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은행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방공사,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산업용지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단, 입주기업체의 요청시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가능)

### ○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 경과 후 처분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동일업종\* 영위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 \* 동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업종(5자리)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함
- 처분가격은 가격제한이 없으므로 시세 적용

### □ 입주계약 해지 (산업집적법 제42조)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입주계약 해지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장 등 건설 미착수  
(정당한 사유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공장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때
-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장(사업장) 소재지(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로 이전하는 경우) 등을 변경한 때
- 임대사업 또는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 산업용지의 분할규정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 ○ 입주계약 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6조)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입주계약 해지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 등 잔무(3개월 이내 처리)를 제외하고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 ○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산업집적법 제43조)

-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처분신청 대상)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6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양도,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업체 선정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
-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경우(처분신고 대상)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에 양도(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기간 내 양도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 가능

□ 용도의 사용에 대한 산업용지의 환수 (산업집적법 제41조)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용지의 취득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 이자 및 비용에는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용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그리고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존·개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함
-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 산업용지를 환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5. 산업단지 지원사업

### (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 1) 개념 및 추진 배경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연관이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각 부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임
- 그 동안 산업단지는 요소 투입형 성장시대에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산·학·연 협력, R&D 역량, 지식기반 서비스, 고급기술 인력의 정주여건 등은 취약하고,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이 부족하여 기술·지식의 창출과 이를 확산·적용하는 상호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단순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과 정보 교류 ⇔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 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산업단지를 “지식과 정보교류,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창조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됨

#### 2) 추진경과

- '04. 1 신국토구상 선포식에서 7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 '04. 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 보고 (제45회 국정과제 보고)
  - \* 혁신클러스터 추진방안 확정 및 7개 시범단지 지정(창원-기계, 구미-전자, 울산-자동차, 반월시화-부품소재,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 군산-기계자동차부품)
- '05. 1 제1차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위원회 개최 (산자부)
  -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마스터플랜 확정
- '05. 4 7개 시범단지 추진단 출범, 본격 사업 착수

- '06.12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정책 대통령 보고
- '07.11 혁신클러스터 확대 및 발전전략 대통령 보고 (균형발전정책보고회)
  - \* 5개 단지 추가(남동-기계부품, 오창-전자정보, 성서-메카트로닉스, 녹산-기계, 대불-조선)
- '09. 4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확대개편 보고 (제12차 국경위)
  - \* 거점-연계형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경쟁력강화방안 마련('09.9)
- '10. 2 산업단지 광역클러스터화 세부실행계획 고시 (지경부제2010-31호)
- '10. 3 기업주치의센터 도입 결정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후속조치
- '10. 4 권역별 거점-연계형 광역클러스터 구축사업 개시
  - \* 25개 거점단지 및 168개 연계단지 지정
- '12. 1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향후추진계획 고시 (지경부제2012-15호)
  - \* 전국 경쟁방식의 테마클러스터사업 도입
- '13. 4 전국 산업단지로 사업범위 확대
- '13. 9 산업단지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 보고 (제3회 무투회의)
  - \*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 경쟁력 강화
- '14. 9 산업단지 50주년 창조경제 거점화 과제 연설
- '15. 3 신규 미니클러스터 공모 (운영기관 외부로 확대)

### 3) 사업 추진 단계

구 분	형성기 (1단계)	성장기 (2단계)	자립기 (3단계)
기 간	2005~2008년(4년)	2009~2012년(4년)	2013년~
대상지역	12개 산업단지	193개 단지	전국 산업단지
유 형	산업단지 클러스터	광역클러스터	테마클러스터
목 적	한국형 클러스터 모형(기반) 구축	클러스터 성과 확산 (광역화)	자생적 클러스터 산업생태계 구축
운영방식	정부주도	정부주도	민간 + 정부

## 4) 주요 사업내용

## □ 미니클러스터 운영사업

## ○ 산학연관 협의체(미니클러스터) 구축

- 미니클러스터는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호협력, 공동학습, 정보공유 등을 통해 참여 주체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업종별·기술 분야별로 구성된 산·학·연·관 협의체를 의미함
-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의 수요자 중심형 과제를 발굴·지원 하고, 사업기획·기술개발·시제품제작·사업화·특허출원·디자인·마케팅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상시 애로과제의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 R&amp;D 촉진과제

- 산업재산권 출원 : 기업이 개발한 특허, 실용실안, KGMP에 대한 국내 출원 지원과 기업의 특허, PCT의 해외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
- 현장맞춤형 교육훈련 : 클러스터 참여기업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토털마케팅 : 광고 홍보 및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전문기관 및 인력지원)
- 기술이전활성화 : 기술이전 실패에 대한 위험 완화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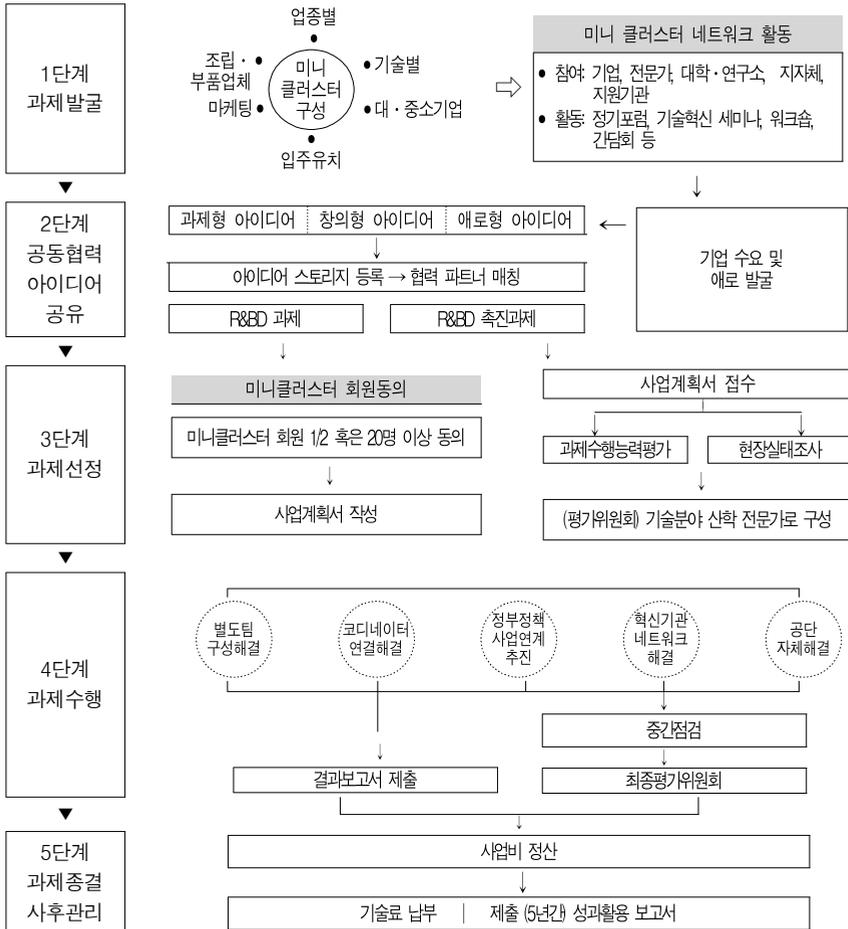
## □ 산단 R&amp;BD 역량강화사업

## ○ 생산기술화지원사업

-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 산학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자원의 활용을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개발을 지원
- 이전기술사업화 : 산학연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공동 수행하는 실용화, 사업화 지원

- 메버릭 기업육성 R&BD 지원사업 : 글로벌 틈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신기술 또는 창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의 기술개발지원

□ 미니클러스터의 지원프로세스



## 5) 기업성장지원센터사업

##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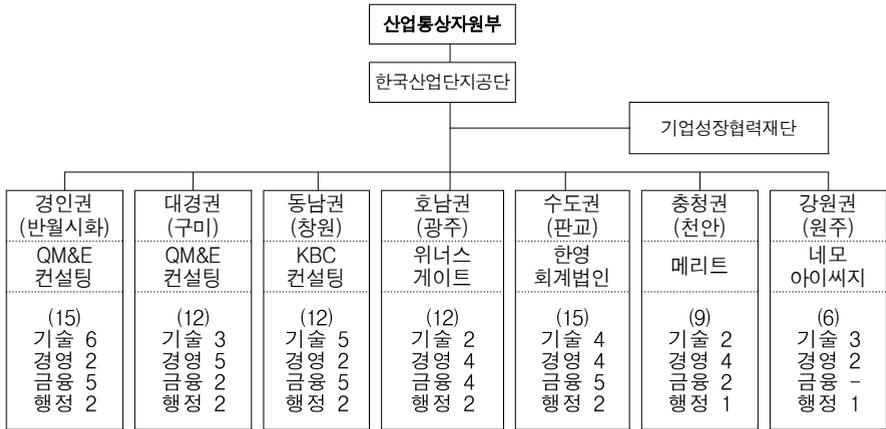
- 산업단지 내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혁신역량 중심의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장 밀착형의 성장지원 시스템 구축
- 공급자 중심의 사업지원 및 수동적 추진방식 등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시적인 전문가 활용을 통해 클러스터 사업의 코디네이팅 및 성장 코치 기능을 부가하여 클러스터 사업의 성과 제고

## □ 추진경과

- '10. 3 기업주치의센터제도 도입 결정
  - \*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후속조치
- '11. 5 4개 기업주치의센터 개소(반월시화, 구미, 창원, 광주)
- '15. 1 기업성장지원센터로 사업명 변경, 주관기관 모집공고
- '15. 4 3개 기업성장지원센터 추가 개소(천안, 원주, 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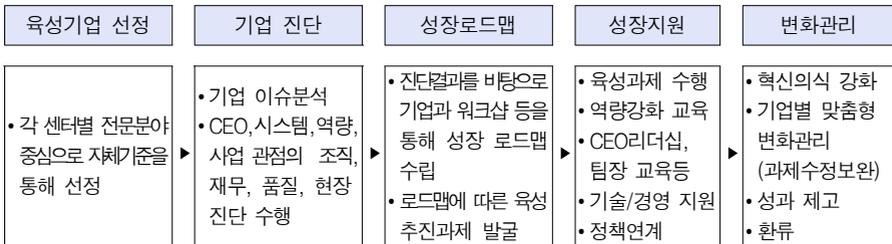
## □ 추진체계

- 민간 전문 컨설팅기업 주관으로 기술·경영 분야 지원, 기업은행(재단출자) 공동참여로 금융서비스 연계지원



□ 사업내용

- (핵심업무) 성장유망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기업진단을 통한 개별 기업 맞춤형 성장 로드맵 수립 → 성장 컨설팅 및 변화관리 진행



- (기업진단) 대상 기업의 이슈 분석을 통한 기업진단으로 경쟁력을 도출하고 당면과제를 정의하여 컨설팅 방법의 적용방안을 제시
- (중견기업육성) 성장로드맵 수립에 따른 기술경영분야의 과제를 체계적·중장기간(3년) 지원·관리
- (경쟁력강화사업 연계) 산학연합의체(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에 참여, 중소기업의 과제기획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력·지원

- (일반업무) 중소기업 집적지인 산단의 특성을 반영, 취약한 중소기업의 단발성 애로 해결 컨설팅·교육·금융지원연계 등의 단기코칭 병행
- (전문위원) 기술·경영·금융 분야별 full-time 전문위원을 현장에 배치
  - (기술전문위원) 기술평가사, MoT·공학분야 석·박사급으로 구성, 기술 개발·사업화, 생산 및 품질관리 컨설팅 유경력자로 구성
  - (경영전문위원) 경영지도사, 경영전략·조직·재무·HR분야 석·박사급으로 구성, 국내외 주요 컨설팅펌 유경력자로 구성
  - (금융전문위원) IBK기업은행에서 기업성장협력재단을 통해 금융전문가 위촉

#### □ 사업 추진성과

-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착
-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모델 수립
- 지속적인 실적 확산
  - (기술적 성과) 기업성장지원센터를 통해 기술혁신의 중요성 인식, 신제품 개발·특허출원·연구인력·교육훈련 강화 추세가 지속
  - (경제적 성과) 주요 육성기업의 매출/수출/고용에서 지속적 성장을 견인
  - (사회적 성과) `11년도 도입 이후 참여기업의 만족도 지속 향상

## (2) 생태산업단지(EIP) 구축 사업

### 1) 개념 및 추진배경

- 생태산업단지(EIP ; Eco Industrial Parks)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산업단지

< 생태산업단지 개념도 >



- 최근 기존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세계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로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단지 경쟁력제고 방안마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통한 생태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산업단지가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되고 환경문제가 주요 이슈가 됨에 따라 환경 갈등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환경·지역·주민친화적 산업단지 구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자연생태계를 모방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과 에너지 이용 효율 극대화 및 환경오염 물질의 원천적 감소가 이루어지는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정부는 다량의 에너지와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폐 부산물을 발생시키는 산업단지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5개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

## 2) 추진경과

- '05.11 : EIP 1단계 3개지역(포항, 여수, 울산미포·온산) 시범사업 추진
- '06. 2 : 시범사업 대상지역 2개 추가 (반월·시화, 청주)
- '06.12 :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사업 전담기관 이관
- '09.10 : EIP 2단계 8개 권역 지정 (8개 지역 38개 산업단지)
  - \*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 '10. 6 : Hub-Spoke 방식의 광역EIP체제로 확대 개편
- '13. 1 : 충남지역 추가 지정 (9개 지역 46개 산업단지)
- '15. 1 : 3단계 EIP사업 대상 지역 및 단지 지정 (12개 지역 105개 산업단지)
  - \*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경북, 대구,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 3)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운영, 기본방향 수립, 시범단지 선정 및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본계획 수립 운영, 세부과제 확정, 지역생태 단지사업단 관리 등 총괄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함
- 지역별 EIP총괄사업단을 구성하여 세부 수행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EIP 총괄사업단

4) 추진전략 및 비전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스마트 에코사회 실현**

2019년까지 산업공생 네트워크 300개 구축

**사업  
목표**



원가절감 및 매출 증대  
5,000억원/년



온실가스 감축  
2백만톤/년



일자리 창출  
800명/5년



기업협력 동반성장  
1천5백개사/5년

**추진  
전략**

● 국가 규모 산업공생망 확대

● 자원순환 사업 촉진 기반구축

(스마트 에코사회)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여 다양한 활동과 구조가 자연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을 가지며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감축, 자원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 및 향상시키는 사회

● 산업과 지역친화형 산업공생 모델 개발

● 생태산업단지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5) 주요 사업내용

- 에너지·자원 순환 기술 개발·보급
  - (자원순환 활성화) 기존 네트워크 활동(Bottom-Up)을 통한 현장 발굴방식에 사업공모(Top-Down) 방식을 추가하여 과제 발굴 활성화
  - (지역친화형과제) 지역사회 편익 증대와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산업단지와 지역사회 간 상생모델
- 녹색사업 성과 확산·보급
  - (타지역 확산) 단지 내 기업간 물질 순환에서 산업단지 간 확산
  - (사업화 촉진) 종료과제의 지속적 사후관리로 기업의 사업화 노력지원
  - (홍보추진) 우수사례 소개 등 성과확산을 위한 국내 홍보 활동 강화
- 자원순환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자원순환 네트워크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를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자원별 포럼 구성·운영

-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 (세계은행) 세계은행의 저탄소경제특구 사업 공동 추진
    - \* 세계은행 저탄소 녹색 경제자유구역 시범사업(방글라데시 치타공, 4.6만불, 12년)
    - \*\* 산업공생 컨설팅 프로젝트 추진 예정(베트남, 터키)
  - (기관교류)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 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채널 구축

사업명	주요내용
자원순환 네트워크 기반구축사업	- 기업 간 자원에너지 순환 촉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조성 - 정책 개발 및 법제도 개선
에너지·자원순환 기술개발보급사업	- 기업 중심의 우수과제 발굴·지원·확산 - 기업 간 산업공생 네트워크 실용화 및 상용화 촉진
녹색사업 성과확산보급사업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완료과제의 사업화 촉진 지원 - 성공사례의 타 지역으로 확산보급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 국내·외 선진기관과의 정보기술 교류 - 국내 성공사례 개도국 확산

### (3) 구조고도화사업

#### 1) 추진배경

- 산업단지는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 기지로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산업단지 내 근로생활의 질(QWL)에 대한 인식과 투자 부족, 노후단지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단순 생산기능 외에 근로자의 배움·문화·편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계에 봉착
- 이에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해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함

2) 추진경과

- '09. 4 :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산업단지 리모델링)
- '09.12 : 4개 시범사업 선정(남동, 반월시화, 구미, 익산단지)
- '10.10 : QWL밸리 조성계획 보고(제74차 국민경제회의)
- '10.11 :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고시
- '12. 5 : 반월·시화 신규 민간대행사업(4건) 승인 고시
- '13. 9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13.11 : 구조고도화사업 확산단지 선정(주안부영 창원 군산군산2 대불 서울디지털)
- '15. 1 : 노후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노후거점산업법) 제정

3) 주요 추진내용

□ 구조고도화사업 시범사업 시행

- '09년 12월 노후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의 4개 단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조고도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0년 4월에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절차, 사업시행자, 개발이익재투자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함
  - 세부사업은 업종 구조고도화, 기업지원시설 확충,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등으로 구분됨
    - 업종 구조고도화 : 산업단지 내 업종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 기업지원시설 확충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및 유틸리티 재정비
    - 문화·복지시설 확충 : 의료, 상업, 체육, 공연, 탁아시설 등의 정비
    -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 산업단지 노후 환경개선에 민간 및 금융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시드머니로서 펀드를 조성해 투자, 사업시행자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촉진

## □ QWL밸리 조성계획 발표

- '10년 10월에는 산업단지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구조고도화사업 개념을 확대한 'QWL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여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3터(일터, 배움터, 즐길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함
  - QWL 밸리사업은 기존 H/W 중심의 구도고조화사업에 청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문화, 주거, 예술 등의 S/W 사업을 추가한 개념임

##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사업)

- '13년 9월, 노후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산단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민간재원 중심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산단을 선정, 부처간 산단 지원정책을 집중 지원하는 '혁신사업'으로 개념이 확대됨
  - 구조고도화 확산단지(9개)는 '15년부터 혁신산단으로 지정하여 혁신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명칭을 혁신사업으로 통합 사용
  - 다만, 융복합집적지 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산업집적법의 구조고도화 절차를 준용함에 따라 법적 명칭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사용함

## 4)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단지별 추진현황

- '09년 12월 노후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의 4개 단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함
- 산단 구조고도화 1단계 시범사업으로 2010~2014년까지 4년간 업종고도화시설, 산업집적시설, 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을 확충·개선하는 등 총 32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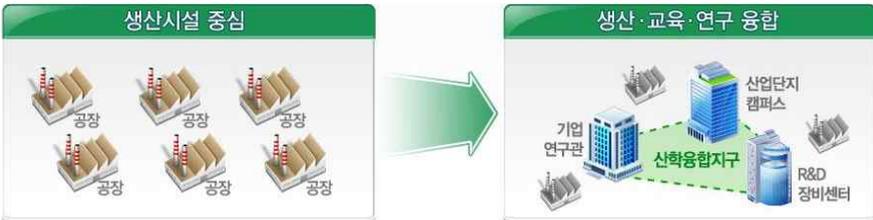
<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현황('15.8월말 기준) >

구분	시행 방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진행단계
반월 시화	직접 (공동)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 산학협동 연구소, 기술지원 시설 등	267	준공('12.10)
	민간 대행	호텔 및 주거편의시설(1차 편드)	호텔 215실, 오피스텔 220세대	606	준공('14.12)
		반월 환경업종이전집단지화	공장(도금 및 PCB) 공동폐수처리시설	465	준공('12.10)
		주유소 및 편의시설 확충 1	주유소,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등)	40	준공('12.11)
		주유소 및 편의시설 확충 2	주유소,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등)	29	준공('12.11)
		충전·주유소 및 편의시설	충전소, 주유소, 사무실 등	67	준공('14.09)
		스마트허브B&P센터(2차 편드)	환경업종집적화공장, 편의시설 등	394	준공('14.12)
		시화 기숙사형 오피스텔	기숙사형 오피스텔 656실 근생, 판매, 운동, 보육시설 등	571	공 사 중
	지자체	시화 인공수로 하천정비	하도정비	200	준공('13.05)
		반월시화 가로정비	노후도로 및 가로등 정비·확충	88	준공('12.12)
		반월시화 자전거출퇴근활성화	자전거도로확충, 대여소 설치	79	준공('12.12)
		시화 체육시설 개선사업	축구장 증설, 조명설치	11	준공('10.10)
	남동	직접	공동물류센터	물류센터(3F)	288
화물주차장			대형 주차장 50면	54	준공('11.06)
민간 대행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1	공장 108실, 근생 19실, 보육 1실	244	준공('13.01)
		운송장비 정비센터 및 주유소	주유소, 정비소	165	준공('12.02)
		주유소 및 편의시설	주유소,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등)	50	준공('12.01)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2	공장 46실, 근생 22실	244	준공('15.06)
		근로자복지타운	기숙사 128실, 근생 18실, 공용시설 등	121	착공준비 중
지자체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업무, 지원, 복지 및 편의시설	456	준공('10.07)
		제2유수지 환경개선	제2유수지변 체육시설, 주차장 설치	240	준공('15. 2)
		산단입구 고가차도	도림로~연수동 고가차도 건설	326	준공('14.09)
구미	직접	집적화단지	차세대금형, 그린에너지 등 생산단지 조성	691	준공('12.12)
		전자의료기기단지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생산단지 조성	198	준공('12.12)
		체육시설 개선	스탠드 보수, 도색, 주차장(127면)	3	준공('12.07)
	지자체	공단특화거리	휴게공간, 조형물, 지간판정비	5	준공('12.10)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자전거도로 확충, 대여소 설치	25	준공('12.12)
익산	직 접	환경개선사업	철조망 제거, 흰스 설치, 연결도로 개통 등	3	준공
계		<b>31개</b>		5,930	-

## 5)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 □ 산학융합지구

-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해 학교와 기업, 학생과 재직자가 참여하는 기업 수요 중심의 새로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모델을 구현하는 사업
  - 구조고도화사업 대상단지 및 혁신산단(시범사업 확산)을 중심으로 추진
    - \* '11년 반월,군산,구미, '12년 대불,오송,울산, '13년 당진, '14년 창원, '15년 부산,여수



- \* 관련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2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20조의2·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 ○ 세부 사업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2년) : 기업연구관의 건축 및 산단 내 대학 캠퍼스 이전을 통해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거점공간 조성사업
- 산학융합촉진사업(3년) : 현장 중심의 산학 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학위 및 비학위 과정 등의 교육과정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으로 취업·진학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기술과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산학융합 R&D를 지원하며,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의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

구분	시설현황	이전학과명	학생수
'11	시화 • 위치 : 시화 산단내 • 면적 : 29,157㎡ • 준공 : '12.11월	(산기대) 기계공학과 등 6개 학과	3,427
	군산 • 위치 : 군산 산단내 • 면적 : 19,159㎡ • 준공 : '13.9월	(군산대) 제어로봇공학과 등 3개 학과 (전북대) 자동차융합공학과 등 2개 학과 (호원대) 자동차기계공학과 (군장대) 조선해양계열	441
	구미 • 위치 : 구미 산단내 • 면적 : 39,032㎡ • 준공 : '14.3월	(금오공대) 광시스템공학과 등 2개 학과 (경운대) 모바일공학과 등 2개 학과 (구미대) 컴퓨터정보전자과 (영진전문대) 컴퓨터응용기 등 2개 학과	840
'12	대불 • 위치 : 대불 산단내 • 면적 : 13,231㎡ • 준공 : '15.8월	(목포대) 조선공학과 등 4개 학과	347
	오송 • 위치 : 오송 산단내 • 면적 : 19,979㎡ • 준공 : '15.3월	(충북대) 약학과 등 2개 학과 (청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약학과	460
	울산 • 위치 : 울산 산단내 • 면적 : 34,833㎡ • 준공 : '16년 예정	(울산대) 화학과 등 2개 학과 (울산과기대) 디자인공학 등 3개 학과 (울산과학대) 환경화학공업과	886
'13	당진 • 위치 : 석문 산단내 • 면적 : 18,037㎡ • 준공 : '16년 예정	(호서대) 제철공학과 등 4개 학과	673
'14	창원 • 위치 : 창원 산단내 • 면적 : 13,958㎡ • 준공 : '17년 예정	(경상대) 기계융합공학과 등 2개 학과 (경남대) 기계공학과 (마산대) 조선CAD과	335
'15	여수 • 위치 : 여수 산단내 • 면적 : 9,542㎡ • 준공 : '18년 예정	(전남대) 생산기계 등 3개학과	210
	부산 • 위치 : 미음 산단내 • 면적 : 10,000㎡ • 준공 : '18년 예정	(부산해양대) 해양플랜트 등 3개학과	230
소계	10개지구 총 면적 : 206,928㎡	총 22개대학 46개학과 이전	7,849

## □ 혁신산단 비즈니스센터

- 산업단지 내 기업 비즈니스와 혁신 지원기관의 집적화가 가능한 복합건물을 구축
  - '15년 혁신산단 4곳(부평국가, 창원국가, 여수국가, 대불국가)을 대상으로 지원

## □ 산단환경개선펀드

- '11~'14년 동안 정부예산 540억원을 마중물로 4개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1,38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총 1,920억원의 신규 투자를 창출
  - '11년 반월 호텔·오피스텔 건립사업, '12년 시화 PCB·도금 집적공장사업, '13년 창원 근로자 오피스텔 건립사업, '14년 구미 근로자 오피스텔 건립사업
  - '15년은 정부 출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유사업종 집적화,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 (4) 지방투자 지원제도

## 1) 추진배경

- 과거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내 사업장의 신·증설 제한이나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제한을 통한 과밀화 방지에 초점을 둠
  -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은 수도권 기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 기능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규제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수립이 필요함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함
- 이를 위해 2004. 4.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기업지방 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2) 지방투자 지원제도 현황

-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세제 및 금융지원, 행정 및 입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도 입지, 자금, 판매 지원 등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방투자 지원제도 현황>

지원제도	내 용
보조금지원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해 일부 지원
세제지원	지방이전기업의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
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에서 이전 기업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지원
행정지원	지방투자 포털정보망인 'COMIS'를 운영하여 지방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권역별 공장설립센터를 통해 지방투자 공장설립 업무 대행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가. 제도 개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입지와 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규모별로 지원비율,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해 지원함
  - '99년 8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세제·금융·이전부지 매입·배후도시 개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수립하고,
  -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하며 기업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나.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국내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국내 U턴 기업과 개성공업지구의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임

-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자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투자사업장을 신축·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그 기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한
- '15년부터는 지역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 개선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경우에도 지원함

#### 다. 지원유형

- 보조금은 크게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됨

#### <보조금 지원유형>

구 분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li> <li>※ 국내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인 경우 입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li> </ul>
설비투자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투자비용(건축물 매입비용 포함)</li> <li>·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차량운반구 중 지게차, 유형고정자산 중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li> <li>·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li> <li>* 단, 모욕시설은 제외하며,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만 인정</li> <li>※ 제외 사항</li> <li>· 공기구비품, 소모품에 대한 투자</li> <li>· 세금, 준조세 성격의 각종부담금</li> <li>· 리스, 렌탈 등의 비용(구입비용만 투자비용에 해당)</li> </ul>

<지방이전·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구 분	대상 기업 (해당 조건 모두 충족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li> <li>·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li> <li>* 서울시,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li> <li>·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li> <li>※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시 지원 제외</li> <li>·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li> <li>·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li> <li>· 이전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li> <li>· 기존사업장을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li> </ul>
국내 기업이 지방에 산·증설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li> <li>·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li> <li>* 신설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증설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li> <li>※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시 지원 제외</li> <li>· 투자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 것</li> <li>·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50명 이상이어도 가능)</li> <li>·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도 가능,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li> <li>·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li> </ul>
국내 복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li> <li>·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li> <li>· 해외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li> <li>※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시 지원 제외</li> <li>·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li> <li>·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li> <li>· 국내에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할 것</li> </ul>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일 것</li> <li>·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li> <li>※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시 지원 제외</li> <li>·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li> <li>·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li> <li>·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li> </ul>
스마트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li> <li>·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li> <li>·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li> <li>·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li> <li>·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지방에서 3년간 사업장을 운영할 필요는 없음)</li> </ul>

## 라. 지원범위 및 지원특례

- 지원범위는 일반지역·수도권 인접지역·지원우대지역으로 구분되며, 국가의 지원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원(지방비 별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 투자인 경우 입지보조금 한도는 5억원
  -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인 경우 부지면적의 5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장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가의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지원우대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2%이내	

-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설비 투자금액 지원비율을 가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 50명 이상: 5%p
- 투자사업장의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지원 비율을 2% 가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 단, 국내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인 경우에는 제외

- 투자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각 2% 가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마. 스마트공장 보조금

□ 지원규모

- 기업의 공정개선 투자금액(1억원 이내)의 50%를 지원(후지급)
- 국비와 지방비를 75:2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현장 자동화 및 공장운영,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기업자원관리 등에 관한 투자를 지원하되, 장비구입은 시스템 연동 장비로 제한함

분야	자동화	지원내용
현장 자동화/공장운영	MES	솔루션 및 연동 디지털 자동화 장비
제품개발	PLM	솔루션 및 연동 CAD/CAM
공급사슬관리	SCM	솔루션 및 연동 바코드 또는 RFID 시스템
기업자원관리	ERP	솔루션 및 연동 바코드 또는 RFID 시스템

\* 1회 1분야에 신청 가능하며, 사업 완료 후 지원받지 않은 분야에 대해 신청가능하고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

4) 세제지원

- 정부는 수도권 및 대도시 내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과세특례(납부시점 연기, 분할납부)와 국세(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과 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지방세를 증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lt;세제 감면 내용&gt;

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 지역	근거법령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2017년말	대도시	대도시 밖(지방)	조특법 제60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2017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조특법 제61조
중소기업 공장 (2년 이상)	법인세(소득세) 6(4)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7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조특법 제63조
공장 또는 주사무소 3년 이상	법인세 6(4)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	2017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 (광역시 이전시 산업단지만 해당)	조특법 제63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201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지특법 79조①
공장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2018년말	대도시	대도시 외	지특법 80조①

## 5) 기타지원: 지방투자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기업이전 및 지방투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기업투자지원시스템(COMIS)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지방투자와 관련한 산업입지·보조금지원제도, 공장 설립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적인 지방투자를 지원함
  - 주요 내용은 각 지자체별 투자환경·지원제도·특화업종, 지방투자정보 및 각종 투자혜택, 지방이전·투자시 보조금 지원제도 및 세제 혜택, 산업단지 분양정보 및 법령정보, 지방투자 성공사례 및 지역별 행사정보·뉴스레터·공지사항 등을 담고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무료 대행하는 종합지원체제(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를 구축해 운영 중임
  - 공장 설립 관련 입지상담 및 인·허가 무료대행, 세제, 융자, 공장용지 안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

## IV. 산업단지 리모델링 관련 제도

### 1. 산업단지 리모델링 제도의 개요

#### (1) 산업단지 리모델링 제도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이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리기반 시설, 환경 및 복지시설,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을 개선하여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함
- 노후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법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 노후거점산단법의 경쟁력강화사업을 들 수 있음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 산업시설의 현대화, 지원기능의 강화, 지식기반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등 기반시설 위주의 재생사업으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의미함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15.1.6)됨에 따라 기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양부처 협업을 토대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함

## (2) 노후 산업단지의 개념

### □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서의 노후 산업단지 개념

- 산업입지법 제39조의 2에 의하면,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산업집적법 제45조의 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수 있음
  - 산업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시설 등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노후거점산단법에서의 노후 산업단지 개념

- 노후거점산단법 제2조에서는 착공 후 20년 이상 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로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산단을 의미함

##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 (1) 지정목적 및 요건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산업집적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인정 사유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3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첫째, 산업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 둘째,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요할 경우
  - 셋째,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에 대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0년 단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해야 함(제45조의2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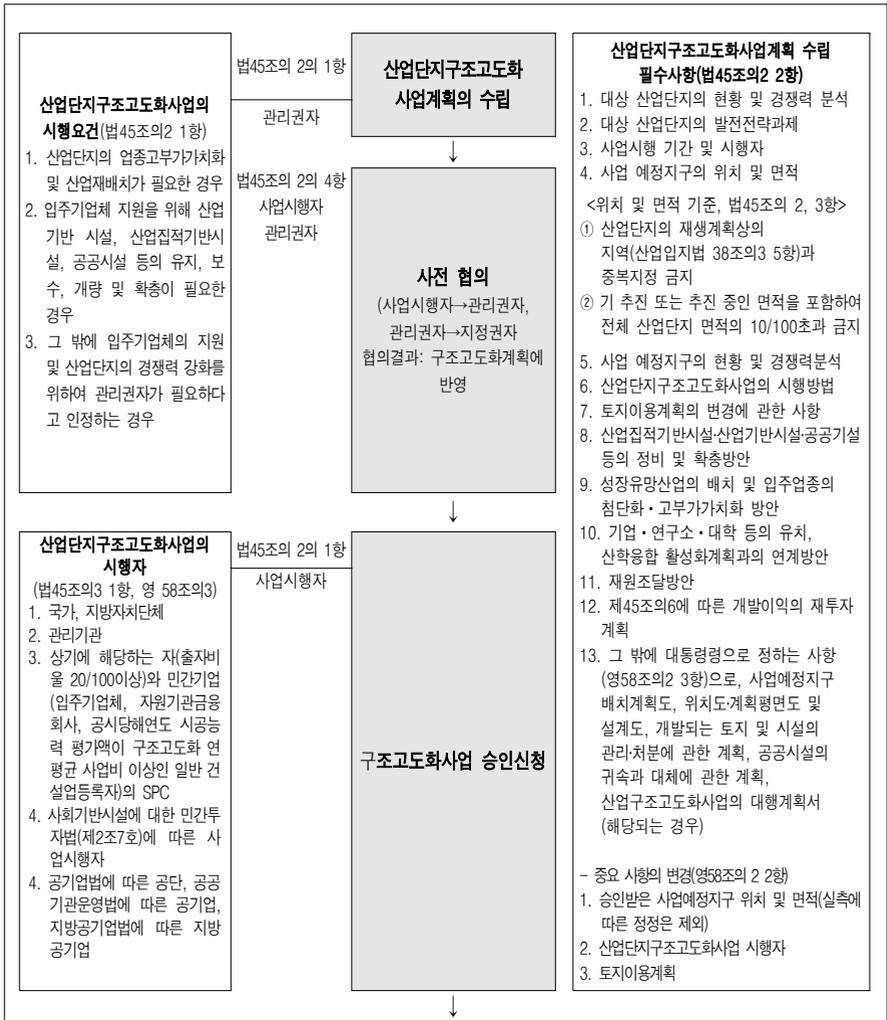
### (2)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절차

#### 1)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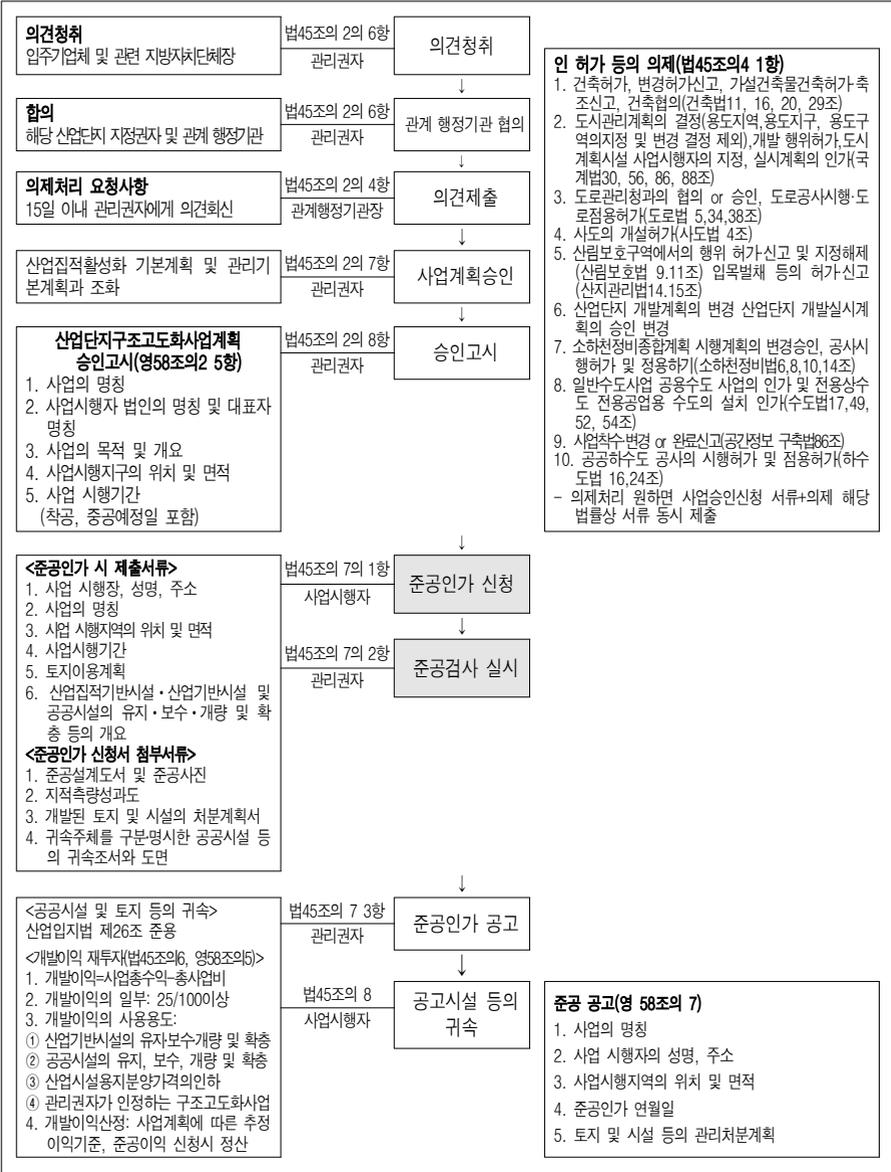
-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 재원조달방안
  -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고도화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은 승인받은 사업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실측에 따른 정정은 제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말함

<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절차(1) - 계속 >



<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절차(2) >



### 3. 산업단지 재생사업

#### (1) 지정목적 및 요건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22에 근거하여 산업 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 등에 기존 산단 공간구조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이루어짐
-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요건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제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 할 수 있음
  -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재생이 필요한 경우
  -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 지정
    -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용도지역상 공업지역 의미)
-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단,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법 제39조의2제2항)
- 다만, 재생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음(법 제39조의2제4항, 영 제44조)
  - 재생사업 대상면적이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원시설·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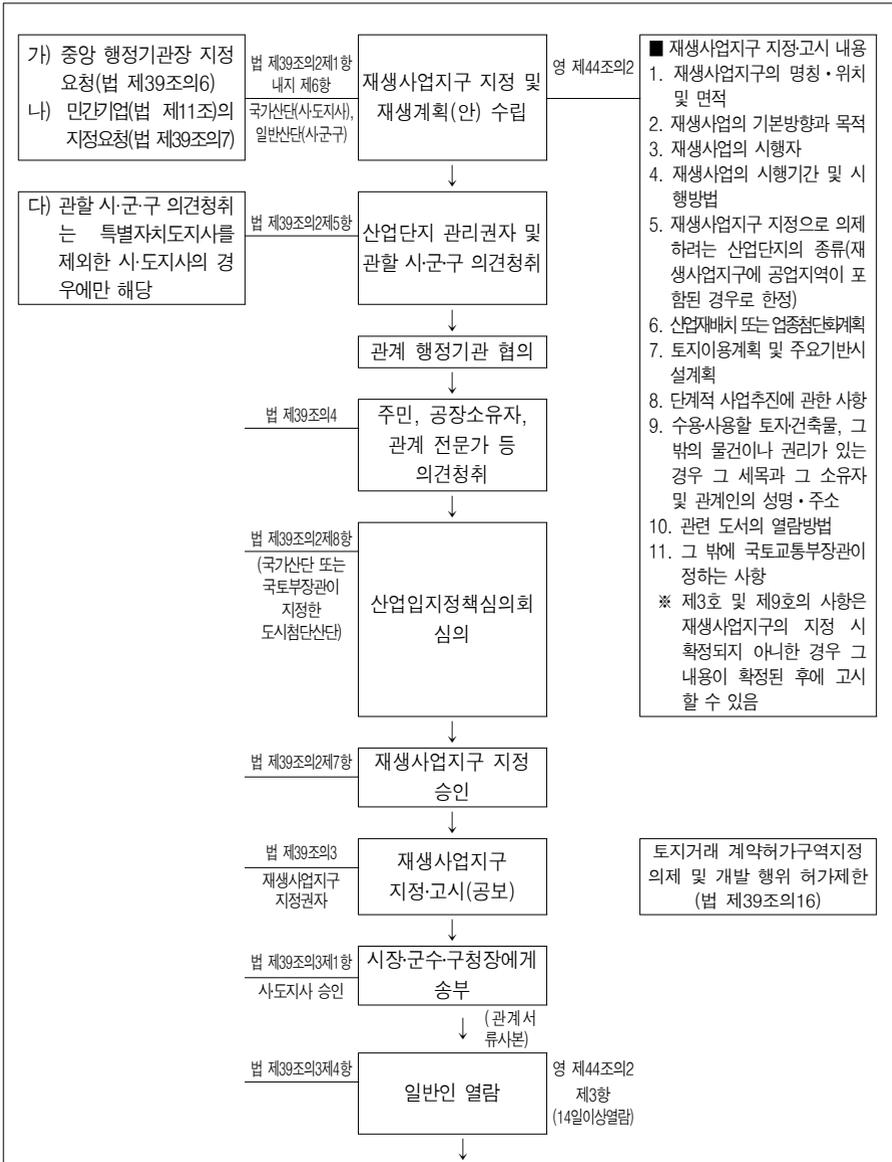
제외한 시·도지사의 경우만 해당) 및 해당 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음(법 제39조의2제5항)

- 다만, 국가·도시첨단·일반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단지별 지정권자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음(법 제39조의2제7항)
  -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39조의7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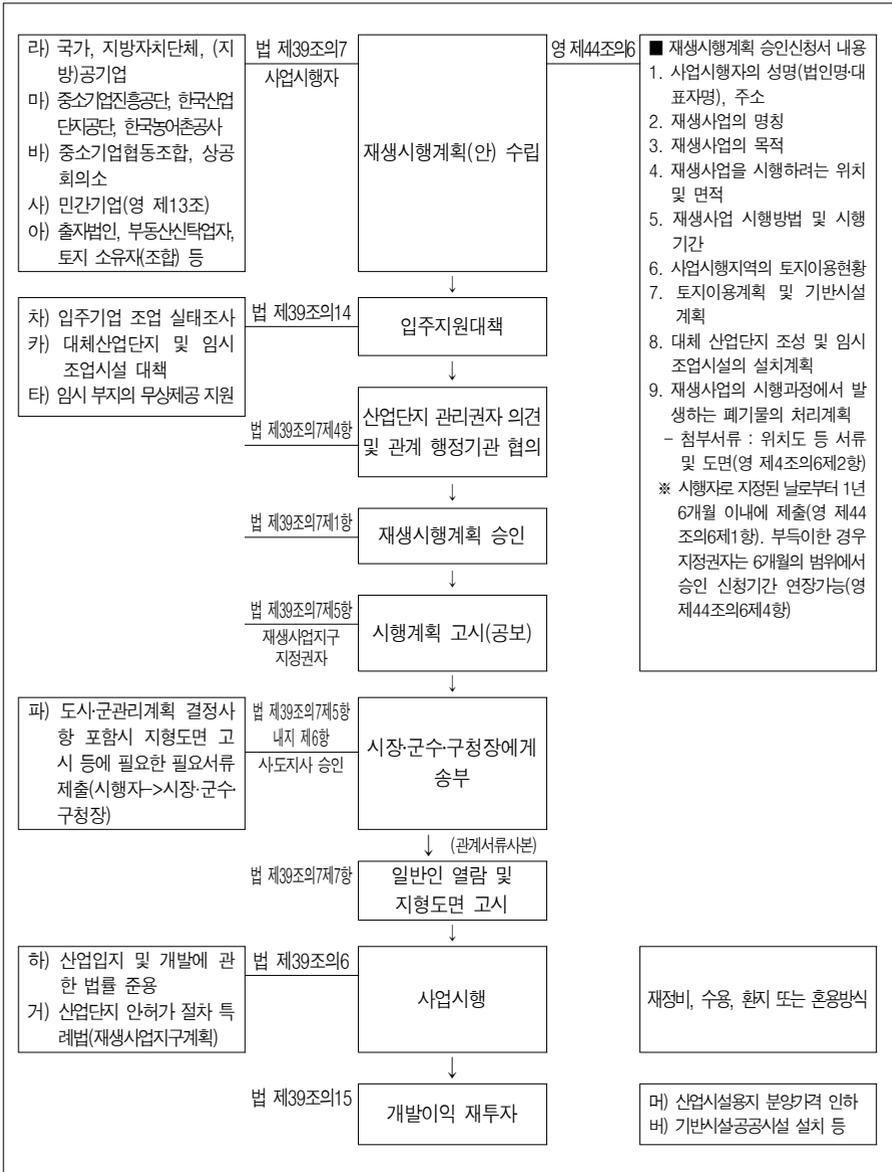
### (3) 재생사업 시행방식

- 재생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재정비방식 :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이 정비하는 방식
  - 수용방식 :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절차(1) - (계속) >



<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절차(2) >



#### (4)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내용

- 재생계획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단,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호, 제6호의2,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법 제39조의2제6항)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준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 6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7.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계획 등
  8.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3. 자원 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 재생사업지구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입주수요에 관한 분석 자료

## (5) 재생사업 지원 특례 등

- 현재 시행 중인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는 다음과 같음(법 제39조의17)
  -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단, 재생사업 시행방식 중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인센티브 강화

-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련 특례(법 제39조의12 내지 제39조의12, 2016.2.12 시행예정)
-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성화구역을 지정(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할 수 있으며,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는 다음과 같음

-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음
-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활성화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주택법」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재생사업 추진 지원 체계 구축 -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및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 (법 제39조의19 내지 제39조의20, 2016.2.12 시행예정)

-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 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사업

### (1) 지정목적 및 요건

- 「노후거점산업단법」은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됨
  - 이에 노후 산업단지 중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 산업단지'로 선정하고, 기반시설 지원 및 혁신생태계 조성, 입주기업·근로자 환경개선 등의 경쟁력강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법을 제정하였음
- 「노후거점산업단법」 제2조제1호에서 “노후거점산업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 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와 노후거점산업단법 제9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 경쟁력강화 전략 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노후거점 산단을 선정
-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함
  - 기능적으로는 「산업입지법」 상의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통한 업종첨단화,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기능과 「산업집적법」 상의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함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산업(국토부)과 혁신사업(산업부)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 기반시설 설치, 산업집적·인력양성·연구기반구축, 생활환경개선, 문화환경개선 등 중앙부처의 23개 사업을 포함

## (2) 추진체계

### □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 노후거점산단의 경쟁력강화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정의하여 양부처가 경쟁력강화사업을 공동 수행함
- 국가, 지자체는 경쟁력강화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및 경쟁력강화사업 내용을 지자체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 추진체계

-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부처 합동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신설함  
-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결정 및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경쟁력강화사업단지의 지정 등을 위한 심의이며,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부처별 지원방안 및 비용부담도 심의 가능함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관련 지자체의 시책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회의의 위해 지방자치단체 노후산업단지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경쟁력강화지원기구)**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관련 시책의 발굴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의 시행과 운영·관리 지원,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등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 수립권자의 받아야 함

### (3)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 중장기적·전략적인 관점에서 경쟁력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전략계획 수립 내용 (노후거점산업법 제9조2항)
  - 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 구조에 관한 사항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
  -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및 사업시행

##### □ 경쟁력강화사업사업지구의 공모 및 지정

- **(공모)**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 대상 경쟁력강화사업단지 지정 관련 공모를 실시함
- **(지정신청)** 관할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법 제6조 및 제7조), 관리권자(산업집적법 제2조제16호) 및 관리기관(산업집적법 제2조제17호)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지정요청서의 주요 내용
    -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

- 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
  -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평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국가·지역경제 기여도, 사업추진 필요성, 자원 확보상황, 입주기업 자구노력 등을 기준으로 지정요청서를 평가함
  - **(심의·확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확정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그 내용을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승인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된 것으로 의제 처리됨
- 사업계획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개별법의 적용

□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관련 특이사항

- (면적제한 완화) 산업집적법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시 산업집적법 규정 (제45조의2제4항제2호, 기 추진 중인 지구를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

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전체 산단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에도 불구하고 30%까지 사업계획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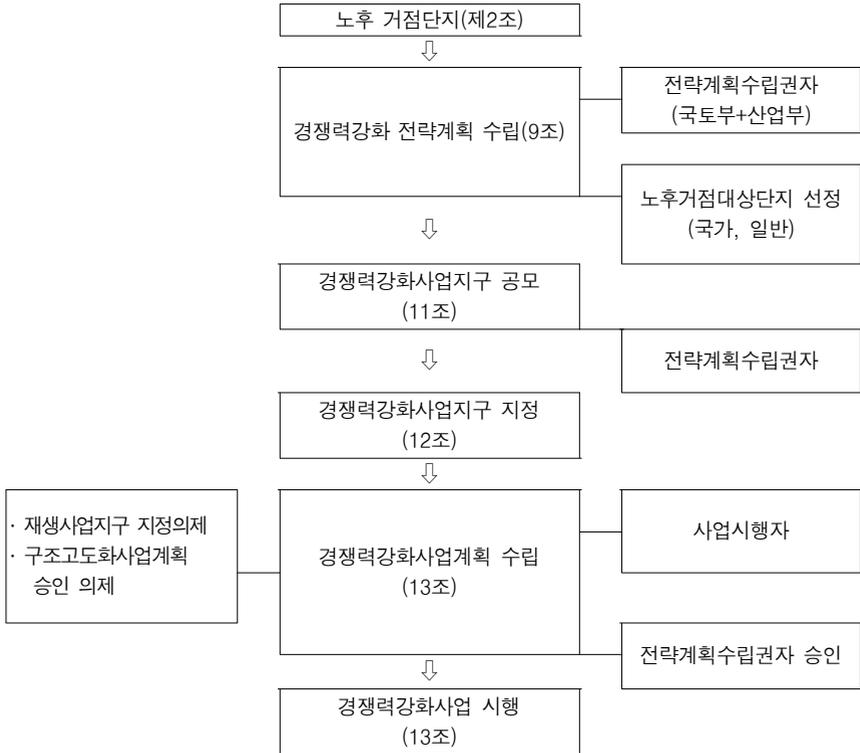
- (인·허가의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계정의 운용 실적 및 향후 운용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사업계정 설치)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사업계정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발이익,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분, 정부 출연·출자금 등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경쟁력강화사업 사업계정의 주요내용〉

- ◇ (회계 재원) 개발이익금, 지가차액 환수분, 정부 출연금, 차입금 등
- ◇ (계정 용도) 산단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 비용, 휴폐업 공장용지 매입비용 등
- ◇ (계정 관리) 공단 등의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구를 총괄관리자 지정운영

※ 준공인가, 공공시설의 귀속, 준용규정 등은 개별법에 따라 처리

<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시행절차 >



#### (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지원 및 특례

##### □ 자금지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집적화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민간투자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함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 □ 타 법률 관련 특례 등

- 산단 입주시설 및 부대시설을 별도로 정하도록 특례(산업집적법)
-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및 용적을 한도 내에서 완화 특례(국토계획법)

## 5.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의 비교

### (1)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의 비교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며, 구조고도화사업은 생산 지원시설의 보완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업임

<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비교 >

구 분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목 적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 등에 기존산업 공간구조 계획적 정비	성장유망산업 유치, 입주업종 첨단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제고
근 거	산업입지법 제39조의 3	산업집적법 제45조의2
필요성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li> <li>·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산,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선정가능)</li> <li>· 산업단지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li> <li>· 기업체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재생이 필요한 경우</li> </ul>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계획 수립</li> <li>· 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li> <li>· 산업부 장관, 관계 부처의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li> <li>· 재생사업지구 지정 : 지정권자</li> <li>· 재생 시행계획 수립 : 지정권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수립</li> <li>· 관리권자(산업부, 지자체)</li> <li>· 구조고도화 시행계획</li> <li>· 관리기관(산단공, 지자체)</li> </ul>
시행절차	시도지사, 입주기업 및 관계 부처와 협의시행 ※ 신규산업 개발절차와 유사	관리기관(산업단지공단)에서 계획 수립·시행
재원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민간사업시행자 직접 조달</li> <li>* 선분양수입금, 자체자금(융자차입)</li> <li>* 기반시설 대규모 국고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 직접 조달</li> <li>* 산단공 자체 재원 마련(채권발행 등)</li> <li>* 공공·기반시설 사업시행자 설치</li> </ul>
지원	재생계획을 수립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인 지원은 없음</li> <li>· 특별예산으로 일부 사업지원(복지센터사업 등)</li> </ul>

## (2) 사업별 추진현황

### 1) 재생 및 혁신단지 선정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공장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진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의 협업으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12)”을 수립
  -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16년까지 25개 중점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리모델링 필요성, 사업 실현 가능성, 지자체·입주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상단지를 선정
- 현재 재생단지 또는 혁신단지로 지정된 산단은 지난 2014년 8개에 이어 2015년에 12개이며, 2016년에 추가로 5개가 선정될 예정으로 전국에 25개임
  - 정부는 '14년 3월에 반월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대불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1차로 혁신산단을 지정하고, 12월에 여수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였음
  - 또한, 2015년에는 9개 산단 즉 남동국가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성서1,2일반산업단지, 양산일반산업단지, 성남일반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서대구일반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됨
  - 성서1,2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12월에 선정되었으나 2015년에 선정된 것으로 구분

## &lt; 재생 및 혁신단지 선정 결과 &gt;

구 분	'14년(기선정 포함)	'15년	'16년(예정)
공동단지 (혁신+재생)	2 (구미국가, 반월·시화국가)	7 (남동국가, 익산국가, 양산일반, 성남일반, 하남일반, 청주일반, 성서일반)	-
재생단지	2 (춘천후평일반, 진주상평일반)	3 (대구염색일반, 순천일반, 서울온수일반)	3
혁신단지	4 (창원국가, 대불국가, 여수국가, 부평·주안국가)	2 (울산미포국가, 서대구일반)	2
합 계	8	12	5

-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산업단지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를 설정하고, 진단을 통하여 산업단지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
- 이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15.1.6)됨에 따라 기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양부처 협업을 토대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함

## 2) 재생사업단지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는 2009년 9월 전국의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지구 4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재생시행계획을 수립 중임
- 시범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대전 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등이며, 4개 시범단지의 재생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함

## &lt; 재생사업 시범단지 현황 &gt;

항 목	대전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준공년도	73년	76년	69년	75년
전체면적 (천㎡)	2,324	4,098	1,683	6,620
산업시설면적(천㎡)	977	2,201	1,169	5,478
도로율	5.7%	14.6%	17%	12.5%
녹지율	0.0%	6.1%	0.0%	2%
20년 이상 건물연면적	73.8%	50%	71%	40%
업체수 (개)	308	3,553	131	7,072
고용자수 (명)	5,356	24,807	3,607	44,660

- 한편 4개 시범단지 중 대구 도심공단, 대전 1·2산단 및 전주1산단의 재생계획에 대해서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국가 재정사업으로 재생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산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

## 3) 혁신산업단지 지정 현황

- 정부는 '14.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월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대불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4개 노후단지를 혁신산단으로 선정함
- '14.12월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성서1,2일반산업단지 3개가 추가로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됨
- '14년에 선정된 산업단지들에 대해서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15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지자체, 관리기관 공동)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17년까지 17개 노후산단을 혁신단지로 연차별로 지정할 예정임  
- 혁신단지 선정 일정(안) : ('14년) 7개 → ('15년) 8개 → ('16년) 2개

제2편

## 산업입지 관련 법률

- I. 산업입지 개발 및 관리 관련법
- II. 산업입지 개발 및 관리 관련 지침



# I. 산업입지 개발 및 관리 관련법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 률	'14.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입지허용,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 추가</li> <li>○ 일반산업단지 지정 시,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협의</li> <li>○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녹지를 완화</li> <li>○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 보상 범위 확대</li> <li>○ 재생사업지구 산업시설용지 면적 지정 기준 설정 (공공시설 제외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별도 지정)</li> <li>○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 조성</li> </ul>
	'14.0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용지제도 도입</li> <li>○ 준공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li> <li>○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 추가, 민간 사업시행자 대행개발 허용</li> <li>○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li> <li>○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시행</li> <li>○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 확대(30% → 50%),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li> <li>○ 개발이익 채투자 과·오납 관련, 재생사업시행자 이익제기절차 마련</li> </ul>
	'15.0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지역 내 일반적인 산업시설용지 및 산업시설 지원용지외 복합개발 용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상의 공모제도 및 원형지 공급제도 준용 (특수지역 개발사업 공급제도 미비점 보완)</li> </ul>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 률	'15.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사업지구 지정 방식 추가(두개 이상 지역의 단일 지구 지정,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li> <li>○ 토지소유자·입주기업 등이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정비하는 재정비방식 도입</li> <li>○ 재생사업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절차 정의</li> <li>○ 재생사업지구에 기존 산업단지 외 주변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 해당지역은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간주</li> <li>○ 재생사업 중 공장 이전이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재정비방식은 도로율·녹지율 규제 적용 면제</li> </ul>
	'15.0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개발계획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으로 계획 수립 허용. 공모를 통한 산업단지개발사업 허용</li> <li>○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연구기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우선 지원</li> <li>○ 기업의 상속,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제한 기간 내에도 처분 허용</li> <li>○ 재생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li> </ul>
	'16.0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기초조사 실시 및 결과 고시 의무화</li> <li>○ 부분 재생사업 도입</li> <li>○ 재생사업활성화구역 지정</li> <li>○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li> </ul>
	'16.0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개발 법인의 공공시행자 자격요건 정의 (공공이 50% 초과 출자 또는 30% 이상 출자·지배력 확보 시)</li> <li>○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최대 한도까지 허용</li> <li>○ 현상설계 등 공모 당선자에게 원형지 공급 허용</li> </ul>
	'16.0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자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li> <li>○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할 경우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li> </ul>
시 행 령	'14.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개발계획 중요한 변경 사항의 조정 등</li> <li>○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의 승인신청 기간 연장</li> </ul>
	'14.0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시 면적 총량 제한 적용 제외</li> <li>○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가액의 기준 정비</li> <li>○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확대 등</li> </ul>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14.0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업의 이윤율 조정</li> <li>○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및 대상지역 확대</li> <li>○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확대</li> <li>○ 산업시설용지에 포함되는 복합용지의 설치 상한</li> <li>○ 산업단지 지정해제 요건의 구체화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li> <li>○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방식 및 절차</li> <li>○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li> <li>○ 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업무</li> </ul>
	'14.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산업단지 지정 대상 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을 추가</li> <li>○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수금 수령 요건의 완화</li> <li>○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의 완화</li> </ul>
	'15.0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도 포함 허용</li> </ul>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산업입지 개발지침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공공주택용지 확보비율,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작성기준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산업입지 수급계획	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 -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2.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3.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별,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입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의 2
국가산업 단지의 지정	1.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3.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제6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일반산업 단지의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함. 다만, 3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음</li> <li>2. 일반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li> </ol>	제7조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함. 다만, 1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음</li> <li>2.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음</li> <li>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li> </ol>	제7조의 2
농공단지의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할 수 있음</li> <li>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음</li> </ol>	제8조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p>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단지 : 시도별 미분양비율 15%이상</li> <li>- 일반단지 : 시도별 미분양비율 30%이상</li> <li>- 도시첨단단지 : 시도별 면적 330만㎡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외) 또는 미분양비율 30%이상</li> <li>- 농공단지 :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면적(시군별 100만~200만㎡ 범위) 또는 미분양비율 30%이상</li> </ul>	제8조의 2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준산업단지 지정	1. 준산업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지정하려는 지역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li> <li>- 지정면적이 3만㎡ 이상일 것</li> <li>-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지정면적의 40% 이상일 것</li> <li>- 지정지역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2개 이상일 것</li> <li>- 지정면적의 50%이상 토지소유자 및 공장소유자 총수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li> </ul> 2. 준산업단지 지정·개발 관련 사항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조항을 준용	제8조의 3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 산업단지 또는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제11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1.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국가산업단지:5년,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3년, 농공단지:2년)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2.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li> <li>-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서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li> </ul>	제13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li> <li>2.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li> <li>3.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li> <li>4. 해당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li> <li>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출자비율의 합이 20%이상)</li> <li>6.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li> <li>7.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li> </ol>	제16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는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 등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제20조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음	제2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함에 있어 35개 법령*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등)	제21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p>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각 해당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지식산업 관련 시설·문화산업 관련 시설·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또는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li> <li>2.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li> <li>3.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li> <li>4.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li> </ol>	제24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비용의 부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제28조
시설 지원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함	제29조
기존공장의 존치	1.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기존 공장, 건축물, 공작물은 존치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결하여 있는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내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결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제30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하고자 할 때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해야 함.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38조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준수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제38조의2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	제38조의4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음	제38조의5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재생사업지구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지나 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 지정하여야 함</li> <li>2.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 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주변 지역 면적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li> <li>3.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함</li> <li>4. 재생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기초조사와 현황조사</li> <li>-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시행자, 시행방법(준차지역에 관한 사항 포함)</li> <li>-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li> <li>-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li> <li>- 기반시설 계획, 비용분담계획, (필요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li> <li>-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li> <li>-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li> <li>-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사항, 자원 조달계획,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li> </ol>	제39조의2
재생사업 시행방식	<p>재생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혼용하여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비방식 2. 수용방식 3. 환지방식</li> </ol>	제39조의6
순환개발방식 개발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활한 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해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인근지역에 임시 조업시설을 제공할 수 있음</li> <li>2. 임시 조업시설을 제공받은 자가 재생사업 완료 후에도 해당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음</li> </ol>	제39조의9
개발이익의 재투자	<p>재생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외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25%이상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생사업 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0%이상을 임대하는 경우</li> <li>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재생사업지구 총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li> </ol>	제39조의15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1.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2.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 비용 지원금의 관리 - 재생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9조 의18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 률	'14.07.22	○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
	'15.03.31	○ 비제조업의 경우 고시로 정하는 비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이나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5.07.01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 폐지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 완화 (산업시설구역 외의 산업용지) ○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벌칙 상한 상향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 행 령	'14.03.11	○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에 신타입 추가 ○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기간 중 소유권 이전 허용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14.08.06	○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의 종류 추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 7개 업종) ○ 산업단지 내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산업용지 등 기부부담 완화
	'14.12.30	○ 수리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추가 ○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상의 확대 ○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양도 시 분할양도 가능
	'15.05.06	○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시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전, 다른 토지 등의 기부허용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 열·증기 공급업자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열·증기를 공급하는 경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15.06.30	○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기관 확대(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장)
	'15.07.01	○ 복합구역의 지정요건을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함
	'15.08.19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함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15.10.06	○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 확대 (현행 20개에서 광고 대행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27개 업종으로 확대)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요약	관련조항
목적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공장의 범위	1.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등	제2조 (영 제2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와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 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활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2조 (영 제5조)
입주기업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제2조 (영 제6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의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해야 함</li> <li>2.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연계방안</li> <li>-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li> <li>-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li> </ul> </li> </ol>	제3조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의 설치·운영	<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 승인 업무</li> <li>-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li> <li>-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li> <li>-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ul>	제6조의2
산업입지 연구센터	<p>국내외 산업입지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조사·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둠</p>	제7조
공장설립 지원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둠</li> <li>2.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li> <li>3.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li> </ol>	제7조의2
공장설립 등의 승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li> <li>2.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li> </ol>	제13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p>	<p>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li> <li>-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li> <li>-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li> <li>-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li> </ul>	<p>제13조의5</p>
<p>제조시설 설치승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래의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li> <li>- 등록된 공장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축물</li> </ul> </li> <li>2.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li> </ol>	<p>제14조의3</p>
<p>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p>	<p>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li> <li>-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li> </ul>	<p>제14조의4</p>
<p>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p>	<p>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함)</p>	<p>제15조</p>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공장의 등록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을 때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제16조
공장의 등록취소	<p>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공장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li> <li>-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li> <li>-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li> <li>-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li> <li>-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li> <li>-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li> </ul>	제17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지식산업센터 포함)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li> <li>2.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li> </ol>	제20조
경쟁력강화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	<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li> <li>-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li> <li>- 사업추진체계 및 자원조달방안</li> <li>-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제22조의 3
지식산업 센터의 설립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등 공장설립 관련 조항을 준용함</li> <li>2.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함</li> </ol>	제28조의 2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함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8조의 5
산업단지 관리권자 등	1. 관리권자는 아래와 같음 - 국가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 시장·군수·구청장 2. 관리기관은 아래와 같음 - 관리권자,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제30조
산업단지 관리지침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함 -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2.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 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2.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포함)하거나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li> <li>3. 관리기본계획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li> <li>-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li> <li>-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li> <li>-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그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li>4. 용도별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화 할 수 있음</li> </ol>	제33조
산업단지 안의 국공유지 매각 및 임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음</li> <li>2.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가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음</li> </ol>	제34조
입주계약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2.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li> </ol>	제38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li> <li>-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li> </ul> </li> <li>2. 관리기관이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li> <li>3.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li> </ol>	제39조
산업용지의 환수	<p>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p>	제41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p>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계약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li> <li>-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li> <li>-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li> <li>-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li> <li>-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li> <li>-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li> <li>- 분할된 산업용지(또는 산업용지 공유지분)를 처분한 경우</li> </ul>	제42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권자는 산업단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li> <li>-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li> <li>- 그 밖에 입주기업체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li> <li>2.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경쟁력분석, 발전전략과제</li> <li>- 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법</li> <li>- 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면적, 현황, 경쟁력분석</li> <li>-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li> <li>-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li> <li>-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li> <li>- 재원조달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li> </ul> </li> </ol>	제45조의 2
구조고도화 사업 비용부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li> <li>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li> </ol>	제45조의 5
개발이익의 재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li> <li>2. 개발이익은 해당 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함</li> <li>3. 개발이익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 시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함</li> <li>4.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해야 하고, 준공인가일 전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함</li> </ol>	제45조의 6
한국산업 단지공단 설립 등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함	제45조의 9

###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률	'14.01.14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명시
	'15.08.11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국토부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에서 수행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주요 유치업종 또는 입주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음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봄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
시행령	'15.03.17	○ 유치업종의 배치계획과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중 선택적으로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요약	관련조항
목적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름	제4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산업단지 계획심의 위원회	<p>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li> <li>-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li> </ul>	제6조
투자 의향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 소개서, 사업규모 및 기간, 사업예정부지,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입지수요 자료, 자원조달계획</li> </ul> </li> <li>2.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 등에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농지·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등</li> </ul> </li> <li>3.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li> </ol>	제7조
산업단지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권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li> <li>-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li> <li>-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li> <li>-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li> <li>- 자원조달계획,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에너지사용계획 등</li> </ul> </li> <li>2.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li> </ol>	제8조
관계기관 협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함</li> <li>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 이내)</li> <li>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봄</li> </ol>	제10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심의위원회 심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li> <li>2.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 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함</li> <li>3.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경관위원회</li> </ul> </li> </ol>	제14조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 고시 등	<p>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봄</p>	제15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가간의 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li> <li>2. 지정권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로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li> </ol>	제16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li> <li>2.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함</li> <li>3.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li> <li>4.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li> </ol>	제19조

##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를 말함</li> <li>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함</li> <li>3.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과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말함</li> <li>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경관사업, 에너지·자원기술의 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에너지진단,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생태산업단지의 지정</li> <li>-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지원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산학융합지구의 지정</li> <li>-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고용창출의 지원, 근로자주택공급제도,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임주 지원</li> </ul> </li> </ol>	제2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li> <li>5.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단지를 말함</li> <li>6. '전략계획수립권자'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li> </ul>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li> <li>-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li> <li>-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li> <li>-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li> <li>-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li> <li>-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ul> </li> <li>2.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로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li> <li>- 민간위원 :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li> </ul> </li> </ol>	제5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p>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li> <li>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li> <li>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li> </ol>	제6조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p>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li> <li>-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li> <li>- 전략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li> <li>-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li> <li>-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li> <li>-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li> </ul>	제7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함</li> <li>2. 전략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구조</li> <li>-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li> <li>-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li> <li>-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li> <li>-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li>3. 전략계획은 다음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종합계획,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도시·군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li> </ul> </li> </ol>	제9조
경쟁력강화 사업지구의 공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노후 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li> <li>2.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li> <li>-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li> <li>- 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li> <li>-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li> <li>-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li> <li>-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ol>	제11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경쟁력강화 사업지구의 지정	<p>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에 대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li> <li>-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할 것</li> <li>-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 개량 확충이 필요할 것</li> <li>-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li> <li>-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되어 있거나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li> <li>- 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li> <li>- 그 밖에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li> </ul>	제12조
경쟁력강화 사업의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li> <li>2.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구조고도화계획 또는 재생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구조고도화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봄</li> <li>3.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음</li> </ol>	제13조
사업시행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함</li> <li>2.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li> <li>-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li> </ul> </li> </ol>	제14조
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제16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개발이익의 재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li> <li>2.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으로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함</li> </ol>	제17조
경쟁력강화 사업지구의 지정해제	<p>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고시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 지정 후 2년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li> </ul>	제21조
자금지원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li> <li>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li> <li>3. 기반시설(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함</li> <li>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li> </ol>	제22조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률	'14.0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li> <li>○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li> </ul>
	'14.0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li> </ul>
	'15.0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추가</li> <li>○ 입주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관계기간 협의기간 단축</li> <li>○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률 규정의 일부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li> </ul>
	'15.0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과 토지적성평가를 추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 추가</li> </ul>
	'15.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li> </ul>
	'15.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 해당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첨부하여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li> </ul>
	'16.0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을 추가, 개발진흥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및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li> <li>○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을 추가</li> </ul>
	'16.0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근거 신설</li> </ul>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률	'17.01.0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함
시행령	'14.01.17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등의 근거 명확화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 방재지구 세분화 및 의무지정 대상지역 구체화 ○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 ○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절차 등 ○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 완화
	'14.07.18	○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14.10.15	○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2016년 12월31일까지) 건폐율 완화 ○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 확대 ○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의 증축·개축의 한시적 완화
	'14.11.11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소규모 관통대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면제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보고 가능 횟수 확대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완화 ○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 등
	'15.07.06	○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확대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 학교 기숙사의 용적을 완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의 완화
	'15.07.07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의 면제사유
	'15.12.15	○ 도시·군관리계획 정비기준 ○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 ○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 ○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 ○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
국토의 용도구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li> <li>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li> <li>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ol>	제6조
광역 계획권의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li> <li>-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 지정</li> </ul> </li> <li>2.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li> </ol>	제10조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li> <li>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li> <li>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li> <li>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li> <li>5.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li> <li>6.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li> </ol>	제12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광역도시 계획의 승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li> <li>2.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li> </ol>	제16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p>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li> <li>-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li> <li>-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li> <li>-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li> <li>-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방재 및 안전</li> <li>-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li> <li>-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li> <li>-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li> </ul>	제19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li> <li>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를 작성하여야 함</li> </ol>	제25조
용도지역의 지정	<p>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역: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i> </ul> </li> <li>2. 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li> </ul> </li> </ol>	제36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용도지역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li> <li>-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li> <li>3. 농림지역</li> <li>4. 자연환경보전지역</li> </ul>	제36조
용도지구의 지정	<p>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li>-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li> <li>- 개발진흥지구: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li>-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흥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li> </ul>	제37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p>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p>	제38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p>국도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li> <li>-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li> <l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li> <li>-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li> <li>-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li> <li>-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li> <li>-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li> <li>-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기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li> </ul>	제51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p>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li> <li>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li> <li>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li> <li>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li> <li>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li> <li>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li> <li>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li> <li>7. 교통처리계획</li> <li>8.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제52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주거 70%, 상업 90%, 공업 70%, 녹지 20% 이하</li> <li>- 관리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 20%, 계획관리 40% 이하</li> <li>- 농림지역: 20% 이하</li> <li>-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li> </ul> </li> <li>2.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위의 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li> <li>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지구,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함), 수산자원보호 구역, 자연공원,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준산업단지</li> </ul> </li> </ol>	<p>제77조</p>
<p>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p>	<p>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주거 500%, 상업 1,500%, 공업 400%, 녹지 100% 이하</li> <li>- 관리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이하</li> <li>- 농림지역: 80% 이하</li> <li>-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li> </ul>	<p>제78조</p>

## 6. 수도권정비계획법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	<p>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li> <li>-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li> <li>-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li> <li>-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li> <li>-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li>- 위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제4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p>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li> <li>-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i> </ul>	제6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 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li> <li>- 공업지역의 지정</li> </ul> </li> <li>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나 허가 등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증설</li> <li>-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함</li> </ul> </li> </ol>	제7조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li> <li>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li> </ol>	제8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p>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의 행위나 그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공업용지·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li> <li>-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li> </ul>	제9조
총량규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음</li> <li>2.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li> </ol>	제18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대규모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li> <li>3.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li> </ol>	제19조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설치 등	<p>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소관별 추진계획</li> <li>-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계획의 조정</li> <li>-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li> <li>- 종전대지의 이용계획,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li> <li>- 그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제21조

##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용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정의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함	제2조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음</li> <li>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li> <li>-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li> <li>-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원칙</li> <li>-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li> <li>-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li> <li>-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li> <li>-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ol>	제4조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li> <li>-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 계획</li> <li>-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li> <li>-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li> <li>-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li> </ul> </li> <li>2.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다음 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li> <li>- 민간위원 :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li> </ul> </li> </ol>	제7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지방도시 재생위원회	<p>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li> <li>-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li> <li>-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li> </ul>	제8조
도시재생지원 기구의 설치	<p>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음</p>	제10조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설치	<p>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li> <li>-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li>-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li> <li>-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등</li> </ul>	제11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p>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함</p>	제12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내용	<p>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 방안</li> <li>2.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li> <li>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li> <li>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li> <li>5.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li> <li>6.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자원 조달 계획</li> <li>7.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li> <li>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li> <li>9.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li> <li>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li> <li>11.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li> </ol>	제13조
도시재생전략 계획의 확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li> <li>2. 위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li> </ol>	제16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도시재생전략 계획의 승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2. 도지사가 위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li> </ol>	제17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목표</li> <li>-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li> <li>-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li> <li>-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계획</li> <li>- 예산 집행 계획</li> <li>-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li> <li>-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li> <li>-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li> <li>2.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개발과의 연계 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li> </ol>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li> <li>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li> <li>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함</li> <li>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함</li> </ol>	제20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효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제21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li> <li>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의 취소 여부를 결정함</li> <li>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li> <li>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사업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재생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봄</li> </ol>	제22조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li> <li>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봄</li> </ol>	제25조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	<p>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li> <li>-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li> <li>-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토지 소유자</li> <li>-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li> </ul>	제2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제31조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33조

## 8.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p>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p>	제1조
육성계획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관할구역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li> <li>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산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li> <li>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li> <li>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 및 경영안정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li> <li>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li> <li>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li> <li>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 <li>위 각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li> <li>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li> </ol>	제40조
공장설립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및 장기임대</li> <li>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li> <li>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li> <li>이전 희망 지방중소기업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li> </ul> </li> <li>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 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음</li> </ol>	제46조

##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제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함	제3조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권자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실정, 지정의 필요성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	제4조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것 3.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제5조
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는 다음과 같음 -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 -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 항만 및 배후지 : 해양수산부장관	제8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입주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li> <li>-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li> <li>-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li> <li>-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li> <li>-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li> <li>-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li> <li>- 국가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li> </ul> </li> <li>2. 권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음</li> </ol>	제1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p>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p>	제14조
임대료의 감면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권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li> <li>2. 권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li> </ol>	제20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함</li> <li>2.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li> <li>3.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li> </ol>	제45조
법인세 등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제47조

##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 률	'14.11.04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 규정 신설
	'14.12.30	○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과 관련한 계획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
	'15.07.01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 완화(100% → 7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통계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
	'15.12.31	○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도시관리 업무(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의 수행자 변경(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시 행 령	'14.11.04	○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의 확대 ○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확대 ○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완화(25% → 10%)
	'15.03.24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협의기간 단축(30일 → 20일 이내)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의 완화
	'15.07.24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개선
	'15.12.15	○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20일 이내 의견 회신 ○ 경상거래 대가의 외화 지급 한도 확대(1만달러 → 2만달러)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의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등의 해촉 기준 마련

##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li> <li>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li> <li>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li> <li>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음</li> </ol>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li> <li>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li> <li>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li> <li>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li> <li>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li> <li>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li> <li>7. 그 밖에 전문 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li> </ol>	제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li> <li>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li> </ol>	제15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세제 및 자금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li> <li>2.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li> <li>3.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함</li> <li>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li> <li>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li> </ol>	<p>제16조</p>
<p>경제자유 구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둠</li> <li>2.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정책과 제도,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li> <li>-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li> <li>-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li> <li>-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li> <li>- 그 밖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li> </ol>	<p>제25조</p>

##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률	'14.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사업범위의 명확화</li> <li>○ 자금의 차등 지원 근거 마련</li> <li>○ 정관의 승인, 사업시행자의 임원, 이사회 운영, 재산 및 회계에 대한 감독, 인사·예산에 등에 대한 감독,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li> </ul>
	'15.0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술단지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기술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을 위하여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 하려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li> </ul>
시행령	'14.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조기관</li> <li>○ 산업기술단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 확대</li> <li>○ 국유재산 등의 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명확화</li> </ul>
	'15.05.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위를 유지한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을 초과 하지 아니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li> </ul>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요약	관련조항
목적	이 법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정의	<p>‘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li> <li>-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li> <li>-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li> <li>-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li> <li>-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li> <li>-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li> <li>-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li> <li>- 시험생산</li> <li>-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li> </ul>	제2조
산업기술 단지의 조성절차	<p>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음</p>	제6조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p>시험생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p>	제8조
시설비용의 지원	<p>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p>	제11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p>산업기술단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 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p>	제12조
기반시설의 설치	<p>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용수 공급시설·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p>	제13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li> </ul> </li> <li>2. 산업기술단지 안의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함</li> <li>3. 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li> </ol>	제16조
<p>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음</li> <li>2.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음</li> </ol>	제17조
<p>자금지원 등</p>	<p>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p>	제19조
<p>세제상의 지원</p>	<p>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p>	제20조

##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률	'15.0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li> <li>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 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li> </ul>
	'15.0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위헌성 제거,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li> </ul>
	'15.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li> <li>기업도시 개발구역 면적 완화(330만㎡이상 → 100만㎡이상), 공장, 산업 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1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게 함</li> <li>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li> <li>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li> <li>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li> <li>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규정을 삭제함</li> <li>그 밖에 공유수면매립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결정 의제 및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용도변경의 허가 의제규정을 추가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li> </ul>
	'16.0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15.05.12	○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서 광역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을 제외, 산업교역형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가용 토지 면적 중 주된 용도에 배분하는 토지의 최소비율을 각각 40% 및 50%에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수준인 30%로 완화
	'15.12.23	○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완화 등 ○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조정 ○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 완화 ○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기업도시 정의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제2조
개발구역 지역의 제안	1. 민간기업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지방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와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 -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성 분석자료(총사업비 산정자료,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회수 계획, 수익성 분석자료 등) -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개발구역의 지정 등	<p>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p>	제5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li> <li>-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li> <li>-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li> <li>-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li> </ul> </li> <li>2. 개발구역은 100만㎡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최소면적을 축소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도시·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최소면적의 2분의 1이상</li> <li>-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최소면적의 3분의 2이상</li> <li>-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 학교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시설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최소면적의 10분의 1이상</li> </ul> </li> </ol>	제6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p>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의해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함. 다만,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개발구역 밖에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li> <li>2.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li> </ol>	제8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함</li> <li>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li> <li>3.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li>4.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li> <li>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li> </ol>	제10조
개발계획의 승인	<p>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행자</li> <li>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li> <li>3.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li> <li>4. 자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li> <li>5. 교육·문화·체육·보건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li> <li>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포함)</li> <li>7.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 비용의 부담계획</li> <li>8.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li> <li>9. 조성토지, 원형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처분에 관한 사항</li> <li>10.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li> <li>11. 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li> <li>12. 보상계획서(이주대책 포함)</li> <li>13.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li> </ol>	제11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실시계획의 승인	1.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함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 조성토지 등의 또는 원형지의 처분계획서 2.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제12조
토지의 직접사용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함.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제1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2. 필요한 경우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3. 필요한 경우 시행지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제25조
세제 및 자금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부지의 조성 및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제26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기금 및 예산의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개발구역에서 구역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li> <li>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음</li> </ol>	제34조
도시개발 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li> <li>-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li> <li>- 기업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li> <li>-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li> <li>- 기업도시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li> </ul> </li> <li>2.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하되,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원 :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li> <li>- 정부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li> </ul> </li> </ol>	제39조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li> <li>2.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시 그 공급가격의 인하정도에 비례하여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조정을 하여야 함</li> <li>3. 제2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li> </ol>	제45조

## 1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률	'14.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산정대상에서,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li> </ul>
	'14.0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li>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li>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음</li>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임직원 제대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li> <li>○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li>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대상 확대,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 신설</li> <li>○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취득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사용자에 대해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신설</li> </ul>
	'15.0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li> <li>○ 창업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 면제(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li> <li>○ 창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li>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중단 기간(3년 범위) 추가</li> </ul>
	'15.05.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li> <li>○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는 계획 수립,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li> </ul>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14.01.14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 신설
	'14.02.07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신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후 1년간 미투자 시 등록취소의 예외 요건 신설
	'14.12.03	○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 추가(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총액 조정(3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
	'15.03.31	○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허용
	'15.05.01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사항 신설
	'15.05.04	○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창업자가 부담금면제를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여부 확인 폐지
	'16.01.19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범위 확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

##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적용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 함. 다만, 금융업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3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1.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 -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국가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제6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3.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 4.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1.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함	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사방사업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하천법」 하천공사의 허가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과 신고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제35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li> <li>-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li> <li>-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li> <li>-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li> <li>-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li> <li>-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li> </ul> <p>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li> <li>- 「하수도법」에 따른 점용허가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li> <li>-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li> <li>-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li> <li>-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li> <li>-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li> <li>- 「수도법」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li> <li>-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li> <li>-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li> <li>-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li> <li>-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li> <li>-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과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li> <li>-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li> <li>-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공정 안전보고서의 심사</li> </ul>	제35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다른 법률과의 관계</p>	<p>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법」에 따른 준공검사</li> <li>-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li> <li>-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li> <li>-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li> <li>-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완성검사</li> <li>-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li> <li>-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li> <li>-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li> <li>-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li> <li>-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li> </ul>	<p>제35조</p>
<p>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p>	<p>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li> <li>-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단,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는 제외)</li> <li>-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li> <li>-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li> </ul>	<p>제37조</p>

##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 률	'14.0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법인 설립시,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 30%이상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함</li> <li>○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함</li> </ul>
	'14.0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할 요건 신설</li> </ul>
시 행 령	'14.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기준에 고용실적 추가</li> <li>○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의 지원대상 명확화</li> <li>○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처분 신고의무 완화</li> <li>○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검토·확인 신청기간 연장</li> </ul>
	'15.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변동되지 아니함을 명확화</li> <li>○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 지원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투자가 및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함</li> <li>○ 산업단지 안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공장시설 등이 서로 인접한 경우에 지정할 있도록 요건 완화</li> </ul>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제9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li> <li>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도시개발법」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음</li> <li>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음</li> <li>4.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시개발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음</li> <li>5.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li> </ol>	제13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p>6.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 등</li> <li>-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 등</li> <li>-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li> </ul> <p>7.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소유의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p> <p>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p> <p>9.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 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음</p> <p>10. 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p>	제13조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	<p>1. 시·도지사는 다음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li> <li>-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li> <li>- 연구개발특구 등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li> <li>-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li> </ul>	제18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p>	<p>2. 둘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자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p> <p>3.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범위,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li> <li>-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li> <li>-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li> <li>-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li> <li>-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p>4.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 또는 관리방법</li> <l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li> <li>-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p>5.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함</p> <p>6.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의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음</p> <p>7.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이 경우의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봄</p> <p>8.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봄</p>	<p>제18조</p>

구 분	내 용 요약	관련조항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	9.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0.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2. 제5항 따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8조
외국인투자 지역의 지정해제	1.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8조의2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1.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함 2.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함	제19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1.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3.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음	제20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li> <li>- 제6조에 따라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li> <li>-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li> <li>-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li> </ul> </li> <li>2.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기 전 또는 기존주식 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제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음</li> <li>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li>-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자가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자가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li> <li>-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li> <li>-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li> </ul> </li> </ol>	제21조

## 1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 률	'15.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li> <li>연구개발 자금의 출연으로 법문언의 표현을 정비하고 입주 심사 시 첨단의료 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li> </ul>
	'16.0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 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함</li> <li>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 하는 기관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li> </ul>
	'17.0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li> </ul>

###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 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li> <li>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li> <li>조성목적, 시설 등의 배치계획, 자원조달계획</li> <li>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li> <li>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li> <li>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li> </ol>	제4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li> <li>-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li> </ul> </li> <li>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li> <li>-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li> <li>-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li> <li>-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li> <li>- 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li> <li>-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li> </ol>	<p>제5조</p>
<p>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지 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은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li> <li>2. 제5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개발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되, 그 절차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 심의는 이를 거친 것으로 봄</li> <li>3.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 면적 및 미분양 비율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li> </ol>	<p>제7조</p>
<p>기반시설 우선지원</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p>	<p>제9조</p>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종합계획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li> <li>2.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li> <li>-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li> <li>-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li> </ol>	제10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p>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li> <li>-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li> <li>- 그 밖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li> <li>- 복합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li> </ul>	제11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시설·인력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의료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li> <li>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li> <li>3.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배분하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할 때에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li> </ol>	제12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용자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해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li> <li>2. 위에 따라 용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용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음</li> </ol>	<p>제13조</p>
<p>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설치</p>	<p>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li> <li>-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li> <li>- 단지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li> <li>- 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자금 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및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ul>	<p>제27조</p>
<p>입주의 승인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li> <li>-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li> <li>- 수입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li> </ul> </li> </ol>	<p>제31조</p>

##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 률	'15.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의 수립</li> <li>○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li> <li>○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설립, 전문지원기관 지정</li> </ul>
	'16.0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함</li> <li>○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li> </ul>
	'17.0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li> </ul>

###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정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6장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li> <li>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함. 다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li> </ol>	제4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li> <li>2.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목적</li> <li>-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면적</li> <li>-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li> <li>-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li> <li>-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li> <li>-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li> <li>-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ol>	제8조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입지 관련 고려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점지구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li> <li>-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또는 그 가능성</li> <li>-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li> <li>-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정성</li> </ul> </li> <li>2.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li> <li>- 거점지구와 기능적 연계성</li> <li>- 거점지구와 지리적 근접성</li> </ul> </li> </ol>	제9조
거점지구의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점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함</li> <li>2. 거점지구가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함</li> <li>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정할 수 있음</li> </ol>	제12조

## Ⅱ. 산업입지 개발 및 관리 관련 지침

###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1) 개정사항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14.04.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내 시설포화로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지리적 특성 외에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도 기존 산업단지와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li> <li>○ 사도지사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 등 절차를 구체화하며, 지정계획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가 지정되도록 하여 수급관리를 강화</li> <li>○ 지자체 및 공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 포함)인 경우 산업단지 지정 전 수요검증을 의무화</li> <li>○ 입지선정,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민간제안제도 도입</li> <li>○ 준공된 산업단지 내 개발행위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마련</li> </ul>
'14.0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50% 이상으로 하고,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첨단업종, 영세업종 등을 위한 소규모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 계획 필지 규모를 900㎡로 하고, 용지구도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li> <li>○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을 분석하고,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용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li> </ul>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14.0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예정일 3개월 전, 국가·지자체·입주예정기업에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실시,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으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함</li> <li>○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기반시설 규모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li> <li>○ 주거지 인접지역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녹지율을 0.5%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녹지에 사면녹지의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녹지율을 2%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입지 여건상 사면녹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5% 범위 내에서 녹지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경우에는 각 사업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li> <li>○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정이윤율(6%)을 삭제하고,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이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 수준의 적정이윤율 보장</li> <li>○ 복합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산정한 산업시설용지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한 그 외 시설 용지 금액을 면적별 비율을 고려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공급</li> <li>○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li> </ul>
'15.0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법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수요면적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계획 수립 기준 완화</li> <li>○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에 한해서만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li> <li>○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이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세부 용도별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li> </ul>
'15.09.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규칙의 일몰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li> </ul>

##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적용범위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함. 다만, 농공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름	제2조
산업입지 개발 기본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단지개발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li> <li>2. 산업단지개발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함</li> <li>3. 산업단지개발은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li> <li>4. 산업단지개발은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안 또는 인근의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li> </ol>	제4조
산업단지의 지정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li> <li>-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li> <li>- 2개도 이상에 걸쳐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li> </ul> </li> </ol>	제6조

구 분	내 용 요약	관련조항
산업단지의 지정요건	2.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요건 - 산업의 적절한 지방 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산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제6조
검토기준	1.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함 -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 공업용수·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 산업단지 개발 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여부 -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수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제36조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	제7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검토기준	<p>2.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의 '일단의 토지' 또는 동법 제46조2의 지원단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li> <li>-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li> <li>-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li> </ul>	제7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p>1.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해야 함</p> <p>2. 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요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할 수 있음</p>	제8조
산업단지 지정 요청서의 검토	<p>1. 민간기업 등이 요청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함</p> <p>2. 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도로·항만·공업용수·생활용수·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p> <p>3.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시 또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시 산업단지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 해당부분 이외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2항에 따른 요청기업에게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할 수 없음.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p> <p>4.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경우, 자원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p>	제9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토지거래 규제 등	<p>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17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음</p>	제10조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p>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면적'이라 함은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면적을 말함</li> <li>- '미분양 비율'이라 함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이 경우 분양대상면적이라 함은 지정면적중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함은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을 말함.</li> </ul>	제11조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수의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은 신청기업의 내역을 부기하여 신청해야 함</li> <li>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li> <li>3.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후 2년이상 경과하여 착수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함</li> <li>4.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범위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함</li> </ol>	제12조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용지분류(산업시설, 복합용지,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지원시설, 기타시설)에 따른 배치구상과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li> <li>-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교통시설계획, 용수공급계획, 공원녹지계획,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함</li> </ul> </li> </ul> </li> </ol>	제13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계획 수립시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세부용도별 비율을 제시하여야함</li> <li>· 복합용지내 산업시설면적은 100분의 50이상으로 함</li> <li>· 복합용지내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음</li> <li>· 개발계획 승인 시 복합용지 반영에 따른 전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계획 용도 간 균형 및 제영향평가 협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li> </ul> </li> <li>-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연계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함</li> <li>-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로 하며, 적절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해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규모에 대한 수요자를 실시하여야함.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필지규모를 90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음</li> <li>- 실시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li> <li>-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주여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정주여건 분석 결과와 주변지역 주거시설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용지 계획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li> <li>- 후생복지시설계획 수립 시 어린이집 계획을 반드시 검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지자체, 입주예정기업에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여야 함</li> <li>○ 업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유치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함</li> <li>- 개발계획에 제한업종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는 면적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30% 이하로 함. 다만,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산업시설용지를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음</li> <li>·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하는 경우 유치 제한업종으로 정할 수 있음</li> </ul> </li> </ul> </li> </ul>	제13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업종으로 계획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규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제한업종 제외)를 적용하여 산정</li> <li>· 기반시설 과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유보지로 정하고 향후 기업 입주현황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li> <li>·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크거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p>2.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부적인 개발지표와 기준 등에 관한 산업단지개발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함</p> <p>3. 산업단지의 위치는 축척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상에 산업단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계선의 주요 변곡점을 좌표로 명기함.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이 25km<sup>2</sup>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만분의 1인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음</p> <p>4.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의 면적변경(증감 포함)</li> <li>-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li> </ul>	<p>제13조</p>
<p>공공녹지· 도로 및 환경기초 시설</p>	<p>산업단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함</p> <p>1. 산업단지 안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규모별 녹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규모가 3km<sup>2</sup> 이상인 경우 면적의 10% 이상 13% 미만</li> <li>- 단지규모가 1km<sup>2</sup> 이상 3km<sup>2</sup> 미만인 경우 7.5% 이상 10% 미만</li> <li>- 단지규모가 1km<sup>2</sup> 미만인 경우 5% 이상 7.5% 미만</li> </ul> </li> <li>◦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m<sup>2</sup> 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00m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하되, 3km<sup>2</sup> 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단지주변 200m 안에 공공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2%범위 안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음</li> </ul>	<p>제14조</p>

구 분	내 용 요약	관련조항
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구·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 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음</li> <li>◦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 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蹟)으로 보존될 경우 동 지역을 단지규모별 녹지비율에 포함</li> <li>◦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 내 토지이용상 녹지기능이 아닌(저수지 및 공공 공지 등) 시설이 포함 또는 산업단지 녹지 중 시면녹지의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녹지비율에서 2%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음</li> <li>◦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때에는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함</li> </ul> <p>2. 산업단지 안의 도로확보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규모별 적정도로 면적율은 단지규모가 1km<sup>2</sup> 이상인 경우 면적의 10%, 1km<sup>2</sup> 미만인 경우 8% 이상으로 함</li> <li>- 공장부지가 평균 1만m<sup>2</sup> 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 도로 면적율을 2%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음</li> <li>-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 간 연결도로가 단지 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m<sup>2</sup>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m 이상 확보해야 함(3만m<sup>2</sup> 미만의 산업단지는 제외)</li> <li>- 단지 내 도로 및 보도·자전거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자전거의 통행량, 통행형태 등과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횡단구조의 조정 또는 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음</li> </ul> <p>3. 「산업입지법」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정비목적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되, 지정권자가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 신규 기반시설의 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위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녹지비율 및 도로면적비율을 각각 2%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p>	제14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 시설</p>	<p>4. 산업단지 연결도로의 확보기준 : 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력, 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연결도로를 확보해야 함</p> <p>5.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 : 교통효율성 증대와 수송수단간 분담 구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p> <p>6. 산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 산업단지에는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p> <p>7.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의무화 : 화물주차장외에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해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여부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p>	<p>제14조</p>
<p>임대용지의 확보</p>	<p>1. 사업시행자는 계획서 작성 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 시설용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지역에서 지정 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 5%</li> <li>-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 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 2%</li> </ul> <p>2.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산업단지의 공장 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3. 임대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입주기업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미만일 경우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이하</li> <li>-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이하</li> </ul>	<p>제17조</p>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영향평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li> <li>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하나의 평가로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음</li> <li>3.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첨부하여야 함</li> </ol>	제19조
조성원가 산정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li> <li>2.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를 방법에 따라 산정함</li> <li>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기업 유치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각 사업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음</li> <li>4.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 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음</li> <li>5.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지나 구역별 위치·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이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분양할 수 있음</li> <li>6.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대행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li> </ol>	제26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개별공장 입지의 선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li> <li>-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li> <li>-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li> <li>-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li> <li>-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따른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li> <li>-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li> <li>-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제한지역</li> </ul> </li> <li>2.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li> <li>-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해당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li> <li>-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li> </ul> </li> </ol>	<p>제36조</p>
<p>지역별 허용면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산업집적도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함</li> <li>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적절한 산업배치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별 또는 시·군별로 개별공장입지의 연간 허용연면적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li> <li>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앞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장입지의 연간 허용연면적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해야 함</li> </ol>	<p>제38조</p>

## 2. 산업단지 관리지침

### (1) 개정사항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15.04.02	○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을 명시

###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이 지침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의 법, 령,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산업단지에 적용함(단,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따름)	제2조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업무는 법·령 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2. 관리권자는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관리 업무를 해당 관리기관에 위탁해야 함</li> <li>3. 관리권자가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업무위탁의 범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함</li> <li>4. 관리권자는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하여 신규지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li> </ol>	제4조
산업시설 구역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 면적을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li> <li>2.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은 사업부지 안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 장치 그 밖의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li> <li>3.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 [별표1]</li> <li>-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제조업 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 40%</li> </ul> </li> <li>4. 기준사업건축면적=사업부지면적×기준건축면적률</li> </ol>	제5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도별 구역 중 지원시설구역의 면적은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확대하여 고시할 수 없음. 다만, 관리대상이 되는 산업용지면적의 증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산업입지법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면적확대는 제외함</li> <li>2. 용도별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또는 복합용도를 정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고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음</li> <li>3.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용지 중 용도별구역에 의한 공공시설구역을 제외한 녹지구역을 적합하게 관리해야 함</li> <li>4.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관리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건축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의 1/3을 초과할수 없음</li> <li>5. 업종배치계획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배치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li> <li>-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li> <li>-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li> <li>-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li> </ul> </li> </ol>	제6조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에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함</li> <li>2. 입주자격 승인시 승인하려는 면적이 산업단지 총면적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함</li> <li>3. 수도권지역 공장의 합리적 배치,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및 지역간 공장의 균형배치 필요시 산업단지 일부지역에 입주업종을 정하여 입주시킬 수 있음</li> <li>4.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로 함</li> <li>5. 소방서, 응급 구조시설 등 안전시설이 공공시설구역외 구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할 수 있음.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li> </ol>	제7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뿌리산업의 입주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뿌리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li> <li>2. 환경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근 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li> <li>3. 뿌리산업이 입주가능업종에 포함된 경우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집적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음. 이 때 관리권자는 이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함</li> <li>4. 뿌리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주가 필요한 뿌리산업 업종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단지 일부지역에 그 업종의 입주를 권고할 수 있음</li> </ol>	제7조의2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가상승분의 기부범위는 50%로 함</li> <li>2. 관리권자는 기부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가상승분의 25%를 한도로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기부받을 수 있음.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 지가상승분의 50%까지 공제할 수 있음</li> <li>3. 위에 따라 기부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경우 관리권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와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지가상승분을 공동으로 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 및 지가상승분의 기부 범위를 결정하여야함</li> <li>4.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공공시설 설치의 원인이 되는 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함</li> <li>5.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용지 소유자가 부담하되, 추후 정산하여 지가상승분에 공제함</li> </ol>	제8조
입주계약 시기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기관이 위탁받은 토지를 분양·임대할 때에는 법에 따라 그 토지를 분양·임대 받으려는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함.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산업용지 등을 분양·임대·양도 받으려는 자도 입주계약을 체결해야함(사전에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함)</li> <li>2. 입주계약을 산업용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체결한 경우 그 산업용지에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정해 입주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함</li> <li>3. 공장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입주계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 함</li> </ol>	제9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입주계약 시기 등</p>	<p>4.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기타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시기 및 완공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li> <li>- 입주계약 해지, 분양용지환수,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li> <li>- 분양(임대)가격, 대금납부방법, 공동시설의 이용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li> <li>- 법, 령, 규칙, 이 지침의 시행 및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p>5.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연접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음. (분리된 반대쪽 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서와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p> <p>6.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의 토지·시설에 관한 처분계획 협의 요청시, 입주계약 체결 방법·시기 등 입주하려는 자가 알아야 할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함</p> <p>7.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입주 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환경기준, 조세, 시설관리비 등 각종 규제 및 부담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거나 입주기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p> <p>8.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하는 각종 서식의 공장소재지란에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명을 병기할 수 있음</p> <p>9. 관리기관이 신탁업을 운영하려는 자(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자에 한함)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체결 전에 신탁업자가 위탁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입회자로 참여하여야함. 이 때 관리기관은 신탁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탁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신탁계약일 것</li> <li>-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준수 의무가 신탁계약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li> <li>- 위탁자와 신탁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사전 동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li> </ul>	<p>제9조</p>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1. 처분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함 -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최대수수료의 1/2 이내로 함 3. 생산자물가총지수=(양도월의 생산자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 4. 양도받은 자란 입주계약을 미리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5.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시 관리기관에의 신고 및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영 제5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함	제11조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관리기관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산업단지 안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를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및 그 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이하 '목적 외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목적 외 이용(면적, 이용자수, 이용금액)이 전체의 1/3 미만인 경우 - 일시적 유희시설로서 해당 시설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인근지역의 주민 또는 인근지역 기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제12조
산업시설 구역의 임대사업 관리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또는 분양한 건축물 등에 다수가 동시에 입주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 공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입주자 및 대표자, 관리규약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제13조
지원시설의 임대사업	1. 지원시설구역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적합한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함 2. 분양 또는 임대받은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제14조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의견수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제15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안전관리 등의 지도	관리기관은 영 제58조 제2항의 각호의 지도는 그 지도의 내용이 입주 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법령 또는 입주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제16조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li> <li>2.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등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관리자로부터 입주 및 기동 현황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받을 수 있음(이 경우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함)</li> </ol>	제17조
입주 업체의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2조2 제1항 제1호에서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등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li> <li>-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 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li> <li>-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가능)</li> </ul> </li> <li>- 공장 등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가능)</li> </ul> </li> <li>2. 관리기관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시 입주계약 해지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종전과 달리 해지사유가 해소·치유되는 경우</li> <li>- 경영하려는 사업이 산업시설구역으로서 현행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li> <li>- 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경우</li> <li>- 산업단지 관리 및 인근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li> </ul> </li> </ol>	제18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기관은 지원·보육·문화·복지·교육·편익·휴게 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의 경영 및 근로 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함</li> <li>2. 법 제4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특수목적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것</li> <li>-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li> <li>- 참여하는 각 민간기업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할 것</li> </ul> </li> <li>3.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이내에서 공공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li> </ol>	제19조
산업단지 브랜드 명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고유한 특색과 미래상이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산업단지 브랜드 명칭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li> <li>2.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li> <li>3.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명칭과 상호 조화되게 사용하여야 함</li> </ol>	제20조
교육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산업단지 담당공무원, 관리 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제21조

### 3.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1) 개정사항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14.0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율, 녹지율 관련 규정을 산업입지 통합지침에 따르도록 규정</li> <li>○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을 폐수배출관련 입주제한 업종에서 삭제</li> </ul>

####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개발 지원·관리·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업무소관은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 지원 등 - 국토교통부장관 : 농공단지 지정·조성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등 - 환경부장관 :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등	제3조
농공단지 종류	1.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는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 면적중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이 4개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수 및 면적의 60%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 면적 중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으로 80% 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 위의 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지	제4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농공단지의 종류	2. 위의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이하 '전문단지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3. 전문단지 등으로 지정된 농공단지가 2년 동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공단지의 전문단지 등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제4조
시·군·구 별 지정면적	1.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1백만㎡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함.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음 2. 시·군·구별 기준 단지의 현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사항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5%를 초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li> <li>-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면적은 제외할 수 있음)</li> <li>-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2009.8.7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내에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면적</li> </ul> </li> <li>◦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 이상인 경우</li> <li>◦ 분양대상면적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ul>	제6조
단지별 지정면적	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을 3만㎡ 이상 33만㎡이하로 하여야 함. 2.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면적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별 지정면적의 한도 내에서 단지별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li> <li>-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입주업체가 단지별 지정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별 지정면적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함</li> </ul>	제7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 등</p>	<p>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되는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제여건 및 국내외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지정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단지→전문단지·지역특화단지 : 「산업입지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및 「산업집적법」에 의한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li> <li>- 전문단지 등→일반단지 : 해당 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조성 후 5년 경과한 경우)</li> <li>- 시·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li> <li>- 지정이 해제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li> </ul>	<p>제8조</p>
<p>입지선정 기준</p>	<p>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입지 제한기준 등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li> <li>◦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li> <li>◦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li> <li>◦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li> <li>◦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li> <l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li> <li>-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li> <li>-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li> <li>-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li> </ul> </li> <li>◦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제한지역</li> <li>◦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li> <li>◦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li> <li>◦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li> <li>◦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한 경우 허용)</li> </ul>	<p>제9조</p>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입지선정 기준	<p>2. 위의 사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다음을 고려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 개발 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li> <li>◦ 도로·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li> <li>◦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여건</li> <li>◦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li> <li>◦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li> <li>◦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 농공단지의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 조성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li> <li>- 경사도가 20도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li> <li>-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당 100m이내인 지역</li> <li>- 단지 외 오페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li> <li>-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군·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일 것</li> <li>-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li> </ul> </li> </ul>	제9조
실시계획의 작성	<p>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p> <p>1. 공간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위한 금융, 의료, 주차장, 창고, 운동장, 종업원기숙사, 공동서비스 등의 지원 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관리사무실, 공동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서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함)은 근로자수 및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공간을 배분하여 계획함</li> <li>-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의 면적은 입주공장, 종업원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공동이용 건축물의 설치·운영은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제12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실시계획의 작성</p>	<p>2. 업종별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품, 음·식료품 및 농·수·축산물 가공, 지역특화업종 등 입주 업종별로 배치</li> <li>- 입주기업체간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li> <li>- 단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기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상단에, 수질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하단에 배치</li> <li>-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의 가시권 지역 안에서는 단지의 전망을 고려하여 배치</li> </ul> <p>3. 경관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조성 시 평지조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형, 지세 등을 이용하여 설계</li> <li>- 단지조성 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li> <li>- 단지외곽의 울타리는 가시권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낮게 설치하도록 설계</li> </ul> <p>4. 지원시설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시기를 결정</li> <li>- 지원시설은 비용의 절감과 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설치 하도록 계획</li> </ul>	<p>제12조</p>
<p>단지 조성비의 지원</p>	<p>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역특화 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p> <p>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위의 단지조성비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 제10조에 따른 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p>	<p>제13조</p>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관리기본 계획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변경하려는 때도 같음</li> <li>2. 관리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할 농공단지지의 면적</li> <li>-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농공단지발전계획</li> <li>-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li> <li>-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li> <li>-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li> <li>-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li> <li>-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 계획</li> <li>-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li> <li>-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li> </ul> </li> </ol>	제16조
분양가격	<p>지정권자는 토지의 분양가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 조성원가(다만 분할 분양의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일부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음)</li> <li>-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 시가감정액(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시 그 이하 금액으로 할 수 있음)</li> <li>- 사업시행자는 제1호의 조성원가 산정 시 1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여야 함. 이 경우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 이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 및 지역특화업체 이외의 자가 분양받은 사업용지에 대하여는 일반단지 지원기준을 적용함</li> <li>-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전 산업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에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함</li> </ul>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p>사업성 검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입주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li> <li>2. 사업성 검토기관(시장·군수·구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장·군수의 산업용지 분양면적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산업용지 소요면적을 검토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li> <li>3. 사업성검토기관은 해당 업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다음의 주요 평가항목을 포함한 사업성 검토평가기준을 정하여 서면 및 현지 출장조사를 병행하고, 그 평가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 시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li> <li>- 해당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도</li> <li>- 자기자금 조달 능력, 신용상태</li> <li>- 정책지원자금(부지조성비, 시설·운전 자금 등) 상환계획</li> <li>- 폐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업타당성</li> </ul> </li> <li>4.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적합판정의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공장 등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단지조성 완료 이전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li> <li>5.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업종의 변경이 없고 사업규모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li> </ol>	<p>제19조</p>
<p>입주계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2.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 할 때 또는 분양시점에서 해당 토지 위에 공장건설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선정된 업체의 공장·기타 시설의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양도·임대받기 전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이 아닌 자가 입주기업체 또는 유관기관 으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받으려 하는 경우</li> <li>-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 받는 경우</li> </ul> </li> </ol>	<p>제22조</p>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입주계약	<p>3. 입주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산업용지의 분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과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li> <li>- 공장 등의 착공, 완공시기 및 산업용지의 사용승낙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li> <li>- 입주계약의 해지요건,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li> <li>-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및 공동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p>4.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성 검토기관과 협의하여야 함</p> <p>5.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도로, 구거 등으로 연결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중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관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음(부대시설인 경우 그 필요성도 인정되는 범위여야함)</p>	제22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p>1.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입주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관리·운영함</p> <p>2.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 등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규정 및 동 기금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p>	제23조
입주기업 지원	<p>중소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에 관한 다음의 지원업무를 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 입주유치, 상담업무, 입지실사,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업무</li> <li>- 입주신청기업의 사업성검토,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 관리</li> <li>- 부실기업의 대체입주에 관한 지원업무</li> <li>-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 업무</li> <li>- 농공단지 실태조사분석 및 종합평가 업무</li> <li>- 입주기업체의 가동실태, 경제동향 정기분석 업무</li> <li>- 수출, 내수판매 지원업무,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li> </ul>	제25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p>「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지 및 공장 등(건설 중인 것 포함)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li> <li>- 당초 주주의 지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증자로 인하여 당초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출자총액 또는 보유주식이 감소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주주의 변동 및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li> </ul>	제31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입주계약의 해지 등	1.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 - 산업용지·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때 2.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3. 입주계약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제43조를 따름	제32조
산업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산업집적법」 제41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3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제33조
환경성 검토	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입주 후 증설의 경우도 같음)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 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폐수배출관련 별표 5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해당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금지대상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4.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금지 사업장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음 - 1일 폐수배출량 관련: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하류지역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오·폐수를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농공단지에 한함)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관련 업종 사업장 관련: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농공단지 협의회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농공단지협의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음</li> <li>2. 협의회는 제30조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신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학·연 지역혁신 자문활동으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함</li> <li>3. 광역단위협의회 회장 또는 지역혁신 거점별 기초단위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li> <li>4.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li> <li>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li> </ol>	제41조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기업체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li> <li>2. 위원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시장 또는 부군수, 부구청장</li> <li>- 위 원 : 10인 이내</li> <li>- 사무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li> </ul> </li> <li>3. 성격 및 심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 : 심의·의결기관</li> <li>- 개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li> <li>- 심의결정 : 재적위원 2/3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li> </ul> </li> <li>4.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li> <li>-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li> <li>-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li> <li>-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li> </ul> </li> </ol>	제42조

## 4.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1) 개정사항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14.08.01	○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진입도로 지원기준 완화 및 개선
'14.03.17	○ 진입도로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절차 실시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기준 개편
'15.09.08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미리 입지정책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재생사업 관련 비용,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적용범위	1.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름 2. 이 지침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 시설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 수도권 제외)</li> <li>-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제6조 또는 제7조)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수도권 제외)</li> </ul> </li> </ul>	제3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법」(제7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li> <li>◦ 국가가 50%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비용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4조의8 제2항 각호의 비용</li> <li>◦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시설중 지원도로 및 용수공급시설</li> </ul> <p>3. 이 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임대목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 등’)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단지에 한정함</p>	제3조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조성계획서 제출	<p>1.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p> <p>2. 위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대상 산업단지 현황</li> <li>◦ 조성계획(조성면적과 토지이용계획, 유치기업의 종류와 규모,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임대시기, 임대기간(최소 5년),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기준(중소기업 및 지방이전기업에 임대)</li> <li>◦ 보조금 내역 및 금액</li> <li>◦ 관련 도면 및 증빙자료</li> </ul>	제4조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의 제출	<p>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 대상 산업단지 현황</li> <li>- 재생사업 계획 : 조성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분양시기</li> <li>-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li> <li>- 관련 도면 및 증빙자료</li> </ul>	제12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기반시설) 지원요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서식에 의거 전년도 3월말까지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함</li> <li>2. 위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li> <li>- 국고지원 사업개요 및 국고지원에 따른 효과분석</li> <li>-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li> <li>- 산업단지의 분양계획서</li> <li>- 각 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li> <li>-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li> </ul> </li> <li>3. 사업시행자는 국고지원 요구시 6월(국토부 예산편성 확정 전)까지 산업 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고시가 가능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li> </ol>	제14조
(기반시설) 지원대상 및 시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산업입지법」에 지정된 공장입지유도지구 중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구를 대상으로 함</li> <li>2.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법」(제37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li> <li>- 조성면적이 30만㎡ 미만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li> <li>-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성장관리권역에 첨단업종을 유치 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li> <li>-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5km<sup>2</sup> 미만 제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 적 대비 10배 이상인 시·도에서 신규지정하는 산업단지</li> <li>- 기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산업단지</li> </ul> </li> <li>3. 지원도로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li> <li>4.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조기 설치로 인하여 시설이 유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li> </ol>	제15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지원규모 조정	<p>1.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재정, 산업단지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p> <p>2.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자유도지구 지원도로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255 432 885 624"> <thead> <tr> <th data-bbox="255 432 529 466" rowspan="2">산업단지 규모</th> <th colspan="2" data-bbox="529 432 885 466">지원기준</th> </tr> <tr> <th data-bbox="529 466 692 496">총연장(km)</th> <th data-bbox="692 466 885 496">차로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55 496 529 526">100만㎡ 미만</td> <td data-bbox="529 496 692 526">2</td> <td data-bbox="692 496 885 526">2차로 이하</td> </tr> <tr> <td data-bbox="255 526 529 557">100만㎡ ~ 200만㎡ 미만</td> <td data-bbox="529 526 692 557">3</td> <td data-bbox="692 526 885 557">2~4차로</td> </tr> <tr> <td data-bbox="255 557 529 587">200만㎡ ~ 330만㎡ 미만</td> <td data-bbox="529 557 692 587">4</td> <td data-bbox="692 557 885 587">4~6차로</td> </tr> <tr> <td data-bbox="255 587 529 617">330만㎡ 이상</td> <td data-bbox="529 587 692 617">5</td> <td data-bbox="692 587 885 617">4~6차로</td> </tr> </tbody> </table> <p>3. 외국인 위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도로의 경우 제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음</p>	산업단지 규모	지원기준		총연장(km)	차로수	100만㎡ 미만	2	2차로 이하	100만㎡ ~ 200만㎡ 미만	3	2~4차로	200만㎡ ~ 330만㎡ 미만	4	4~6차로	330만㎡ 이상	5	4~6차로	제16조
산업단지 규모	지원기준																		
	총연장(km)	차로수																	
100만㎡ 미만	2	2차로 이하																	
100만㎡ ~ 200만㎡ 미만	3	2~4차로																	
200만㎡ ~ 330만㎡ 미만	4	4~6차로																	
330만㎡ 이상	5	4~6차로																	
산업단지 개발 용지대상, 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용지매입비를 용자 지원할 수 있음	제21조																	
산업단지 개발 용자지원 요청	<p>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용자받고자 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용자지원 신청서를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p> <p>2. 용자지원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li> <li>- 용자지원 규모 및 용자지원에 따른 효과분석</li> <li>-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li> <li>- 관련 증빙서류, 도면 및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li> </ul>	제22조																	

## 5.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1) 개정사항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14.07.11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산업단지 종류별로 일정 이하의 변경을 포함
'15.03.18	○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15.09.08	○ 투자외향서 제출에 따른 검토기한 규정 신설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목적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적용범위	1.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함.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또는「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름 2. 「특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내용 중에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적용하지 아니함	제2조
검토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함	제4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검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li> <li>- 공업용수·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li> <li>-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li> <li>-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여부</li> <li>-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 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li> <li>-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li> <li>-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입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li> <li>-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해당 개별공장의 일일 오·폐수 배출량의 감소 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 처리 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li> </ul>	제4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요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기업 등이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 하여야 함</li> <li>2.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요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요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중소 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정요청을 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함</li> </ol>	제5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요청	3.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요청한 산업단지계획의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함 4.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재원 조달계획서,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제5조
도시기본 계획의 의제	1.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승인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특례법」 제21조 단서 중 ‘시·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기본계획을 말함	제6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1. 다수의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 기업은 신청기업의 내역을 부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업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10조
환경영향 평가 등	1.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2.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을 말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지정권자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제17조

구 분	내 용 요 약	관련조항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21조 및 제22조, 제25조 부터 제 27조, 「산업입지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인·허가의 내역서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li> <li>2.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실시설계도서”라 함은 관계 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하며, 그 설계수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에 따른 기본설계가 정하는 바에 따름</li> </ol>	제27조

제3편

## 공장설립 관련 제도

- I. 공장설립의 개념과 절차
- II. 공장설립 규제 및 허용행위



# I. 공장설립의 개념과 절차

## 1. 공장 및 공장설립의 정의

### (1) 공장의 정의

- 공장이란 적용 법률에 따라 약간씩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관련 법률상 정의, 범위 및 적용기준

구 분	정 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li> <li>- 공장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li> <li>·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제조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li> <li>·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li> <li>· 위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li> </ul> </li> <li>-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li> <li>②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건축물 (이하 저장용시설 포함)</li> <li>③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li> <li>④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li> <li>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li> <li>⑥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보육시설 및 기숙사</li> <li>⑦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li> <li>⑧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 생산제품의 전시·판매시설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li> <li>⑨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li> </ol> </li> </ul>

구 분	정 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대상 :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것(옥외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법인세 과세 특례 및 감면 대상 :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2) 공장설립의 정의

-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공장설립 등의 유형

구 분	정 의
공장의 신설 (법2조21호)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공장의 증설 (법2조22호)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과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증설로 보지 아니함
공장의 이전 (영25조3항)	등록된 공장을 폐지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이전(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포함)은 제한이 있음 (시행령 별표1·2·3에 해당하는 공장은 허용됨)

구 분	정 의
공장의 업종변경 (영18조의2 4항)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법 제14조의3)	아래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법 제13조 1항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 - 법 제1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14조의 3 제2항)

- \* 공장입지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변경 포함)
- ①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항, ②제조업 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기준공장면적률), ③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④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 공장입지기준 확인 :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 소유자 혹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토지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매년 2월 말까지 공장설립 가능지역과 가능업종 등을 공보에 고시 가능(변경 포함))

## 2. 공장설립 절차

### (1) 공장설립시 사전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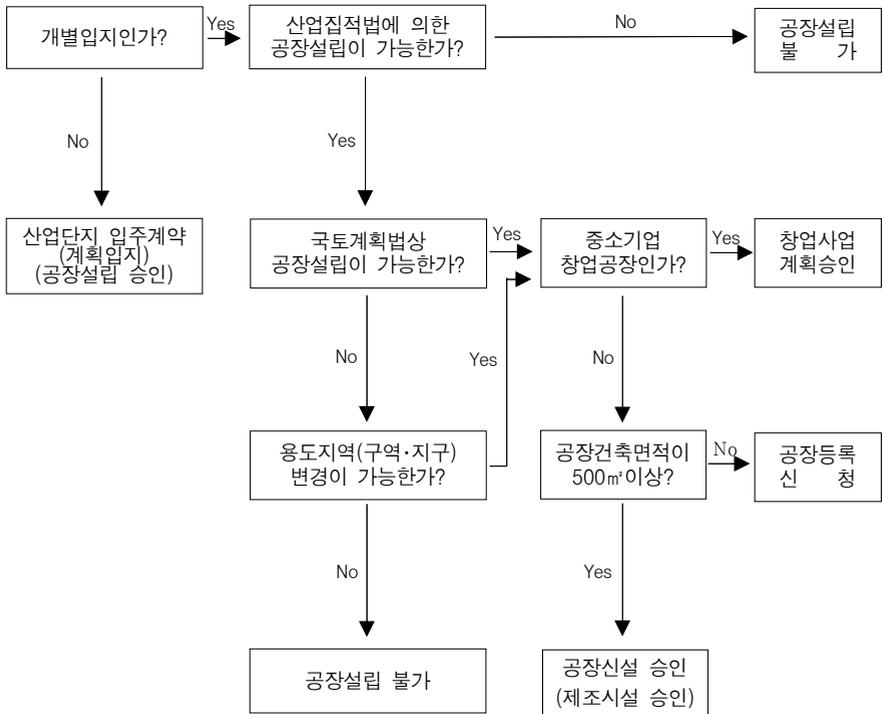
- 당해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해당 여부와 업종명·분류번호
-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규모 : 공장용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시설 설치 여부
- 중소기업 창업자 해당 여부(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술도입신고 대상 여부
- 세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첨단산업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 개별법상의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

## (2) 공장설립 절차

### 1) 공장설립 유형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 공장 설립자	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 미만도 승인 신청가능함)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33조(사업계획의 승인)

### 2) 공장설립 승인 여부 검토



## 3) 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

구분	진행순서	비고
공장입지 선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div> <p style="text-align: center;">↓</p>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div> <p style="text-align: center;">↓</p>	◦토지서류 구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입지결정</div> <p style="text-align: center;">↓</p>	◦입지적정성(공장승인여부) ◦환경관련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인·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div> <p style="text-align: center;">↓</p>	◦신청관련 서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구비서류준비</div> <p style="text-align: center;">↓</p>	(개별입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토목측량설계</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div> <p style="text-align: center;">↓</p>	◦의제처리포함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산업단지관리기관 : 입주계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div> <p style="text-align: center;">↓</p>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토목공사 및 건축허가</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div> <p style="text-align: center;">↓</p>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합병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공장설립완료신고</div> <p style="text-align: center;">↓</p>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div>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완료신고 접수후 3일내 통보

#### 4)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청

#####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과 취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음
  -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공장설립 승인신청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하여야 하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공장등록증을 변경 교부함(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득한 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함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승인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을 범위 안에서 20% 이내 증가 경우 제외), 공장 건축면적의 변경(승인받은 건축면적의 20% 이내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을 범위 내 감소하는 경우 제외), 부대시설면적의 변경(기준공장면적을 범위내 변경 제외)은 공장설립변경승인을 해야 함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함(산업집적법 제13조의5)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② 제조시설설치 승인과 취소

-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산업집적법 제14조의3)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거나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산업집적법 제14조의4)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등록

①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② 공장의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함
-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장등록을 하려는 자가 공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제출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부분등록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사실통보서를 통보함

## ③ 공장의 등록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①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②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및 기준공장면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부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함), ③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④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공 장 건 축	공 장 등 록
·일반공장설립승인: 20일 이내 -의제처리시 : 20일 이내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이내 -의제처리 없을시 : 7일 이내  ·입주계약 : 5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시 : 10일 이내  ·창업사업계획승인 : 20일 이내	·건축허가 : 2일~90일  ·사용승인 : 7일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부분등록 및 건축물 등록도 가능)  ·공장등록 사실 통보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의제처리시 20일) -공장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의제처리시 20일)

(3) 공장설립(창업계획) 단계별 의제처리 내용

단 계	의제대상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초지전용의 허가 -사방지의 축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함)의 허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전용의 허가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분묘 개장의 허가 -사도 개설 등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및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공장설립 승인자의 사업허가·신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3항)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등의 제조등록 및 특정 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
공장의 건축허가 (산업집적법 제14조)	-도로점용의 허가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설치신고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함)의 허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환경오염시설의 설치·운영의 통합 허가

단 계	의제대상 인·허가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산업집적법 제1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li> <li>-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따른 사용승인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li> <li>-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li> <li>-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li> <li>-대기, 폐수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li> <li>-총포·도검·화약류관련 시설 또는 설비의 완성검사</li> <li>-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 가스용품 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li> <li>-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 검사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li> <li>-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 행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검사</li> <li>-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li> <li>-환경오염시설의 가동개시 신고</li> </ul>
공장등록 (산업집적법 제16조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쇄사의 신고</li> <li>-양곡가공업의 등록, 인삼제조업의 신고</li> <li>-사료제조업의 등록, 비료생산업의 등록</li> <li>-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li> <li>-계량기의 제조업·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li> <li>-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의 허가</li> <li>-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li> <li>-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li> <li>-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li> <li>-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허가 및 신고</li> <li>-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li> <li>-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li> <li>-골재채취업의 등록,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li> <li>-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li> <li>-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li> <li>-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li> </ul>
공장의 변경등록 (산업집적법 제16조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li> <li>-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신고</li> <li>-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지위승계신고</li> <li>-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li> <li>-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li> <li>-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li> <li>-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신고</li> <li>-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li> </ul>

#### (4) 도시형공장·지식산업센터

##### 1) 도시형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을 말함
  -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공장(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50m<sup>3</sup>이상인 공장
-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 항목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 제조업(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전자카드, 전자접속카드,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 유선통신장비, 방송장비, 이동전화기, 기타 무선 통신장비,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기타 음향기기, 기타 공학기기,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 2)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다만,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한 경우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지상층만 해당)
-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산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외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밖에 유사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체육관, 운동장 등
  -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으로 일정기준 면적 이하의 시설
-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시설의 규모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의 50% 이내(수도권 30% 이내,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20% 이내)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기존의 허용 범위 20%에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보육시설 현황에 따라 면적을 더함
  -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 보육시설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 중 작은 면적
  -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보육시설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 중 작은 면적
  -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보육시설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 중 작은 면적
-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 설치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 가능
-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 추가 가능.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50% 이내 가능

## (5) 공장입주의 기준

- 공장입지의 기준고시(산업집적법 제8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함.
    - 공장입지의 기준 고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유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전원개발촉진법, 초지법, 택지개발촉진법, 그밖에 공장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대상
  -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4조)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기준공장면적률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 승인일부 4년 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함
    - \* 산업부장관은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에 대해 기준일(최근년도 : 2014년 1월 1일)로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9조의2)

※ 기준공장건축면적 산출 예시

- ▶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text{기준공장건축면적} = \text{공장부지면적} \times \text{기준공장면적률}$
- ▶ 1개의 단위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text{기준공장건축면적} = \text{공장부지면적} \times 1/(\text{A업종의 비중치}/\text{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text{B업종의 비중치}/\text{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dots)$
- \* 업종별 비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 \* 업종간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산출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제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 활주로·철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지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 3. 공장설립지원센터

#### (1) 설립배경

- 공장설립과 관련한 토지이용 및 환경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이들 법령 및 입지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인이 직접 공장설립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1997. 2. 21. 본사 및 5개 지역본부에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 기업인을 대신하여 입지검토,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작성, 지자체 방문 및 협의, 공장설립 승인신청부터 공장등록까지 일체의 공장설립 절차를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체제를 구축·운영중

#### (2) 추진경위

- 1996. 12. 3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설립근거 마련 (제47조의7 제3항)
- 1997. 1. 10 한국산업단지공단 발족
- 1997. 2. 21 공장설립대행센터(전국 6개소) 업무개시
- 2002. 4 공장설립지원센터(전국 10개 센터) 설치
- 2009. 1 공장설립지원센터(전국 14개 센터) 확대

#### (3)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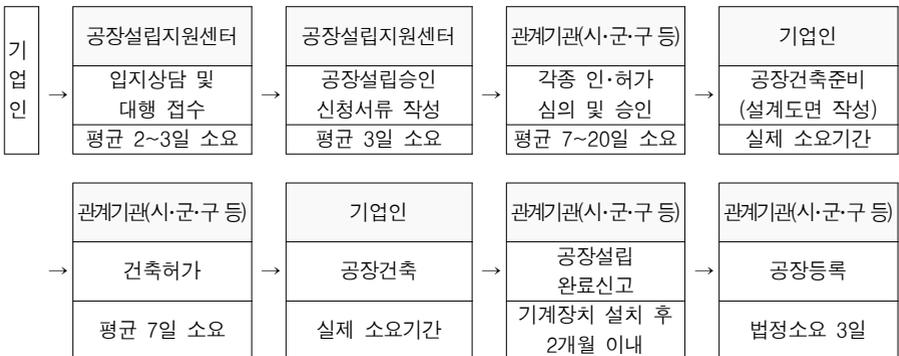
##### 1) 센터 설치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14개 지원센터를 운영
  - 서울, 원주, 인천, 서부, 천안, 구미, 청주, 대구, 창원, 울산, 부산, 광주, 전북, 여수

## 2) 주요 추진업무

-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 수행
- 공장설립관련 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의 처리 및 대행
  - 기타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의 설치·운영
  - 웹환경으로 구성되어 포탈서비스와 업무처리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 중
    - 포탈서비스 : 사전입지검토서비스, 모의공장설립 서비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주소서비스로 구성되어 각종 공장설립관련 정보 제공
    - 업무처리서비스: 민원인허가 접수부터 심의, 처리 등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

## 3) 대행업무처리절차



## II. 공장설립 규제 및 허용행위

### 1. 공장총량제도

#### (1) 수도권역 구분

-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며, 이 지역은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장의 이전 촉진과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임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임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임

< 수도권역의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1. 경기도 · 남양주시 (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읍·오남읍만 해당)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화성시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경기도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이천시 · 광주시 ·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만 해당)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p>3. 경기도·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포함·제외)</p>	<p>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p> <p>·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송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대덕면·미양면·공도읍·원곡면·보개면·금광면·서운면·양성면·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술리·내강리만 해당)</p> <p>2.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p> <p>3. 경기도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p>	<p>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p> <p>·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p>

(2) 공장총량제도

-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함(1994년 도입)
  - 법적근거(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음
  -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이 가능하며, 동법에 의거 공장 총 허용량을 별도 배정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아래와 같음

< 시·도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 (천㎡) >

구 분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평택시
총허용량	5,778	33	962	4,783	130
산업단지외 공업지역	2,085	23	866	1,196	80
개별입지	3,693	10	96	3,587	50

자료 : 국토해양부(2015), 2015~201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182호, 2015.3.31. 제정, 시행)

- 공장건축 총 허용량 산출방식
  -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최근 3년간('12~'14)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함
-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국토해양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2.3.8)」 5-5-1.에 의거 2015.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 ○ 공장총량제도 집행조건

- 적용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
- 적용기준 :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된 경우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 연면적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함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 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 ○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공장건축총량을 별도로 배정받아 총 130천㎡(산업단지외의 공업지역 80천㎡, 개별입지 50천㎡)을 허용받음

- 공장총량의 적용기준 및 적용기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 기타 집행조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함

## 2. 용도지역별 건축 허용행위

### (1) 도시지역

용도지역	허용행위
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 불가</li> </ul>
일반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제2종 :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국토계획법 별표 4 제2호 차목(1)~(6)&gt;</p> <p>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인 사업장</li>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li>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50m<sup>3</sup>이상인 사업장</li> <li>-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li> <li>-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낮 55dB 이하, 저녁 50dB 이하, 밤 45dB 이하)의 2배 이상인 것</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li> </ul>

용도지역	허용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lt;국토계획법 별표 4 제2호 카목(1)~(4)&gt;</p> <p>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일 것</li> <li>-약취방지법에 따른 약취배출시설인 경우, 약취방지사설 등 약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li>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1)에서 (6)까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li> <li>-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li> </ul> <p><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1만㎡ 미만</p>
준주거지역	<p><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하여 정함</p> <p><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ul> <p><input type="checkbox"/>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7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li> </ul> <p><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1만㎡ 미만</p>
중심상업지역	<p><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하여 정함</p> <p><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ul> <p><input type="checkbox"/>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li> </ul> <p><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1만㎡ 미만</p>

용도지역	허용행위
일반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하여 정함</li> <li><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1만㎡ 미만</li> </ul>
근린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하여 정함</li> <li><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1만㎡ 미만</li> </ul>
유통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하여 정함</li> <li><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li> </ul> </li> </ul>

용도지역	허 용 행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li> </ul> <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1만㎡ 미만
전공공업지역	<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ul> <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3만㎡ 미만
일반공업지역	<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ul> <input type="checkbox"/>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3만㎡ 미만
준공업지역	<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하여 정함 <input type="checkbox"/>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것</li> </ul> <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li> </ul> <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5천㎡ 미만
생산녹지지역	<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li> </ul>

용도지역	허 용 행 위
	<p>□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단란주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것</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li>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li>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인 사업장</li> <li>-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ul> <p>□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1만㎡ 미만</p>
자연녹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li>□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li>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li> </ul> </li> </ul>

용도지역	허용행위
	<p>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li> </ul> <p><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1만㎡ 미만</p>

## (2) 관리지역

용도지역	허용행위
보전관리지역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p><input type="checkbox"/>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제조업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ul> <p><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3만㎡ 미만</p>
생산관리지역	<p><input type="checkbox"/>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제조업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 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li>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li> </ul> </li> </ul>

용도지역	허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50m<sup>3</sup>이상인 사업장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ul> <p><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3만m<sup>2</sup> 미만</p>
계획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li> <li>◦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설치하는 것)</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은 제외)</li> <li>- 국토계획법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다만, 인쇄, 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li> <li>-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다만,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로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li> <li>-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li> <li>-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li> <li>-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m<sup>3</sup> 이하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염색시설은 제외)</li> <li>-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폐기물 중간·최종</li> </ul>

용도지역	허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li> <li>-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것(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li> <li>□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층 이상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설치하는 것, 제조업소</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li> <li>-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li> </ul> </li> <li>□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3만㎡ 미만</li> </ul>

### (3)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허용행위
농림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설치하는 것, 제조업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li>*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제한 상한 면적 : 3만㎡ 미만</li> </ul>
자연환경보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 불가</li> </ul>

### (4) 시가지조정구역

용도지역	허용행위
시가지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음)과 부대시설의 설치</li> <li>◦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li> <li>◦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li> <li><input type="checkbox"/> 시가지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li> <li><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변경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지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li> <li>◦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li> </ul> </li> </ul>

## (5) 기타용도지역 및 지구

용도지역	허용행위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li> <li>-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li> <li>-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li> </ul> </li> <li>◦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li> </ul> </li> <li>-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li> </ul> </li> </ul>
자연취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li> <li><input type="checkbox"/>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ul> </li> </ul>

(6) 기타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산업시설구역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름</li> </ul>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li> </ul>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 불가</li> </ul>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제32조제1항, 시행령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국외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li> <li>- 부지의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li> </ul> </li> </ul>
농업보호구역 (농지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불가</li> </ul>

## [첨부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공장입자기준고시 별표1)

(2013. 4월 개정고시 기준)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종명	
1011	10110	도축업	12
1012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	1022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
1030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0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0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1	10611	곡물 도정업	12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2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
1071	10711	떡류 제조업	15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2	10720	설탕 제조업	12
1073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
1074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2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10791	커피 가공업	10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2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2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 종 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5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2
1080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2
1111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0
	11112	청주 제조업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11121	주정 제조업	10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0	11201	얼음 제조업	12
	11202	생수 생산업	10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200	12001	담배 재건조업	15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1310	13101	면 방적업	12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제조 및 실 가공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	13211	면직물 직조업	12
	13212	모직물 직조업	15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5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22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15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0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1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5
1332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5
1340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5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1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 종 명	
1392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5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9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5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2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5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0
1411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20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20
1413	14130	한복 제조업	20
1419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20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족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0	14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5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0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5
1441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5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14491	모자 제조업	20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511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
1512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20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20
1521	15211	구두류 제조업	20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20
1610	16101	일반 제재업	5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1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5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5
1622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16229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1623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0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종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0
1629	16291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10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630	16302	돛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12
	17110	펠프 제조업	3
1712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0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1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5
1722	17221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	15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0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5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11	18111	경 인쇄업	20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18121	제판 및 조판업	20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1820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5
1910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3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3
1921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0
1922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10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3
2012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7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3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종명	
2013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3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12
2020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7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10
2030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7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1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12
	20412	농약 제조업	
2042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12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12
	20492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	10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12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2
2050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12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2110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12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2
2122	21220	한의학약품 제조업	12
2123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2
2130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2
2211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12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15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12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종명	
2222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
2225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2
2229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15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2311	23110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12
2312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12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2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12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10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1	23311	시멘트 제조업	3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3
	23322	레미콘 제조업	10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10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3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3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3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3
2391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3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	23991	아스콘 제조업	3
	23992	연마제 제조업	10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 종 명	
2399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0
	23994	석면, 압연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3
2411	24111	제철업	12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7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3
2412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7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2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	24131	주철관 제조업	10
	24132	강관 제조업	12
2419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12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	24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3
2431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12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12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11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25121	중양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2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12
2520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3
2591	25911	분말아금제품 제조업	12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	25921	금속 열처리업	12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종명	
2592	25922	도금업	20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12
	25929	그 외 기타 금속처리업	
2593	25931	날붙이 제조업	15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12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15
2594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시제품 제조업	12
	25942	금속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2
	25992	금고 제조업	15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12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611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
2612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10
2621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12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2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26291	전자관 제조업	12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10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12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1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12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2
2642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2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 종 명	
2651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2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2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2
2660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11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15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5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5
	27212	전자식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0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15	
2731	27310	안경 제조업	15
2732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15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0	27401	시계제조업	15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2811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2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12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12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5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1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2
2842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2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016 산업입지요람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 종 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12
2852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15
2890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0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15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0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2
2911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12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12
2913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0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15
2914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12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15
2916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10
	29162	승강기 제조업	12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0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5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12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7
2918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2919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12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7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10
	29194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12
	29195	동력식 수직공구 제조업	15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10
2921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2
2922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15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15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10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종명	
2924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10
2925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15
2926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15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5
2929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15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1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12
3012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12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10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1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12
3032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12
3039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2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11	31111	강선 건조업	7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7
3120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12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31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
3132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5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
3192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10
3199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10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15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종명	
3201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15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15
	32022	나전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	32091	금속가구 제조업	15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311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7
3312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20
3320	33201	피아노 제조업	15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0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2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0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0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1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20
3392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2
3393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0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15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20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12
3399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20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7
	33994	비 및 솔 제조업	20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10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은 40%로 정함

제4편

## 산업입지 관련 통계

- I. 제조업 통계
- II. 공장등록 통계
- III. 산업단지 통계



# I. 제조업 통계

## 1. 제조업 현황

### (1) 연도별 제조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십억원)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2005년	57,198	2,443,197	801,683	291,153
2006년	58,928	2,484,405	859,666	304,134
2007년	61,785	2,507,598	948,644	329,011
2008년	58,459	2,454,263	1,122,986	367,630
2009년	57,996	2,452,880	1,121,973	374,501
2010년	62,376	2,636,177	1,334,833	435,344
2011년	63,047	2,694,782	1,502,353	480,203
2012년	63,907	2,753,684	1,511,495	480,713
2013년	65,389	2,813,575	1,495,730	479,281
2014년	68,640	2,904,914	1,489,213	484,485

자료1)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년 기준

1) 종업원수 10인 이상 기준

## (2) 종사자규모별 제조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19인	32,202	32,571	34,210	429,769	435,971	457,823
20~49인	21,673	22,515	23,679	648,409	678,737	710,862
50~99인	5,971	6,189	6,553	409,633	427,755	449,356
100~199인	2,695	2,727	2,792	368,536	373,688	380,078
200~299인	688	713	695	164,643	172,387	167,457
300~499인	371	370	389	139,698	138,961	145,328
500인 이상	307	304	322	592,996	586,076	594,010
계	63,907	65,389	68,640	2,753,684	2,813,575	2,904,914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19인	93,469	92,878	98,575	33,493	34,038	36,818
20~49인	174,917	179,141	188,605	59,584	60,774	66,352
50~99인	139,368	146,607	150,654	45,442	48,095	51,133
100~199인	163,268	160,709	163,640	52,238	50,982	53,156
200~299인	88,448	89,711	86,474	26,538	28,748	28,455
300~499인	106,527	92,475	88,532	30,382	28,934	29,625
500인 이상	745,498	734,209	712,732	233,036	227,710	218,945
계	1,511,495	1,495,730	1,489,213	480,713	479,281	484,485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3) 경영조직별 제조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인	19,004	18,740	18,728	364,057	359,264	360,275
회사법인	44,311	45,975	49,048	2,369,580	2,432,901	2,520,642
기타법인	592	674	864	20,047	21,410	23,997
계	63,907	65,389	68,640	2,753,684	2,813,575	2,904,914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인	44,499	43,059	43,018	19,594	19,572	19,972
회사법인	1,459,219	1,445,187	1,438,097	458,840	457,475	462,322
기타법인	7,777	7,485	8,098	2,278	2,235	2,191
계	1,511,495	1,495,730	1,489,213	480,713	479,281	484,485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4) 지역별 제조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특별시	4,540	4,269	4,589	115,385	110,725	115,094
부산광역시	4,233	4,064	4,185	138,494	139,332	141,460
대구광역시	3,230	3,273	3,308	106,505	111,435	112,258
인천광역시	4,484	4,645	4,870	164,985	168,865	172,992
광주광역시	1,090	1,086	1,146	62,442	62,744	62,972
대전광역시	798	841	847	38,772	37,471	40,789
울산광역시	1,425	1,615	1,752	145,894	157,503	166,114
세종특별자치시	221	255	266	14,639	14,819	16,195
경기도	22,727	22,792	23,955	835,813	844,866	870,000
강원도	802	861	915	30,668	32,149	33,822
충청북도	2,327	2,590	2,807	130,733	138,541	149,636
충청남도	3,279	3,568	3,740	213,040	225,629	233,785
전라북도	1,739	1,824	1,835	85,152	91,471	92,598
전라남도	1,410	1,511	1,641	83,218	80,268	86,572
경상북도	4,635	4,924	5,183	242,818	251,175	254,246
경상남도	6,774	7,078	7,396	340,667	342,259	351,801
제주특별자치도	193	193	205	4,459	4,323	4,580
계	63,907	65,389	68,640	2,753,684	2,813,575	2,904,914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특별시	33,110	31,931	31,968	14,077	13,622	13,869
부산광역시	42,105	40,414	41,452	13,602	13,097	14,157
대구광역시	27,629	28,327	28,411	9,547	9,652	9,688
인천광역시	66,386	64,143	66,263	19,806	19,017	19,871
광주광역시	29,018	29,422	31,202	8,873	9,262	9,944
대전광역시	15,909	16,248	17,367	6,827	7,037	7,441
울산광역시	230,271	216,641	209,000	48,955	45,133	42,605
세종특별자치시	6,596	7,028	7,453	2,384	2,475	2,763
경기도	320,614	333,396	339,974	128,530	133,581	136,602
강원도	10,864	11,190	12,098	3,799	4,098	4,700
충청북도	59,599	63,296	66,236	21,610	23,660	25,549
충청남도	183,440	177,896	177,045	58,296	58,476	56,531
전라북도	43,146	43,723	44,011	12,136	12,234	14,031
전라남도	128,231	126,018	116,764	29,334	28,808	27,576
경상북도	162,120	159,884	155,967	52,019	51,545	50,846
경상남도	151,274	144,988	142,673	50,458	47,082	47,789
제주특별자치도	1,185	1,184	1,329	458	503	523
계	1,511,495	1,495,730	1,489,213	480,713	479,281	484,485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5) 업종별 제조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4,423	4,616	4,983	178,839	183,800	194,954
담배	8	9	11	1,968	1,951	2,145
섬유제품	3,176	3,158	3,224	92,528	92,521	91,759
의복,모피	2,746	2,554	2,703	73,971	69,939	70,721
가죽,신발	798	808	798	19,969	20,189	19,728
목재,나무	770	803	845	17,011	17,489	17,998
펄프,종이	1,584	1,705	1,803	51,882	55,320	57,158
인쇄	1,256	1,168	1,184	28,289	27,322	28,227
석유정제품	131	133	138	11,563	10,286	10,595
화학제품	2,462	2,585	2,690	116,559	120,006	125,688
의료용물질,의약품	428	421	453	29,112	29,680	32,209
고무,플라스틱	5,517	5,722	5,947	202,901	210,933	216,391
비금속광물	2,384	2,452	2,530	78,999	81,567	84,491
1차금속	2,714	2,777	2,876	136,799	139,424	144,122
금속가공	8,807	9,014	9,524	249,679	253,651	268,545
전자부품,컴퓨터,통신	4,096	4,111	4,228	405,112	406,075	397,177
의료,정밀,광학기기	2,088	2,110	2,225	72,407	74,460	76,123
전기장비	3,950	3,977	4,275	162,099	164,418	177,060
기타기계,장비	8,952	9,181	9,521	304,451	313,603	319,008
자동차	3,869	4,219	4,579	300,873	320,971	338,333
기타운송장비	1,512	1,633	1,722	160,629	160,711	169,168
가구	1,247	1,269	1,376	34,184	35,027	38,395
기타제품	989	964	1,005	23,860	24,232	24,919
계	63,907	65,389	68,640	2,753,684	2,813,575	2,904,914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75,491	77,688	79,998	26,090	27,449	28,852
담배	3,412	3,225	3,528	1,998	1,909	2,130
섬유제품	20,893	20,821	20,662	7,041	7,041	7,202
의복, 모피	18,035	17,834	17,732	8,122	8,089	7,945
가죽, 신발	5,194	5,442	5,544	1,851	1,944	2,006
목재, 나무	4,616	4,623	5,291	1,521	1,464	1,720
펄프, 종이	21,030	21,678	21,556	7,027	7,141	7,195
인쇄	4,249	4,022	4,327	1,999	1,910	2,060
석유정제품	157,797	145,994	138,026	22,107	19,809	18,991
화학제품	161,502	161,882	155,510	43,284	43,343	41,529
의료용물질, 의약품	13,933	14,273	15,139	7,887	8,098	8,630
고무, 플라스틱	59,941	62,880	65,585	20,496	21,633	22,603
비금속광물	31,626	32,024	32,405	13,639	14,158	14,349
1차금속	156,851	143,526	138,569	30,423	27,533	26,780
금속가공	70,986	70,023	72,245	28,388	27,882	29,058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254,547	257,097	245,216	115,816	116,830	113,0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6,556	18,022	18,229	7,170	7,897	8,049
전기장비	67,277	64,751	67,624	20,256	19,667	20,867
기타기계, 장비	102,103	99,552	102,379	35,968	35,343	37,260
자동차	175,221	181,257	189,586	53,158	54,531	58,185
기타운송장비	75,791	74,449	73,630	21,664	20,742	20,527
가구	10,126	10,429	11,858	2,967	3,054	3,564
기타제품	4,320	4,238	4,575	1,841	1,816	1,957
계	1,511,497	1,495,730	1,489,213	480,713	479,281	484,485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2. 연도별·지역별 제조업 현황

### (1)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5년	5,656	3,942	2,936	4,754	980	647	1,148	-
2006년	5,637	3,878	2,966	4,770	1,008	685	1,192	-
2007년	5,936	3,995	3,086	4,976	1,027	718	1,225	-
2008년	5,183	3,865	2,901	4,474	1,014	683	1,233	-
2009년	5,093	3,825	2,869	4,281	1,066	728	1,244	-
2010년	5,107	3,857	3,006	4,653	1,090	796	1,408	-
2011년	4,825	3,984	3,238	4,525	1,114	833	1,443	-
2012년	4,540	4,233	3,230	4,484	1,090	798	1,425	221
2013년	4,269	4,064	3,273	4,645	1,086	841	1,615	255
2014년	4,589	4,185	3,308	4,870	1,146	847	1,752	266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년	19,849	729	1,939	2,530	1,271	1,190	3,768	5,717	142
2006년	20,541	740	2,086	2,708	1,323	1,223	3,932	6,089	150
2007년	21,481	759	2,254	2,879	1,379	1,276	4,132	6,500	162
2008년	20,428	728	2,074	2,853	1,388	1,257	3,973	6,248	157
2009년	20,050	762	2,050	2,901	1,593	1,331	3,972	6,075	156
2010년	21,662	813	2,354	3,191	1,629	1,437	4,463	6,730	180
2011년	21,838	802	2,331	3,296	1,720	1,466	4,614	6,843	175
2012년	22,727	802	2,327	3,279	1,739	1,410	4,635	6,774	193
2013년	22,792	861	2,590	3,568	1,824	1,511	4,924	7,078	193
2014년	23,955	915	2,807	3,740	1,835	1,641	5,183	7,396	205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2)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5년	148,194	134,928	96,293	168,086	52,688	30,463	138,025	-
2006년	146,760	130,967	98,414	166,469	54,096	30,270	141,260	-
2007년	147,950	132,417	97,269	168,850	55,107	32,365	141,025	-
2008년	129,959	129,500	93,599	158,730	55,970	32,108	146,481	-
2009년	131,797	125,567	95,272	155,996	56,909	32,925	138,377	-
2010년	135,853	132,537	98,661	166,552	59,948	36,753	139,000	-
2011년	121,635	132,804	103,417	165,308	60,399	38,739	145,580	-
2012년	115,385	138,494	106,505	164,985	62,442	38,772	145,894	14,639
2013년	110,725	139,332	111,435	168,865	62,744	37,471	157,503	14,819
2014년	115,094	141,460	112,258	172,992	62,972	40,789	166,114	16,19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년	764,318	26,858	106,192	157,358	63,824	60,515	208,418	283,953	3,084
2006년	768,352	26,453	110,661	165,452	64,145	61,667	222,028	294,346	3,065
2007년	751,733	27,916	115,791	174,778	65,565	65,396	216,820	311,262	3,354
2008년	724,125	27,152	116,474	175,471	66,754	67,029	212,686	314,662	3,563
2009년	724,730	28,023	116,892	182,757	73,721	66,805	210,827	308,557	3,725
2010년	789,614	29,861	125,145	204,217	80,914	71,762	231,733	329,422	4,205
2011년	809,745	31,244	130,927	218,617	83,142	74,826	238,547	335,943	3,909
2012년	835,813	30,668	130,733	213,040	85,152	83,218	242,818	340,667	4,459
2013년	844,866	32,149	138,541	225,629	91,471	80,268	251,175	342,259	4,323
2014년	870,000	33,822	149,636	233,785	92,598	86,572	254,246	351,801	4,58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3) 생산액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5년	26,059	25,546	17,650	43,167	15,938	8,654	106,935	-
2006년	27,004	27,470	18,609	47,523	17,346	8,547	116,433	-
2007년	27,735	29,880	19,691	53,607	18,713	9,511	129,936	-
2008년	29,705	38,507	20,870	56,989	20,257	11,675	167,155	-
2009년	30,995	36,045	20,092	51,573	20,752	11,629	152,259	-
2010년	35,823	41,129	24,220	59,653	27,431	13,815	175,413	-
2011년	33,427	43,658	27,198	65,862	30,199	15,162	228,208	-
2012년	33,110	42,105	27,629	66,386	29,018	15,909	230,271	6,596
2013년	31,931	40,414	28,327	64,143	29,422	16,248	216,641	7,028
2014년	31,968	41,452	28,411	66,263	31,202	17,367	209,000	7,45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년	186,167	7,298	30,159	73,233	21,072	57,683	99,302	82,131	688
2006년	199,281	7,204	33,925	83,350	22,596	59,294	101,502	88,980	599
2007년	211,764	8,122	37,585	93,674	25,238	69,229	108,376	104,881	700
2008년	229,440	9,074	40,917	113,665	29,077	96,376	129,711	128,772	795
2009년	235,326	9,127	43,113	128,181	30,166	83,135	133,542	135,058	979
2010년	291,450	9,823	54,545	158,554	36,552	102,493	158,280	144,646	1,009
2011년	311,057	10,959	60,075	188,518	43,652	123,495	165,356	154,293	1,233
2012년	320,614	10,864	59,599	183,440	43,146	128,231	162,120	151,274	1,185
2013년	333,396	11,190	63,296	177,896	43,723	126,018	159,884	144,988	1,184
2014년	339,974	12,098	66,236	177,045	44,011	116,764	155,967	142,673	1,329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4) 부가가치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5년	11,234	9,331	6,476	13,657	5,825	4,134	28,954	-
2006년	11,473	9,784	6,748	15,117	6,739	3,926	29,092	-
2007년	12,122	10,394	7,069	16,585	6,625	4,222	33,280	-
2008년	12,444	13,090	7,176	15,887	6,961	5,004	39,597	-
2009년	13,170	12,555	7,140	16,318	6,232	4,806	35,614	-
2010년	14,971	14,120	7,904	19,077	8,590	5,331	40,145	-
2011년	14,681	13,842	8,925	19,934	9,410	5,999	50,939	-
2012년	14,077	13,602	9,547	19,806	8,873	6,827	48,955	2,384
2013년	13,622	13,097	9,652	19,017	9,262	7,037	45,133	2,475
2014년	13,869	14,157	9,688	19,871	9,944	7,441	42,605	2,76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년	79,767	3,344	13,135	24,810	7,376	15,611	40,441	26,792	266
2006년	83,187	3,147	14,583	28,867	7,834	14,286	39,623	29,484	244
2007년	88,430	3,319	15,789	31,780	8,396	17,795	37,839	35,031	337
2008년	93,308	3,484	15,833	36,273	9,240	22,566	45,112	41,327	329
2009년	95,895	3,628	16,202	42,717	10,173	19,071	47,296	43,286	400
2010년	114,383	3,597	18,513	52,340	11,849	24,681	53,466	45,969	409
2011년	122,185	3,676	21,730	61,836	12,841	29,242	53,492	51,038	432
2012년	128,530	3,799	21,610	58,296	12,136	29,334	52,019	50,458	458
2013년	133,581	4,098	23,660	58,476	12,234	28,808	51,545	47,082	503
2014년	136,602	4,700	25,549	56,531	14,031	27,576	50,846	47,789	523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3. 지역별·업종별 제조업 현황<sup>2)</sup>

## (1) 서울특별시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96	109	138	2,859	3,275	3,924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198	192	214	4,068	3,831	3,950
의복,모피	1,524	1,400	1,578	41,510	38,713	41,068
가죽,신발	209	197	207	3,983	4,009	4,169
목재,나무	3	4	2	33	136	-
펄프,종이	96	97	104	2,368	2,555	2,753
인쇄	478	413	391	9,830	9,128	8,932
석유정제품	2	2	2	-	-	-
화학제품	51	54	56	1,376	1,699	1,738
의약품	17	17	24	715	553	647
고무,플라스틱	113	107	104	2,862	2,857	2,760
비금속광물	21	21	21	475	687	994
1차금속	36	36	33	777	681	754
금속가공	142	125	152	2,787	2,427	2,791
전자부품,컴퓨터,통신	373	350	371	13,498	12,553	12,671
의료,정밀,광학기기	313	304	323	7,446	7,447	7,650
전기장비	273	271	265	6,676	6,324	6,258
기타기계,장비	318	284	309	8,168	7,600	7,530
자동차	18	18	15	418	430	390
기타운송장비	3	4	4	75	91	93
가구	22	28	24	451	548	564
기타제품	234	236	252	4,955	5,125	5,319
계	4,540	4,269	4,589	115,385	110,725	115,094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2)“-”은 미상자료임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1,254	1,187	1,299	544	517	653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1,183	1,347	1,342	351	379	417
의복,모피	14,437	14,287	14,117	6,491	6,522	6,362
가죽,신발	1,220	1,346	1,487	618	672	717
목재,나무	-	72	-	1	12	-
펄프,종이	416	469	472	171	217	214
인쇄	1,519	1,346	1,468	745	661	699
석유정제품	-	-	-	-	-	-
화학제품	393	634	619	185	320	315
의약품	160	97	166	126	67	118
고무,플라스틱	712	727	778	264	245	291
비금속광물	266	288	351	97	110	132
1차금속	306	228	200	133	68	67
금속가공	523	511	570	223	219	237
전자부품,컴퓨터,통신	4,663	3,615	2,932	1,490	1,142	1,120
의료,정밀,광학기기	1,438	1,523	1,420	730	747	703
전기장비	1,607	1,385	1,485	672	530	561
기타기계,장비	1,793	1,616	1,567	783	700	654
자동차	95	96	303	33	36	78
기타운송장비	16	-	14	9	9	8
가구	121	106	151	32	40	53
기타제품	957	1,001	1,130	389	420	471
계	33,110	31,931	31,968	14,077	13,622	13,869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2) 부산광역시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269	271	294	9,014	9,184	9,479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213	221	219	6,742	6,972	6,486
의복,모피	279	256	247	8,606	8,297	7,708
가죽,신발	263	269	258	6,528	6,691	6,475
목재,나무	33	33	32	864	904	878
펄프,종이	48	41	55	1,008	957	1,145
인쇄	55	48	53	888	802	932
석유정제품	10	8	9	306	278	283
화학제품	63	63	58	2,816	2,936	2,977
의약품	10	8	9	349	318	344
고무,플라스틱	300	294	305	10,291	9,989	10,687
비금속광물	62	61	65	1,345	1,427	1,540
1차금속	295	289	301	11,001	10,827	11,142
금속가공	727	656	697	18,243	17,691	18,412
전자부품,컴퓨터,통신	55	63	68	6,184	7,040	7,327
의료,정밀,광학기기	78	86	76	2,796	3,144	3,115
전기장비	254	240	249	7,773	7,978	8,202
기타기계,장비	706	661	697	20,566	20,180	21,038
자동차	245	257	261	11,632	12,408	12,358
기타운송장비	148	129	121	8,596	8,357	7,963
가구	60	60	63	1,550	1,689	1,783
기타제품	60	50	48	1,396	1,263	1,186
계	4,233	4,064	4,185	138,494	139,332	141,46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2,395	2,633	2,720	839	975	1,081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1,242	1,323	1,325	441	478	460
의복, 모피	916	929	924	452	461	453
가죽, 신발	1,002	1,081	1,150	356	366	405
목재, 나무	225	228	256	65	67	76
펄프, 종이	181	165	191	71	52	76
인쇄	98	84	100	47	41	50
석유정제품	572	488	485	75	73	80
화학제품	1,458	1,384	1,353	442	386	419
의약품	108	99	121	69	64	79
고무, 플라스틱	2,081	2,109	2,308	726	752	718
비금속광물	556	518	477	197	193	180
1차금속	8,225	7,582	6,917	1,760	1,695	1,638
금속가공	5,016	4,584	4,854	1,887	1,605	1,762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1,739	1,597	1,462	743	662	645
의료, 정밀, 광학기기	529	551	583	334	308	306
전기장비	2,002	2,040	2,143	660	640	701
기타기계, 장비	5,432	5,014	5,239	2,122	1,956	2,046
자동차	5,775	5,320	6,276	1,507	1,400	2,054
기타운송장비	2,021	2,196	2,053	608	737	728
가구	347	337	367	112	113	127
기타제품	184	152	148	91	73	72
계	42,105	40,414	41,452	13,602	13,097	14,157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3) 대구광역시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109	117	118	4,357	4,737	4,494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623	620	602	17,226	17,643	17,160
의복,모피	118	107	114	3,044	3,006	2,851
가죽,신발	2	3	5	-	100	89
목재,나무	22	20	22	358	354	379
펄프,종이	64	76	83	2,589	2,791	2,975
인쇄	44	45	44	905	1,121	1,165
석유정제품	3	4	4	48	57	61
화학제품	39	47	42	838	984	895
의약품	6	8	7	274	278	294
고무,플라스틱	233	248	254	8,635	9,164	9,141
비금속광물	50	44	48	1,509	1,425	1,331
1차금속	95	92	95	2,590	2,486	2,637
금속가공	658	687	701	17,147	17,717	18,399
전자부품,컴퓨터,통신	77	76	77	6,291	7,967	7,758
의료,정밀,광학기기	135	141	131	3,082	3,131	3,152
전기장비	113	120	118	4,015	4,360	4,418
기타기계,장비	491	484	504	15,788	14,050	14,964
자동차	299	295	294	16,756	19,160	19,040
기타운송장비	9	7	9	227	217	238
가구	22	16	21	466	391	531
기타제품	18	16	15	317	296	286
계	3,230	3,273	3,308	106,505	111,435	112,258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1,589	1,730	1,636	535	640	592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3,176	3,210	3,229	1,211	1,216	1,211
의복, 모피	333	340	332	168	176	162
가죽, 신발	-	22	16	-	9	6
목재, 나무	61	61	74	19	18	20
펄프, 종이	1,064	1,081	1,057	371	351	324
인쇄	140	163	187	55	64	75
석유정제품	-	15	14	3	-3	-3
화학제품	327	390	395	124	134	152
의약품	70	55	54	43	26	19
고무, 플라스틱	1,891	2,022	1,975	670	674	681
비금속광물	390	429	432	165	192	167
1차금속	1,781	1,480	1,488	257	246	247
금속가공	3,731	3,836	3,896	1,513	1,569	1,67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1,203	1,471	1,356	419	479	462
의료, 정밀, 광학기기	649	711	753	232	240	259
전기장비	1,218	1,170	1,390	415	365	391
기타기계, 장비	4,742	3,884	3,937	1,682	1,451	1,433
자동차	5,080	6,101	6,000	1,598	1,744	1,743
기타운송장비	33	39	36	15	16	14
가구	83	81	120	31	29	39
기타제품	42	36	34	16	15	13
계	27,629	28,327	28,411	9,547	9,652	9,688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4) 인천광역시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152	163	179	6,178	6,316	6,784
담배	0	0	1	0	0	-
섬유제품	51	48	52	1,591	1,579	1,570
의복,모피	98	93	96	2,645	2,479	2,487
가죽,신발	26	25	23	600	646	593
목재,나무	168	167	168	5,067	5,019	4,824
펄프,종이	54	57	65	1,716	1,886	1,971
인쇄	45	43	46	1,112	967	1,076
석유정제품	6	7	6	650	786	793
화학제품	190	189	199	5,899	6,044	6,422
의약품	10	12	15	1,487	1,605	2,237
고무,플라스틱	369	378	402	13,913	14,545	14,451
비금속광물	95	101	110	2,491	2,639	2,727
1차금속	254	241	250	11,774	11,592	11,577
금속가공	803	872	900	19,176	20,413	21,378
전자부품,컴퓨터,통신	494	496	512	19,612	20,425	20,083
의료,정밀,광학기기	112	111	135	3,465	3,429	3,641
전기장비	318	345	365	9,797	10,419	11,758
기타기계,장비	791	848	872	29,453	29,703	29,834
자동차	220	228	239	21,416	21,642	21,925
기타운송장비	19	16	15	546	441	389
가구	129	127	134	4,252	4,163	4,271
기타제품	80	78	86	2,145	2,127	2,183
계	4,484	4,645	4,870	164,985	168,865	172,99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5,515	5,246	5,133	1,113	1,265	1,429
담배	0	0	-	0	0	-
섬유제품	333	311	322	98	89	116
의복, 모피	181	186	234	76	79	88
가죽, 신발	228	192	190	127	126	130
목재, 나무	1,750	1,613	1,838	546	464	542
펄프, 종이	392	398	433	133	129	161
인쇄	137	134	142	68	70	74
석유정제품	6,064	6,175	8,029	762	795	542
화학제품	2,951	2,510	2,638	928	830	972
의약품	726	651	803	502	381	468
고무, 플라스틱	2,769	2,956	3,029	952	1,059	1,096
비금속광물	940	944	950	352	356	384
1차금속	10,998	9,682	8,359	2,140	1,994	1,780
금속가공	3,613	3,727	3,765	1,488	1,560	1,61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4,655	5,080	4,622	1,672	1,673	1,7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720	772	784	294	317	342
전기장비	2,764	3,007	3,369	940	1,061	1,191
기타기계, 장비	9,255	8,116	9,130	3,469	2,968	3,511
자동차	10,962	10,938	10,895	3,677	3,313	3,198
기타운송장비	113	92	92	47	34	35
가구	1,021	1,143	1,166	296	342	375
기타제품	299	271	258	128	109	107
계	66,386	64,143	66,263	19,806	19,017	19,87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5) 광주광역시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62	59	58	2,349	2,192	2,132
담배	1	1	1	-	-	-
섬유제품	21	22	21	1,969	1,927	1,952
의복,모피	22	18	20	454	357	375
가죽,신발	0	0	0	0	0	0
목재,나무	10	10	10	212	178	195
펄프,종이	17	18	20	640	643	671
인쇄	20	16	14	432	373	348
석유정제품	2	2	2	-	-	-
화학제품	17	16	15	363	358	337
의약품	2	2	2	-	-	-
고무,플라스틱	113	121	132	7,739	7,984	7,411
비금속광물	19	23	19	657	683	603
1차금속	51	51	49	1,372	1,512	1,532
금속가공	165	169	177	5,233	5,135	5,354
전자부품,컴퓨터,통신	52	57	56	7,516	7,414	6,972
의료,정밀,광학기기	33	33	35	1,140	1,168	1,138
전기장비	126	117	125	9,244	9,181	9,586
기타기계,장비	205	196	216	7,799	7,407	7,946
자동차	127	122	143	14,082	14,813	14,981
기타운송장비	0	0	0	0	0	0
가구	20	26	22	615	790	767
기타제품	5	7	9	192	225	299
계	1,090	1,086	1,146	62,442	62,744	62,97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1,062	1,109	1,081	504	520	486
담배	-	-	-	-	-	-
섬유제품	443	410	394	97	72	89
의복,모피	19	17	16	11	9	9
가죽,신발	0	0	0	0	0	0
목재,나무	64	37	44	20	13	17
펄프,종이	189	182	186	58	53	64
인쇄	60	58	61	22	22	26
석유정제품	-	-	-	-	-	-
화학제품	60	66	69	30	32	31
의약품	-	-	-	-	-	-
고무,플라스틱	2,365	2,400	2,645	686	641	893
비금속광물	176	200	179	65	72	57
1차금속	1,169	1,222	1,274	252	289	387
금속가공	1,420	1,282	1,465	444	369	470
전자부품,컴퓨터,통신	1,884	1,786	1,855	753	670	734
의료,정밀,광학기기	110	108	98	65	62	57
전기장비	5,945	5,694	5,278	1,490	1,566	1,288
기타기계,장비	2,174	2,313	2,608	832	891	1,047
자동차	11,379	11,993	13,329	3,378	3,817	4,103
기타운송장비	0	0	0	0	0	0
가구	307	380	434	68	86	99
기타제품	24	27	38	12	12	15
계	29,018	29,422	31,202	8,873	9,262	9,944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6) 대전광역시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58	60	64	2,686	2,323	2,471
담배	3	3	3	784	820	865
섬유제품	29	26	27	773	642	699
의복,모피	24	26	26	924	989	1,037
가죽,신발	8	11	7	207	256	172
목재,나무	5	3	5	88	49	98
펄프,종이	18	21	17	1,400	1,576	1,379
인쇄	25	19	19	418	299	292
석유정제품	2	2	2	-	-	-
화학제품	46	48	47	3,230	3,293	3,723
의약품	23	24	21	1,138	1,050	1,120
고무,플라스틱	34	35	36	3,753	3,553	3,701
비금속광물	20	25	24	646	629	696
1차금속	22	23	22	733	834	969
금속가공	56	57	58	2,100	1,981	2,350
전자부품,컴퓨터,통신	95	91	95	5,582	5,171	5,378
의료,정밀,광학기기	89	93	102	3,571	3,314	3,528
전기장비	45	51	53	1,703	1,422	1,982
기타기계,장비	140	157	146	5,536	5,670	6,289
자동차	31	35	37	2,295	2,406	2,587
기타운송장비	5	7	9	289	329	423
가구	6	7	8	216	224	290
기타제품	14	17	19	662	601	696
계	798	841	847	38,772	37,471	40,789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도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1,136	1,247	1,411	540	596	625
담배	1,410	1,439	1,275	867	890	787
섬유제품	117	105	121	42	42	50
의복,모피	74	62	81	34	23	37
가죽,신발	-	25	-	7	10	7
목재,나무	25	-	26	8	5	9
펄프,종이	1,232	1,300	1,291	447	488	452
인쇄	54	41	50	25	19	20
석유정제품	-	-	-	-	-	-
화학제품	1,757	1,898	2,294	997	1,040	1,327
의약품	257	267	314	158	161	189
고무,플라스틱	2,271	2,159	1,942	916	889	779
비금속광물	240	278	312	89	117	142
1차금속	413	433	393	159	176	164
금속가공	764	712	858	265	254	334
전자부품,컴퓨터,통신	1,689	1,723	1,839	633	622	665
의료,정밀,광학기기	626	693	615	322	366	322
전기장비	701	665	665	276	198	269
기타기계,장비	2,401	2,168	2,504	704	691	728
자동차	523	811	1,147	239	346	434
기타운송장비	46	53	52	30	39	34
가구	24	29	33	11	11	14
기타제품	114	116	117	57	59	58
계	15,909	16,248	17,367	6,827	7,037	7,44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7) 울산광역시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37	37	44	1,150	1,202	1,219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44	49	60	1,724	1,950	2,356
의복,모피	7	8	8	140	146	144
가죽,신발	4	4	4	179	181	247
목재,나무	18	26	31	528	612	706
펄프,종이	17	17	23	1,421	1,358	1,658
인쇄	2	1	1	-	-	-
석유정제품	17	18	20	5,449	4,188	4,318
화학제품	139	159	163	15,861	15,616	15,536
의약품	2	2	4	-	-	87
고무,플라스틱	45	57	59	3,018	4,286	4,363
비금속광물	36	41	45	900	1,121	1,226
1차금속	69	87	94	7,407	7,916	8,568
금속가공	187	211	220	8,583	8,464	9,304
전자부품,컴퓨터,통신	14	10	8	2,771	2,875	756
의료,정밀,광학기기	22	21	24	534	473	486
전기장비	79	72	89	6,051	6,140	9,007
기타기계,장비	167	192	220	7,986	9,774	9,620
자동차	256	270	290	44,008	46,815	48,466
기타운송장비	237	310	317	36,483	43,148	46,558
가구	20	17	23	1,389	998	1,226
기타제품	6	6	5	214	173	220
계	1,425	1,615	1,752	145,894	157,503	166,114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1,025	1,036	990	266	245	275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427	435	506	92	130	133
의복, 모피	18	21	22	5	6	6
가죽, 신발	28	37	47	8	10	12
목재, 나무	136	151	173	47	57	69
펄프, 종이	1,324	1,336	1,236	370	386	367
인쇄	-	-	-	-	-	-
석유정제품	84,645	75,713	72,886	9,679	7,396	5,602
화학제품	48,752	45,972	40,901	13,748	11,985	10,983
의약품	-	-	-	-	-	8
고무, 플라스틱	1,758	2,028	2,149	660	667	676
비금속광물	436	532	599	163	208	238
1차금속	19,260	16,882	16,598	2,629	2,471	2,736
금속가공	2,898	2,566	2,699	981	922	944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1,227	928	193	610	475	86
의료, 정밀, 광학기기	97	88	99	41	39	45
전기장비	3,725	3,672	4,127	998	973	963
기타기계, 장비	4,931	4,553	4,479	1,507	1,359	1,248
자동차	37,030	37,794	38,891	11,292	11,432	11,988
기타운송장비	21,698	22,117	21,590	5,601	6,147	5,991
가구	791	721	748	233	200	221
기타제품	28	30	33	17	19	12
계	230,271	216,641	209,000	48,955	45,133	42,605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8) 세종특별자치시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31	34	33	1,964	1,763	1,776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3	3	3	255	198	229
의복,모피	0	0	0	0	0	0
가죽,신발	0	0	0	0	0	0
목재,나무	4	7	8	103	132	114
펄프,종이	8	13	14	548	554	583
인쇄	3	5	6	92	114	371
석유정제품	1	1	2	-	-	-
화학제품	27	28	30	1,112	1,184	1,149
의약품	8	9	9	640	675	720
고무,플라스틱	24	30	27	1,242	1,410	1,264
비금속광물	28	29	35	1,791	2,163	3,016
1차금속	9	9	11	374	231	291
금속가공	12	13	13	377	263	247
전자부품,컴퓨터,통신	8	9	9	2,290	2,553	2,325
의료,정밀,광학기기	7	8	7	1,015	576	518
전기장비	15	22	22	1,126	1,335	1,542
기타기계,장비	11	10	10	337	205	179
자동차	15	19	21	1,184	1,320	1,697
기타운송장비	1	1	0	-	-	0
가구	2	0	1	-	0	-
기타제품	4	5	5	88	97	112
계	221	255	266	14,639	14,819	16,195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816	830	890	181	215	243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85	72	108	18	27	23
의복, 모피	0	0	0	0	0	0
가죽, 신발	0	0	0	0	0	0
목재, 나무	27	42	41	10	14	11
펄프, 종이	527	546	543	181	94	100
인쇄	7	11	31	5	8	25
석유정제품	-	-	-	-	-	-
화학제품	323	435	521	151	150	243
의약품	155	221	289	83	147	180
고무, 플라스틱	571	639	675	189	221	173
비금속광물	966	1,013	1,067	352	397	431
1차금속	232	146	130	77	47	29
금속가공	134	65	64	24	16	1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1,089	1,109	1,198	570	576	7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458	555	504	91	178	177
전기장비	682	782	788	172	206	198
기타기계, 장비	127	40	68	57	13	19
자동차	359	499	512	208	161	160
기타운송장비	-	-	0	-	-	0
가구	-	0	-	-	0	-
기타제품	10	9	12	5	5	7
계	6,596	7,028	7,453	2,384	2,475	2,763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9) 경기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1,122	1,193	1,272	46,502	48,693	51,742
담배	0	1	2	0	-	-
섬유제품	1,047	1,016	1,080	27,964	27,227	28,141
의복,모피	418	411	397	9,098	8,806	8,450
가죽,신발	234	240	236	6,351	6,438	6,187
목재,나무	243	245	259	4,438	4,508	4,865
펄프,종이	792	847	868	22,241	23,559	23,821
인쇄	499	492	526	12,697	12,370	13,042
석유정제품	18	15	17	504	390	476
화학제품	890	903	955	29,758	29,704	32,551
의약품	197	189	197	13,743	14,357	15,146
고무,플라스틱	2,471	2,530	2,648	69,567	70,949	73,785
비금속광물	607	586	620	17,156	17,911	20,415
1차금속	760	762	787	22,823	22,857	23,516
금속가공	3,232	3,169	3,370	71,869	73,387	78,166
전자부품,컴퓨터,통신	2,122	2,130	2,162	205,460	201,470	196,575
의료,정밀,광학기기	918	929	989	30,460	31,315	31,812
전기장비	1,734	1,704	1,836	53,745	53,974	56,420
기타기계,장비	3,388	3,404	3,540	96,731	100,634	103,128
자동차	832	841	939	68,770	69,305	72,855
기타운송장비	57	55	58	1,480	1,819	1,839
가구	721	737	785	14,908	15,801	17,252
기타제품	425	393	412	9,548	9,382	9,796
계	22,727	22,792	23,955	835,813	844,866	870,00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18,901	19,350	19,694	7,154	7,391	7,711
담배	0	-	-	0	-	-
섬유제품	5,329	5,166	5,452	1,977	1,977	2,134
의복, 모피	1,276	1,210	1,262	543	465	484
가죽, 신발	2,154	2,225	2,089	578	590	570
목재, 나무	918	935	1,086	339	323	381
펄프, 종이	7,206	7,363	7,343	2,359	2,369	2,431
인쇄	1,969	1,898	2,022	909	880	956
석유정제품	283	-	-	72	55	54
화학제품	15,175	14,970	16,046	5,522	5,403	5,965
의약품	6,716	7,126	7,444	3,729	4,168	4,303
고무, 플라스틱	17,735	19,080	20,156	5,866	6,487	6,851
비금속광물	6,472	6,417	7,253	2,323	2,408	2,943
1차금속	14,004	13,758	13,650	3,022	2,811	2,325
금속가공	16,834	16,974	18,308	6,167	6,413	6,888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107,646	116,594	115,194	53,384	57,211	57,257
의료, 정밀, 광학기기	7,384	7,846	7,908	3,247	3,532	3,558
전기장비	16,692	16,200	16,610	5,136	5,143	5,594
기타기계, 장비	25,900	27,723	27,950	9,959	10,262	10,982
자동차	42,853	42,869	43,930	14,183	13,596	12,822
기타운송장비	317	455	424	125	204	170
가구	3,204	3,413	4,108	1,234	1,223	1,478
기타제품	1,648	1,596	1,783	701	670	741
계	320,614	333,396	339,974	128,530	133,581	136,60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10) 강원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278	302	329	9,386	9,931	10,464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5	8	6	175	226	158
의복,모피	16	15	13	595	670	552
가죽,신발	3	3	3	117	73	72
목재,나무	14	13	18	256	230	282
펄프,종이	14	15	19	369	392	440
인쇄	2	3	4	-	46	61
석유정제품	6	7	7	105	117	131
화학제품	38	39	33	1,284	1,326	1,338
의약품	15	16	20	894	1,051	1,135
고무,플라스틱	36	45	53	1,098	1,231	1,454
비금속광물	128	131	136	4,731	4,844	4,945
1차금속	14	20	16	901	866	710
금속가공	48	43	47	1,019	1,070	1,515
전자부품,컴퓨터,통신	12	9	9	456	309	266
의료,정밀,광학기기	40	43	45	1,888	2,001	2,081
전기장비	30	32	43	1,217	1,336	1,666
기타기계,장비	51	45	47	1,794	1,735	1,756
자동차	36	53	52	3,870	4,207	4,298
기타운송장비	2	2	1	-	-	-
가구	3	6	5	47	80	68
기타제품	11	11	9	380	370	408
계	802	861	915	30,668	32,149	33,82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2,789	3,027	3,574	1,107	1,218	1,548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23	29	25	7	12	10
의복, 모피	35	38	32	16	19	13
가죽, 신발	9	10	9	5	5	6
목재, 나무	49	45	59	19	17	25
펄프, 종이	72	72	79	20	25	28
인쇄	-	12	14	-	8	9
석유정제품	55	60	56	0	-2	0
화학제품	328	303	302	170	163	147
의약품	271	297	353	168	187	218
고무, 플라스틱	253	255	318	87	91	114
비금속광물	2,468	2,546	2,597	931	1,148	1,222
1차금속	808	695	583	179	126	103
금속가공	355	313	437	103	80	133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78	74	57	39	35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607	659	642	306	338	289
전기장비	465	426	649	88	82	195
기타기계, 장비	481	473	456	181	174	174
자동차	1,658	1,793	1,798	345	344	413
기타운송장비	-	-	-	-	-	-
가구	5	-	-	2	3	3
기타제품	44	48	52	23	23	24
계	10,864	11,190	12,098	3,799	4,098	4,70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11) 충청북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367	390	435	18734	19,151	22,130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80	81	76	3,568	3,469	3,175
의복,모피	10	4	7	293	167	217
가죽,신발	12	14	11	411	436	365
목재,나무	17	30	33	341	508	576
펄프,종이	86	98	109	3,937	4,081	4,412
인쇄	16	20	16	432	549	388
석유정제품	9	8	9	155	140	152
화학제품	177	196	224	8,949	9,530	10,464
의약품	59	59	66	4,606	4,528	5,038
고무,플라스틱	295	345	359	11,960	13,604	14,499
비금속광물	177	201	206	7,470	8,055	7,766
1차금속	86	92	99	2,927	3,204	3,290
금속가공	221	271	306	8,410	8,825	9,426
전자부품,컴퓨터,통신	151	153	156	28,092	29,100	30,947
의료,정밀,광학기기	50	50	54	3,459	3,310	3,156
전기장비	154	170	191	8,885	10,204	11,865
기타기계,장비	180	196	205	7,154	7,473	7,938
자동차	122	149	175	8,646	9,713	11,028
기타운송장비	5	7	10	284	413	452
가구	30	32	36	963	1,011	1,229
기타제품	23	24	24	1,057	1,070	1,123
계	2,327	2,590	2,807	130,733	138,541	149,63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9,409	9,881	10,219	3,685	4,208	4,255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955	1,004	912	305	316	310
의복, 모피	9	3	10	3	2	3
가죽, 신발	223	212	233	41	41	47
목재, 나무	103	128	185	37	47	63
펄프, 종이	2,039	2,117	2,162	812	892	864
인쇄	41	59	43	21	32	20
석유정제품	42	44	53	-1	-3	7
화학제품	5,169	5,733	5,759	2,091	2,440	2,445
의약품	2,554	2,688	2,782	1,288	1,301	1,416
고무, 플라스틱	3,969	4,558	4,790	1,265	1,450	1,703
비금속광물	3,049	3,348	3,412	1,251	1,402	1,398
1차금속	2,371	2,391	2,286	450	469	470
금속가공	2,675	2,852	2,891	923	1,065	1,037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14,195	14,678	15,348	5,781	6,237	6,9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799	655	627	324	274	289
전기장비	4,992	5,107	5,780	1,244	1,188	1,625
기타기계, 장비	2,033	2,432	2,469	711	829	878
자동차	4,279	4,713	5,461	1,088	1,185	1,459
기타운송장비	90	112	141	31	33	55
가구	334	324	370	158	159	156
기타제품	267	258	303	101	93	103
계	59,599	63,296	66,236	21,610	23,660	25,549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12) 충청남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395	435	454	16,679	17,970	18,249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96	106	105	3,297	3,357	3,297
의복,모피	35	33	30	1,189	1,017	866
가죽,신발	3	3	3	250	232	229
목재,나무	39	41	39	745	816	787
펄프,종이	86	89	105	3,378	3,367	3,803
인쇄	7	11	13	236	508	561
석유정제품	9	8	11	1,238	1,309	1,455
화학제품	187	211	230	11,165	12,265	12,842
의약품	39	39	39	3,121	3,124	3,079
고무,플라스틱	336	345	360	17,378	17,327	18,300
비금속광물	227	243	252	10,644	10,521	10,131
1차금속	147	174	180	12,392	14,644	15,282
금속가공	352	410	415	13,464	14,147	14,784
전자부품,컴퓨터,통신	153	156	154	40,091	43,987	43,685
의료,정밀,광학기기	74	77	84	3,700	3,635	4,500
전기장비	180	170	196	16,791	15,872	16,561
기타기계,장비	419	459	473	19,894	22,596	22,543
자동차	406	471	505	33,177	34,723	38,616
기타운송장비	14	12	10	995	858	549
가구	58	60	65	2,746	2,827	3,117
기타제품	17	15	17	470	527	549
계	3,279	3,568	3,740	213,040	225,629	233,785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8,514	8,842	8,489	2,878	2,797	2,648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1,268	1,203	1,280	350	278	328
의복, 모피	135	106	68	71	64	40
가죽, 신발	43	53	51	19	21	19
목재, 나무	146	164	240	47	60	93
펄프, 종이	1,633	1,724	1,841	450	530	623
인쇄	48	70	77	24	38	43
석유정제품	21,560	19,218	18,314	2,623	2,792	3,627
화학제품	23,683	24,629	28,367	4,960	5,820	6,022
의약품	2,121	1,972	1,936	1,263	1,156	1,170
고무, 플라스틱	7,016	6,981	7,126	2,693	2,545	2,537
비금속광물	5,117	4,965	4,579	3,435	3,114	2,638
1차금속	19,817	20,065	18,063	2,311	2,583	2,270
금속가공	5,312	5,631	5,713	1,518	1,805	1,851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46,233	41,334	37,282	22,995	20,800	17,996
의료, 정밀, 광학기기	1,043	889	1,256	395	335	510
전기장비	10,670	8,998	9,093	3,623	3,456	3,091
기타기계, 장비	7,267	8,198	8,993	2,032	2,812	2,886
자동차	20,177	21,170	22,526	6,271	7,029	7,719
기타운송장비	281	263	189	127	109	84
가구	1,296	1,358	1,499	180	293	301
기타제품	61	62	61	31	37	36
계	183,440	177,896	177,045	58,296	58,476	56,53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13) 전라북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288	302	327	14,274	15,283	17,146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51	51	59	2,605	3,006	3,024
의복,모피	137	131	112	3,165	3,118	2,776
가죽,신발	2	3	3	-	126	102
목재,나무	46	41	46	1,009	992	1,084
펄프,종이	45	54	54	2,311	2,701	2,619
인쇄	6	6	7	125	129	151
석유정제품	4	5	5	61	105	108
화학제품	103	106	115	7,101	7,862	7,987
의약품	12	9	8	811	814	765
고무,플라스틱	97	95	95	3,296	3,623	3,541
비금속광물	156	162	160	4,835	4,822	4,571
1차금속	71	79	76	4,745	4,872	5,070
금속가공	191	195	195	6,255	6,192	6,309
전자부품,컴퓨터,통신	29	36	39	2,852	3,827	4,031
의료,정밀,광학기기	15	13	17	362	384	425
전기장비	55	66	70	2,664	2,630	2,518
기타기계,장비	148	151	143	6,531	6,701	6,662
자동차	206	231	219	18,092	20,019	19,688
기타운송장비	33	42	38	2,267	2,530	2,420
가구	21	25	24	1,125	1,155	997
기타제품	23	21	23	595	580	604
계	1,739	1,824	1,835	85,152	91,471	92,598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6,739	7,127	7,497	1,957	1,834	2,108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458	507	479	128	145	156
의복, 모피	312	371	331	132	164	158
가죽, 신발	-	29	23	-	16	14
목재, 나무	522	482	508	152	132	149
펄프, 종이	1,441	1,439	1,386	472	458	426
인쇄	-	16	18	7	8	9
석유정제품	39	32	40	7	0	5
화학제품	7,007	7,298	7,164	2,027	2,017	2,471
의약품	489	464	427	292	271	262
고무, 플라스틱	946	1,014	1,021	298	308	315
비금속광물	1,478	1,608	1,574	558	628	676
1차금속	4,735	4,598	4,761	1,077	955	1,119
금속가공	997	1,011	1,140	445	453	518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918	1,247	1,094	368	498	485
의료, 정밀, 광학기기	57	55	55	22	22	23
전기장비	933	801	908	249	179	289
기타기계, 장비	2,782	2,672	2,946	1,021	992	1,037
자동차	11,741	11,482	11,235	2,505	2,730	3,488
기타운송장비	1,058	1,069	1,026	309	362	227
가구	334	283	264	55	20	51
기타제품	135	121	116	47	44	44
계	43,146	43,723	44,011	12,136	12,234	14,03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14) 전라남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359	334	381	10,766	9,629	10,152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25	27	23	787	856	748
의복,모피	8	13	11	409	549	489
가죽,신발	0	1	1	0	-	-
목재,나무	23	27	26	453	533	523
펄프,종이	17	15	18	642	635	747
인쇄	3	5	3	49	-	-
석유정제품	4	4	5	1,990	1,782	1,741
화학제품	103	113	118	13,060	12,913	13,465
의약품	6	6	7	401	412	463
고무,플라스틱	80	86	89	4,250	4,231	4,477
비금속광물	164	173	174	4,029	4,438	4,685
1차금속	75	82	91	10,015	10,100	10,850
금속가공	165	185	202	7,312	6,540	7,365
전자부품,컴퓨터,통신	7	7	12	368	475	570
의료,정밀,광학기기	14	13	11	236	208	190
전기장비	39	47	46	1,673	1,628	1,509
기타기계,장비	69	80	85	3,137	3,235	3,050
자동차	21	21	24	663	741	923
기타운송장비	213	257	292	22,539	20,906	24,160
가구	7	7	10	239	241	228
기타제품	8	8	12	200	126	162
계	1,410	1,511	1,641	83,218	80,268	86,57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2,749	2,727	2,946	777	826	831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134	153	148	36	58	54
의복, 모피	56	61	59	21	26	26
가죽, 신발	0	-	-	0	-	-
목재, 나무	90	103	120	27	34	51
펄프, 종이	326	293	282	88	68	73
인쇄	4	-	-	2	-	-
석유정제품	43,941	43,464	37,366	8,731	8,574	8,970
화학제품	44,632	46,462	40,863	9,131	9,927	7,523
의약품	111	151	170	75	90	81
고무, 플라스틱	1,890	1,835	2,214	646	598	782
비금속광물	1,614	1,904	2,009	649	746	806
1차금속	23,005	20,003	20,422	6,051	5,012	5,329
금속가공	1,891	1,775	1,921	668	674	74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65	76	91	20	24	45
의료, 정밀, 광학기기	34	23	24	16	12	12
전기장비	457	479	445	103	115	139
기타기계, 장비	1,019	1,170	1,057	346	442	408
자동차	153	167	247	60	38	80
기타운송장비	5,987	5,119	6,306	1,868	1,526	1,600
가구	33	37	54	9	7	16
기타제품	40	13	17	10	8	11
계	128,231	126,018	116,764	29,334	28,808	27,57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15) 경상북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308	310	320	11,811	11,954	12,553
담배	2	2	2	-	-	-
섬유제품	518	515	502	14,570	14,290	13,556
의복,모피	24	19	23	965	696	829
가죽,신발	5	6	6	287	215	126
목재,나무	52	53	59	977	877	986
펄프,종이	103	116	123	3,306	3,823	3,820
인쇄	18	15	13	371	285	269
석유정제품	20	21	20	429	424	399
화학제품	228	250	235	9,328	9,849	9,623
의약품	13	12	15	367	353	554
고무,플라스틱	459	479	472	18,879	20,146	20,078
비금속광물	299	312	311	12,549	12,484	12,074
1차금속	331	342	374	27,931	27,968	28,670
금속가공	629	638	687	22,232	22,376	24,680
전자부품,컴퓨터,통신	324	348	373	55,759	54,120	50,900
의료,정밀,광학기기	74	74	73	4,603	5,881	5,905
전기장비	212	209	238	11,859	12,013	13,210
기타기계,장비	494	565	583	15,885	17,310	17,697
자동차	380	471	568	24,507	29,118	30,875
기타운송장비	65	77	79	2,025	2,088	2,057
가구	61	58	80	3,200	3,378	4,097
기타제품	16	32	27	531	1,099	872
계	4,635	4,924	5,183	242,818	251,175	254,24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3,741	3,670	3,958	1,092	1,124	1,160
담배	-	-	-	-	-	-
섬유제품	4,621	4,454	3,956	1,544	1,455	1,334
의복, 모피	119	87	89	50	21	39
가죽, 신발	-	-	-	10	13	7
목재, 나무	230	252	235	75	87	92
펄프, 종이	1,222	1,247	1,250	499	476	483
인쇄	58	45	36	29	24	18
석유정제품	179	184	165	52	48	43
화학제품	7,522	7,439	6,348	2,157	2,148	1,906
의약품	67	68	129	18	23	46
고무, 플라스틱	6,254	6,469	6,821	1,919	2,286	2,281
비금속광물	5,152	4,614	4,249	2,086	2,111	1,958
1차금속	38,818	34,492	33,700	7,615	6,468	5,812
금속가공	6,862	7,507	8,124	2,330	2,410	3,04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63,576	63,430	58,996	25,469	25,014	23,552
의료, 정밀, 광학기기	626	1,360	1,471	270	625	668
전기장비	5,736	5,944	6,192	1,255	1,374	1,574
기타기계, 장비	4,713	4,732	4,829	1,668	1,753	1,817
자동차	9,200	10,725	11,581	2,678	2,977	3,508
기타운송장비	469	392	365	156	162	146
가구	1,638	1,675	1,965	371	354	454
기타제품	266	306	313	121	152	166
계	162,120	159,884	155,967	52,019	51,545	50,84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16) 경상남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405	403	438	17,591	17,614	17,512
담배	2	2	2	-	-	-
섬유제품	171	172	175	5,194	5,336	5,258
의복,모피	24	19	18	888	886	801
가죽,신발	27	29	29	942	770	828
목재,나무	70	80	86	1,502	1,607	1,607
펄프,종이	109	121	116	3,763	4,153	4,091
인쇄	32	26	25	590	517	513
석유정제품	17	20	17	380	454	429
화학제품	155	157	159	4,263	4,319	4,442
의약품	8	8	9	332	338	376
고무,플라스틱	498	516	539	24,785	25,852	26,258
비금속광물	249	256	258	7,019	7,035	7,070
1차금속	399	398	398	19,037	18,834	19,264
금속가공	1,215	1,311	1,381	45,387	46,987	48,015
전자부품,컴퓨터,통신	128	119	126	8,155	6,741	6,875
의료,정밀,광학기기	111	112	117	4,604	4,998	4,780
전기장비	320	334	366	18,848	19,520	20,526
기타기계,장비	1,372	1,445	1,467	57,667	59,284	58,789
자동차	655	738	797	31,357	34,151	38,606
기타운송장비	701	707	759	84,751	79,453	82,005
가구	64	62	74	1,970	1,717	1,954
기타제품	42	43	40	1,065	1,126	1,080
계	6,774	7,078	7,396	340,667	342,259	351,80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7,170	7,313	7,569	2,639	2,750	2,879
담배	-	-	-	-	-	-
섬유제품	1,097	1,091	1,062	342	366	377
의복, 모피	103	110	146	47	51	64
가죽, 신발	205	172	205	72	65	64
목재, 나무	258	295	333	107	113	115
펄프, 종이	1,709	1,887	1,749	510	533	493
인쇄	-	-	-	32	28	30
석유정제품	347	314	315	119	102	82
화학제품	1,934	1,724	1,832	608	536	592
의약품	76	74	82	42	41	47
고무, 플라스틱	7,418	7,611	7,587	2,646	2,708	2,695
비금속광물	2,052	2,175	2,084	818	854	866
1차금속	10,909	9,869	9,745	2,311	2,123	2,305
금속가공	17,952	16,673	15,530	9,406	8,465	7,788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3,627	2,332	1,659	861	706	554
의료, 정밀, 광학기기	1,374	1,533	1,388	480	500	487
전기장비	8,685	8,372	8,697	2,933	2,587	2,796
기타기계, 장비	27,048	24,437	24,138	8,889	8,045	8,388
자동차	13,957	14,784	15,457	4,097	4,383	4,939
기타운송장비	43,645	42,508	41,342	12,731	11,358	11,435
가구	581	536	573	171	172	176
기타제품	198	191	159	92	78	76
계	151,274	144,988	142,673	50,458	47,082	47,789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17)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87	97	99	2,519	2,583	2,709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1	1	0	-	-	0
의복,모피	2	1	3	-	-	71
가죽,신발	0	0	2	0	0	-
목재,나무	3	3	1	37	34	-
펄프,종이	10	10	10	245	289	270
인쇄	1	0	3	-	0	30
석유정제품	1	1	-	-	-	-
화학제품	9	6	11	156	124	199
의약품	1	1	1	-	-	-
고무,플라스틱	14	11	13	235	182	221
비금속광물	46	43	46	752	683	701
1차금속	0	0	0	0	0	0
금속가공	4	2	3	85	-	50
전자부품,컴퓨터,통신	2	1	1	-	-	-
의료,정밀,광학기기	3	2	2	46	-	-
전기장비	3	7	3	32	82	32
기타기계,장비	2	4	4	-	46	45
자동차	0	0	0	0	0	0
기타운송장비	0	0	0	0	0	0
가구	1	1	1	-	-	-
기타제품	3	2	2	45	-	-
계	193	193	205	4,459	4,323	4,58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도

(단위 : 십억원)

구분	생산액			부가가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	679	732	810	274	327	325
담배	0	0	0	0	0	0
섬유제품	-	-	0	-	-	0
의복, 모피	-	-	9	-	-	3
가죽, 신발	0	0	-	0	0	-
목재, 나무	11	2	-	1	1	-
펄프, 종이	56	58	54	15	19	18
인쇄	-	0	2	-	0	1
석유정제품	-	-	-	-	-	-
화학제품	32	35	38	12	14	16
의약품	-	-	-	-	-	-
고무, 플라스틱	40	36	53	13	11	17
비금속광물	252	245	280	105	100	112
1차금속	0	0	0	0	0	0
금속가공	11	-	9	3	-	4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	-	-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2	-	-	2	-	-
전기장비	4	10	5	2	3	2
기타기계, 장비	-	11	8	-	4	3
자동차	0	0	0	0	0	0
기타운송장비	0	0	0	0	0	0
가구	-	-	-	-	-	-
기타제품	3	-	-	1	-	-
계	1,185	1,184	1,329	458	503	523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호

## II. 공장등록 통계

### 1. 공장등록 현황

#### (1) 연도별 공장등록 현황

(단위 : 개사, 명, 천㎡)

구분	공장등록수	고용인원*	용지면적	건축면적**
2005년	110,352	2,742,179	562,735	261,782
2006년	117,051	2,835,675	568,069	277,157
2007년	124,698	2,905,792	590,348	272,732
2008년	130,020	2,960,971	613,111	278,941
2009년	136,681	3,044,843	640,475	283,739
2010년	142,580	3,127,632	666,228	294,421
2011년	149,271	3,221,630	689,049	314,210
2012년	154,023	3,281,326	699,517	320,099
2013년	161,709	3,409,491	731,553	340,477
2014년	168,126	3,523,380	754,411	371,77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 고용인원 : 사업계획서상의 고용예정인원

\*\* 건축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2) 규모별 공장등록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공장등록수		
	2012년	2013년	2014년
대기업	1,162	1,051	1,041
중기업	8,683	8,953	9,235
소기업	144,178	151,705	157,850
계	154,023	161,709	168,12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단위 : 천㎡)

구분	용지면적			건축면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기업	196,567	194,120	194,711	83,738	82,691	85,042
중기업	148,184	158,432	163,410	76,619	82,184	98,092
소기업	354,766	379,001	396,291	159,742	175,602	188,639
계	699,517	731,553	754,411	320,099	340,477	371,77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3) 설립형태별 공장등록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공장등록수		
		2012년	2013년	2014년
개별	일반	98,247	102,091	105,208
	창업	6,091	6,373	6,804
	소계	104,338	108,464	112,012
계획	국가산업단지	24,112	25,918	27,209
	일반산업단지	19,049	20,532	21,876
	농공단지	6,108	6,363	6,602
	자유무역지역	215	218	240
	외국인투자지역	201	214	187
	소계	49,685	53,245	56,114
계		154,023	161,709	168,12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단위 : 천㎡)

구분		용지면적			건축면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별	일반	319,923	332,434	341,489	131,595	139,290	144,508
	창업	33,961	34,834	36,090	9,673	9,965	10,320
	소계	353,884	367,268	377,579	141,268	149,255	154,828
계획	국가산업단지	165,930	172,847	175,375	85,358	89,674	90,771
	일반산업단지	128,930	138,573	145,456	70,225	77,039	84,175
	농공단지	42,869	43,378	46,609	19,265	20,658	37,938
	자유무역지역	2,012	6,577	6,252	2,026	2,255	2,355
	외국인투자지역	5,893	2,910	3,141	1,957	1,596	1,707
	소계	345,634	364,285	376,833	178,831	191,222	216,946
계		699,517	731,553	754,411	320,099	340,477	371,77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 (4) 용도지역별 공장등록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공장등록수		
	2012년	2013년	2014년
도시지역	96,913	102,442	106,646
관리지역	53,276	55,860	58,141
농림지역	2,079	2,168	2,257
자연환경보전지역	258	249	241
기타	1,497	990	841
계	154,023	161,709	168,12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단위 : 천㎡)

구분	용지면적			건축면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도시지역	437,396	457,850	471,163	229,612	240,374	251,215
관리지역	248,505	261,348	271,568	86,052	96,260	116,834
농림지역	7,826	8,246	8,592	2,249	2,349	2,467
자연환경보전지역	806	789	750	247	243	225
기타	4,985	3,321	2,339	1,939	1,253	1,033
계	699,517	731,553	754,411	320,099	340,477	371,77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 (5) 지역별 공장등록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공장등록수			고용인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특별시	10,689	11,024	10,808	162,687	167,136	162,441
부산광역시	8,939	9,538	10,069	162,463	169,224	172,425
대구광역시	6,937	7,263	7,457	125,728	130,317	132,461
인천광역시	9,680	9,878	10,453	195,090	199,883	211,576
광주광역시	3,454	3,594	3,795	72,574	80,236	82,586
대전광역시	2,254	2,348	2,400	50,120	50,849	49,922
울산광역시	2,272	2,366	2,457	146,071	150,045	150,857
세종특별자치시	626	677	706	17,648	19,729	19,433
경기도	54,879	57,666	60,174	1,025,708	1,056,162	1,082,134
강원도	2,945	3,160	3,316	46,899	47,812	49,651
충청북도	6,040	6,601	6,934	151,803	161,473	168,364
충청남도	7,328	7,816	8,223	253,302	268,890	283,880
전라북도	4,913	5,165	5,382	103,246	111,656	115,906
전라남도	5,368	5,532	5,724	107,610	108,750	113,235
경상북도	11,412	12,076	12,582	285,569	305,935	310,720
경상남도	15,628	16,324	16,982	367,943	373,991	410,555
제주특별자치도	659	681	664	6,865	7,403	7,234
계	154,023	161,709	168,126	3,281,326	3,409,491	3,523,38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단위 : 천㎡)

구분	용지면적			건축면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특별시	3,635	3,773	3,407	4,557	4,727	4,634
부산광역시	21,731	22,859	22,192	14,157	15,069	15,387
대구광역시	15,816	17,723	18,463	11,274	11,717	12,335
인천광역시	20,511	21,076	21,357	14,540	15,127	15,779
광주광역시	12,619	13,362	13,996	7,035	7,170	7,444
대전광역시	8,268	8,421	8,399	4,477	4,630	4,580
울산광역시	47,485	49,024	49,591	18,523	19,254	19,725
세종특별자치시	6,447	6,686	6,692	2,272	2,358	2,401
경기도	137,347	141,610	148,075	78,825	81,209	84,776
강원도	19,194	19,374	20,018	5,850	5,960	6,220
충청북도	52,005	55,605	58,080	18,309	20,121	21,346
충청남도	81,279	85,671	90,625	29,283	36,632	52,126
전라북도	39,690	43,752	44,772	13,750	14,707	18,570
전라남도	67,782	68,526	69,800	22,902	22,874	23,350
경상북도	81,838	86,733	89,093	37,498	39,735	41,061
경상남도	81,102	84,432	86,977	35,925	38,211	41,061
제주특별자치도	2,768	2,924	2,874	923	976	979
계	699,517	731,553	754,411	320,099	340,477	371,77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 (6) 업종별 공장등록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공장등록수		
	2012년	2013년	2014년
식료품	12,653	13,257	13,742
음료	869	900	920
담배	15	13	11
섬유제품	7,259	7,435	7,572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목피제품	2,969	3,067	3,184
가죽, 가방및신발	1,025	1,055	1,094
목재및나무제품	3,067	3,133	3,248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3,179	3,269	3,350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155	4,305	4,374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268	274	275
화학물질및화학제품	6,803	7,146	7,4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916	980	1,01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0,044	10,511	10,948
비금속광물제품	6,794	6,956	7,016
제1차금속	4,432	4,617	4,748
금속가공제품	22,087	23,607	25,048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11,181	11,815	12,162
의료, 정밀, 과학기기및시계	4,531	4,852	5,092
전기장비	11,772	12,462	12,956
기타기계및장비	23,914	25,229	26,371
자동차및트레일러	6,671	7,052	7,430
기타운송장비	3,044	3,134	3,292
가구	3,085	3,218	3,359
기타제품	3,273	3,409	3,500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	17	13	2
계	154,023	161,709	168,12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단위 : 천㎡)

구분	용지면적			건축면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식료품	50,364	53,801	55,290	22,956	23,884	27,929
음료	7,434	7,693	8,153	2,804	2,950	3,137
담배	1,770	1,567	1,575	788	698	713
섬유제품	27,197	27,909	27,921	16,425	16,780	16,90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목피제품	3,087	3,155	3,068	2,636	2,671	2,701
가죽, 가방및신발	1,999	2,002	1,992	1,664	1,688	1,673
목재및나무제품	13,200	12,243	12,623	4,010	4,017	4,10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16,924	17,325	17,547	8,405	8,683	22,151
인쇄및기록매체복제	5,095	5,253	5,457	3,249	3,461	3,597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17,929	18,338	18,169	3,984	4,098	4,201
화학물질및화학제품	68,743	70,342	71,561	24,342	25,803	26,596
의료용물질및의약품	6,428	6,902	7,264	3,671	3,920	4,089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37,345	39,567	43,406	17,759	18,532	20,305
비금속광물제품	67,467	69,239	69,127	17,054	18,296	18,338
제1차금속	74,861	76,953	77,938	29,868	31,168	32,278
금속가공제품	74,374	80,260	83,055	30,444	32,328	33,828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35,573	36,307	36,857	29,236	29,942	31,588
의료, 정밀, 과학기기및시계	5,693	6,198	6,493	4,064	4,423	4,630
전기장비	22,444	24,678	28,560	16,112	17,046	18,111
기타기계및장비	58,592	63,162	66,356	31,720	39,346	42,304
자동차및트레일러	56,321	59,269	60,975	27,841	29,504	30,856
기타운송장비	34,252	36,791	38,148	14,859	15,053	15,472
가구	7,848	8,067	8,502	3,672	3,757	3,885
기타제품	4,499	4,474	4,372	2,517	2,416	2,389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	81	58	2	19	15	1
계	699,517	731,553	754,411	320,099	340,477	371,77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 2. 연도별·지역별 공장등록 현황

### (1) 공장등록수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5년	9,690	7,459	4,728	8,029	2,001	1,270	1,463	-
2006년	9,907	7,711	5,348	7,959	2,550	1,381	1,570	-
2007년	9,989	7,946	5,307	8,103	2,738	1,498	1,665	-
2008년	10,085	7,932	5,536	8,449	2,645	1,660	1,773	-
2009년	10,015	8,127	5,885	8,891	2,871	1,809	1,907	-
2010년	10,377	8,348	6,351	9,255	3,059	2,001	2,028	-
2011년	10,618	8,732	6,618	9,676	3,245	2,138	2,136	-
2012년	10,689	8,939	6,937	9,680	3,454	2,254	2,272	626
2013년	11,024	9,538	7,263	9,878	3,594	2,348	2,366	677
2014년	10,808	10,069	7,457	10,453	3,795	2,400	2,457	706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년	37,128	1,922	4,581	5,204	3,584	3,610	8,488	10,726	469
2006년	39,891	2,078	4,784	5,507	3,785	3,851	8,840	11,393	496
2007년	44,043	2,260	5,075	5,867	3,909	4,087	9,300	12,386	525
2008년	46,877	2,374	5,159	6,218	3,958	4,325	9,465	13,005	559
2009년	49,542	2,518	5,482	6,592	4,218	4,672	9,911	13,653	588
2010년	51,176	2,665	5,785	6,942	4,458	5,001	10,361	14,153	620
2011년	53,380	2,841	6,024	7,569	4,709	5,151	10,852	14,928	654
2012년	54,879	2,945	6,040	7,328	4,913	5,368	11,412	15,628	659
2013년	57,666	3,160	6,601	7,816	5,165	5,532	12,076	16,324	681
2014년	60,174	3,316	6,934	8,223	5,382	5,724	12,582	16,982	66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 (2) 고용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5년	173,097	170,888	101,760	185,047	55,561	32,415	130,120	-
2006년	172,413	166,080	110,178	182,460	86,855	34,137	131,158	-
2007년	170,369	159,548	107,167	182,555	87,119	34,901	132,585	-
2008년	162,137	155,620	111,059	187,087	81,963	38,540	135,861	-
2009년	158,512	157,605	113,321	187,593	64,990	41,753	139,674	-
2010년	163,975	159,036	119,610	188,512	75,153	46,112	139,909	-
2011년	162,993	161,242	122,025	194,815	77,087	48,046	143,210	-
2012년	162,687	162,463	125,728	195,090	72,574	50,120	146,071	17,648
2013년	167,136	169,224	130,317	199,883	80,236	50,849	150,045	19,729
2014년	162,441	172,425	132,461	211,576	82,586	49,922	150,857	19,43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년	847,271	38,368	119,159	169,404	82,497	78,916	257,118	295,079	5,479
2006년	873,141	39,576	122,208	181,589	81,732	79,801	263,418	305,353	5,576
2007년	907,102	40,097	128,435	190,857	83,356	89,066	269,800	317,020	5,815
2008년	912,967	40,339	133,460	211,694	85,790	91,808	273,778	332,998	5,870
2009년	952,326	41,820	144,027	220,253	91,683	96,164	282,213	346,856	6,053
2010년	968,854	43,700	150,531	239,681	92,144	103,300	282,053	348,741	6,321
2011년	992,398	45,793	154,999	256,217	102,866	104,977	288,545	359,759	6,658
2012년	1,025,708	46,899	151,803	253,302	103,246	107,610	285,569	367,943	6,865
2013년	1,056,162	47,812	161,473	268,890	111,656	108,750	305,935	373,991	7,403
2014년	1,082,134	49,651	168,364	283,880	115,906	113,235	310,720	410,555	7,23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3) 용지면적 현황

(단위 : 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5년	4,532	19,232	12,573	22,424	10,784	7,572	42,110	-
2006년	4,324	17,455	13,423	20,306	12,320	6,807	42,141	-
2007년	4,134	18,119	13,000	20,065	12,364	7,121	42,850	-
2008년	3,932	19,274	13,628	20,042	11,363	7,508	44,212	-
2009년	3,735	19,775	13,907	20,135	11,417	7,551	45,784	-
2010년	3,656	20,574	14,536	20,168	12,146	7,750	46,168	-
2011년	3,559	21,432	15,401	20,738	12,419	7,895	47,065	-
2012년	3,635	21,731	15,816	20,511	12,619	8,268	47,485	6,447
2013년	3,773	22,859	17,723	21,076	13,362	8,421	49,024	6,686
2014년	3,407	22,192	18,463	21,357	13,996	8,399	49,591	6,69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년	111,713	18,319	40,580	58,283	30,468	51,149	68,457	62,235	2,303
2006년	112,651	18,346	42,238	60,177	31,152	50,836	69,939	63,601	2,352
2007년	120,809	17,038	44,300	62,923	32,746	52,602	72,054	67,800	2,424
2008년	124,558	17,145	45,715	68,650	35,032	55,820	73,687	70,028	2,516
2009년	129,804	17,597	48,875	73,186	36,695	59,249	76,515	73,720	2,529
2010년	132,405	18,318	51,314	81,500	38,203	62,255	78,574	76,020	2,640
2011년	135,372	18,802	53,088	85,582	40,490	66,077	80,330	78,051	2,750
2012년	137,347	19,194	52,005	81,279	39,690	67,782	81,838	81,102	2,768
2013년	141,610	19,374	55,605	85,671	43,752	68,526	86,733	84,432	2,924
2014년	148,075	20,018	58,080	90,625	44,772	69,800	89,093	86,977	2,87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 (4) 건축면적 현황

(단위 : 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5년	4,715	11,817	7,992	12,900	5,026	5,521	15,434	-
2006년	4,806	11,487	9,188	23,890	5,586	3,228	15,744	-
2007년	4,760	11,709	9,124	13,184	5,708	3,494	16,015	-
2008년	4,501	12,010	9,555	13,446	5,416	3,774	16,594	-
2009년	4,426	12,576	9,856	13,611	5,642	3,901	17,552	-
2010년	4,527	13,070	10,312	13,883	6,161	4,221	17,757	-
2011년	4,568	13,758	10,897	14,462	6,759	4,493	18,294	-
2012년	4,557	14,157	11,274	14,540	7,035	4,477	18,523	2,272
2013년	4,727	15,069	11,717	15,127	7,170	4,630	19,254	2,358
2014년	4,634	15,387	12,335	15,779	7,444	4,580	19,725	2,40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년	56,081	6,925	19,435	25,877	11,806	18,168	30,381	28,950	754
2006년	60,184	5,681	19,876	26,631	11,958	18,135	31,182	28,818	763
2007년	64,047	5,344	16,651	28,114	12,497	19,203	32,066	30,032	784
2008년	66,485	5,350	15,786	30,368	11,404	19,318	32,809	31,310	816
2009년	69,068	5,348	17,005	25,805	12,077	20,216	33,966	31,854	835
2010년	69,422	5,570	17,714	28,606	13,125	21,327	34,818	33,030	877
2011년	75,819	5,777	18,488	30,896	16,179	22,483	36,034	34,389	913
2012년	78,825	5,850	18,309	29,283	13,750	22,902	37,498	35,925	923
2013년	81,209	5,960	20,121	36,632	14,707	22,874	39,735	38,211	976
2014년	84,776	6,220	21,346	52,126	18,570	23,350	41,061	41,061	97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 Ⅲ. 산업단지 통계

#### 1. 산업단지 현황

##### (1) 산업단지 총괄 현황

(단위 : 개, 천㎡, %)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41	789,805	537,690	259,876	255,350	4,526	98.3
일반	582	523,446	520,070	221,201	197,407	23,794	89.2
도시첨단	16	4,853	4,850	562	528	34	94.0
농공	463	74,823	74,478	53,228	50,132	3,096	94.2
계	1,102	1,392,927	1,137,088	534,867	503,417	31,450	94.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2015. 9

주 1) 국가산업단지 중 제조시설이 없는 산업단지는 통계대상에서 제외됨

- 총 5개 단지 : 고정국가산업단지, 대죽지원비축기지, 삼일지원비축기지, 월성원전, 지세포지원비축기지

2) 분양대상 면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된 면적(미개발면적 제외), 분양률은 분양대상용지 중 분양된 면적의 비율임

## (2)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계
서울특별시	1	2	-	-	3
부산광역시	1	28	2	1	32
대구광역시	1	14	1	2	18
인천광역시	2	9	1	-	12
광주광역시	2	6	-	1	9
대전광역시	1	2	-	-	3
울산광역시	2	18	-	4	24
세종특별자치시	-	9	1	4	14
경기도	4	131	2	1	138
강원도	1	23	3	42	69
충청북도	2	60	2	43	107
충청남도	5	50	2	92	149
전라북도	4	23	1	57	85
전라남도	5	33	-	63	101
경상북도	6	69	-	68	143
경상남도	7	104	1	82	194
제주특별자치도	1	1	-	3	5
계	41*	582	16	463	1,10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2015. 9

주 : 국가산업단지 집계에서 2지역 이상에 걸친 산업단지에 대하여 각 지역에는 별도로 집계하였으나, 집계 항목에는 중복 집계하지 않음. 이는 “지역별 산업단지 분양 현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총 4개 단지 : 한국수출산업단지(서울·인천), 빛그린국가산업단지(광주·전남), 아산국가산업단지(경기·충남),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경남)

## 2. 지역별 산업단지 분양 현황

(단위 : 천㎡, %)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계	국가	41	789,805	537,690	259,876	255,350	4,526	98.3
	일반	582	523,446	520,070	221,201	197,407	23,794	89.2
	도시첨단	16	4,853	4,850	562	528	34	94.0
	농공	463	74,823	74,478	53,228	50,132	3,096	94.2
서울	국가	1	1,922	1,922	1,446	1,446	-	100.0
	일반	2	1,269	1,269	699	456	234	65.2
부산	국가	1	8,841	8,814	4,317	4,317	-	100.0
	일반	28	33,051	32,913	12,619	12,125	494	96.1
	도시첨단	2	240	239	133	133	-	100.0
	농공	1	258	258	189	189	-	100.0
대구	국가	1	8,549	7,435	-	-	-	-
	일반	14	34,101	33,270	16,967	16,112	855	95.0
	도시첨단	1	149	149	-	-	-	-
	농공	2	353	350	284	284	-	100.0
인천	국가	2	11,360	11,359	7,375	7,375	-	100.0
	일반	9	8,320	8,318	4,735	4,522	213	95.5
	도시첨단	1	1,179	1,179	-	-	-	-
광주	국가	2	11,838	7,571	3,488	3,395	93	97.3
	일반	6	14,340	14,339	10,092	9,750	342	96.6
	농공	1	324	324	262	262	-	100.0
대전	국가	1	67,809	67,809	4,398	4,398	-	100.0
	일반	2	1,563	1,563	1,049	992	57	94.6
울산	국가	2	74,383	66,128	51,246	51,246	-	100.0
	일반	18	13,750	13,752	6,805	5,327	1,478	78.3
	농공	4	594	594	458	458	-	100.0
세종	일반	9	6,297	6,287	3,945	3,761	184	95.3
	도시첨단	1	752	752	-	-	-	-
	농공	4	558	556	480	480	-	100.0

## 제4편 산업입지 관련 통계

(단위 : 천㎡, %)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경기	국가	4	178,538	56,611	30,172	30,172	-	100.0
	일반	131	57,006	56,385	26,819	24,581	2,238	91.7
	도시첨단	2	404	404	134	129	5	96.3
	농공	1	117	117	117	117	-	100.0
강원	국가	1	4,030	1,863	1,194	1,047	147	87.7
	일반	23	14,319	14,408	6,701	5,340	1,361	79.7
	도시첨단	3	312	312	113	84	29	74.3
	농공	42	6,876	6,858	4,767	4,200	567	88.1
충북	국가	2	8,806	6,773	2,507	2,507	-	100.0
	일반	60	49,533	49,039	19,217	17,005	2,212	88.5
	도시첨단	2	263	263	30	30	-	100.0
	농공	43	6,215	6,158	4,786	4,669	117	97.6
충남	국가	5	28,062	25,366	11,212	7,523	3,689	67.1
	일반	50	64,059	64,248	32,326	29,484	2,842	91.2
	도시첨단	2	1,299	1,299	31	31	-	100.0
	농공	92	14,590	14,566	10,409	9,993	416	96.0
전북	국가	4	67,820	25,099	16,691	16,687	4	100.0
	일반	23	51,981	51,997	24,158	19,305	4,853	79.9
	도시첨단	1	110	110	39	39	-	100.0
	농공	57	10,544	10,524	7,080	6,378	702	90.1
전남	국가	5	174,319	145,858	65,367	65,027	340	99.5
	일반	33	66,648	66,583	15,335	10,815	4,520	70.5
	농공	63	10,675	10,580	7,324	6,816	508	93.1
경북	국가	6	83,847	57,141	32,170	31,917	253	99.2
	일반	69	48,847	48,656	19,549	18,480	1,069	94.5
	농공	68	11,430	11,367	8,240	7,669	571	93.1
경남	국가	7	58,582	46,870	27,918	27,918	-	100.0
	일반	104	58,165	56,846	20,097	19,264	833	95.9
	도시첨단	1	145	143	82	82	-	100.0
	농공	82	11,977	11,914	8,592	8,377	215	97.5
제주	국가	1	1,099	1,071	375	375	-	100.0
	일반	1	197	197	88	88	-	100.0
	농공	3	312	312	240	240	-	1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2015.9

## 3. 지역별 산업단지 입주·고용 현황

(단위 : 개사, 명)

구분	유형	입주계약	가동	고용
계	국가	49,497	46,135	1,209,683
	일반	25,968	23,284	756,660
	도시첨단	190	152	3,992
	농공	6,734	5,984	148,984
서울	국가	9,602	8,353	157,217
	일반	191	155	1,680
부산	국가	1,518	1,423	34,886
	일반	3,831	3,145	54,409
	도시첨단	22	-	-
	농공	24	24	1,599
대구	국가	130	-	-
	일반	4,187	4,058	96,642
	도시첨단	-	-	-
	농공	70	70	1,247
인천	국가	8,183	8,028	137,508
	일반	1,426	1,267	24,648
	도시첨단	-	-	-
광주	국가	774	578	14,229
	일반	1,868	1,805	48,421
	농공	69	61	1,704
대전	국가	1,137	1,022	27,012
	일반	195	181	3,832
울산	국가	1,198	1,052	123,124
	일반	449	282	12,993
	농공	99	97	3,213
세종	일반	89	82	5,974
	도시첨단	-	-	-
	농공	32	32	2,264

(단위 : 개사, 명)

구분	유형	입주계약	가동	고용
경기	국가	20,322	19,642	323,956
	일반	6,644	6,169	182,607
	도시첨단	34	18	1,563
	농공	5	5	243
강원	국가	58	39	700
	일반	341	325	8,445
	도시첨단	32	32	867
	농공	1,067	929	16,161
충북	국가	62	47	3,319
	일반	994	839	57,748
	도시첨단	76	76	450
	농공	385	340	14,651
충남	국가	224	166	6,693
	일반	1,021	806	96,016
	도시첨단	-	-	-
	농공	1,028	918	31,819
전북	국가	879	727	21,267
	일반	888	836	39,628
	도시첨단	25	25	306
	농공	758	683	13,386
전남	국가	711	642	43,176
	일반	376	240	14,882
	농공	1,173	1,011	15,948
경북	국가	2,179	2,003	115,742
	일반	1,671	1,486	45,058
	농공	943	857	21,893
경남	국가	2,497	2,395	199,800
	일반	1,788	1,605	63,615
	도시첨단	1	1	X
	농공	1,020	901	24,309
제주	국가	23	18	1,154
	일반	9	3	62
	농공	61	56	54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2015. 9

## 산업집적지 현황

- I. 산업단지 지정현황
- II. 기타 산업집적지 지정현황



# I. 산업단지 지정현황

## 1. 시·군·구별 산업단지 현황

지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서울	구로구	한국수출산업 (서울디지털)	1	서울온수	1	-	0	2
	강서구	-	0	마곡	1	-	0	1
	소계		1		2		0	3
부산	강서구	명지녹산	1	강서보고, 거화, 명동, 미음, 부산과학, 부산신항배후, 생 곡, 신호, 정주, 지사2, 풍상, 화전, 지사외국인, 미음외국인	14	-	0	15
	금정구	-	0	회동석대도시첨단	1	-	0	1
	기장군	-	0	기룡, 기룡2, 대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명례, 반룡, 부산신소재, 예코장안, 오리, 장안, 정관, 정관코리	12	정관	1	13
	사하구	-	0	신평장림, 산양	2	-	0	2
	사상구	-	0	모라도시첨단	1	-	0	1
	해운대구	-	0	센텀시티	1	-	0	1
	소계		1		31		1	33
	대구	달서구	-	0	성서1~4, 대구출판	5	-	0
달성군		대구	1	달성, 달성2,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차첨단, 달성의국인	5	구지, 옥포	2	8
동 구		-	0	대구이시아폴리스, 대구신 서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	2	-	0	2
북 구		-	0	검단	1	-	0	1
서 구		-	0	대구염색	1	-	0	1
소계			1		14		2	17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인 천	남 구	-	0	인천기계, 인천	2	-	0	2
	남동구	남동	1	-	0	-	0	1
	부평구	한국수출산업(부평, 주안)	1		0		0	1
	서 구		0	검단, 인천서부, 청라지구, IHQ도시첨단	4	-	0	4
	연수구	-	0	송도지식정보	1		0	1
	강화군	-	0	강화하점, 강화	2	-	0	2
	소계		2		9		0	11
광 주	광산구	빛그린	1	소촌, 진곡, 평동, 하남, 평 동의국인	5	소촌	1	7
	남 구	-	0	송암	1	-	0	1
	북 구	광주첨단과학	1	본촌	1	-	0	2
	소계		2		7		1	10
대 전	대덕구	-	0	대전1, 대전2	2	-	0	2
	동 구	-	0	하소친환경	1	-	0	1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1	-	0	-	0	1
	소계		1		3		0	4
울 산	남구	-	0	울산테크노	1	-	0	1
	북 구	울산·미포	1	매곡, 매곡2, 매곡3, 모듈 화, 이화, 중산, 중산2차	7	달천	1	9
	울주군	온산, 울산자유무역지 역	2	길천, 반천, 봉계, 신, 와지, 울산 High Tech Valley, 작 동, 전읍, GW, KCC울산	10	두동, 두서, 상북	3	15
	소계		3	-	18		4	25
세 종	부강면	-	0	부강	1	부용	1	2
	소정면		0	세종첨단	1	-	0	1
	연동면	-	0	명학	1	응암	1	2
	연기면	-	0	월산, 조치원	2	-	0	2
	전동면	-	0	-	0	노장, 청송	2	2
	전의면	-	0	세종미래, 소정, 전의, 전의2	4	-	0	4
	소계		0		9		4	13
경 기	가평군	-	0	목동	1	-	0	1
	김포시	-	0	상마, 양촌, 을생, 통진(편택), 학운, 학운2, 학운3, 학운4, 한강시네폴리스, 김포항공	10	-	0	10
	남양주시	-	0	광릉테크노밸리, 금곡, 진관	3		0	3
	동두천시	-	0	동두천, 동두천2, 상봉암	3	-	0	3
	부천시	-	0	오정	1	-	0	1
	성남시	-	0	동원동, 성남	2	-	0	2

지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경 기	수원시	-	0	수원, 수원2, 수원3	3		0	3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시화)	1	매화	1	-	1	2	
	안산시	반월특수지역(반월)	0	반월도금	1	-	0	1	
	안성시	-	0	가을, 개정, 공도, 금산, 덕산, 동향, 두교, 무능, 미양2, 방초, 안성제1, 안성제2, 안성제3, 안성제4, 용월, 원곡, 월정, 장원1, 장원2, 지문	20	미양		1	21
	안양시	-	0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	1	-	0	1	
	양주시	-	0	검준, 구암, 남면, 도하, 도하2, 상수, 운암, 흥죽	8	-	0	8	
	여주시	-	0	강천, 삼교, 장안	3	-	0	3	
	연천군	-	0	백학, 백학통구, 장남, 청산대전	4	-	0	4	
	오산시	-	0	가장, 가장2	2	-	0	2	
	용인시	-	0	원삼, 용인테크노밸리, 제일바이오	3	-	0	3	
	의정부시	-	0	용현	1	-	0	1	
	이천시	-	0	대월, 덕평, 도드람, 도암, 모가, 서이천, 설성, 신둔, 장호원	9	-	0	9	
	파주시	파주출판문화정보,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2	금파, 당동(외국인), 문발1, 문발2, 법원1, 법원2, 선유, 신촌, 오산, 월릉, 월릉2, 적성, 축현, 탄현, 파주LCD	15	-	0	17	
	평택시	아산 (원정, 포승지구)	1	고덕국제화, 고령, 브레인 시티, 송탄, 어연한산, 오성(외국인), 장당, 진위, 진위2, 추팔, 칠괴, 포승(2), 현곡, 평택, LG Digital Park	15	-	0	16	
	포천시	-	0	신평, 용정, 장자, 양문	4	-	0	4	
	화성시	-	0	경기화성바이오밸리, 동탄, 마도, 발안, 장안첨단(외국인), 장안첨단2(외국인), 전곡해양, 주곡, 팔탄, 한강씨엠, 향남 제약, 화성, 화성, 동탄도시첨단	14	-	0	14	
	소계			4		124		1	129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강 원	강릉시	-	0	강릉과학, 강릉중소, 강릉 옥계	3	주문진, 주문진제2	2	5
	고성군	-	0	-	0	항목, 해양심층수전용	2	2
	동해시	북평, 동해자유무역지역	2	송정, 북평제2	2	-	0	4
	삼척시	-	0	삼척종합발전, 소방방재, 호산	3	근덕, 도계	2	5
	속초시	-	0	-	0	대포, 대포2, 대포3	3	3
	양구군	-	0	-	0	하리	1	1
	양양군	-	0	-	0	포월, 양양제2그린	2	2
	영월군	-	0	-	0	영월, 영월제3, 팔괴	3	3
	원주시	-	0	동화, 문막, 문막반계, 부론, 우산, 원주자동차부품 문막중소협력외국인	7	동화, 문막, 태장	3	10
	인제군	-	0	-	0	원통	1	1
	정선군	-	0	-	0	에미, 증산, 함백	3	3
	철원군	-	0	플라즈마	1	갈말, 김화, 동송	3	4
	춘천시	-	0	남면, 남춘천, 봉명, 전력 IT, 후평, 네이버도시첨단, 춘천도시첨단문화, 춘천도 시첨단정보	8	거두, 당림, 수동, 창 촌, 퇴계	5	13
	태백시	-	0	태백스포츠타	1	장성, 철암	2	3
	평창군	-	0	-	0	방림, 평창	2	2
	홍천군	-	0	홍천북방	1	상오안, 양덕원, 화전	3	4
	화천군	-	0	-	0	원천	1	1
	횡성군	-	0	우천	1	공근, 목계, 우천, 우 천제2	4	5
	소계			2		27		42
충 북	괴산군	-	0	괴산대제, 괴산첨단, 괴산 유기식품	3	괴산, 발효식품, 사리	3	6
	단양군	-	0	단양	1	대강, 매폐자원순환, 적성	3	4
	보은군	보은	1	동부, 보은	2	보은, 삼승, 장안	3	6
	영동군	-	0	영동, 주곡	2	법화, 영동, 용산	3	5
	옥천군	-	0	청산	1	구일, 동이, 옥천, 옥천 의료기기, 이원, 청산	6	7

지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총 북	음성군	-	0	감곡상우, 금왕, 대풍, 리노삼봉, 맹동, 상우, 생극, 오선, 원남, 유촌, 음성이테크, 음성하이텍, 중부, 육령, 음성임대,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도시첨단	16	금왕, 삼성, 음성	3	19
	제천시	-	0	제천, 제천제2	2	강저, 고암, 금성, 봉양, 송학, 양화	6	8
	증평군	-	0	덕유, 증평, 증평2	3	도안, 증평	2	5
	진천군	-	0	문백금성, 문백정밀기계, 문백태흥, 이월, 산수, 신척, 죽현, 초평은암, 산수중소협력외국인	9	광혜원, 광혜원제2, 덕산, 문백전기전자, 이월, 이월전기전자, 진천, 초평	8	17
	청주시	오송생명과학	1	강내, 오송제2생명과학, 오창과학, 오창제2, 오창제3, 옥산, 청주, 청주에어로폴리스2, 청주테크노폴리스, 현도, KGB복합, 청주도시첨단, 오창외국인	13	내수, 현도	2	16
	충주시	-	0	대신, 만정, 중원, 충주녹색패션, 충주제1, 충주제3, 충주제4, 충주DH, 충주메가폴리스, 충주첨단, KGC예본	11	가금, 가주, 용탄, 주덕	4	15
	소 계		2		63		43	108
	총 남	계룡시	-	0	계룡제1	1	계룡제1	1
공주시		-	0	남공주, 송선, 유구자카드, 탄천, 세종	5	검삼, 계룡, 보물, 우성, 월미, 월미2, 유구, 의당복합, 장기, 정안, 정안2	11	16
금산군		-	0	금산제1	1	금성, 구례, 복수, 인삼약초특화, 추부,	5	6
논산시		-	0	논산, 논산2, 동산	3	가야곡, 강경, 동산, 양지, 양지제2, 연무, 연산, 은진	8	11
당진시		석문, 아산(고대·부곡지구)	2	당진1철강, 송산2, 합덕, 합덕인더스파크, 현대제철	5	당진, 면천, 석문, 송악, 신평, 한진, 합덕	7	14
보령시		고정	1	관창, 영보, 선진	3	대천, 웅천, 웅천석재, 주산, 주포, 주포제2, 청소	7	11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충남	부여군	-	0	-	0	은산, 은산2, 은산패션, 임천, 장암, 홍산,	6	6
	서산시	대죽자원비축	1	대산, 대산제2, 대산3, 대 산컴플렉스, 대죽, 서산남 부, 서산오토밸리, 서산인 더스밸리, 서산테크노밸리, 현대대죽	10	고북, 명천자동차전문, 성연, 수석	4	15
	서천군	장항국가생태	1	-	0	서면, 장항원수, 장항 원수제2, 증천, 증천2	5	6
	아산시	-	0	아산디지털, 아산디스플레 이시티1, 아산디스플레이시 티2, 아산테크노밸리, 아산 제2테크노밸리, 운용, 인주, 인주외국인	8	도고, 둔포, 둔포제 2, 득산, 배미, 신인, 신창, 영인, 탕정	9	17
	예산군	-	0	예산, 예당, 예산신소재	3	고덕, 관작전문, 삼 교전문, 신암, 예덕, 예산, 응봉, 증곡전문	8	11
	천안시	-	0	미정, 천안산업기술, 천안제2, 천안제3, 천안제4, 천안제5, 천흥, 풍세, 천안3외국인, 천안5외국인	10	동면, 목천, 백석, 직산	4	14
	청양군	-	0	-	0	비봉, 운곡, 운곡2, 정산, 학당, 화성	6	6
	태안군	-	0	태안도시첨단	1	태안	1	2
	홍성군	-	0	홍성	1	갈산전문, 갈산2전문, 결성전문, 광천, 광천 김특화, 구항, 은하, 은하전문	8	9
	소계			5		51		90

지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전 북	고창군	-	0	고창	1	고수, 복분자, 아산, 흥덕,	4	5
	군산시	군산, 군산2, 군산자유 무역지역	3	군산, 새만금	2	서수, 성산, 옥구, 임피	4	9
	김제시	김제자유무역지역	1	김제순동, 김제지평선	2	대동전문, 민경, 백구, 봉황, 서흥, 월촌, 황산	7	10
	남원시	-	0	-	0	광치1, 광치2, 노암, 노암제2, 노암제3, 여현, 인월	7	7
	무주군	-	0	-	0	무주, 무주제2, 안성	3	3
	부안군	-	0	부안신·재생에너지	1	부안, 부안제2, 부안 제3, 줄포	4	5
	순창군	-	0	-	0	가남, 인계, 쌍암, 풍 산, 풍산제2	5	5
	완주군	-	0	완주, 전주과학, 완주테크 노벨리, 완주테크노벨리(2 단계)	4	이서특별	1	5
	익산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	익산제2, 익산제3, 익산제4, 익산외국인	4	낭산, 삼기, 왕궁, 함 열, 황등	5	11
	임실군	-	0	-	0	신평, 오수, 임실, 임실제2	4	4
	장수군	-	0	-	0	장계, 천천, 장수	3	3
	전주시	-	0	전주제1, 전주제2, 전주시 자원순환특화, 전주친환경 첨단복합, 전주친환경(3-1 단계), 전주도시첨단	6	-	0	6
	정읍시	-	0	정읍제1, 정읍제2, 정읍제3, 정읍첨단과학(RFT)	4	고부, 농소, 북면, 소성특화, 신용전문, 신태인, 태인	7	11
	진안군	-	0	-	0	진안연장, 진안제2, 진안홍삼한방	3	3
소계			6		24		57	87

지 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전 남	강진군	-	0	강진환경	1	미량, 칠량, 칠량2	3	4
	고흥군	-	0	도양	1	풍양, 청정식품	2	3
	곡성군	-	0	-	0	겸면, 석곡, 입면	3	3
	광양시	광양	1	광양익신, 성황, 세풍, 신 금, 황금	5	-	0	6
	구례군	-	0	-	0	간전, 자연드림파크	2	2
	나주시	-	0	나주, 나주혁신, 문평, 신도	4	금천, 노안, 남평, 동 수, 문평, 봉황, 오랑	7	11
	담양군	-	0	담양	1	금성, 무정, 에코하 이테크	3	4
	목포시	-	0	대양, 삽진, 세라믹	3	산정	1	4
	무안군	-	0	-	0	삼향, 일로, 청계, 청 계2	4	4
	보성군	-	0	-	0	미력, 벌교, 조성	3	3
	순천시	-	0	순천, 해룡	2	주암	1	3
	신안군	-	0	신안조선타운	1	지도	1	2
	여수시	삼일자원비축, 여수, 울촌자유무역지역	3	여수오천, 울촌제1, 울촌제 2, 울촌제3, 묘도녹색	5	화양	1	9
	영광군	-	0	대마전기자동차	1	군서, 송림그린테크, 영광식품산업특화, 칠곡	4	5
	영암군	대불, 대불자유무역지역	2	삼호, 용당, 대불외국인	3	군서, 신북, 영암특화	3	8
	완도군	-	0	-	0	완도, 죽청, 완도해 양생물특화	3	3
	장성군	-	0	장성나노기술	1	동화, 동화전자종합, 삼계	3	4
	장흥군	-	0	장흥바이오식품	1	장평, 장흥, 장평제2	3	4
	진도군	-	0	군내	1	고군, 군내	2	3
	함평군	빛그린(전남지역)	1	동함평	1	학교, 함평, 해보, 학교명암축산특화	4	6
	해남군	-	0	화원조선	1	땅끝해남식품특화, 옥천, 화원	3	4
	화순군	-	0	화순생물의약	1	능주, 도곡, 동면, 동 면제2, 이양	5	6
	소계			7		33		61

지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경북	경산시	-	0	경산1, 경산2, 경산3, 경산4, 진량3	5	-	0	5	
	경주시	월성전원	1	강동, 건천제1, 건천제2, 건천3, 건천용명, 검단, 구어2, 나아, 녹동, 명계2, 모화, 문산, 문산2, 서동, 석계, 석계2, 석계4, 양남, 외동, 외동2, 제내2, 제내5, 천북, 천북2, 화산	25	건천, 내남, 서면, 안강, 외동	5	31	
	고령군	-	0	개진, 다산, 다산2, 동고령, 성산, 열외	6	개진, 쌍림	2	8	
	구미시	구미1단지, 구미 2-4단 지, 구미하이테크밸리	3	구미외국인	1	고아, 산동, 해평	3	7	
	군위군	-	0	군위	1	군위, 효령	2	3	
	김천시	-	0	김천	1	감문, 대광, 아포, 지례	4	5	
	문경시	-	0	봉룡, 신기, 신기제2	3	가은, 가은제2, 마성, 산양, 산양제2, 영순, 영순제2	7	10	
	봉화군	-	0	석포	1	봉화, 봉화제2, 유곡 공성, 외담, 함창, 함창제2, 화동, 화서, 화서제2	3	4	
	상주시	-	0	상주청리, 상주한방	2	선남, 성주, 월항	7	9	
	성주군	-	0	성주, 성주2, 월항	3	선남, 성주, 월항	3	6	
	안동시	-	0	경북바이오	1	남선, 남후, 풍산	3	4	
	영덕군	-	0	-	0	영덕, 영덕제2, 영덕 로하스특화	3	3	
	영양군	-	0	-	0	남영양	1	1	
	영주시	-	0	가흥, 갈산, 두전, OCI머터리 얼즈, 영주	5	문수, 반구전문, 봉현, 장수, 적서, 휴천	6	11	
	영천시	-	0	고경, 영천첨단부품소재	2	고경, 도남, 본촌, 북안, 화산	5	7	
	예천군	-	0	-	0	예천, 예천2	2	2	
	울진군	-	0	-	0	울진, 평해, 죽변해양	3	3	
	의성군	-	0	-	0	다인, 단말, 봉양, 의성	4	4	
	청도군	-	0	-	0	청도, 풍각	2	2	
	칠곡군	-	0	왜관, 왜관3, 연화	3	기산, 칠곡농기계특화	1	4	
	포항시	포항, 포항블루밸리	2	광명, 구룡포, 그린, 신흥, 영일만, 영일만2, 영일만3, 영일만4, 포항4, 포항테크노파크2, 포항외국인	11	청하	1	14	
	소계			6		70		67	143

지 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경 남	거제시	옥포, 죽도, 지세포자 원비축	3	덕곡, 모사, 오비, 오비2, 청포	5	한내조선특화	1	9
	거창군	-	0	거창, 웅양	2	남산, 당산, 서울우 유, 석강, 석강제2, 승강기전문, 정장	7	9
	고성군	-	0	내산, 대가룡, 대독, 봉암, 상리, 울대, 장기, 장좌	8	마동, 세송, 울대, 제 일, 회화	5	13
	김해시	-	0	가산, 김해사이언스파크, 김해 테크노밸리, 김해GordenRoot, 니전, 니전2, 덕암, 덕암2, 명동, 병동, 서김해, 송현, 신 천, 오척, 이노비즈밸리, 주호	16	니전, 내삼, 병동, 본 산, 봉림, 안하, 진영 죽곡, 하계	8	24
	남해군	-	0	-	0	고현	1	1
	밀양시	-	0	미전, 사포, 용전, 용전2, 하남	5	대미, 미전, 부북특 별, 상남특별, 제대, 초동특별, 춘화, 하남	8	13
	사천시	-	0	구암, 대동, 미룡, 장전, 종 포, 축동, 흥사, 사천제1, 사천제2, 사천외국인	10	고양, 두량전문, 사 남, 송포,, 축동구호, 향촌, 향촌삼재	7	17
	산청군	-	0	매촌, 매촌제2	2	금서, 금서제2, 산 청, 화현	4	6
	양산시	-	0	덕계, 덕계월라, 산막, 서 창, 석계, 어곡, 어곡제2, 웅당, 유산, 양산, 토정	11	웅상	1	12
	의령군	-	0	대의, 정곡백곡	2	동동, 봉수, 부림, 정 곡	4	6
	진주시	-	0	가산, 정촌, 지수, 진주, 진 주상평	5	금곡, 대곡, 사봉, 생 물산업, 실크전문, 이반성, 진성	7	12
	창녕군	-	0	대합, 넥센, 역만, 하리	4	남지, 대지, 대합, 서 리전문, 송진전문	5	9
	통합 창원시	창원, 진해, 마산자유 무역	3	남양지구, 동전, 마천, 수 곡, 수정, 안골, 죽곡, 진북, 진전평암, 창곡, 천선, 창 원, 창원덴소도시첨단	13	진북	1	17
	통영시	안정	1	덕포, 법송, 안정	3	-	0	4
	하동군	-	0	갈사만조선, 대송	2	고전, 금성조선, 적 량, 진교	4	6

지역 별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계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시·도	시·군							
경 남	함안군	-	0	가연, 군북월촌, 대사, 대치, 법수강주, 법수우거, 부목, 사내, 장지, 철북영동, 칠서, 칠서태곡, 함안	13	가야, 군북, 모로, 법수, 산인, 장암, 칠원, 용산, 칠원운서, 파수, 황사	10	23
	함양군	-	0	함양, 휴천	2	수동, 안의전문, 안의제2, 원평, 이은, 중방전문	6	8
	합천군	-	0	-	0	야로, 울곡, 적중	3	3
	소계		7		103		82	192
제 주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	1	용암해수	1	구좌, 금능	2	4
	서귀포시	-	0	-	0	대정	1	1
	소계		1		1		3	5

\* 당동, 오성, 장안첨단지1, 장안첨단지2, 창원일반단지는 전체가 외국인투자지역이므로 단지수 총합계에서 중복된 5개의 단지수만큼 제외

\* 국가 단지 중 4개가 두개의 시도에 걸쳐 지정된 단지는 4개 단지로 각 시도현황에는 포함하되, 전체합계에서는 1개의 단지로 간주함. 즉, 시도별 단지 합계는 45개 단지이나 산업단지 지정기준으로는 4개를 제외한 41개 단지임.

한국수출국가는 서울(서울디지털)과 인천(부평, 주안지구), 명지녹산은 부산(녹산지구, 명지지구)과 경남(녹산지구), 빛그린은 광주(광주지구)와 전라(전남지구), 아산국가는 경기(포승, 우정, 원정지구)와 충남(고대, 부곡지구)으로 구분되어있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2015. 9

## 2. 국가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천㎡)	사업 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서울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서울디지털)	1964-04-15	1,922	1965-1973	1,922	1,446	188	288	0	0
부산	명지녹산국가단지 (명지·녹산지구)	1989-10-20	8,841	1990-2002	8,814	4,317	816	2,526	442	713
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2009-09-30	8,548	2009-2014	7,802	5,045	252	1,527	978	50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1980-09-02	9,574	1985-1997	9,574	5,913	277	2,991	393	0
인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부평, 주안)	1965-06-16	1,786	1965-1974	1,785	1,462	78	245	0	0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광주광역시구역)	2009-09-30	1,847	2009-2018	1,847	1,181	59	552	-	55
광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1990-07-21	9,992	1991-2011	5,681	3,374	241	1,282	347	437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2005-07-28	67,809	2006-2012	67,809	7,682	1,406	13,913	25,160	19,648
울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975-06-23	48,111	1975-2012	45,653	34,747	3,502	3,403	4,001	0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1974-04-01	25,939	1974-2015	19,765	16,573	521	1,925	746	0
경기	반월특수지역 (시화, 반월특수, 시화MTV)	1977-04-22	157,635	1977-2016	38,001	21,155	2,643	7,178	7,025	0
경기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1997-03-26	1,562	1997-2011	1,514	586	135	667	126	0
경기	파주탄현영세증소기업 전용국가산업단지	1998-02-24	80	1998-2001	77	44	4	23	6	0
경기	아산국가산업단지	1979-12-14	20,193	1982-2009	17,760	8,670	5,221	992	597	2,28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9,790	170,513	3,934	162,656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1,396	107,911	2,604	35,129	철강, 기계, 운송장비	한국토지공사, 부산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0	0	0	0	차세대 전자통신,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6,925	251,755	3,357	91,750	제조업, 물류, 지식, 정보산업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1,246	68,221	1,145	26,602	부평:전제조업 주안: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 보통신관련산업, 도시형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0	0	0	0	광산업, 디지털정보기전, 자동차, 첨단부품소재, 생물·의약 등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
713	27,022	2,281	12,157	전기전자, 광·생명공학, 디지털정보기전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1,094	124,814	3,580	26,420	연구개발업, 전기전자, 정밀기계, 신공정, 신물질생물공학, 광학	한국토지공사, 대덕테크노밸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854	1,372,914	67,013	103,911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337	453,421	21,815	16,892	석유정제, 비철금속, 화학펄프 공업, 조선기자재, 석유비축시설	실수요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18,776	870,191	14,421	296,252	전제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427	2,805	7	4,865	서적출판업, 인쇄업, 영화, 방송 및 공연업종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50	978	3	360	전제조업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60	413,952	21,736	23,141	전제조업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외	원정:평택시 포송:한국산업단지 공단 우정:화성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천㎡)	사업 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강원	북평국가산업단지 (동해자유무역포함)	1975-12-22	4,030	1975-2010	1,863	1,194	12	435	222	0
충북	보은국가산업단지	1987-08-17	4,178	1987-2014	4,177	1,098	465	2,595	0	19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외국인포함)	1997-09-23	4,628	1997-2008	2,595	1,384	523	377	311	0
충남	고정국가산업단지	1978-03-03	6,231	1978-2001	6,231	2,464	2,309	601	0	857
충남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1997-03-26	912	1997-2005	912	391	59	164	298	0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	1991-12-31	12,018	1992-2013	9,476	4,712	954	2,647	1,163	0
충남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 부곡지구)	1979-12-14	6,157	1992-2009	5,953	4,752	142	551	508	0
충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2009-01-06	2,755	2008-2013	2,755	1,330	33	730	293	369
전북	군산국가산업단지	1987-08-17	13,702	1988-1994	6,828	5,576	100	831	321	0
전북	군산2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포함)	1989-08-10	50,458	1993-2007	14,612	9,954	1,019	2,094	1,381	164
전북	익산국가산업단지	1970-03-24	1,336	1973-1974	1,336	1,121	65	150	0	0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2012-06-29	2,323	2012-2016	2,192	1,526	90	355	221	0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 광양연관)	1982-04-02	96,405	1982-2050	96,405	40,854	5,279	4,669	8,210	37,393
전남	삼일자원비축단지	1991-08-03	4,157	1991-2007	4,088	3,442	0	402	0	244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1974-04-01	50,307	1967-2012	31,628	22,819	1,620	3,931	3,258	0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 (외국인, 자유무역포함)	1988-07-12	20,887	1989-2008	11,524	6,667	633	2,371	1,853	0
전남	빛그린산업단지 (전남구역)	2009-09-30	2,221	2009-2014	2,221	1,458	86	626	0	51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57	399	10	639	전제조업	한국전력공사 외	한국산업단지공단 동해자유무역지역 관리원
1	x	x	x	석유화학	(주)한화	충북도청
60	8,368	119	2,415	의약품, 의로기기 등 BT관련 업종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43	26,000	0	1,909	전기	한국전력공사	보령화력
1	x	x	x	석유비축시설	한국석유공사	서산시
64	420	7	201	수송용기계, 정밀화학, 섬유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115	48,074	1,395	4,684	고대:공해업종 제외 전제조업 부곡:기계, 반도체, 식료품, 목재, 피혁 등	한국토지공사, 당진탱크터미널㈜ 외	한국산업단지공단
0	0	0	0	생명과학, 청정첨단지식, 수송, 지역친화형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천군
147	42,567	1,901	7,741	자동차부품, 운송장비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443	32,535	1,223	10,691	자동차, 중장비, 조선(섬유, 펄프, 고무, 플라스틱 제외 전업종)	한국토지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220	14,576	469	3,880	섬유의복, 귀금속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0	0	0	0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및 연관업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107	102,727	7,694	11,669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기계	(주)포스코,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	x	x	x	원유비축시설(원유저장시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282	921,497	39,735	21,989	석유화학, 조립금속, 기계	한국수자원공사, 여주시, 환경부 외	한국산업단지공단
339	30,553	1,232	12,919	기계, 제강, 석유화학, 비금속, 종이, 음식료, 조선, 전기	한국토지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자유무역지역 관리원
0	0	0	0	광산업, 생물의학, 디지털정보기전, 자동차산업, 첨단부품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천㎡)	사업 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북	월성원전단지	1976-12-31	3,695	1978~2015	3,695	1,371	0	0	640	1,684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1969-03-04	10,223	1969~1973	10,223	7,908	534	1,781	0	0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2~4단지, 확장단지 포함)	1977-04-22	16,603	1977~2002	13,219	7,762	875	2,416	2,166	-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2009-09-30	9,339	2009~2018	6,592	5,137	9	945	501	0
경북	포항국가산업단지	1975-06-23	37,868	1977~2020	17,624	16,058	744	463	359	-
경북	포항블루밸리	2009-09-30	6,119	2009~2013	5,781	3,606	41	1,170	964	0
경남	옥포국가산업단지	1974-04-01	5,780	1974~2017	5,747	3,318	111	290	95	1,933
경남	죽도국가산업단지	1974-04-01	4,260	1977~2015	4,223	2,758	86	161	620	598
경남	지세포자원비축단지	1974-09-20	2,942	1985~2012	2,942	880	93	1,969	0	0
경남	명지·녹산국가단지 (녹산-주거단지)	1989-10-20	1,672	1990~2005	1,672	0	164	807	0	701
경남	진해국가산업단지	1982-08-02	3,306	1983~2012	3,138	1,664	0	0	0	1,474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1974-04-01	36,756	1974~2015	25,302	17,242	2,065	3,708	2,287	0
경남	안정국가산업단지	1974-04-01	3,869	1997~2011	3,776	2,962	78	317	419	0
제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004-10-23	1,099	2005~2010	1,071	375	126	275	188	107

\* 대구, 국가식품클러스터, 포항, 포항블루밸리, 진해단지는 '15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 "0"은 통계수치가 없는 것이고, "x"는 업체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기업정보 보호를 위해 공표하지 않은 것임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	x	x	x	전기업, 건설, 부동산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1,989	456,151	32,884	96,543	전자기기부품, 섬유	한국전자공업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21	30,074	666	3,944	전자, 컴퓨터, 반도체, 고도기술산업, 첨단산업, 연구개발업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0	0	0	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1차금속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기타 기계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8	169,829	5,504	12,517	철강, 1차금속, 조립금속및기계, 석유화학, 비금속	포항종합제철(주),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0	0	0	0	기계부품, 철강부품, 선박부품, 자동차부품, 에너지/IT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1	x	x	x	조선관련	대우조선해양(주)	거제시
1	x	x	x	선박 및 기계	삼성중공업(주)	거제시
1	x	x	x	원유비축시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0	0	0	0	주거단지	한국토지공사	-
3	25,006	2,021	2,204	조선기자재, 조선소	STX조선해양(주), (주)오리엔탈정공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2,366	574,236	19,375	104,497	전 제조업	한국수자원공사,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10	8,311	86	2,796	운송장비, 기계	(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3	10,275	4	654	IT, BT,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정보통신산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3. 일반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서울	서울운수산업단지	1970-11-25	158	1970~1971	158	123	1	34	0	0
서울	마곡일반산업단지	2008-12-30	1,111	2008~2021	1,111	730	81	211	77	12
부산	거화일반산업단지	2009-06-24	51	2009~2015	51	15	0	8	28	0
부산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지사외국인포함)	1991-12-21	1,967	1991~2007	1,967	925	319	558	0	165
부산	미음지구산업단지 (미음외국인포함)	2007-05-30	3,581	2008~2013	3,581	1,960	50	1,326	240	5
부산	신호일반산업단지	1994-01-27	3,122	1993~2006	3,122	1,713	593	440	376	0
부산	화전지구산업단지	2003-10-30	2,448	2003~2010	2,367	1,424	139	804	0	0
부산	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 류도시(1단계)	2010-03-03	5,675	2010~2017	3,555	3,150	65	134	0	206
부산	생곡산업단지	2009-07-31	557	2009~2014	557	356	0	100	69	32
부산	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	2010-05-04	100	2009~2014	100	49	6	15	30	0
부산	기룡일반산업단지	2005-11-02	83	2006~2008	83	58	2	6	17	0
부산	기룡제2일반산업단지	2007-08-29	46	2007~2011	46	33	-	3	10	0
부산	장안일반산업단지	2005-11-16	1,320	2004~2010	1,320	771	44	505	-	0
부산	정관일반산업단지	2001-10-25	1,209	2001~2008	1,020	612	5	245	158	0
부산	명례일반산업단지	2008-12-03	1,566	2007~2013	1,564	868	82	356	258	0
부산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2010-05-04	344	2009~2015	344	248	5	27	64	0
부산	산양일반산업단지	2009-12-30	54	2009~2014	54	18	1	20	15	0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협동화포함)	1980-09-22	2,815	1981~1990	2,602	1,761	157	617	67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62	1,118	10	2,010	전 제조업	서울운수산업단지 관리공단	서울운수산업단지 관리공단
35	0	0	0	지식기반 첨단산업	SH공사	서울특별시
0	0	0	0	강관제조업	(주)거화특수강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188	16,539	480	5,137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보통신,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253	3,855	52	4,445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부품소재 등	부산도시공사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77	26,488	1,513	3,141	조립금속, 기계장비	부산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305	22,280	399	6,426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및운송장비, 물류 등	부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379	0	0	7,632	1차금속,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등	부산도시공사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74	0	0	934	신재생에너지	부산도시공사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15	0	0	-	바이오, 전자, 조선기계 등	(주)보고지사테크	부산광역시
1	640	0	75	음식료	(주)대선주조	한국산업단지공단
1	97	7	18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조업	부림특수강(주)	한국산업단지공단
60	9,599	82	1,498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기타기계장비 등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157	10,093	145	3,756	목재, 철강, 운송장비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71	0	0	-	금속가공, 기타운송장비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	부산광역시
1	0	0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대우버스(주)	부산광역시
-	0	0	-	1차금속제조업, 기타제조 및 장비제조업	(주)산양	부산광역시
615	51,472	1,456	15,665	조립금속, 피금, 도혁 외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신평장림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부산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1997-08-01	1,178	1997~2007	1,178	211	469	387	111	0
부산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2010-10-20	84	2010~2012	83	59	1	23	0	0
부산	명동지구산업단지	2009-07-31	506	2013~2015	490	332	0	81	62	15
부산	풍상일반산업단지	2011-03-09	62	2011~2015	62	52	0	6	4	0
부산	지사2일반산업단지 (구:진우)	2012-02-29	96	2010~2014	96	46	0	30	20	0
부산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2012-06-27	1,478	2010~2015	1,477	617	26	834	0	0
부산	부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2013-01-16	256	2011~2015	255	161	21	73	0	0
부산	반룡일반산업단지	2013-05-22	533	2012~2016	520	230	99	191	0	0
부산	정주일반산업단지	2014-11-26	97	2013~2016	97	40	8	49	0	0
부산	एको장안일반산업단지	2014-06-25	215	2013~2016	215	135	7	73	0	0
부산	오리일반산업단지	2013-07-31	628	2011~2017	626	409	6	111	100	0
인천	인천기계산업단지	1967-11-23	350	1969~1971	350	291	0	59	0	0
인천	인천일반산업단지	1973-04-01	1,136	1970~1973	1,136	1,001	0	135	0	0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2006-12-26	2,252	2006~2013	2,251	1,382	57	580	226	6
인천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1992-07-29	939	1993~1995	938	767	25	117	29	0
인천	청라지구일반산업단지	1997-08-06	194	1997~2005	194	129	5	26	34	0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2000-09-18	2,402	2000~2011	2,053	489	429	966	169	0
인천	강화하점일반산업단지	1992-08-06	59	1992~1994	59	43	2	10	4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501	3,100	40	15,320	지식산업및정보통신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3	0	0	0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코리녹스(주)	부산광역시
0	0	0	0	메카트로닉스	원자력산단개발(주)	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청
3	0	0	0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비금속 광물 제조업	(주)나라코퍼레이션	부산광역시
3	0	0	0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진우일반산단(주)	부산광역시
0	0	0	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의료전기장비, 연구개발업 등	부산 기장군	부산광역시
0	0	0	0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산주공주식회사	부산광역시
0	0	0	0	자동차부품, 친환경목재	성창아이엔디(주)	부산광역시
0	0	0	0	1차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주)현대피팅,이든 텍(주)	부산광역시
0	0	0	0	섬유제품, 고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에코장안일반산업 단지개발(주)	부산광역시
0	0	0	0	식음료, 금속, 의료, 화학, 기타기계 등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168	3,340	93	2,808	기계,전기,전자,철강 외	인천기계공업공단	인천기계산업단지관 리공단
451	14,679	381	6,673	전체제조업(도금, 재생처리업등 환경허가업종 입주 제한)	인천광역시장	인천지방산업단지관 리공단
445	4,703	27	4,415	가구 및 기타제품, 조립금속등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256	14,670	132	5,209	기계장비, 조립금속	서부산업단지관리 공단	서부산업단지 관리공단
18	2,782	73	1,091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등	한국EMS주식회사	인천 서구
41	13,605	614	3,021	지식기반제조, R&D, 정보통신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5	164	1	117	섬유의복, 석유화학	강화군	강화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2012-08-03	463	2012~2015	463	320	9	134	0	0
대구	성서1차일반산업단지	1965-02-02	2,687	1965~1988	2,687	1,897	101	350	339	0
대구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1984-04-18	4,352	1988~1992	4,101	2,979	190	790	142	0
대구	성서3차일반산업단지	1991-12-27	3,329	1991~2002	2,831	1,561	246	757	267	0
대구	성서4차일반산업단지	2002-12-07	433	2002~2006	433	225	63	120	25	0
대구	대구출판산업단지	2010-01-11	243	2010~2012	241	93	60	66	22	0
대구	대구이시아폴리스	2001-10-30	1,176	2003~2015	1,176	139	322	384	111	220
대구	검단일반산업단지	1965-02-02	782	1965~1975	782	570	39	150	23	0
대구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1980-11-28	846	1974~1988	846	598	118	116	14	0
대구	달성1차일반산업단지	1979-03-22	4,079	1980~1983	4,078	2,551	181	617	729	0
대구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외국인포함)	1991-07-10	2,707	2001~2008	2,378	1,482	112	527	257	0
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 업단지	2006-12-29	7,262	2006~2013	7,262	2,965	77	2,011	941	1,268
대구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2007-01-30	1,470	2007~2012	1,469	690	126	285	305	63
광주	평동일반산업단지 (외국인포함)	1991-07-05	5,065	1991~2010	4,965	3,290	159	883	571	62
광주	진곡일반산업단지	2007-03-30	1,911	2007~2015	1,911	1,080	73	530	201	27
광주	소촌일반산업단지	1979-05-16	190	1981~1983	189	106	33	50	0	0
광주	하남일반산업단지	1982-09-20	5,944	1981~1991	5,944	4,551	204	818	371	0
광주	송암일반산업단지	1979-07-04	394	1979~1983	394	278	15	76	25	0
광주	본촌일반산업단지	1979-07-04	937	1979~1983	937	763	0	137	37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신소재, 신물질산업, 철강.기계산업, 전기전자 산업, 복합산업 등	인천상공회산단(주)	인천광역시
918	35,933	718	15,079	섬유, 기계, 화학 등	대구광역시장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1,155	75,319	1,105	25,224	섬유, 기계, 화학 등	대구광역시장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468	41,274	1,207	12,421	자동차산업, 기계, 전자 등	대구광역시장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47	21,321	900	3,520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대구도시공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93	177	0	84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업, 영상·정보서비스업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문화산업과
51	1,595	39	1,008	섬유, 봉제, 미디어, 첨단IT및지식산업, 신성장동력 및 전략적육성산업	대구광역시, 이시아폴리스	대구광역시
536	7,996	83	7,960	제조업	대구광역시	(사)대구검단산업 공단협의회
125	8,504	367	6,384	염색	대구광역시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334	59,880	2,269	13,891	식품, 섬유, 목재. 제지,기계	경상북도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234	12,395	107	4,305	금속, 기계, 컴퓨터, 고도기술수반산업, 첨단업종 등	대구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83	1,915	166	1,871	바이오, 섬유,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자동차, 기계메카트 로닉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
95	5,753	119	2,754	기계, 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대구도시공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542	54,297	604	13,445	기계, 전자, 화학, 음식료품, 첨단고도기술업종, 기타일반제조업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9	52,556	0	563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53	3,191	24	540	제조업 및 보관, 창고업 등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977	138,879	4,155	27,843	제조업 및 보관, 창고업	광주광역시	사)하남산업단지관리 공단
65	577	0	1,195	제조업 및 자동차수리업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118	8,934	151	2,004	제조업 및 보관, 창고업	광주광역시	본촌산단협의회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대전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1968-12-16	479	1969~1973	479	333	17	129	0	0
대전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1968-12-16	777	1975~1979	777	644	40	93	0	0
대전	하소친환경일반산업단지	2012-05-11	306	2012~2014	306	163	14	129	0	0
울산	매곡일반산업단지	2000-10-09	556	2002~2006	556	304	14	106	57	75
울산	모듈화일반산업단지	2005-03-17	863	2001~2013	863	491	18	111	243	0
울산	이화일반산업단지	2008-01-17	697	2007~2016	696	451	0	54	191	0
울산	중산일반산업단지	2006-05-11	128	2005~2009	128	68	3	24	33	0
울산	길천일반산업단지	2005-08-18	1,543	2005~2015	1,266	667	12	383	204	0
울산	신일반산업단지 (울산자유무역포함)	2005-06-09	3,250	2000~2013	3,222	1,631	78	1,513	0	0
울산	와지일반산업단지	2010-04-08	126	2010~2014	125	99	5	13	8	0
울산	울산 High Tech Valley	2007-05-11	2,062	2006~2017	2,062	1,555	28	473	0	6
울산	봉계일반산업단지	2008-07-10	255	2008~2013	255	174	0	42	39	0
울산	KCC울산일반산업단지	2009-03-05	1,211	2008~2014	1,211	865	20	208	118	0
울산	전읍일반산업단지	2010-02-18	72	2009~2014	72	52	3	8	8	1
울산	반천일반산업단지	2010-09-16	1,378	2009~2015	1,378	880	14	239	245	0
울산	작동일반산업단지	2010-09-02	149	2010~2014	148	125	0	14	9	0
울산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2010-12-30	361	2010~2015	349	223	0	126	0	0
울산	매곡2일반산업단지	2010-12-30	76	2010~2014	76	44	0	14	0	18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97	9,359	337	1,608	전제조업	대전광역시	(사)대전산업단지협회
93	24,634	435	2,271	제조업	충청남도	(사)대전산업단지협회
0	0	0	0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등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52	4,671	44	1,941	자동차부품 등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3	4,793	27	1,789	자동차부품 등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	x	x	x	자동차부품 등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8	1,642	7	537	자동차부품 등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74	11,545	101	3,536	자동차 관련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64	5,741	270	1,840	전기전자, 첨단업종, 제조, 무역 등	울산광역시, 지식경제부	울산광역시, 울산자유무역지역관 리원
1	x	x	x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덕성인더스트리(주)	울산광역시
0	0	0	0	전기전자 등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8	0	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기계 및 장비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8	0	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운송장비, 전기장비	티에스산업개발(주)	울산광역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 자동차및트레일러	삼원테크(주)	울산광역시
0	0	0	0	1차금속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서울산개발(주)	울산광역시
0	0	0	0	기타제품 제조업	(주)유니온랜드	울산광역시
0	0	0	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	0	0	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울산	매곡3일반산업단지	2010-12-30	158	2010~2014	158	120	0	38	0	0
울산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2013-06-20	1,287	2010~2017	1,287	699	31	465	0	92
울산	GW일반산업단지	2014-03-20	450	2013~2017	450	334	13	103	0	0
세종	조치원일반산업단지	1985-05-01	941	1986~1992	941	708	29	84	120	0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1990-02-08	565	1990~1995	565	398	0	81	86	0
세종	소정일반산업단지	1993-06-09	271	1993~1998	271	184	8	28	51	0
세종	월산일반산업단지	1994-09-16	1,380	1994~2008	1,380	955	10	415	0	0
세종	전의일반산업단지	1994-05-06	481	1994~2001	481	345	1	72	63	0
세종	전의2일반산업단지	2006-07-04	867	2006~2010	857	593	8	115	141	0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2011-03-18	839	2012~2015	838	556	5	277	0	0
세종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2013-12-02	431	2013~2017	431	272	3	156	0	0
세종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2014-03-10	557	2013~2017	557	392	9	85	71	0
경기	김포항공일반산업단지	2005-11-07	335	2005~2015	335	203	31	30	71	0
경기	삼미일반산업단지	1996-09-12	79	1993~1996	79	63	2	6	8	0
경기	양촌일반산업단지	2004-09-15	1,681	2003~2010	1,681	886	58	389	243	105
경기	율생일반산업단지	1995-06-21	49	1994~2004	49	34	1	4	10	0
경기	통진(팹택)일반산업단지	2007-11-05	34	2007~2012	34	30	0	1	3	0
경기	학운일반산업단지	1993-06-17	56	1993~1997	56	40	1	8	7	0
경기	학운2일반산업단지	2008-12-18	634	2008~2015	633	399	25	197	0	12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	0	0	0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부품소재, 정밀화학, 수송, 기계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
0	0	0	0	1차금속,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굿화이어(주)외 23개사	울산광역시
19	6,680	108	1,508	음식료품 등	연기군	협의회
13	8,836	248	2,120	화학, 정밀기계	청원군	부용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2	1,029	9	263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유리및유리제품	(주)금강	(주)금강
1	x	x	x	음식료품 등	연기군	세종특별자치시
10	7,202	32	1,114	음식료품 등	연기군	세종특별자치시
42	1,640	6	686	음식료품 등	연기군	입주기업체협의회
0	0	0	0	전기, 전자, 식료품, 의약품, 자동차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세종첨단산업단지 (주)	미정
0	0	0	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세종미래산업단지 (주)	세종특별자치시
2	60	-	6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주)한국타임즈항공	김포시
39	960	3	530	전 제조업	상마사업협동조합	김포시
603	1,600	18	6,868	전자부품, 전자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등	김포시, 경기도시공사	김포시
12	640	1	244	전제조업	울생기구협동조합	김포시
1	x	x	x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주)팬택	김포시
30	440	1	298	전 제조업	김포시	김포시
9	0	0	130	식료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전기장비, 기타기계 등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김포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기	금곡일반산업단지	2002-09-16	130	2002~2015	130	72	7	18	33	0
경기	광릉테크노밸리	2006-07-21	210	2006~2012	210	107	6	57	36	4
경기	진관일반산업단지	2008-07-28	142	2008~2012	142	98	3	26	15	0
경기	동두천일반산업단지	1994-10-01	262	1997~2000	262	151	15	74	22	0
경기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2005-09-20	189	2005~2009	189	130	6	25	28	0
경기	상봉암일반산업단지	1995-02-14	54	1993~1993	54	45	1	6	2	0
경기	오정일반산업단지	2004-09-13	291	2004~2009	290	130	16	98	30	16
경기	동원동일반산업단지	2009-04-13	70	2007~2015	70	46	2	13	9	0
경기	성남일반산업단지	1968-05-07	1,737	1974~1976	1,723	1,238	26	305	154	0
경기	수원산업단지(1단지)	2003-04-28	287	2003~2005	268	154	0	58	56	0
경기	수원산업단지(2단지)	2006-05-15	123	2005~2008	121	70	0	24	27	0
경기	수원산업단지(3단지)	2008-12-26	795	2008~2014	794	529	52	213	0	0
경기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1988-02-16	162	1979~1987	161	144	2	15	0	0
경기	가을일반산업단지	1993-10-09	58	1994~1995	58	50	0	4	4	0
경기	개정지방산업단지	2007-07-16	209	2007~2009	209	154	1	35	19	0
경기	공도일반산업단지	1994-01-29	69	1994~1995	69	63	0	3	3	0
경기	금산일반산업단지	1993-10-09	58	1995~1998	58	34	4	11	9	0
경기	덕산일반산업단지	1992-05-20	59	1996~1998	59	48	0	7	4	0
경기	동향일반산업단지	1993-10-09	57	1995~1996	57	47	0	5	5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식료품,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	(주)한나건설개발	남양주시
6	130	0	10	금속가공, 목재, 기타 기계, 가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시
37	838	0	400	섬유, 의복, 화학, 전자부품, 기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시
49	1,931	64	1,670	피혁, 염색, 재활용업종	동두천시	동두천시
16	1,210	5	400	기계, 컴퓨터, 사무용기기, 통신장비	동두천시, 경기도시공사	동두천시
6	1,665	105	919	음식료, 1차금속	동두천시	동두천시
74	4,391	128	1,892	조립금속 외 7종	한국토지공사	부천시
0	0	0	0	첨단산업, 의료 바이오	성남시장	성남시
3,131	94,069	803	42,898	전기전자, 섬유, 석유화학	서울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379	14,692	176	5,076	기계, 전자 등	수원시	수원시
43	2,926	87	1,204	기계, 전자, 전기	수원시	수원시 기업지원과
96	2,926	97	1,750	금속가공제품제조업등	수원시	수원시 기업지원과
105	3,591	8	1,505	조립금속, 석유화학	안성시	반월도금공업협동조합
2	x	x	x	조립금속, 석유화학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12	559	6	203	음식료 외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5	679	8	135	금속 및 목재가구 제조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9	7,577	0	468	음식료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14	668	9	239	음식료, 섬유 의복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13	368	4	356	전구 및 조명장치제조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기	두교일반산업단지	1994-01-29	56	1993~1998	56	48	0	3	5	0
경기	무능일반산업단지	2003-05-16	263	2005~2013	263	181	3	79	0	0
경기	미양2일반산업단지	1994-01-03	160	1995~1996	160	144	1	8	7	0
경기	방초일반산업단지	2009-05-25	60	2007~2014	60	42	0	18	0	0
경기	안성제1산업단지	1978-07-19	668	1979~1985	668	549	0	119	0	0
경기	안성제2산업단지	1987-07-15	716	1991~1993	716	549	4	159	4	0
경기	안성제3일반산업단지	1998-03-23	397	1998~2007	397	285	4	82	26	0
경기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2009-02-04	811	2008~2014	811	517	14	150	123	7
경기	용월일반산업단지	2000-12-04	59	2003~2004	59	40	1	7	11	0
경기	원곡일반산업단지	1994-08-19	100	1995~1996	100	79	0	6	15	0
경기	장원1일반산업단지	1994-01-29	60	1996~1997	59	47	0	7	5	0
경기	월정일반산업단지	2008-08-20	59	2007~2012	59	42	0	9	8	0
경기	장원2일반산업단지	2008-08-27	60	2008~2011	60	40	0	20	0	0
경기	구암일반산업단지	2003-06-25	46	2002~2013	46	39	0	7	0	0
경기	남면일반산업단지	2005-12-30	207	2005~2010	207	148	3	35	21	0
경기	도하일반산업단지	1994-07-16	35	1994~1995	35	23	0	7	5	0
경기	도하2일반산업단지	2009-04-14	32	2008~2010	32	25	0	2	5	0
경기	상수일반산업단지	1995-02-14	59	1990~1992	59	48	0	11	0	0
경기	검준일반산업단지	1999-04-01	145	1998~2003	145	88	1	45	11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6	326	17	278	음식료, 기초화학제품	신풍제약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0	0	0	0	영상, 음향, 통신장비	풍천산업(주)	안성시
5	1,153	150	866	조립금속	성우전자(주), (주)미양전자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2	223	0	37	목재, 나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고무 등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50	14,503	242	3,482	석유화학, 조립금속	한국토지공사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53	19,443	519	2,887	조립금속, 석유화학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42	4,455	182	1,690	석유화학, 조립금속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14	949	48	237	1차금속제조업 등	경기도시공사	안성시
10	175	3	128	음식료, 조립금속	채원공영(주)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6	1,302	14	467	조립금속, 종이목재, 석유화학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10	338	1	147	나무, 목재, 기계 등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3	677	55	204	음식료, 섬유, 목재 등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6	620	9	92	음식료, 섬유, 출판 등	안성시	안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1	x	x	x	액정표시장치(BLU)	(주)뉴옵틱스	(주)뉴옵틱스
32	1,968	48	67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양주시, 경기도시공사	양주시
1	x	x	x	동,압연 및 압축업	능원금속(주)	능원금속
1	x	x	x	1차금속제조업	능원금속공업(주)	능원금속
11	916	7	275	기타기계 및 섬유	양주시	양주시
58	1,644	37	1,291	염색, 도금	양주시	양주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기	홍죽일반산업단지	2008-03-25	586	2006~2012	582	352	17	143	70	0
경기	가장일반산업단지	2003-08-04	513	2005~2010	513	332	11	52	118	0
경기	가장2일반산업단지	2008-05-14	595	2008~2014	595	396	23	105	71	0
경기	용인테크노밸리	2008-06-12	1,016	2008~2017	1,015	624	28	237	126	0
경기	용현일반산업단지	1995-11-28	346	1995~2000	345	210	46	59	30	0
경기	장호원일반산업단지	2007-10-29	60	2008~2009	60	43	1	7	9	0
경기	문발1일반산업단지	1991-12-10	50	1991~1994	50	30	1	7	12	0
경기	문발2일반산업단지	1995-02-09	206	1995~1998	206	163	4	27	12	0
경기	당동일반산업단지	2004-11-11	641	2004~2011	641	239	141	141	120	0
경기	선유일반산업단지	2004-11-11	1,313	2004~2009	1,313	693	52	319	249	0
경기	신촌일반산업단지	2007-10-01	190	2007~2009	189	118	10	36	25	0
경기	오산일반산업단지	1998-02-02	232	1999~2006	232	171	6	27	28	0
경기	축현일반산업단지	2007-10-29	298	2007~2011	298	189	2	51	56	0
경기	금파일반산업단지	1999-10-29	80	1999~2003	78	50	1	13	14	0
경기	월릉일반산업단지	2006-12-20	837	2006~2011	836	563	37	131	105	0
경기	탄현일반산업단지	2000-12-19	123	2001~2005	123	84	13	12	14	0
경기	파주LCD일반산업단지	2003-07-31	1,716	2004~2007	1,716	1,120	72	348	176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21	0	0	0	기계, 조립금속 제조업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양주시,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37	29,934	621	3,864	화학물 및 화학, 컴퓨터, 전기제품	오산시, 경기도시공사	오산시
20	1,380	34	438	기타기계및장비, 화학물질및화학제품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외 17업종	용인시	용인시청 투자유치과
122	2,880	64	2,238	섬유·의복, 조립, 금속, 기계, 장비	의정부시	의정부시
7	161	3	171	기타기계 및 장비, 전기전자,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이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13	460	18	406	식품,의복,가구등	파주시	파주시
18	3,368	180	2,502	골판지및종이관련등	파주시	파주시
5	18,000	1	313	전자부품,영상,음향등	파주시,경기도시공사	파주시
87	1,920	12	708	전자부품,영상,음향등	파주시,경기도시공사	파주시
47	14	0	62	식품료, 종이, 출판·인쇄, 화학,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등	파주자유로산업단 지업협동조합	파주시
30	1,200	4	367	인쇄업	파주인쇄공업사업 협동조합	파주시
68	0	0	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등	파주우정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우정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11	340	3	245	가구,조립금속 등	파주시	파주시
2	x	x	x	화학,의료,전자부품,컴퓨터,정 밀,광학,영상,통신장비,컴퓨터 등	경기도시공사	파주시
46	1,122	1	442	가구, 조립금속 등	통일산업단지협동 조합	파주시
5	28,960	5,425	16,989	전자부품, 음향통신 등	파주시, 경기도시공사	파주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기	법원1일반산업단지	2008-12-03	345	2008~2011	345	207	10	75	53	0
경기	법원2일반산업단지	2010-03-15	350	2009~2011	348	170	23	129	17	9
경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2008-05-30	3,928	2008~2015	3,928	2,886	44	494	504	0
경기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1993-12-18	690	1993~1999	690	463	31	149	47	0
경기	오성일반산업단지 (외국인)	2005-11-07	601	2005~2008	600	329	14	158	99	0
경기	장당일반산업단지	1995-02-20	150	1995~1998	150	142	2	1	5	0
경기	진위일반산업단지	2004-09-17	486	2003~2010	485	257	36	101	91	0
경기	추팔일반산업단지	1993-11-12	610	1994~2000	610	414	36	115	45	0
경기	칠괴일반산업단지	1995-03-04	641	1995~2000	641	495	22	86	38	0
경기	평택일반산업단지	1991-11-30	535	1991~1993	534	407	3	80	44	0
경기	송탄일반산업단지	1991-07-31	1,086	1988~1990	1,086	787	21	230	48	0
경기	포승(2)일반산업단지	2008-05-02	633	2007~2014	552	427	24	101	0	0
경기	현곡일반산업단지	1993-12-28	723	1996~2006	723	501	14	136	72	0
경기	신평일반산업단지	1995-02-14	57	1989~1992	57	43	0	14	0	0
경기	양문일반산업단지	1994-03-29	180	1994~2002	180	106	12	48	14	0
경기	동탄일반산업단지	2009-07-31	1,973	2009~2014	1,964	812	31	842	105	174
경기	마도일반산업단지	1994-05-17	940	1997~2005	940	587	62	291	0	0
경기	발안일반산업단지	1997-08-23	1,839	1997~2007	1,839	1,268	38	397	121	15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인쇄및기록매체, 금속가공, 고무제품및플라스틱 등	파주시	파주시
0	0	0	0	식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가구, 기타제품 제조업	파주시	파주시
0	0	0	0	전자부품, 컴퓨터 등	경기도시공사	평택시
34	14,067	791	5,557	첨단업종, 조립금속기계, 음식료, 석유화학, 기타제조업	경기도시공사	평택시
5	234	7	159	비금속광물제품,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5	4,480	42	641	음식료, 조립금속	평택시장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24	7,022	338	2,057	기타기계 및 장비,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 영상음향및통신장비 등	평택시장, 평택도시공사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42	7,488	139	2,355	석유화학, 조립금속, 기타제조업	평택시장	평택시
22	2,150	33	809	석유화학, 조립금속	평택시장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63	10,926	464	3,179	조립금속, 석유화학	평택시장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152	17,037	132	6,003	조립금속, 석유화학	한국토지공사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0	0	0	0	금속가공 제조업	포승산단(주)	평택시
31	14,467	1,080	2,705	첨단업종, 석유화학, 조립금속	경기도시공사	평택시
6	554	7	156	음식료 등	포천시	포천시
53	1,208	6	727	섬 및 실염색,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날염가공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포천시
113	0	0	4,76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기타기계 및 장비, 통신장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시
191	1,968	1	4,061	조립금속, 전자 등	(주)새날	화성시
302	829	3	5,693	조립금속 등	한국토지공사	화성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기	장안첨단(1) 일반산업단지	1995-11-28	602	1997~2008	602	443	10	99	50	0
경기	장안첨단(2) 일반산업단지	2005-03-31	614	2004~2010	614	369	20	128	97	0
경기	전곡해양산업단지	2009-05-26	1,629	2008~2014	1,629	967	55	479	128	0
경기	팔탄(한미약품) 일반산업단지	2007-12-24	70	2007~2013	70	51	0	19	0	0
경기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1985-05-14	648	1981~1985	648	464	0	184	0	0
경기	화남일반산업단지	2002-06-26	149	2002~2009	149	110	1	28	10	0
경기	화성일반산업단지	1997-11-13	962	1997~2013	962	430	98	434	0	0
경기	목동일반산업단지	1994-03-26	60	1994~1998	60	48	1	9	0	2
경기	장안일반산업단지	1997-09-22	59	1997~2002	59	44	1	4	10	0
경기	강천일반산업단지	2008-09-12	58	2008~2012	58	38	0	8	12	0
경기	백학일반산업단지	2006-07-31	439	2005~2010	438	259	4	107	68	0
경기	장남일반산업단지	2009-10-30	99	2009~2013	98	62	3	0	33	0
경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2010-09-03	188	2010~2014	188	127	8	53	0	0
경기	장지일반산업단지 (구:신평3리)	2010-12-27	460	2010~2014	460	255	68	137	0	0
경기	적성일반산업단지	2011-12-16	468	2009~2013	466	317	9	89	51	0
경기	삼교일반산업단지	2011-04-18	56	2011~2014	56	36	1	8	11	0
경기	학운4일반산업단지	2011-06-27	489	2010~2014	490	273	34	111	38	34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6	6,198	95	1,708	기타기계및 장비제조	케이티씨(주)	화성시
4	1,444	51	491	섬유제품제조업	화성시, 경기지방공사	화성시
2	x	x	x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화성시
1	x	x	x	완제의약품제조업	한미약품(주)	화성시
38	30,368	40	3,265	의약품및 식품관련업	대한약품공업협동 조합	화성시
30	74	0	228	조립금속	대덕기업	화성시
3	395,800	32,244	18,43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삼성전자(주)	화성시
14	350	0	223	음식료품, 화장품, 금속제조,첨단업종	가평군	가평군
2	x	x	x	도자기제조업	여주군	여주군
5	66	0	60	전자부품, 금속가공제품 등	여주군	여주군
38	35	1	58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의 7개 업종	경기지방공사, 연천군	연천군
1	x	x	x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건일산업(주)	연천군
0	0	0	0	섬유제품제조업	청산대전일반산업 단지 조합	연천군
0	0	0	0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포천시,신평산업단 지개발주식회사, 장자산업단지개발 조합	포천시 신평산업단지개발(주)
0	0	0	0	게임 및 콘텐츠, 영상, 제조업 등	(주)케이비즈 파주산단	파주시
1	x	x	x	식품, 비금속광물제품, 전자부품, 금속가공제품	여주군	여주군
22	0	0	247	식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고 무및플라스틱, 비금속제품 등	김포골든벨리 4PF(주)	김포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기	지문일반산업단지	2011-04-26	177	2010~2013	176	141	3	17	15	0
경기	한강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2011-12-23	1,121	2009~2015	1,121	396	262	415	0	48
경기	신둔일반산업단지	2012-03-28	40	2011~2014	39	25	0	14	0	0
경기	용정일반산업단지	2012-06-07	949	2012~2015	949	662	47	132	108	0
경기	고령일반산업단지	2012-06-11	264	2012~2015	264	196	1	67	0	0
경기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2012-04-26	124	2011~2015	124	99	0	25	0	0
경기	경기화성바이오밸리일반 산업단지	2012-07-04	1,739	2010~2015	1,739	1,116	28	595	0	0
경기	덕평일반산업단지	2012-08-20	42	2011~2014	42	22	0	20	0	0
경기	운암일반산업단지	2013-02-18	40	2012~2015	39	28	0	11	0	0
경기	한강씨엠일반산업단지	2013-02-08	51	2012~2014	51	24	1	26	0	0
경기	학운3일반산업단지	2013-04-08	956	2010~2015	956	606	29	308	0	13
경기	매화일반산업단지	2013-10-29	376	2011~2015	376	182	34	160	0	0
경기	진위2일반산업단지	2013-12-05	983	2012~2017	983	705	21	138	119	0
경기	군포첨단일반산업단지	2013-12-27	288	2007~2016	288	160	17	96	0	15
경기	서이천일반산업단지	2013-12-30	53	2013~2015	38	38	0	0	0	0
경기	원삼일반산업단지	2013-12-23	74	2013~2015	74	58	1	15	0	0
경기	제일바이오일반산업단지	2014-07-16	60	2012~2016	60	57	0	3	0	0
경기	백학동구일반산업단지	2014-07-14	84	2014~2014	84	67	0	17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	x	x	x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주)락앤락	안성시
0	0	0	0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출판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	김포도시공사	김포시
2	x	x	x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주)에스앤지컴퍼니	이천시
0	0	0	0	섬유, 가죽/가방 및 신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	포천시,현대엠코	포천시
0	0	0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주)창성	평택시
1	x	x	x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엘지전자주식회사	평택시
0	0	0	0	식품품, 음료, 의약품물질 및 의약품 등	민간	화성시
0	0	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김흥식	이천시
0	0	0	0	식품제조업	(주)청정계	(주)청정계
1	x	x	x	식품제조업	한강씨엠주식회사	화성시
0	0	0	0	미정	김포골드밸리 PFV(주)	김포시
0	0	0	0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	시흥시	시흥시
0	0	0	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등	평택도시공사	평택시
0	0	0	0	-	경기 군포시	군포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구분호	이천시
0	0	0	0	식품품, 종이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대안화학주식회사	용인시
0	0	0	0	음료제조업,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일약품(주)	용인시
0	0	0	0	제1차 금속 제조업	(주)우진엔지니어링	연천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기	월롱2일반산업단지	2014-10-22	119	2014~2015	119	74	6	39	0	0
경기	도암일반산업단지	2014-12-05	60	2014~2015	60	47	1	12	0	0
경기	도드람일반산업단지	2014-12-22	52	2013~2015	52	42	1	9	0	0
경기	주곡일반산업단지	2014-12-26	200	2014~2016	200	145	53	0	0	2
경기	모기일반산업단지	2011-01-07	60	2010~2012	60	43	3	6	8	0
경기	설성일반산업단지	2011-01-07	48	2011~2014	48	33	0	6	9	0
경기	대월일반산업단지	2011-01-07	60	2010~2012	60	44	1	9	6	0
강원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1993-12-15	1,497	1998~2015	1,496	862	43	267	324	0
강원	강릉중소일반산업단지	1980-04-05	164	1981~1983	164	69	59	36	0	0
강원	강릉옥계일반산업단지	2010-07-30	485	2010~2016	484	389	0	95	0	0
강원	송정일반산업단지	2008-06-05	323	2008~2010	323	269	0	33	21	0
강원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	2008-12-19	782	2008~2013	782	448	17	130	187	0
강원	호산일반산업단지	2010-03-19	987	2010~2017	987	714	102	171	0	0
강원	동화일반산업단지	2003-11-29	409	2005~2007	409	270	13	126	0	0
강원	문막일반산업단지	1979-11-26	410	1990~1991	410	329	0	64	0	17
강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2008-02-01	323	2007~2013	323	183	24	91	23	2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등	월롱2산업단지(주)	파주시
0	0	0	0	식품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제품, 전자전기 제조업 등	패션판업, 범용화학공업사, 에이컴조명(주) 등 7개업체	이천시
0	0	0	0	식품품, 비금속광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도드람산업단지 박의협, 원용한	이천시
0	0	0	0	종이, 고무, 금속, 전자, 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	신아플랜트서비스( 주)외 19인	화성시
1	x	x	x	섬유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주)카라반이에스 대표 권혁중	이천시
0	0	0	0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기타 운송장비	(주)이산이앤씨	이천시
5	63	5	36	식품품, 종이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118	1,776	32	831	신소재, 해양생물, 정보문화, 녹색, 물류	강릉시	강릉시
45	388	5	588	조립금속, 목재 및 나무	강릉시	강릉시
1	x	x	x	1차금속제조업	(주)포스코	강릉시
1	x	x	x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강원도개발공사	동해시
0	0	0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1차금속 제조업 등	강원도개발공사	삼척시
1	x	x	x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한국가스공사	삼척시
20	5,119	10	1,233	제조업	강원도개발공사	동화산업단지관리 사무소
24	4,840	30	950	제조업	원주시	문막산업단지관리 사무소
5	0	0	0	자동차부품 및 기타 전기전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강원	우산일반산업단지	1973-05-03	355	1970~1973	355	285	16	54	0	0
강원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 단지	2008-07-10	94	2008~2012	94	79	0	9	6	0
강원	부론일반산업단지	2008-09-12	610	2006~2017	610	355	20	93	142	0
강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2010-03-19	319	2012~2018	319	211	17	65	26	0
강원	남면일반산업단지	2006-04-21	65	2005~2008	65	31	10	24	0	0
강원	후평일반산업단지	1968-08-22	477	1968~1969	477	306	37	134	0	0
강원	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 단지	2009-06-05	354	2009~2014	354	102	77	152	5	18
강원	홍천북방일반산업단지	1995-07-03	525	1995~2005	525	435	40	27	23	0
강원	우천일반산업단지	2009-05-29	756	2007~2015	756	486	12	258	0	0
강원	삼척종법벌전일반산업단지	2010-12-31	2,578	2009~2016	2,578	1,660	189	729	0	0
강원	봉명일반산업단지	2012-03-09	538	2012~2014	538	310	13	215	0	0
강원	태백스포츠타일반산업단지	2014-10-02	229	2014~2015	229	115	7	107	0	0
강원	남춘천일반산업단지	2013-10-11	1,446	2012~2016	1,446	780	170	496	0	0
강원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2013-10-14	511	2013~2016	511	356	0	155	0	0
충북	제천일반산업단지	1994-12-13	1,195	1994~2004	1,195	731	18	218	132	96
충북	제천제2산업단지	2007-02-02	1,307	2006~2012	1,307	763	100	196	199	49
충북	청주일반산업단지	1969-03-29	4,099	1969~1989	4,099	3,025	187	491	396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29	4,410	5	1,663	제조업	원주시	우산산업단지관리사무소
4	92	0	204	자동차부품	(주)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	원주시
0	0	0	0	의료,전기,전자,제조업	강원도개발공사/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
0	0	0	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금속기공제품, 제조업 등	강원도지사	철원군
1	x	x	x	의약(제약)	한화제약(주)	춘천시
76	1,517	3	871	음식료, 석유화학	춘천시	춘천시
14	1,325	1	405	전기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주)메가시티	춘천시
2	x	x	x	맥주제조업	하이트맥주(주)	홍천군
0	0	0	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음식료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횡성군
1	x	x	x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한국남부발전(주)	삼척시
0	0	0	0	바이오 식품산업	(주)봉명테크노밸리	춘천시
0	0	0	0	섬유제품, 전자부품, 기계, 자동차 및 기타 제조업	태백시청	태백시
0	0	0	0	제조업, 출판업,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 배급업	춘천도시공사	춘천시
0	0	0	0	제조업	GS동해전력주식회사	동해시
44	5,651	121	2,005	의약제제. 한방바이오	한국토지공사	제천시
38	1,054	54	619	신물질·생명공학,전기·전자및정보,광학·의료기기,재료·소재및 항공기수송	충북개발공사	제천시
357	131,245	6,694	27,354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전제조업	청주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 산업단지	2008-08-08	1,528	2007~2017	1,528	519	220	556	0	233
충북	증원일반산업단지	1997-06-25	375	1997~2009	375	204	3	59	109	0
충북	충주DAH산업단지	2009-10-20	78	2009~2014	78	68	0	5	4	1
충북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	2009-12-18	202	2009~2015	194	68	0	36	53	37
충북	만정일반산업단지	2010-02-05	50	2010~2012	50	45	0	2	3	0
충북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1979-11-26	1,286	1983~1993	1,286	847	111	174	154	0
충북	충주제3산업단지	2008-06-10	129	2008~2012	129	103	0	12	14	0
충북	충주제4산업단지	2009-12-18	176	2008~2012	176	156	0	9	11	0
충북	충주첨단일반산업단지	2003-02-07	1,992	2003~2010	1,920	916	12	458	268	266
충북	괴산첨단산업단지	2007-12-28	459	2006~2013	458	296	11	67	84	0
충북	괴산대제(건축자재) 산업단지	2008-11-11	855	2007~2015	854	550	24	280	0	0
충북	단양산업단지	2005-08-03	351	2005~2011	351	189	0	73	89	0
충북	보은산업단지	2009-05-15	1,280	2007~2017	1,280	835	57	254	128	6
충북	동부일반산업단지	2008-09-26	688	2007~2014	688	358	87	83	119	41
충북	주곡산업단지	2009-04-20	149	2008~2014	149	81	3	65	0	0
충북	영동산업단지	2008-05-09	998	2007~2015	998	612	13	373	0	0
충북	청산산업단지	2008-05-23	353	2007~2012	353	256	0	97	0	0
충북	상우일반산업단지	2005-02-14	679	2005~2014	679	317	69	183	11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전기, 전자, 정보, 신물질, 환경, 정밀기계, 항공기 등	청주테크노폴리스(주)	청주시
26	1,683	18	502	전기전자 외	입주업체협의회(중원지방산업단지)	중원산업단지
0	0	0	0	펄프, 종이, 비금속광물	동양메이저(주)외 2개소	충주시
0	0	0	0	의복, 모피, 가죽	(주)MIK	충주시
1	x	x	x	비금속	충주산업(주)	충주시
43	6,262	118	1,648	전기전자 외	충주시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4	938	0	76	전기전자, 신물질	충주시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2	x	x	x	전기전자	충주시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57	5,985	99	1,595	전기전자 외	충주시	충주첨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0	0	0	0	IT, BT	괴산군	괴산군
0	0	0	0	건축자재	대제산업단지주식회사	괴산군
5	153	0	14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제조업 등	단양군	단양군
0	0	0	0	음료, 식료품,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장비 등	충북개발공사	보은군
1	x	x	x	식료품, 전자부품 등	한국농어촌공사	보은군
0	0	0	0	기계금속 및 전자제품	민간개발	영동군
0	0	0	0	고무 및 플라스틱, 식료품, 연구개발업 등	영동군	영동군
8	3	0	19	식료품 및 장비제조업 등	옥천군	옥천군
0	0	0	0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등	(주)동부하이텍	음성군 산업개발과 공영시설팀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북	금왕일반산업단지	1994-12-13	571	1994~2005	571	407	3	161	0	0
충북	대풍일반산업단지	1992-02-28	435	1992~1996	435	325	4	34	72	0
충북	맹동일반산업단지	1996-11-27	419	1996~2007	419	274	3	88	54	0
충북	원남산업단지	2008-05-09	1,113	2007~2014	1,113	749	13	202	149	0
충북	육령일반산업단지	2009-12-31	65	2009~2014	65	40	1	7	17	0
충북	음성이테크일반산업단지	1993-06-08	135	1993~2000	135	81	1	20	33	0
충북	음성임대산업단지	2010-07-02	132	2009~2015	132	99	3	20	10	0
충북	음성하이텍일반산업단지	1992-08-18	397	1992~2005	397	313	1	48	35	0
충북	중부산업단지	2008-08-29	148	2007~2012	148	115	2	17	14	0
충북	감곡상우산업단지	2009-02-26	75	2008~2014	75	51	0	9	15	0
충북	증평일반산업단지	2005-01-05	682	2004~2009	682	507	11	81	83	0
충북	증평2일반산업단지	2009-11-20	707	2009~2014	706	509	6	83	108	0
충북	문백금성일반산업단지	2009-04-01	116	2009~2013	116	67	0	13	36	0
충북	이월일반산업단지	2000-05-03	300	2001~2006	283	180	5	28	70	0
충북	산수일반산업단지	2010-06-25	1,418	2008~2014	1,416	1,024	23	213	156	0
충북	신척산업단지	2008-02-27	1,513	2008~2013	1,486	1,008	69	409	0	0
충북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	2009-10-08	611	2009~2014	611	366	20	225	0	0
충북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2008-09-12	36	2008~2011	36	23	0	4	9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5	1,176	42	221	음식료품 제조업 외 6	음성군	음성군
10	2,318	23	609	음·식료품, 전자, 기계, 화학, 의료	음성군	대풍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30	1,178	2	871	전 제조업	음성군	맹동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52	0	0	2,009	음식료품, 조립금속, 컴퓨터및사 무용기기, 기타전기기계및전기 변환장치 등	음성원남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음성군 산업개발과 공영시설팀
0	0	0	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영성산업	음성군청 산업개발과 공영시설팀
30	76	1	112	섬유(편직임가공)	음성니트공업사업 협동조합	음성군
0	0	0	0	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NH공사	산업개발과 공영시설팀
18	2,052	18	605	식품, 화학, 유리, 금속, 자동차	(주)원스틸	음성하이텍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1	x	x	x	금속가공, 화학	(주)중부공업단지	음성군
0	0	0	0	화학물 및 화학제품외 3	(주)동인	음성군
7	3,722	93	391	전자부품, 화학제품, 조립금속, 컴퓨터제조	(주)환경시설관리 공사	증평군
0	0	0	0	전기장비 제조 외	계룡건설산업(주)	증평군
1	x	x	x	레이콘제조업	금성개발(주)	진천군
3	1,931	105	297	플라스틱제품제조업	SKC(주)	진천군
0	0	0	0	식료품의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계룡건설, 진천군 (SPC법인설립)	진천군
13	0	0	0	신물질, 생명공학, 전기전자 및 정보, 첨단지식기반 제조업분야	충북개발공사	진천군
0	0	0	0	비금속광물, 전자전기, 의료정밀광학기기	동신개발(주)	진천군
2	x	x	x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창영건설(주)	진천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북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외국인포함)	1992-05-13	9,450	1992~2002	9,090	2,901	1,620	3,377	0	1,192
충북	오창제2산업단지	2008-01-11	1,390	2007~2013	1,389	528	38	235	249	339
충북	현도일반산업단지	1991-12-19	719	1991~1995	715	412	10	153	140	0
충북	옥산산업단지	2009-01-23	1,364	2008~2013	1,363	743	11	223	386	0
충북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2010-10-15	3,284	2007~2016	2,409	1,120	36	865	388	0
충북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2011-03-04	409	2010~2013	409	166	18	78	140	7
충북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2011-02-25	628	2009~2015	628	219	72	173	73	91
충북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업단지	2013-02-14	320	2013~2020	320	217	22	81	0	0
충북	유촌일반산업단지	2014-09-05	405	2014~2017	405	270	4	131	0	0
충북	오선일반산업단지	2014-04-11	442	2013~2015	442	333	1	64	44	0
충북	강내일반산업단지	2014-04-16	185	2013~2015	185	137	4	44	0	0
충북	KGB복합일반산업단지	2014-01-17	306	2013~2015	306	176	5	125	0	0
충북	죽현일반산업단지	2013-07-18	145	2012~2014	145	119	0	3	14	9
충북	덕유산업단지	2013-04-26	60	2012~2017	60	40	2	18	0	0
충북	생극일반산업단지	2013-04-19	458	2011~2015	458	314	2	98	44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69	100,237	4,093	16,029	전기전자, 고도기술, 첨단산업 등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6	112	7	98	전기, 전자, 통신	충북개발공사	청주시
3	17,021	2	647	음식료품, 종이제품	(주)진로	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39	1,250	65	0	신소재, 전자, 정보 등	리드산업개발(주), 환희개발(주)	청주시
0	0	0	0	바이오, 의약품, 전기장비, BT 등	충북개발공사	청주시
0	0	0	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서영정밀(주)	진천군
0	0	0	0	음식료품업종	아이쿱소비자생활 협동조합사업연합회	아이쿱소비자생활협 동조합사업연합회
0	0	0	0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충청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	0	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주)한국기능공사 외 10업체	음성군
0	0	0	0	종이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오선일반산업단지 (주)	음성군
0	0	0	0	제1차금속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	동부특수강(주), (주)동부익스프레스	청주시
0	0	0	0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기타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KGB택배(주), 고려골든박스(주)	청주시
0	0	0	0	식료품,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등	(주)효성, (주)보령바이오파마	진천군
0	0	0	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주)덕유	증평군
0	0	0	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생극산업단지(주)	음성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북	충주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2013-02-15	1,811	2011~2015	1,811	1,232	17	352	210	0
충북	KGC예본일반산업단지	2012-08-31	87	2012~2012	87	59	0	28	0	0
충북	오창제3일반산업단지	2012-05-25	565	2012~2014	565	359	7	199	0	0
충북	대신일반산업단지	2011-10-28	47	2011~2012	47	28	0	0	0	19
충북	리노삼봉산업단지	2011-11-18	164	2011~2014	164	122	2	22	18	0
충남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1999-10-13	327	2003~2009	327	160	21	109	37	0
충남	세종일반산업단지	2010-09-09	664	2009~2014	660	450	0	89	121	0
충남	탄천일반산업단지	2007-07-23	997	2006~2012	988	637	46	182	123	0
충남	유구자카드일반산업단지	2008-07-08	96	2008~2009	96	61	0	27	0	8
충남	논산일반산업단지	1997-10-24	253	1997~2004	253	165	2	66	20	0
충남	논산2일반산업단지	2008-03-28	509	2007~2011	509	388	4	86	31	0
충남	동산일반산업단지	2009-11-30	729	2008~2012	729	476	29	89	115	20
충남	관창일반산업단지	1992-02-08	2,453	1992~2008	2,453	1,279	435	216	214	309
충남	영보일반산업단지	2007-09-21	1,249	2006~2013	1,248	663	0	124	423	38
충남	대신일반산업단지	2006-06-30	1,103	2006~2013	1,103	861	36	76	110	20
충남	대산제2일반산업단지	2006-07-07	1,142	2006~2018	1,142	903	0	0	158	81
충남	대죽일반산업단지	1991-12-06	2,101	2007~2013	2,101	1,541	24	280	243	13
충남	서산오토밸리(구:서산)	1997-01-24	3,990	1997~2013	3,988	2,697	54	682	525	30
충남	서산인더스밸리(구:서산2)	2008-05-08	812	2008~2012	811	610	2	86	113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	x	x	x	신물질생명공학 등	충주메가폴리스(주)	충주시
1	x	x	x	식품, 의약품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주)케이티엔지	충주시
0	0	0	0	신물질,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항공기 제조업	재민산업개발(주)	청주시
1	x	x	x	플라스틱창호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업 등	(주)대신시스템	충주시
0	0	0	0	금속가공, 기타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주)리노삼봉산업 단지	음성군
23	1,794	0	647	기계장비, 전기전자, 식품	계룡시	계룡시
0	0	0	0	의료용및의약품제조 외 5	(주)세종아이앤디	공주시
7	1,130	25	252	음식료 외 8종	충남개발공사	공주시
8	145	4	90	섬유제품제조업 외 1	공주시	공주시
24	2,721	17	753	금속, 전자, 기계, 전기, 식품제조 조업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논산시	관리소
10	1,762	66	344	금속가공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기계및 장비 등	논산2산업단지개발(주)	관리소
7	57	0	98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등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논산시
9	12,017	732	1,656	기계, 기타제조	(주)대우건설	보령시
0	0	0	0	가스	GS칼텍스주식회사	보령시
3	199,629	9,399	1,131	석유정제품제조업	현대오일뱅크(주)	서산시
1	x	x	x	석유정제품제조업	(주)S-oil	서산시
8	2,621	51	433	화합물및화학제품 외 3	(주)KCC	서산시
21	35,733	2,465	4,248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기아자동차(주), 계룡건설산업(주)	서산시
2	x	x	x	자동차및트레일러, 전자부품, 기타기계및장비	계룡건설(주)	서산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남	서산테크노밸리	2008-01-22	1,986	2007~2013	1,986	804	9	609	105	459
충남	인주일반산업단지 (외국인포함)	1993-06-02	3,406	1993~2010	3,405	,464	43	591	215	92
충남	아산테크노밸리	2006-03-23	2,984	2006~2013	2,984	1,374	75	696	429	410
충남	운용일반산업단지	2009-12-04	74	2009~2012	73	64	0	5	4	0
충남	아산디스플레이시티2일 반산업단지	2004-07-30	2,121	2004~2012	2,121	666	54	464	478	459
충남	아산디스플레이시티1일 반산업단지	1995-11-22	2,451	1995~2012	2,451	1,586	61	471	203	130
충남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포함)	1993-06-09	2,124	1992~2001	2,124	1,387	53	310	143	231
충남	마정일반산업단지	1994-05-23	150	1993~1996	150	99	0	23	28	0
충남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1990-02-08	823	1989~1992	823	567	13	174	69	0
충남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2001-11-29	1,006	2004~2008	1,006	629	23	303	51	0
충남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2007-11-22	1,523	2006~2014	1,858	1,209	17	286	338	8
충남	천안산업기술산업단지	1999-03-31	183	2001~2006	183	131	10	17	25	0
충남	천흥일반산업단지	1991-01-12	651	1991~1997	649	425	4	80	105	35
충남	풍세일반산업단지	2008-05-28	1,645	2006~2015	1,644	823	73	243	330	175
충남	금산제1일반산업단지	1992-07-29	920	1992~2001	919	717	115	24	63	0
충남	현대제철산업단지	2006-01-23	5,565	2005~2015	5,564	4,281	21	207	493	562
충남	송산2일반산업단지	2009-01-05	5,608	2006~2013	5,608	3,117	372	1,001	821	297
충남	함덕일반산업단지	2006-11-24	970	2006~2014	970	577	23	308	62	0
충남	홍성일반산업단지	2009-01-28	1,135	2008~2014	1,135	772	16	131	216	0
충남	예산일반산업단지	2008-12-03	1,507	2008~2013	1,507	1,030	22	262	192	1

2014년 12월				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20	145	0	34	자동차부품제조업 외 9종	(주)서신테크노밸리	서산시
43	61,747	2,047	4,990	기계, 철강,비금속, 운송장비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시, 현대자동차, 한국산업단지공단
97	12,514	273	4,735	비금속광물, 전자부품 등 10개업종	(주)아신테크노밸리	아산시
5	270	7	92	금속가공, 전자부품	동우건설(주)	아산시
0	0	0	0	비금속광물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삼성전자(주)	아산시
6	19,092	23,167	21,153	전기전자 외	삼성전자(주)	아산시
95	183,266	7,438	23,241	첨단산업, 의약품제조, 고도기술수반업	천안시	사)천안제3산업단지 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71	1,520	0	886	기계, 섬유, 화학, 전기	천안시	천안마정기
63	20,200	180	4,330	기계, 금속 등	천안시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73	9,040	198	4,701	기계, 전기, 전자	천안시	천안시
47	4,120	63	1,022	화학제품, 기계장비	천안시	천안시
84	1,052	16	858	전기/전자, 바이오, 영상컨텐츠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16	4,164	58	1,041	기계조립	천안시	천안산업단지입주기 업체협의회
66	3,800	36	2,686	금속산업, 전자부품 등	(주)세흥	천안시
1	x	x	x	고무제품제조업	한국타이어(주)	한국타이어(주)
1	x	x	x	1차금속산업	현대제철(주)	당진시
11	15,441	377	216	1차금속산업	충남개발공사,(주) 현대그린개발	당진시
37	1,319	3	380	전기전자, 철강, 기계, 기타	(주)합덕산업단지 개발	당진시
2	x	x	x	전기, 전자, 금속 등	일진전기(주)	홍성군청
24	0	0	0	식품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예산산업단지개발 (주)	예산산업단지개발(주)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남	예당일반산업단지	2010-06-14	1,043	2009~2014	1,043	665	15	218	127	18
충남	아산제2테크노밸리	2010-12-28	1,214	2009~2014	1,214	772	78	217	147	0
충남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2011-06-16	481	2009~2015	481	313	13	123	32	0
충남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2011-06-29	637	2009~2014	637	469	4	97	67	0
충남	선진일반산업단지	2011-07-15	737	2010~2013	737	538	18	143	38	0
충남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2011-09-22	636	2010~2014	636	450	7	129	50	0
충남	당진1철강산업단지	2012-02-28	2,014	2012~2016	2,014	1,439	10	94	165	306
충남	서산남부일반산업단지	2012-04-09	878	2012~2014	878	588	21	173	56	40
충남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2013-09-02	344	2012~2015	344	225	9	66	44	0
충남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2013-07-11	673	2012~2017	672	615	0	57	0	0
충남	송선일반산업단지	2013-12-30	314	2012~2015	189	189	0	0	0	0
충남	대산3일반산업단지	2014-04-16	527	2013~2015	527	455	3	69	0	0
충남	남공주일반산업단지	2014-09-02	400	2012~2016	400	206	26	168	0	0
전북	군산일반산업단지	1976-03-12	5,641	1978~2005	5,641	3,624	1,220	645	152	0
전북	새만금산업단지	2008-05-06	18,700	2008~2018	18,699	8,586	2,753	6,766	0	594
전북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1995-07-08	262	1996~1999	262	186	1	60	15	0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포함)	2008-09-05	2,986	2008~2014	2,982	1,943	97	633	224	85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섬유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예당산업단지개발(주)	예당산업단지개발(주)
0	0	0	0	전자부품, 의료장비 외 3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0	0	0	0	비금속 광물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신소재산업단지(주)	예산군
2	x	x	x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외 1	(주)KCC건설	서산시
0	0	0	0	식품,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	보령시	보령시
0	0	0	0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주)인더스파크	당진시
4	53,060	1,143	2,47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현대제철(주), 현대하이스코(주)	당진시
0	0	0	0	식품, 음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주)대우건설	서산시
0	0	0	0	금속가공, 의료기기, 전기장비 제조업 등	하나미이크론(주)	아산시
0	0	0	0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제조업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권오갑	서산시
0	0	0	0	제조업	(주)송선일반산업단지에스피씨	공주시
0	0	0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서림종합건설주식회사	서산시
0	0	0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제품 등	솔브레인(주)	공주시
67	48,928	1,470	5,281	식품, 화학, 목재 등	군산시	군산시
0	0	0	0	부품제조산업, 첨단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 R&D	한국농촌공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32	625	58	911	전 제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제시
8	393	4	195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및 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지앤아이(주), 지식경제부	김제시,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전북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포함)	2008-04-18	2,772	2007~2013	2,683	1,575	93	638	377	0
전북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1985-05-17	3,309	1985~1996	3,309	2,563	76	637	33	0
전북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2008-03-14	502	2007~2010	502	303	26	136	37	0
전북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1966-06-20	1,683	1967~1969	1,683	1,169	114	400	0	0
전북	전주제2일반산업단지	1984-03-14	687	1985~1987	687	531	27	129	0	0
전북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 단지(1단계)	2008-01-31	291	2008~2011	291	157	44	58	19	13
전북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	2010-05-18	80	2010~2011	80	48	1	14	17	0
전북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1979-10-04	202	1979~1981	202	153	0	49	0	0
전북	정읍제2일반산업단지	1991-04-18	999	1991~1994	999	668	19	179	133	0
전북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1991-04-18	1,025	1992~2003	1,025	757	9	170	89	0
전북	정읍첨단과학(RFT)일반 산업단지	2007-06-29	896	2007~2013	896	425	25	173	113	160
전북	고창일반산업단지	2010-09-24	849	2008~2014	849	618	22	127	82	0
전북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 산업단지	2007-12-21	354	2007~2011	354	143	20	85	106	0
전북	완주일반산업단지	1988-07-07	3,359	1989~1994	3,359	2,615	45	305	394	0
전북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1991-12-05	3,074	1997~2002	3,074	1,843	91	738	402	0
전북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 단지	2010-12-31	1,314	2011~2014	1,314	969	0	226	119	0
전북	완주테크노밸리(2단계) 일반산업단지	2014-12-26	2,120	2013~2017	2,120	1,315	99	519	0	187
전북	전주친환경 (3-1단계) 첨단복합산업단지	2011-12-01	284	2011~2013	284	183	10	56	35	0
전남	강진환경산업단지	2008-12-12	657	2010~2015	657	410	60	187	0	0
전남	성황산업단지	2003-10-30	1,017	2011~2015	1,017	376	0	203	438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34	2,304	63	540	전자, 통신, 자동차, 첨단부품 등	익산시	익산시
164	51,193	1,791	8,405	기계, 섬유, 금속, 첨단업종 등	익산시	익산시
5	0	0	10	음식료품, 의료, 정밀	익산시	익산시
131	26,285	1,165	3,851	전 제조업	전주시	(사)전주공업단지협회
19	9,218	354	910	전 제조업	한국토지공사	(사)전주공업단지협회
22	812	6	468	자동차, 농업, 건설기계	내공사	전주시
8	30	0	9	화학물질, 고무제품 등	전주시	전주시
8	2,375	0	212	조립금속, 음식료, 종이	정읍시	정읍시
71	7,689	157	1,651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화학	전북개발공사	정읍시
57	7,051	91	1,678	음식료, 1차금속, 조립금속	정읍시	정읍시
4	0	0	0	음식료 외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	정읍시
4	0	0	0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4	0	0	0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전라북도	전라북도
83	97,230	2,961	11,895	자동차, 정밀화학, 기계	전라북도	완주군
129	13,723	323	4,675	운송장비, 전기전자	한국토지공사	완주군
21	278	0	495	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	완주군	완주군
0	0	0	0	비금속광물제품, 전자전기, 기계, 자동차 제조업	완주테크노밸리(주 )	완주군
1	x	x	x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주시	전주시
0	0	0	0	환경산업,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강진군, 전남개발공사	강진군
0	0	0	0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광양시	광양민경제자유구역청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전남	신금일반산업단지	2008-03-27	398	2008~2012	398	228	28	113	29	0
전남	황금산업단지	2003-10-30	1,116	2010~2016	1,116	728	38	216	134	0
전남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2008-07-11	474	2008~2015	474	341	20	87	26	0
전남	나주일반산업단지	1994-02-02	549	1994~2010	549	402	15	132	0	0
전남	문평일반산업단지	1979-10-04	323	1979~1991	323	246	4	73	0	0
전남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2008-07-11	1,785	2008~2015	1,785	1,218	80	468	0	19
전남	세라믹일반산업단지	2009-06-05	116	2008~2013	116	81	14	21	0	0
전남	삼진일반산업단지	1995-04-25	219	1995~1999	212	170	0	32	10	0
전남	대양일반산업단지	2009-02-05	1,565	2008~2015	1,565	1,000	70	266	229	0
전남	순천일반산업단지	1977-04-29	583	1977~1986	582	448	13	107	14	0
전남	해룡일반산업단지	1998-04-22	1,592	2003~2015	1,592	1,049	63	206	209	65
전남	울촌제1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포함)	1992-05-13	9,130	1992~2015	9,130	6,465	118	1,860	687	0
전남	여수오천일반산업단지	1979-06-14	222	1980~1983	222	130	6	38	48	0
전남	울촌제2일반산업단지	1997-10-09	3,793	1997~2020	3,791	2,119	66	1,408	198	0
전남	울촌제3일반산업단지	2003-10-30	9,762	2016~2020	9,762	5,438	165	2,614	1,545	0
전남	도양일반산업단지	2008-09-26	2,684	2011~2015	2,684	1,169	36	777	272	43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41	0	0	158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광양신금지구개발 (주) 조용기	광양시
0	0	0	0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광양시	광양민경제자유구역청
0	0	0	0	1차금속산업, 조립금속 및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등	광양익신일반산업 단지개발사업조합	광양시
26	1,531	27	536	음.식료업, 조립금속.기계.장비, 기타제조업	나주시	나주시
7	5,283	145	603	음식료, 섬유의복,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동물용사료및 조제식품 제조업	나주시	나주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및 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업 등	나주시(민관합동)	나주시
0	0	0	0	파인세라믹스 소재, 초경량 첨단부품 소재, 비금속 소재	목포시	목포시
37	128	0	236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목포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시
0	0	0	0	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전기장비, 기타 운송장비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목포시
37	5,157	165	1,510	1차금속, 조립금속, 음식료품, 비금속 등	한국토지공사	순천시
7	3,970	176	269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 등	순천시장/대우건설	순천시
107	41,427	1,140	5,327	1차기계산업, 기계및장비제조업 등	전라남도 지식경제부	광양민권경제자유구 역청을촌자유무역지 역관리원
46	1,112	8	846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여수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수시
0	0	0	0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라남도지사	광양민경제자유구역청
0	0	0	0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미정	광양민경제자유 구역청
0	0	0	0	운송장비제조업 등	고흥군	고흥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전남	대미전기자동차산업단지	2009-05-20	1,652	2009~2013	1,652	1,094	50	508	0	0
전남	삼호일반산업단지	1991-04-30	2,971	1991~2011	2,926	2,153	39	179	348	207
전남	신안조선터운일반산업단지	2009-08-05	13,355	2009~2012	13,355	5,763	250	4,818	891	1,633
전남	장흥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2007-09-20	902	2007~2015	902	482	56	210	106	48
전남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2008-12-12	2,914	2008~2015	2,914	1,216	73	399	501	725
전남	군내일반산업단지	2006-11-01	686	2006~2017	686	532	7	83	64	0
전남	화원조선산업단지	2007-07-20	2,075	2007~2016	2,057	1,426	76	555	0	0
전남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	2006-01-27	755	2006~2011	755	388	10	148	209	0
전남	담양일반산업단지	2013-11-28	581	2012~2015	581	334	16	231	0	0
전남	신도일반산업단지	2011-05-02	298	2009~2014	297	226	2	69	0	0
전남	세풍일반산업단지	2011-09-02	3,000	2010~2015	3,000	1,630	68	465	837	0
전남	묘도녹색산업단지	2012-10-19	368	2012~2015	368	249	11	108	0	0
전남	용당일반산업단지	2013-05-27	351	2013~2016	351	281	0	70	0	0
전남	동함평일반산업단지	2013-05-20	735	2013~2015	735	491	13	1	92	138
경북	경산1일반산업단지	1990-12-10	1,577	1991~1994	1,577	1,150	44	335	48	0
경북	경산2일반산업단지	1994-08-05	489	1994~1999	486	333	11	116	26	0

2014년 12월				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35	0	0	114	음식료,비금속광물,전기전자, 기타기계	영광군 (주)탑글로리	영광군
1	x	x	x	강선건조업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영암군
0	0	0	0	조선업종, 조선기자재업종,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종	서남개발(주), 전남 신안군	신안군
0	0	0	0	나노관련산업(IT,BT,NT,ET),연 구소,연구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장성군
12	201	0	779	음식료품,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남개발공사	장흥군
1	x	x	x	선박건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고려중공업	진도군
0	0	0	0	조선업	대한조선(주)	해남군
7	1,298	63	288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화순군	화순군
0	0	0	0	식료품, 종이제품, 1차금속 제조업 등	담양그린개발(주)	담양군
2	x	x	x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전자,부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나주시	나주시
0	0	0	0	1차금속, 조립금속 ,식품 등	(주)광양개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0	0	0	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주)청안	여주시
0	0	0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영암군
0	0	0	0	식료품, 비금속, 기계, 전자, 자동차, 화학	함평군수, 동함평산업단지 주식회사	함평군
194	46,050	1,406	9,709	섬유의복, 금속, 기계	경산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104	4,772	181	2,108	섬유의복, 금속, 기계	경산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북	경산3일반산업단지	2005-05-09	1,497	2005~2009	1,456	1,010	43	238	165	0
경북	진량3일반산업단지	2009-01-12	97	2009~2014	97	49	0	29	19	0
경북	강동일반산업단지	2010-04-22	992	2010~2014	992	649	19	240	84	0
경북	건천제1일반산업단지	1993-07-28	147	1993~1996	147	114	2	17	14	0
경북	건천제2일반산업단지	1995-06-16	990	1996~2012	990	745	41	160	44	0
경북	명계2일반산업단지	2010-08-02	103	2010~2014	103	66	1	18	18	0
경북	문산일반산업단지	2008-01-03	315	2007~2014	314	218	8	40	48	0
경북	석계일반산업단지	1998-01-12	146	1998~2003	146	116	2	15	13	0
경북	석계2일반산업단지	2008-10-03	123	2008~2011	122	99	1	13	9	0
경북	외동일반산업단지	1993-07-28	142	1993~1994	142	116	4	15	7	0
경북	외동2일반산업단지	2003-12-08	603	2003~2009	603	411	14	119	59	0
경북	천북일반산업단지	2004-07-08	1,862	2004~2014	1,862	1,285	143	295	139	0
경북	화산일반산업단지	1998-07-06	150	1998~2009	149	120	4	11	14	0
경북	김천일반산업단지	2008-08-04	2,228	2008~2016	2,211	1,517	63	388	243	0
경북	신기일반산업단지	2006-10-30	126	2006~2009	126	83	8	2	5	28
경북	봉통일반산업단지	2010-04-26	410	2009~2012	410	269	11	130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68	9,838	187	2,912	섬유의복, 금속, 기계	한국토지공사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0	0	0	0	금속, 기계, 자동차부품, 기타제조업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산시청
13	0	0	211	비금속광물,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현우산기(주) 외 2개사	경주시
7	2,454	64	494	자동차부품	뉴경주개발(주)	경주시
21	3,327	107	1,124	기타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주)공단디앤시	경주시
0	0	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진양개발(주)	경주시
26	0	0	395	조립금속,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주)덕산산업개발	경주시
35	4,703	1	432	자동차부품	동산산업	경주시
14	0	0	251	기타기계및장비, 1차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경진산업개발	경주시
22	6,562	216	798	자동차부품	선우기업	외동지방산업단지 주기업협의회
39	666	0	1,247	제1차금속, 조립금속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운송관련서비스 등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주시
116	4,313	4	2,153	자동차부품	경주천북기업도시(주)	경주시
14	2,288	1	612	목재및나무제품 외 5	(주)공단개발	경주시
15	329	0	754	음식료품, 자동차, 전자, 조립금속, 기타 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김천시청	김천시
1	x	x	x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문경시	문경시
0	0	0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주)제일케이블	문경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북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2010-08-23	440	2008~2015	440	288	16	136	0	0
경북	상주청리일반산업단지	1995-11-16	1,295	1996~2009	1,261	1,000	28	114	119	0
경북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2005-06-13	766	2002~2010	766	426	94	231	0	15
경북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2004-07-05	941	2004~2010	941	541	40	230	130	0
경북	구룡포일반산업단지	2010-09-21	995	2010~2016	995	692	5	130	168	0
경북	신흥일반산업단지	2010-06-01	112	2010~2014	112	74	3	18	17	0
경북	영일만일반산업단지 (포항외국인 포함)	2004-01-26	963	2004~2013	963	656	13	294	0	0
경북	영일만2일반산업단지	2005-10-17	720	2005~2011	720	569	13	97	41	0
경북	포항4일반산업단지	2002-01-24	2,047	2002~2006	2,047	1,535	30	213	269	0
경북	포항테크노파크2일반산 업단지	2008-12-23	1,659	2008~2019	1,659	648	112	701	0	198
경북	개진일반산업단지	1994-08-11	148	1995~1997	148	87	2	42	17	0
경북	다산일반산업단지	1990-12-10	637	1991~1995	636	447	10	126	53	0
경북	다산2일반산업단지	2003-09-08	766	2003~2008	704	467	22	138	77	0
경북	성산일반산업단지	1994-08-11	113	1994~2015	113	64	8	29	12	0
경북	군위일반산업단지	2009-04-20	198	2009~2013	198	113	17	24	44	0
경북	성주일반산업단지	2008-05-26	851	2008~2012	851	581	24	164	82	0
경북	월항일반산업단지	1993-07-28	78	1994~1998	78	52	8	18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등	문경시	문경시
4	414	15	3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현대로템(주)	상주시
1	x	x	x	한약재 재배생산 및 가공업, 한방상품제조업, 한약제제 가공업	상주시장	시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31	218	0	377	바이오산업 외	경상북도개발공사	안동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주)광남외 1개사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	손대호	포항시
6	4,451	30	437	화합물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1차 금속산업 제조업 등	포항시	포항시
6	2,817	14	65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포항시	포항시
85	18,170	855	1,509	1차금속, 조립금속 등	한국토지공사	포항철강산업단지관 리공단
0	0	0	0	1차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의료정밀	포항테크노밸리 PFV(주)	포항시
35	320	6	345	섬유, 조립금속	송우직물외 29개 업체	고령군
69	6,292	20	2,041	주물 및 관련업종	대구경북주물 사업협동조합	다산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81	4,049	24	1,602	기타제조, 기계금속	계룡건설산업(주)	다산2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0	0	0	0	섬유제품	경일섬유	고령군
0	0	0	0	전기기계, 조립금속, 자동차부품제조업	(주)명산디앤씨	군위군
39	0	0	780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자 동차및트레일러	경상북도개발공사	성주군
13	84	0	40	석제품	성주군	성주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북	두전일반산업단지	2009-01-02	55	2009~2011	54	40	1	6	7	0
경북	영주일반산업단지	1993-08-25	178	1994~1997	178	127	5	34	12	0
경북	OCI머티리얼즈 일반산업단지	2008-09-10	171	2008~2011	171	123	4	26	18	0
경북	고경일반산업단지	2009-12-24	1,565	2008~2016	1,563	1,045	60	322	136	0
경북	영천첨단부품소재 일반산업단지	2006-06-29	1,461	2006~2013	1,461	1,000	39	259	161	2
경북	왜관일반산업단지	1979-11-26	2,540	1990~2008	2,505	1,675	39	614	177	0
경북	왜관3일반산업단지	2008-10-20	740	2008~2017	740	506	15	133	86	0
경북	가흥일반산업단지	2010-11-12	207	1987~1988	207	162	5	29	11	0
경북	광명일반산업단지	2010-10-05	728	2010~2014	714	500	2	106	106	0
경북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2010-11-19	195	2007~2012	195	175	0	3	17	0
경북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2010-11-08	4,216	2008~2018	4,210	1,652	26	1,009	616	907
경북	모화일반산업단지	2010-12-06	376	2010~2014	376	303	7	43	23	0
경북	제내5일반산업단지	2013-06-12	139	2012~2016	138	95	6	25	12	0
경북	경산4일반산업단지	2011-02-17	2,502	2011~2015	2,501	1,318	168	522	435	58
경북	갈산일반산업단지	2011-03-09	148	2010~2014	148	97	2	49	0	0
경북	제내2일반산업단지	2011-08-18	84	2010~2015	84	59	5	20	0	0
경북	구어2일반산업단지	2011-09-15	805	2011~2015	805	543	27	185	50	0
경북	서동일반산업단지	2011-09-30	271	2010~2013	271	218	6	14	30	3
경북	석포일반산업단지	2012-01-12	185	2012~2015	185	101	4	80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2	x	x	x	식품제조업, 기타제조업	풍년식품(주)의 1개사	영주시
39	788	0	239	직물, 전자, 기타	풍기직물공업단지 추진위원회	영주시
2	487	78	95	산업용가스제조	OCI머티리얼즈(주)	영주시
0	0	0	0	제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기타운송장비	(주)유영금속 외2개사 대표이사 김병수	영천시
62	4,412	23	1,420	금속기계, 자동차부품, 메카트로닉스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도시주택과
375	33,159	983	10,423	기계장비, 조립금속, 음식료	한국토지공사	왜관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0	0	0	0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비금속, 섬유	철곡군	왜관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4	857	167	279	음식료, 전기전자 외	영주시	영주시
1	x	x	x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및장비 제조업 등	한국자신신탁(주) 외 2개사	포항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장비	포항시	포항시
1	x	x	x	비금속광물제조업 외 8개 업종	포항시	포항시
42	0	0	936	1차금속및조립금속,기타기계및 장비,자동차및트레일러	(주)동산시앤시 대표 김상윤	경주시
0	0	0	0	일반	(주)에스엠피씨	경주시
0	0	0	0	섬유제품 등	경산시	경산시
0	0	0	0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주)주광	영주시
1	x	x	x	자동차부품제조업 외 3개종	삼정기업(주)	경주시
0	0	0	0	기타운송장비 외 4개업종	(주)서해 외 2개사	경주시
0	0	0	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주)세진	경주시
0	0	0	0	1차 금속 제조업	(주)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북	건천용명일반산업단지	2012-01-26	116	2011~2015	115	87	3	17	8	0
경북	천북2일반산업단지	2012-03-08	104	2011~2015	104	77	2	16	9	0
경북	녹동일반산업단지	2012-03-08	140	2011~2014	140	100	2	26	12	0
경북	연화일반산업단지	2012-03-19	52	2011~2013	52	35	1	8	8	0
경북	성주2일반산업단지	2012-08-13	950	2012~2016	950	658	40	245	0	7
경북	건천3일반산업단지	2012-12-03	149	2012~2014	149	116	3	22	8	0
경북	나이일반산업단지	2013-01-10	120	2013~2015	119	78	4	37	0	0
경북	그린일반산업단지	2013-12-24	871	2013~2016	870	586	20	264	0	0
경북	문산2일반산업단지	2013-12-19	610	2013~2016	607	397	29	115	66	0
경북	검단일반산업단지	2014-09-15	931	2012~2017	931	594	72	265	0	0
경북	양남일반산업단지	2014-12-22	1,720	2014~2017	1,720	1,095	144	481	0	0
경북	동고령일반산업단지	2013-03-11	752	2013~2015	749	430	59	260	0	0
경북	열외일반산업단지	2014-12-29	225	2014~2015	225	125	5	95	0	0
경북	석계4일반산업단지	2014-12-29	121	2014~2014	121	86	2	33	0	0
경남	오비일반산업단지	2003-10-16	196	2003~2011	195	129	12	41	13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3	0	0	115	자동차부품제조업외3개업종	(주)삼사이앤씨 외 2개사 대표이사	경주시
0	0	0	-	금속가공제품제조업외2개	디케이개발(주)	경주시
2	x	x	x	자동차부품제조업외3개업종	동부아이앤씨(주)	경주시
8	294	12	70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품 제조업 등	(주)엠디개발	칠곡군
0	0	0	0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경북 성주군	성주군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주)공단디앤시	경주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하승원텍(주)	경주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제조업 등	포함그린사업단(주 )	포항시
0	0	0	0	목재 및 나무, 고무 및 플라스틱, 1차금속,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등	(주)씨앤디산업	경주시
0	0	0	0	1차금속, 금속가공,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우진건설(주)외 4개사	경주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주)동경주산업개 발 외 26개사	경주시
0	0	0	0	목재, 비금속, 조립금속, 전기전자 , 운송장비, 기타	양원기업	고령군
0	0	0	0	비금속광물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주)보광산업개발	고령군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진영상사(주) 외 3개사	경주시
4	640	0	68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주)대우건설	거제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남	청포일반산업단지	2009-06-18	1,210	2009~2017	1,210	817	29	163	133	68
경남	김해GoldenRoot 일반산업단지	2007-08-02	1,524	2007~2012	1,269	878	45	252	94	0
경남	니전일반산업단지	2010-06-03	67	2010~2014	67	46	2	16	3	0
경남	덕암일반산업단지	1997-04-10	156	1999~2001	152	106	0	25	21	0
경남	명동일반산업단지	2010-07-29	263	2010~2015	263	185	2	41	35	0
경남	주호일반산업단지	2010-04-01	117	2009~2013	117	88	5	18	6	0
경남	수곡일반산업단지	2010-05-20	80	2009~2013	61	34	0	7	20	0
경남	수정일반산업단지	2014-09-15	276	2014~2017	276	225	13	38	0	0
경남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	2010-01-08	81	2010~2013	81	56	9	9	7	0
경남	진북일반산업단지	2004-04-01	873	2003~2012	798	468	15	169	146	0
경남	사포일반산업단지	2004-12-16	746	2004~2011	746	455	10	174	87	20
경남	용전일반산업단지	2008-12-04	634	2008~2015	634	361	14	133	126	0
경남	하남일반산업단지	2009-09-17	1,020	2009~2015	1,017	646	39	164	168	0
경남	구암일반산업단지	2009-09-28	209	2009~2013	209	112	5	92	0	0
경남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외국인포함)	1991-12-28	3,051	1992~2006	2,555	1,832	14	317	263	129
경남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1997-02-05	1,616	1997~2006	1,616	992	108	327	121	68
경남	홍사일반산업단지	2009-12-17	673	2009~2016	673	470	15	93	95	0
경남	장전일반산업단지	2010-07-19	197	2009~2012	197	124	4	69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외 2종	(주)신해중공업	거제시
82	7,153	212	2,670	기계,전기,전자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0	0	0	0	자동차및트레일러,기타운송-기계·장비제조업	한영건설(주)	김해시
27	2,534	101	592	음식료품 외 12개	김해시	김해시
0	0	0	0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주)한림테크	김해시
0	0	0	0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타기계,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등	김해상공개발(주)	김해시
8	63	0	58	기타기계및장비,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주식회사동국산기	창원시
1	0	0	0	조선기자재	창원시(통합)	창원시
1	0	0	0	음료제조업(알콜음료제조업)	(주)진로소주	창원시
36	3,845	60	1,174	고무및플라스틱, 금속가공, 기타기계및장비 제조업 등	창원시장	창원시
38	280	20	2,926	자동차부품, 전기기계, 정밀기기, 조립금속, 기계장비	한국토지주택공사	밀양시
12	0	0	255	섬유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밀양자동차부품소재공단 (주)경진인터내셔널 대표 외	밀양시
43	0	0	0	1차금속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밀양시
0	0	0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주)드림에이스테크	사천시
24	34,022	1,583	5,846	전기 전자, 기계, 담배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33	15,426	1,296	4,809	항공, 운송장비, 기계	경남개발공사	사천시
0	0	0	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외	홍보산업(주)	사천시
0	0	0	0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외	(주)부송이인지 외 2개사	사천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남	덕계일반산업단지	2009-11-19	360	2009~2014	357	218	12	74	53	0
경남	유산일반산업단지	2010-03-24	118	2010~2014	118	78	0	23	17	0
경남	산막일반산업단지	2007-07-03	995	2005~2013	972	581	68	187	136	0
경남	양산일반산업단지	1978-03-15	1,643	1979~1981	1,643	1,359	26	258	0	0
경남	어곡일반산업단지	1991-09-07	1,268	1992~2003	1,268	661	141	179	287	0
경남	가산일반산업단지	2010-05-13	257	2010~2015	257	188	4	44	21	0
경남	정촌일반산업단지	2005-11-07	1,713	2005~2014	1,713	674	32	439	208	360
경남	진주일반산업단지	1999-11-05	809	2005~2015	809	354	24	164	267	0
경남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1978-03-15	2,135	1977~1981	2,135	1,514	78	401	142	0
경남	남양지구산업단지	2003-10-30	293	2003~2009	293	133	9	89	62	0
경남	마천일반산업단지	1992-08-22	611	1988~2001	611	479	15	97	20	0
경남	죽곡일반산업단지	2006-04-06	138	2006~2010	137	107	4	16	10	0
경남	창원일반산업단지	2007-05-25	478	2007~2013	478	230	18	157	37	36
경남	범송일반산업단지	2010-04-08	621	2008~2015	621	421	24	114	62	0
경남	덕포일반산업단지	2010-03-18	1,017	2008~2014	1,017	712	62	111	132	0
경남	안정일반산업단지	2010-01-08	1,305	2009~2014	1,305	869	66	111	238	21
경남	거창일반산업단지	2007-07-05	741	2007~2012	741	465	0	125	129	22
경남	내산일반산업단지	2008-11-17	419	2008~2015	419	261	49	29	80	0
경남	대가룡일반산업단지	2010-09-02	74	2010~2013	74	57	2	9	6	0
경남	대독일반산업단지	2009-04-17	266	2009~2015	265	156	1	55	53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식품, 종이, 화학, 금속, 기계장비 등	(주)마스타코리아	양산시
0	0	0	0	담배, 전기장비, 창고및운송	(주)석암	양산시
154	0	0	2,092	금속가공, 전기, 전자 등	양산산업단지(주)	양산시
108	17,600	860	10,508	화학, 기계, 전자, 금속, 섬유, 직물, 식품, 제지, 기타업종	경상남도	양산시
151	4,400	84	3,671	음식료품, 섬유의복, 종이인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삼성물산(주)	양산시
0	0	0	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대교엔지니어링(주)	진주시
62	3,000	27	1,492	금속가공, 기계, 전기장비	경상남도개발공사	진주시
37	172	0	221	기계 및 조립금속 등	진주시	진주시
515	11,504	300	7,744	전제조업	진주시	진주시
45	52	0	767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14	9,368	140	2,241	주물, 금속/비금속, 전기/전자	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8	434	0	136	금속가공, 기타운송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유)창원조선기자재협회	창원시
0	18	0	53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한국토지공사	창원시
0	0	0	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주)동삼	통영시
0	0	0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주)덕포산단	통영시
0	0	0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안정지구사업단(주)	통영시
43	0	0	0	음식료, 화학물, 금속가공 외	거창산업단지주식회사	거창군
1	x	x	x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삼강엠엔티(주)	고성군
1	x	x	x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EK중공업(주)	고성군
4	84	8	2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주)연호외 4개업체	고성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남	봉암일반산업단지	2008-10-17	298	2009~2013	298	183	12	40	63	0
경남	상리일반산업단지	2009-07-09	757	2009~2014	757	476	30	111	140	0
경남	율대일반산업단지	2010-07-08	182	2009~2015	182	133	7	19	23	0
경남	장좌일반산업단지	2010-04-01	695	2009~2015	694	417	129	25	123	0
경남	매촌일반산업단지	2008-03-27	99	2008~2014	98	72	1	10	15	0
경남	매촌제2일반산업단지	2009-06-08	75	2008~2011	75	52	2	10	11	0
경남	넥센일반산업단지	2010-05-06	494	2009~2015	493	411	0	43	39	0
경남	대합일반산업단지	2008-01-31	991	2005~2014	991	648	28	165	126	24
경남	역만일반산업단지	2009-12-24	82	2009~2013	82	64	0	11	7	0
경남	갈사만조선일반산업단지	2003-10-30	5,613	2008~2015	4,952	3,222	125	791	662	152
경남	대송산업단지	2003-10-30	1,367	2009~2016	1,367	814	33	275	245	0
경남	군북월촌일반산업단지	2010-06-17	187	2010~2015	187	139	0	23	25	0
경남	범수우거일반산업단지	2010-04-15	124	2010~2013	124	86	2	20	16	0
경남	부목일반산업단지	2009-12-31	692	2009~2014	692	473	24	109	86	0
경남	칠서일반산업단지	1979-11-26	3,067	1999~2013	3,067	1,931	167	544	404	21
경남	칠서태곡일반산업단지	2009-12-31	1,018	2009~2014	1,018	660	25	195	138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주)동원개발	고성군
0	0	0	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주)성우	경남도청
0	0	0	0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타운송 장비제조업,창고및운송관련서 비스업	해양코리아(주)	고성군
1	2,374	749	2,60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고성조선해양(주)	고성군
2	x	x	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정기장비제조업	(주)한동&C	산청군
4	0	0	6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주)청도	산청군
1	x	x	x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넥센타이어(주)	창녕군
17	1,746	0	258	제1차 금속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등	(주)대우건설	창녕군
2	x	x	x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코아스틸	창녕군
0	0	0	0	조선기자재	하동군, 하동지구개 발사업단(주)	광양민경제자유구역청
0	0	0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주)	광양민경제자유구역청
7	610	0	105	금속가공,전기장비,기타기계 및 장비,기타 운송장비	함안개발(주)	함안군
4	182	0	102	금속가공,기타기계 및 장비,기타 운송장비	범수개발(주)	함안군
0	0	0	0	전기장비,기타기계 및 장비,기타 운송장비	유앤디산업(주)	함안군
88	32,913	459	3,866	금속조립제조업외 9개 업종	철서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철서관리공단
0	0	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전기장비 제조업 등	두산중공업(주)	함안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남	함양일반산업단지	2008-06-10	1,782	2008~2015	1,760	1,219	30	287	224	0
경남	함양일반산업단지	2007-02-08	816	2007~2015	815	380	85	169	181	0
경남	휴천일반산업단지	2008-08-01	83	2008~2009	83	42	2	23	16	0
경남	대사일반산업단지	2010-11-10	300	2010~2015	296	204	3	89	0	0
경남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2011-02-17	336	2010~2016	335	185	16	97	37	0
경남	웅양일반산업단지	2011-01-17	69	2009~2015	69	37	0	17	15	0
경남	범수강주일반산업단지	2011-02-01	136	2011~2015	136	88	2	46	0	0
경남	천선일반산업단지	2011-01-17	110	2011~2013	109	60	2	37	10	0
경남	어곡제2일반산업단지	2011-04-07	336	2011~2016	335	206	6	58	65	0
경남	나전2일반산업단지	2011-06-02	121	2011~2015	120	76	0	33	11	0
경남	오척일반산업단지	2011-07-14	149	2011~2013	149	100	5	17	27	0
경남	지수일반산업단지	2011-08-25	122	2011~2015	122	95	2	7	18	0
경남	장기일반산업단지	2011-11-11	197	2011~2014	196	121	7	30	38	0
경남	모시일반산업단지	2012-03-08	404	2012~2015	403	289	32	22	60	0
경남	석계일반산업단지	2012-05-11	116	2012~2013	115	64	0	51	0	0
경남	하리일반산업단지	2012-07-26	222	2012~2015	222	155	7	30	30	0
경남	축동일반산업단지	2012-09-13	271	2012~2014	271	169	4	98	0	0
경남	대동일반산업단지	2012-09-13	103	2012~2015	103	71	2	30	0	0
경남	창곡일반산업단지	2012-09-13	63	2012~2014	63	37	3	23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88	0	0	1,814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등	함안산업단지(주)	함안군
1	x	x	x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주)한국화이바	함양군
0	0	0	0	제1차 금속제조업	함양제강(주)	함양군
0	0	0	0	목재 및 나무제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주)대사일반산업 단지	함안군
0	0	0	0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및장비 제조업 등	경동건설(주)	양산시
0	0	0	0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최경연	거창군
0	0	0	0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주)해강산업외2개 업체	함안군
0	0	0	0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창원시	창원시
0	0	0	0	금속,전기장비,기계장비, 운송장비 등	(주)대동하이텍	양산시
0	0	0	0	전기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주)광명이엔지	김해시
0	0	0	0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주)삼호테크	김해시
2	x	x	x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GS칼텍스(주)	진주시
0	0	0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SPP조선(주)	고성군
1	x	x	x	기타 운송장비 외 1종	(주)건화	거제시
0	0	0	0	연구개발업,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양산시	양산시
1	x	x	x	1차금속 제조업	(주)화인베스틸	창녕군
0	0	0	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주)장원	사천시
0	0	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주)대동정비	사천시
0	0	0	0	비금속광물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주)R&E	창원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남	미룡일반산업단지	2012-10-25	42	2012~2014	41	24	3	14	0	0
경남	장지일반산업단지	2012-11-15	291	2012~2015	291	173	34	84	0	0
경남	김해테크노밸리	2012-08-01	1,522	2011~2015	1,522	983	67	378	94	0
경남	대의일반산업단지	2013-01-15	296	2013~2015	296	170	4	122	0	0
경남	서김해일반산업단지	2013-01-17	444	2011~2015	444	275	31	138	0	0
경남	대치일반산업단지	2013-04-11	459	2013~2015	459	319	7	133	0	0
경남	정곡백곡일반산업단지	2013-04-04	147	2014~2015	147	94	2	51	0	0
경남	가산일반산업단지	2013-06-13	99	2010~2015	99	72	1	24	2	0
경남	이노비즈밸리	2013-08-29	211	2013~2015	211	136	0	45	30	0
경남	송현일반산업단지	2013-09-05	187	2010~2015	187	148	4	35	0	0
경남	덕암2일반산업단지	2013-09-26	42	2010~2014	42	22	2	18	0	0
경남	김해사이언스파크	2013-10-31	658	2013~2016	658	338	26	294	0	0
경남	철북영동일반산업단지	2013-11-14	259	2013~2017	259	166	3	53	37	0
경남	미전일반산업단지	2013-12-12	263	2012~2015	263	157	5	54	47	0
경남	사내일반산업단지	2014-01-16	107	2014~2015	107	74	3	30	0	0
경남	신천일반산업단지	2014-03-20	251	2012~2016	251	174	2	35	40	0
경남	종포일반산업단지	2014-04-24	377	2014~2016	377	269	16	92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삼원전기 건설주식회사	사천시
0	0	0	0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비에이치아이(주)	함안군
0	0	0	0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방비 등	(주)김해테크로밸리	김해시
0	0	0	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주)의령산업개발	의령군
0	0	0	0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광학기기 등	경상남도개발공사	김해시
0	0	0	0	전자부품, 광학기기 및 시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	삼우산업 외 3개사	함안군
0	0	0	0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등	(주)지양	의령군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및장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	(주)벽송	김해시
0	0	0	0	식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주)에스앤비	김해시
0	0	0	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	(주)금강산업 외 3개사	김해시
0	0	0	0	1차금속제조업	주식회사 일림	김해시
0	0	0	0	고무제품및플라스틱,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주)에코테크웰코 리아 외 1개사	김해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태경산업외 4개업체	함안군
5	0	0	0	목재 및 나무제품, 금속 가공제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주)에이치아이씨	밀양시
0	0	0	0	주물 및 금속가공제품, 금속구조재 제조 및 가공 제조업 등	(주)삼주산업 외 3개업체	경남 함안군
0	0	0	0	기타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제조업	(주)근해씨엔씨 외 3개사	김해시
0	0	0	0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사천시	사천시 도시과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남	토정일반산업단지	2014-06-05	308	2014~2017	308	156	22	130	0	0
경남	용전2일반산업단지	2014-06-05	279	2011~2015	279	174	3	44	58	0
경남	오비2일반산업단지	2014-09-05	109	2013~2016	109	60	2	47	0	0
경남	동전일반산업단지	2014-08-21	500	2014~2018	500	249	50	201	0	0
경남	용당일반산업단지	2014-09-04	267	2013~2017	267	175	9	83	0	0
경남	가연일반산업단지	2014-09-15	37	2014~2016	37	23	0	14	0	0
경남	덕곡일반산업단지	2014-11-21	150	2013~2016	150	77	10	63	0	0
경남	안골일반산업단지	2014-12-04	224	2014~2017	224	143	14	67	0	0
경남	서창일반산업단지	2014-12-18	273	2014~2016	273	186	3	84	0	0
경남	병동일반산업단지	2014-11-06	199	2014~2016	199	141	5	53	0	0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2009-12-09	197	2009~2013	197	88	38	32	39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남흥건설(주)	양산시
0	0	0	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주)효림산업 외 6개업체	밀양시
0	0	0	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주)원진 외 3개사	거제시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등	(주)대우건설, (주) 대저건설	창원시
0	0	0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	코리아시스템(주) 외26개사	양산시
0	0	0	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함안개발(주)	함안군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	큐테크모아(주), 한림정공(주)	거제시
0	0	0	0	금속가공,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신항도시개발(주)	창원시
0	0	0	0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에스씨엔지니어링( 주) 외 11개사	양산시
0	0	0	0	1차금속,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등	(주)오토텍 외 10개사	김해시
9	48	0	43	기능성생수, 음료, 식료품, 스타, 소금 등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 4.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부산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2008-08-27	229	2007~2013	229	127	19	83	0	0
부산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2012-04-11	11	2012~2013	10	6	0	1	0	3
인천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2011-08-01	1,132	2011~2014	1,132	596	20	186	316	14
경기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2012-04-03	255	2012~2016	255	111	15	59	7	63
강원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2008-01-25	187	2008~2014	187	47	69	71	0	0
강원	춘천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2010-04-30	25	2010~2014	25	14	6	3	2	0
강원	내이버도시첨단산업단지	2011-10-14	102	2011~2014	89	42	21	26	0	0
충북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2002-03-25	51	2002~2016	51	30	0	21	0	0
충남	태안도시첨단산업단지	2011-11-21	39	2011~2013	38	31	2	0	4	1
전북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2004-09-08	110	2004~2008	110	39	23	37	11	0
경남	창원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	2005-11-10	145	2005~2014	143	82	0	21	4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22	0	0	0	정보통신산업, 지식문화산업 등 첨단업종	(주)부산첨단산업 단지개발	한국산업단지공단
0	0	0	0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업종	부산벤처산업단지 개발(주)	부산광역시
0	0	0	0	IT(정보통신), 자동차, 메카트로닉스(기계), (신)소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8	0	0	325	전자부품, 통신장비, 의료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 등	에이엘디제일차피 에프बी(주)	안양시
36	208	1	25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	춘천시	춘천시
1	x	x	x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주)한국고용정보	춘천시
1	x	x	x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	네이버주식회사	춘천시
76	819	0	450	에듀테인먼트 및 관련지원 산업	청주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0	0	0	0	출판업	(주)엠게임	태안군
71	825	0	325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제조업	전주시	전주시
0	0	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통신업 등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로봇산업 진흥재단	창원시

## 5. 농공단지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부산	정관농공단지	1987-02-25	258	1987~1988	258	189	4	65	0	0
대구	구지농공단지	1989-10-23	193	1990~1992	190	154	0	36	0	0
대구	옥포농공단지	1988-04-07	160	1989~1990	160	130	0	30	0	0
광주	소촌농공단지	1987-08-13	324	1987~1988	324	262	20	42	0	0
울산	달천농공단지	1997-03-11	262	1997~1999	262	194	6	38	18	6
울산	두동농공단지	1993-12-16	70	1994~1995	70	56	0	14	0	0
울산	두서농공단지	1990-02-02	123	1990~1991	123	101	0	22	0	0
울산	상북농공단지	1986-12-08	139	1987~1988	139	107	0	32	0	0
세종	부용농공단지	1987-01-28	203	1987~1988	203	193	4	6	0	0
세종	노장농공단지	1986-09-16	162	1986~1987	162	135	0	27	0	0
세종	응암농공단지	1987-07-22	109	1987~1989	109	90	5	10	4	0
세종	청송농공단지	1987-05-28	84	1987~1988	82	62	4	10	6	0
경기	미양농공단지	1987-01-28	117	1985~1988	117	117	0	0	0	0
강원	주문진농공단지	1988-08-16	143	1988~1989	143	102	0	22	19	0
강원	근덕농공단지	1989-01-30	130	1989~1990	130	79	0	51	0	0
강원	도계농공단지	1993-08-04	71	1994~1995	68	58	0	10	0	0
강원	대포제1농공단지	1989-12-30	194	1990~1993	193	152	1	40	0	0
강원	대포제2농공단지	2007-12-28	108	2007~2009	108	66	6	26	10	0
강원	동화농공단지	2001-10-08	332	2003~2005	332	259	0	73	0	0
강원	문막농공단지	1987-06-03	501	1987~1990	501	419	0	80	2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25	5,024	118	1,504	첨단업종, 기계, 금속, 석유화학, 기타제조	양산군	한국산업단지공단
23	2,781	8	621	섬유, 조립금속 등	달성군	대구광역시
47	1,399	24	620	섬유, 조립금속 등	달성군	대구광역시
67	9,581	99	1,709	자동차 및 기계금속부품 등	광산구	광주광역시
70	4,721	24	1,414	자동차부품, 기계금속제조 등	울산공동화사업조합	울산광역시
3	1,652	2	552	자동차부품, 사료제조업, 기계금속제조 등	(주)창서기업	울산광역시
14	4,216	99	828	자동차부품제조 등	(주)장복건설	울산광역시
12	4,876	60	813	자동차부품, 기계금속제조 등	현대건설(주)	울산광역시
1	x	x	x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청원군	세종특별자치시
16	3,706	42	715	음식료품 등	연기군	노장농공단지운영 협의회
10	1,702	35	605	음식료품 등	연기군	응암농공단지운영 협의회
4	1,047	0	800	음식료품 등	연기군	세종특별자치시
5	649	1	268	음식료품	안성시	미양농공단지운영 협의회
32	906	2	677	음식료품, 전기전자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협의회
22	296	1	227	제조업	삼척시	삼척시
6	78	0	53	제조업	삼척시	삼척시
33	332	17	496	제조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속초시	속초시
25	436	1	323	음식료품	속초시	속초시
50	2,396	101	1,250	의료기기	원주시	동화산업단지관리 사무소
46	9,878	537	3,006	제조업	원주시	문막산업단지관리 사무소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강원	태장농공단지	1988-08-16	298	1989~1990	297	243	0	54	0	0
강원	거두농공단지	2004-06-11	297	2004~2008	297	206	0	5	48	38
강원	당림농공단지	1990-12-27	53	1990~1992	53	43	0	10	0	0
강원	창촌농공단지	1986-08-27	114	1986~1987	114	104	0	10	0	0
강원	퇴계농공단지	1989-12-01	341	1989~1991	341	240	29	72	0	0
강원	수동농공단지	2008-10-24	77	2008~2014	77	30	14	33	0	0
강원	장성농공단지	2003-11-20	137	2004~2006	137	81	5	27	24	0
강원	철암농공단지	1990-12-11	127	1991~1992	127	100	2	12	13	0
강원	고성해양심층수전용농 공단지	2009-05-13	104	2008~2012	104	71	0	33	0	0
강원	항목농공단지	1987-07-01	34	1987~1988	33	29	4	0	0	0
강원	하리농공단지	2010-03-18	143	2007~2012	143	90	1	20	32	0
강원	포월농공단지	1991-11-12	117	1992~1994	115	84	0	31	0	0
강원	영월농공단지	1990-12-30	114	1991~1993	114	92	0	22	0	0
강원	영월제3농공단지	2010-05-06	259	2008~2013	258	162	1	31	64	0
강원	팔괴농공단지	2004-06-09	143	2005~2007	143	109	0	34	0	0
강원	원통농공단지	2008-05-21	144	2009~2014	144	90	7	35	12	0
강원	예미농공단지	2009-09-09	107	2009~2011	107	75	0	32	0	0
강원	증산농공단지	1990-12-11	118	1991~1992	117	91	1	16	9	0
강원	함백농공단지	1993-08-04	100	1994~1998	100	98	0	0	2	0
강원	갈말농공단지	1988-05-16	129	1988~1989	129	97	3	29	0	0
강원	김화농공단지	1991-12-27	148	1993~1994	148	114	5	29	0	0
강원	방림농공단지	2010-04-29	62	2010~2011	61	40	0	21	0	0
강원	평창농공단지	1989-04-19	106	1989~1990	105	82	0	23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63	3,077	49	1,704	제조업	원주시	태장농공단지관리 사무소
26	1,869	52	675	음식료, 석유화학(의약)	춘천시	춘천시
1	x	x	x	음식료	춘천시	춘천시
21	677	1	180	전기전자, 기계	춘천시	춘천시
157	2,240	28	1,639	음식료, 전기전자	춘천시	춘천시
6	1,327	0	1,02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주)더존다스	춘천시
12	162	0	114	8개 업종	태백시	태백시
25	492	0	289	10개 업종	태백시	태백시
12	189	0	114	식품품제조업, 음료제조업	고성군	고성군
9	155	0	78	식품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고성군	고성군
10	0	0	33	음식료품업, 비금속광물제품, 기타기계제품	양구군	양구군
38	48	1	330	음식료품업, 전기 기계등	양양군	양양군
20	310	0	102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제조업	영월군	영월군
1	x	x	x	식품, 전자, 기계, 1차금속	영월군	영월군
24	337	9	229	전자, 기계, 식품	영월군	영월군
26	33	0	91	음식료, 목공예,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제조업 등	인제군	인제군
3	0	0	15	식품, 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 등	정선군	정선군
19	233	0	75	전 제조업	정선군	정선군
4	217	0	40	전 제조업	정선군	정선군
7	267	4	105	전 제조업	철원군	철원군
30	433	6	331	전 제조업	철원군	철원군
3	4	0	55	식음료, 바이오, 신소재, 기타제조업	평창군	평창군
25	393	1	211	전 제조업	평창군	평창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강원	상오안농공단지	1990-02-05	127	1990~1993	127	92	0	35	0	0
강원	양덕원농공단지	1986-11-05	42	1986~1988	42	37	0	5	0	0
강원	화전농공단지	2004-06-05	269	2003~2009	269	141	6	122	0	0
강원	원천농공단지	1990-12-28	112	1991~1994	112	79	0	33	0	0
강원	공근농공단지	2003-09-29	329	2006~2007	328	225	0	103	0	0
강원	목계농공단지	1985-03-11	176	1985~1987	176	141	0	35	0	0
강원	우천농공단지	1988-05-19	170	1988~1989	169	140	0	29	0	0
강원	우천제2농공단지	2008-07-29	329	2007~2013	328	234	0	94	0	0
강원	주문진제2농공단지	2012-06-22	157	2012~2015	157	106	2	20	29	0
강원	양양제2그린농공단지	2012-06-22	105	2012~2014	105	60	1	44	0	0
강원	동송농공단지	2012-05-01	146	2012~2014	146	97	3	25	21	0
강원	대포제3농공단지	2011-05-03	163	2009~2015	163	113	0	29	21	0
충북	강저농공단지	1987-09-22	142	1987~1988	126	108	1	17	0	0
충북	고암농공단지	1989-12-12	168	1989~1991	168	152	2	14	0	0
충북	금성농공단지	1988-11-19	86	1988~1989	85	73	1	11	0	0
충북	봉양농공단지	1990-01-24	133	1990~1991	127	115	4	8	0	0
충북	송학농공단지	1989-11-15	90	1989~1991	89	73	2	14	0	0
충북	가금농공단지	1986-06-27	225	1986~2013	224	201	0	0	0	23
충북	양화농공단지	2009-09-04	149	2009~2013	148	98	2	13	35	0
충북	가주농공단지	1987-04-17	131	1987~1988	131	100	0	0	0	31
충북	용탄농공단지	1989-11-25	192	1989~1990	192	157	0	0	0	35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24	514	15	358	의료기기	홍천군	홍천군
2	x	x	x	의료기기	홍천군	홍천군
15	127	2	146	의료기기, 전기기계, 전자부품, 식품, 화학제품 제조업	홍천군	홍천군
25	192	1	173	전 제조업	화천군	화천군
27	1,060	11	470	전기전자, 금속, 식품업	횡성군	횡성군
24	2,448	15	582	음식, 비금속, 금속 등	횡성군	횡성군
28	861	2	345	음식, 종이목재, 비금속 등	횡성군	횡성군
6	0	0	0	식품, 음료, 자동차및트레일러, 펄프종이및종이제품	횡성군, 한국농촌공사	횡성군
0	0	0	0	음식료품, 전기장비, 전자부품, 통신장비, 금속가공,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	강릉시	강릉시
0	0	0	0	식품, 음료,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양양군	양양군
0	0	0	0	식품, 섬유제품(의복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등	철원군	철원군
23	0	0	105	음식료품, 고무및플라스틱, 기타기계및장비, 기타제품 제조업 등	속초시, 한국농어촌공사영북 지사	속초시
26	227	0	255	전기, 기계, 비금속, 화공	제천시	제천시
13	305	0	245	전기, 기계, 화공	제천시	제천시
12	529	2	122	전기, 기계금속, 기타	제천시	제천시
2	x	x	x	비금속	제천시	제천시
9	525	10	131	전기, 기계, 화공, 기타	제천시	제천시
15	940	12	549	석유화학, 전기전자	충주시	충주시
0	0	0	0	음식료, 한방, 조립금속, 전기전자	제천시	제천시
14	1,062	3	234	섬유, 석유화학	충주시	충주시
17	2,497	111	429	전기전자, 기계	충주시	충주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북	주덕농공단지	1986-08-12	159	1986~2014	159	140	0	19	0	0
충북	괴산농공단지	1988-04-25	55	1988~1989	55	44	0	11	0	0
충북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2009-12-11	324	2008~2014	323	235	4	44	40	0
충북	사리농공단지	1987-06-09	112	1987~1988	112	97	0	15	0	0
충북	대강농공단지	1989-03-04	82	1989~1989	80	66	0	9	5	0
충북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2005-12-29	150	2004~2009	149	93	0	22	34	0
충북	적성농공단지	1991-01-01	124	1991~1994	124	97	0	27	0	0
충북	보은농공단지	1988-04-20	70	1988~1989	69	52	0	5	12	0
충북	삼승농공단지	1994-12-17	150	1995~1997	145	99	0	46	0	0
충북	장안농공단지	1990-12-18	281	1991~1992	281	242	0	23	16	0
충북	법화농공단지	1996-04-29	123	1997~1998	122	92	0	30	0	0
충북	영동농공단지	1986-08-02	71	1986~1987	71	58	0	13	0	0
충북	용산농공단지	1987-01-28	262	1987~1988	262	243	0	14	5	0
충북	구일농공단지	1997-06-30	132	1997~1999	132	99	0	33	0	0
충북	동이농공단지	1987-05-30	161	1987~1988	161	141	0	20	0	0
충북	옥천농공단지	1989-01-07	282	1989~1990	282	267	0	15	0	0
충북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 단지	2007-07-09	145	2007~2011	145	107	0	38	0	0
충북	이원농공단지	1991-12-05	142	1993~1994	142	129	0	13	0	0
충북	청산농공단지	1988-06-29	65	1988~1989	65	56	0	9	0	0
충북	금왕농공단지	1988-05-04	139	1988~1989	132	115	17	0	0	0
충북	삼성농공단지	1986-09-11	163	1987~1988	158	135	23	0	0	0
충북	음성농공단지	1986-08-02	68	1986~1987	62	52	10	0	0	0
충북	도안농공단지	1986-11-14	93	1986~1987	93	83	0	10	0	0
충북	증평농공단지	1987-07-16	90	1987~1988	89	85	4	0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6	1,196	22	339	섬유, 섬유화학	충주시	충주시
6	373	2	99	목재종이 외	괴산군	괴산군
2	x	x	x	음식료품업종	괴산군	괴산군
7	3,340	65	710	전기전자 외	괴산군	사리농공단지관리 사무소
14	376	0	203	음식료, 석유화학 등	단양군	단양군
2	x	x	x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	단양군	단양군
13	268	8	16	음식료, 비금속제품 등	단양군	단양군
7	296	16	292	식품, 화학, 섬유, 금속	보은군	보은군
14	102	3	221	석유화학, 조립금속	보은군	삼승농공단지관리 사무소
32	993	12	403	식품, 화학, 금속, 전기전자	보은군	장안농공단지관리 사무소
6	943	1	218	음식료 외	영동군	영동군
10	739	2	223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연구 및 개발	영동군	영동군
3	1,108	15	596	석유화학 외	영동군	영동군
8	374	0	128	음식료 외	옥천군	옥천군
23	485	3	328	섬유, 의복 등	옥천군	옥천군
20	1,790	35	676	기계 외	옥천군	옥천군
7	163	1	128	의료기기, 전자-통신기기 분야	옥천군	옥천군
9	1,291	27	497	기계 외	옥천군	옥천군
4	282	0	154	음식료 외	옥천군	옥천군
11	2,203	7	519	금속조립 외 8개 업종	음성군	음성군
8	1,027	4	493	화학, 조립금속, 목재	음성군	음성군
22	173	2	286	조립금속 외 8개 업종	음성군	음성군
4	1,615	22	691	기계금속, 음식료	증평군	증평군
3	3,418	20	521	기계금속, 전기, 전자	(주)두산	증평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북	광혜원농공단지	1987-09-24	90	1988~1988	90	76	0	14	0	0
충북	덕산농공단지	1987-02-25	91	1987~1988	91	81	0	10	0	0
충북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2001-01-10	124	2001~2003	124	111	2	11	0	0
충북	이월농공단지	1995-09-30	127	1996~1997	127	105	7	15	0	0
충북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2004-08-24	329	2004~2008	329	215	5	109	-	-
충북	진천농공단지	1984-08-29	58	1985~1986	58	48	1	9	-	-
충북	초평농공단지	1987-07-06	136	1987~1988	136	120	-	16	-	-
충북	내수농공단지	1987-04-27	105	1987~1989	105	101	3	1	-	-
충북	현도농공단지	1987-08-22	68	1987~1988	66	61	3	2	-	-
충북	광혜원제2농공단지	2014-08-29	339	2014~2016	339	241	3	95	-	-
충남	검상농공단지	1990-01-04	397	1990~2013	397	338	-	51	8	-
충남	계룡농공단지	1988-04-06	50	1988~1990	50	45	-	5	-	-
충남	보물농공단지	2003-08-25	135	2003~2008	135	113	-	14	8	-
충남	우성(전문)농공단지	2002-12-27	142	2003~2008	142	116	3	23	-	-
충남	유구농공단지	1989-12-26	228	1990~2012	228	150	4	23	51	-
충남	장기농공단지	1984-09-07	87	1985~1986	87	71	1	15	-	-
충남	정안농공단지	1987-12-31	152	1987~1989	151	125	4	23	0	0
충남	정안2농공단지	2008-04-15	295	2007~2011	295	219	10	38	28	0
충남	월미농공단지	2008-11-20	150	2008~2013	149	119	3	17	10	0
충남	의당복합농공단지	2009-02-04	148	2008~2013	148	110	0	0	38	0
충남	가야곡농공단지	1987-12-05	186	1988~1989	186	144	0	26	16	0
충남	동산농공단지	2007-12-12	105	2007~2009	105	87	0	6	12	0
충남	양지농공단지	2003-03-20	117	2003~2007	117	88	6	23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8	4,260	47	479	기계, 의약품, 전자	진천군	진천군
5	9,015	440	939	전자, 의약품, 식품, 기계	진천군	진천군
3	20,380	726	1,072	전기전자	진천군	진천군
8	3,794	0	556	기계, 화공, 식품, 기타	진천군	진천군
11	3,491	23	981	전기전자	진천군	진천군
13	545	1	200	섬유의복 및 기타 제조업	진천군	진천군
4	2,556	218	463	전자, 화공, 식품 등 기타	진천군	진천군
3	541	58	218	목재종이, 섬유의복	청원군	청원군
1	x	x	x	기계, 특장차, 브레이크	청원군	청원군
-	-	-	-	식품, 의약품,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진천군	진천군
35	9,667	15	1,072	음식료 외 8종	공주시	검상관리소
1	x	x	x	음식료품 제조업	(주)해찬들	계룡농공(CJ해찬 들)
2	x	x	x	1차 금속 외 4	(주)룩령	관리소
6	261	0	58	건설자재제조	(주)보흥	관리사무소
3	7,136	339	426	음식료, 비금속	웅진코웨이(주), 웅진식품(주)	유구농공 (웅진코웨이)
15	788	6	246	섬유의복 외 6종	공주시	장기농공 (정양수지)
10	1,105	17	341	섬유의복 외 6종	공주시	관리소
13	1,888	7	197	인쇄및기록매체외 5	(주)공주정안2농공단 지에스피씨	공주시
10	591	3	165	식품외 4	우리산업개발(주)	공주시
2	x	x	x	비금속광물제품	한일시멘트(주)	공주시
19	1,888	51	708	음식료품, 석유화학, 철강기계, 전기전자, 기타제조업	논산시	가야곡관리소
2	x	x	x	1차금속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전기기계	태창금속산업(주) 외 1개사	논산시
4	278	15	156	제사방직, 기타 제조업, 발전업	논산시	논산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남	양지제2농공단지	2009-04-08	137	2008~2011	137	106	0	15	16	0
충남	연무농공단지	1997-04-21	124	1997~2002	124	63	18	12	21	10
충남	연산농공단지	1987-07-25	81	1988~1989	81	59	0	10	12	0
충남	은진농공단지	1987-05-02	70	1987~1988	70	63	0	6	1	0
충남	대천농공단지	1990-01-09	102	1990~1991	102	88	9	1	4	0
충남	웅천농공단지	1990-08-21	229	1991~1992	229	171	16	42	0	0
충남	웅천석재농공단지	1995-12-30	150	1996~1998	150	104	3	43	0	0
충남	주산농공단지	1992-02-06	154	1994~1997	154	118	13	14	9	0
충남	주포농공단지	1989-08-19	174	1990~1991	154	132	8	14	0	0
충남	주포제2농공단지	2008-03-31	143	2007~2010	143	98	0	21	24	0
충남	청소농공단지	2009-05-06	148	2009~2011	148	102	1	26	19	0
충남	고북농공단지	1990-02-03	125	1990~1992	124	94	0	30	0	0
충남	명천자동차전문단지	2003-07-21	143	2003~2007	143	100	3	34	6	0
충남	성연농공단지	1989-11-01	777	1990~2003	777	597	0	45	102	33
충남	수석농공단지	1992-02-26	231	1993~1996	231	185	0	46	0	0
충남	도고농공단지	2006-07-11	198	2005~2012	197	139	9	49	0	0
충남	둔포농공단지	1987-09-21	74	1987~1989	74	70	2	2	0	0
충남	둔포제2농공단지	2006-05-24	116	2006~2011	116	109	0	4	3	0
충남	득산농공단지	1988-07-07	216	1987~1990	215	164	11	24	16	0
충남	배미농공단지	1988-09-05	75	1988~1989	75	60	4	3	8	0
충남	신인농공단지	1990-02-12	64	1990~1992	59	54	2	2	1	0
충남	신창농공단지	1987-08-20	56	1987~1989	54	41	0	13	0	0
충남	영인농공단지	1987-09-23	146	1987~1989	146	133	0	13	0	0
충남	탕정농공단지	1986-12-15	93	1986~1988	93	88	0	3	2	0
충남	동면농공단지	1986-11-26	69	1987~1988	69	49	17	3	0	0
충남	목천농공단지	1986-11-26	100	1987~1988	100	64	1	8	27	0
충남	백석농공단지	1987-08-24	362	1987~1988	362	296	19	47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4	0	0	16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현대알루미늄(주)	논산시
1	x	x	x	음식료품제조업	(주)해찬들	CJ제일제당(주)
19	164	5	143	모든 제조업	논산시	논산시
3	1,670	0	151	식품(배합사료)	(주)우성사료	자체관리
11	1,372	61	265	조립금속, 기계 등	보령시	보령시
26	837	11	461	조립금속	보령시	보령시
25	223	4	91	석재, 기타제조	보령시	보령시
2	x	x	x	비금속	보령시	보령시
16	729	11	436	비금속	보령시	보령시
5	0	0	0	1차금속, 자동차, 관련업종	보령시	보령시
11	0	0	0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보령시	보령시
9	232	2	104	석유화학, 전기전자, 섬유 의복	서산시	서산시
7	1,422	11	810	자동차	서산시	서산시
4	9,532	317	1,002	자동차	다이모스(주)	서산시
23	2,563	78	510	음식료, 기타기계	서산시	서산시
7	2,713	97	1,024	기계·조립금속, 자동차및트레일러	아산시	아산시
3	1,176	18	335	음식료, 기계	아산시	아산시
2	x	x	x	기타물품 취급장비 제조	(주)SFA	아산시
34	2,556	19	914	비금속, 조립금속 외	아산시	아산시
3	1,126	5	224	철강, 운송장비	아산시	아산시
1	x	x	x	기타	아산시	아산시
6	1,009	13	365	음식료, 석유화학, 기계	아산시	아산시
4	3,679	57	559	음식료, 철강, 기계	아산시	아산시
3	505	0	262	비금속, 기계, 석유화학	아산시	아산시
4	260	0	371	식품, 기계 등	(주)금성자판기외 3개사	천안시
2	x	x	x	기계, 전기	연합정밀 외 3개사	천안시
122	4,680	220	5,475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천안시	백석산업단지운영 협의회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남	직산농공단지	1986-07-16	172	1986~1988	172	138	28	6	0	0
충남	구례농공단지	2010-04-26	144	2009~2015	144	94	2	24	24	0
충남	금성농공단지	1990-02-02	222	1989~1991	222	159	15	28	20	0
충남	복수농공단지	1986-11-06	117	1985~1988	117	96	4	11	6	0
충남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2009-08-10	115	2009~2014	115	69	1	21	24	0
충남	추부농공단지	2002-10-14	245	2002~2007	244	165	12	40	27	0
충남	당진농공단지	1987-12-29	85	1987~1989	85	54	1	11	19	0
충남	면천농공단지	1989-11-15	139	1989~1992	135	105	5	10	15	0
충남	석문농공단지	1990-07-15	215	1990~1992	215	162	10	16	27	0
충남	송악농공단지	2001-07-12	171	2001~2004	171	122	3	11	35	0
충남	신평농공단지	1990-01-24	138	1990~1992	138	104	2	13	19	0
충남	한진농공단지	2002-10-14	143	2003~2006	143	115	10	18	0	0
충남	합덕농공단지	1988-07-11	106	1988~1989	106	72	2	8	24	0
충남	은산농공단지	1990-01-05	123	1990~1991	123	91	5	27	0	0
충남	은산2농공단지	2010-08-19	228	2009~2013	226	140	2	65	19	0
충남	은산패션전문농공단지	2008-04-25	62	2008~2013	59	46	0	5	8	0
충남	임천농공단지	1990-05-17	171	1990~1991	170	146	5	19	0	0
충남	장암농공단지	1994-05-20	158	1994~1996	157	133	3	21	0	0
충남	홍산농공단지	1994-12-07	132	1996~1997	132	106	3	23	0	0
충남	서면농공단지 (서천김가공특화단지)	2007-09-14	77	2005~2013	76	46	10	10	10	0
충남	장항원수농공단지	1988-12-30	299	1989~1990	299	235	12	52	0	0
충남	장항원수제2농공단지	2001-09-29	151	2002~2004	151	104	0	21	26	0
충남	종천농공단지	1990-01-03	251	1990~1992	251	208	2	35	6	0
충남	종천2농공단지	2010-06-10	197	2009~2014	197	121	2	74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27	2,358	69	640	식품,기계,금속,전기 등	천안시	천안시
0	0	0	0	비금속 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등	(주)신덕개발, (주)신덕산업	금산군
26	1,181	14	392	음식료품, 목재종이 등	금산군	금산군
15	576	7	189	석유, 종이, 조립금속 등	금산군	금산군
0	0	0	0	음식료품(인삼, 홍삼, 녹용정골드 등)	금산군	금산군
32	859	2	453	음식료, 비금속, 기계 등	금산군	금산군
9	663	3	157	전기전자, 철강, 기계, 기타	당진시	당진시
10	550	3	193	기계금속, 전지전사, 화공, 기타	당진시	당진시
4	4,047	52	236	석유화학, 기계, 기타	(주)현대산업개발	당진시
18	3,285	2	341	자동차부품, 기계, 조립금속	당진시	당진시
9	505	2	304	석유화학, 비금속, 조립금속, 기타	당진시	당진시
2	x	x	x	의약품약품제조업	(주)중외	당진시
21	940	1	457	전기전자, 조립금속, 운송장비, 식품 등	당진시	당진시
15	394	1	149	음식료품, 화학물등	부여군	부여군
2	x	x	x	금속가공, 전자부품업등	부여군	부여군
0	0	0	0	섬유제품	(주)금강	부여군
4	103	0	41	비금속광물제조업등	부여군	부여군
1	x	x	x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부여군	부여군
7	77	0	78	비금속및금속제품	부여군	부여군
3	0	0	0	김가공	서천군	서천군
16	2,400	20	599	일반제조업	서천군	서천군
10	420	3	228	일반제조업	서천군	서천군
29	1,220	8	622	일반제조업	서천군	서천군
3	0	0	1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기타장비 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서천군	서천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남	고덕농공단지	1993-12-09	151	1994~1995	151	132	15	4	0	0
충남	관작전문농공단지	2002-10-29	144	2003~2005	137	119	0	13	5	0
충남	삽교전문농공단지	2004-12-21	147	2004~2007	147	113	3	25	6	0
충남	신암농공단지	1990-03-02	153	1990~1992	153	125	15	8	5	0
충남	예덕농공단지	1995-12-04	205	1996~1997	205	152	13	9	31	0
충남	예산농공단지	1987-06-08	189	1987~1989	189	154	30	5	0	0
충남	응봉농공단지	1993-03-29	150	1993~1994	150	132	3	15	0	0
충남	증곡전문농공단지	2009-11-19	144	2009~2013	144	94	11	22	17	0
충남	비봉농공단지	1991-10-16	156	1992~1993	156	113	1	26	16	0
충남	운곡농공단지	1996-12-23	149	1997~1999	149	94	3	23	29	0
충남	정산농공단지	1989-02-28	264	1990~1992	264	211	6	31	12	4
충남	학당농공단지	1998-05-04	130	1999~2001	130	90	1	17	22	0
충남	화성농공단지	1991-10-16	144	1992~1993	144	112	1	27	4	0
충남	태안농공단지	1990-12-30	105	1992~1994	105	83	0	0	13	9
충남	갈산전문농공단지	2006-02-28	122	2005~2013	122	91	4	11	16	0
충남	갈산2전문농공단지	2009-04-15	132	2010~2015	132	98	9	11	14	0
충남	결성전문농공단지	2003-09-19	141	2003~2007	141	107	4	15	15	0
충남	광천농공단지	1989-11-24	145	1989~1995	145	105	7	33	0	0
충남	광천김특화농공단지	2008-05-30	57	2008~2014	56	45	2	9	0	0
충남	구항농공단지	1988-11-28	167	1988~1990	154	116	4	34	0	0
충남	은하농공단지	1999-01-15	109	1998~2001	109	91	2	14	2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3	1,142	5	144	운송장비	서울차체공업(주)	(주)오텍
10	1,349	6	424	자동차부품, 기계조립금속	예산군수	관작전문농공단지 관리사무소
9	1,432	11	387	자동차부품, 철강	예산군수	예산군
13	2,154	107	668	화학, 전기전자	예산군수	신암농공단지사무소
1	x	x	x	기계	(주) 동양매직	예산군청
26	1,630	25	682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음식료	예산군	예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5	814	34	431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울림건설	응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4	0	0	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주)보령제약	예산군
9	907	3	485	식료품, 코크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	청양군	비봉공단지 관리소
15	493	12	142	식료품, 코크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	청양군	운곡공단지 관리소
3	5,694	148	37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관리소
3	108	39	142	농공단지개발시책 제22조에 명시된 공해업종 제외한 제조업	청양군	청양군
13	319	16	165	식료품, 코크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	청양군	화성농공단지 관리소
18	320	1	175	식품, 시계, 세라믹 등	태안군	태안군
13	1,057	39	341	자동차, 기계, 금속	(주)세아산업	홍성군
0	0	0	0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주)지웨이	홍성군
26	524	6	214	자동차, 전기, 전자	(주)우림산업	홍성군
16	811	3	163	일반제조업	홍성군	홍성군
10	352	18	212	일반제조업	(주)청연	홍성군
18	1,176	110	260	일반제조업	홍성군	홍성군
1	x	x	x	일반제조업	홍성군	홍성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충남	은하전문농공단지	2003-02-27	95	2003~2007	95	72	3	6	14	0
충남	운곡2농공단지	2010-12-10	147	2009~2013	144	87	0	30	27	0
충남	월미2농공단지	2012-03-26	69	2011~2014	69	57	1	9	2	0
충남	계룡제1농공단지	2012-10-17	189	2010~2015	188	125	4	59	0	0
충남	강경농공단지	2012-12-24	131	2011~2015	131	92	0	39	0	0
전북	서수농공단지	1989-10-26	287	1990~1991	287	239	0	48	0	0
전북	성산농공단지	1987-07-01	142	1987~1993	142	126	0	16	0	0
전북	옥구농공단지	1993-10-29	140	1994~1995	130	103	0	26	1	0
전북	대동전문농공단지	2003-04-14	331	2004~2006	331	247	16	57	11	0
전북	만경농공단지	1990-01-24	215	1991~1991	215	181	4	30	0	0
전북	봉황농공단지	1989-12-14	233	1990~1992	233	204	2	27	0	0
전북	서흥농공단지	1988-04-20	277	1989~1990	277	236	1	40	0	0
전북	월촌농공단지	1991-10-21	145	1992~1993	145	122	1	22	0	0
전북	황산농공단지	1986-11-17	73	1987~1987	73	55	1	17	0	0
전북	광치1농공단지	1990-12-07	140	1991~1992	139	117	0	22	0	0
전북	광치2농공단지	1994-10-22	113	1994~1995	112	96	0	16	0	0
전북	노암농공단지	2002-05-20	147	2002~2005	147	102	6	39	0	0
전북	노암제2농공단지	2008-06-17	168	2007~2009	168	115	1	52	0	0
전북	어현농공단지	1990-12-07	117	1991~1992	116	110	0	6	0	0
전북	인월농공단지	1984-09-20	51	1984~1986	50	31	0	19	0	0
전북	낭산농공단지	1992-10-16	129	1992~1993	128	109	0	19	0	0
전북	삼기농공단지	1987-01-16	132	1988~1989	131	113	0	18	0	0
전북	왕궁농공단지	2005-06-24	330	2006~2008	330	246	19	65	0	0
전북	황등농공단지	1990-09-20	147	1990~1992	147	119	9	19	0	0
전북	고부농공단지	1991-10-28	151	1992~1993	151	128	0	23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7	562	9	172	금속,기계,자동차	(주)K	홍성군
8	0	0	0	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	청양군	청양군
0	0	0	0	식료품, 고무제품, 플라스틱,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장비 등	공주산업개발(주)	공주시
0	0	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계룡시	계룡시
4	0	0	0	식료품제조업	논산시	논산시
44	2,489	8	1,094	음식료, 전기 전자 등	군산시	군산시
14	800	9	142	전기전자.운송등	군산시	군산시
31	696	17	405	조립금속, 목재등	군산시	군산시
15	1,810	0	382	조립금속,운송장비	김제시	김제시
17	2,108	1	343	음식료, 비금속 등	김제시	김제시
34	609	1	550	음식료, 석유화학	김제시	김제시
31	1,721	2	565	음식료, 석유화학	김제시	김제시
25	526	1	287	음식료, 석유화학	김제시	김제시
12	595	0	300	조립금속, 운송장비	김제시	김제시
16	623	1	259	전 제조업종(아스콘, 레미콘, 시멘트제조 및 폐수배출업종 제외)	남원시	남원시
24	618	0	206	전 제조업종	남원시	남원시
18	594	4	207	전 제조업종	남원시	남원시
10	529	13	344	전 제조업종	남원시	남원시
1	x	x	x	전 제조업종	남원시	남원시
3	414	5	143	전 제조업종	남원시	남원시
11	494	1	156	음식료,섬유, 조립금속 등	익산시	익산시
16	961	2	356	기계, 섬유, 전기 등	익산시	익산시
14	7,145	108	754	농기계, 자동차부품 및 기타업종	익산시	익산시
43	655	0	180	기계, 전기, 섬유 등	익산시	익산시
13	1,895	31	423	음식료, 석유화학 등	정읍시	정읍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전북	농소농공단지	1987-04-30	186	1987~1988	185	176	0	9	0	0
전북	북면농공단지	1988-08-29	211	1988~1989	211	174	3	34	0	0
전북	신용전문농공단지	2004-03-25	143	2005~2007	143	105	6	11	21	0
전북	신태인농공단지	1997-11-24	150	1999~2001	150	120	0	30	0	0
전북	태인농공단지	2008-10-23	247	2009~2012	247	170	1	32	44	0
전북	고수농공단지	1989-07-27	105	1989~1990	105	80	5	11	9	0
전북	북분자농공단지	2010-05-31	196	2009~2013	196	140	0	41	15	0
전북	아산농공단지	1991-10-24	140	1992~1993	140	111	8	12	9	0
전북	흥덕농공단지	2006-10-04	315	2004~2010	315	236	0	22	57	0
전북	무주농공단지	2007-12-10	147	2007~2009	147	119	1	3	24	0
전북	무주제2농공단지	2010-07-23	98	2008~2011	98	80	0	6	11	1
전북	안성농공단지	1991-12-31	94	1992~1993	94	79	2	13	0	0
전북	부안농공단지	1996-07-26	149	1997~1999	149	123	0	26	0	0
전북	부안제2농공단지	2008-03-14	344	2008~2013	344	251	0	59	34	0
전북	줄포농공단지	1989-01-07	89	1989~1990	89	68	0	21	0	0
전북	가남농공단지	1987-08-22	83	1987~1988	82	62	0	20	0	0
전북	쌍암농공단지	2010-08-25	122	2009~2014	122	74	4	44	0	0
전북	인계농공단지	2007-09-11	149	2006~2009	149	122	0	27	0	0
전북	풍산농공단지	2004-01-07	138	2004~2005	138	111	0	27	0	0
전북	이서특별농공단지	1988-07-07	398	1988~1992	398	389	0	9	0	0
전북	신평농공단지	1986-07-24	53	1986~1987	53	49	0	4	0	0
전북	오수농공단지	1989-12-18	132	1989~1991	132	93	8	31	0	0
전북	임실농공단지	2003-08-16	147	2005~2009	147	133	0	14	0	0
전북	장계농공단지	2001-09-11	290	1999~2004	290	204	6	47	33	0
전북	천천농공단지	1989-11-17	57	1989~1992	57	50	0	7	0	0
전북	연장농공단지	1988-07-01	53	1988~1989	53	45	0	8	0	0
전북	진안제2농공단지	1999-12-28	146	2001~2003	146	105	0	37	0	4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6	348	6	168	목재, 종이, 전기전자	정읍시	정읍시
33	1,059	4	557	석유화학, 조립금속	정읍시	정읍시
6	1,044	0	310	음식료	정읍시	정읍시
11	1,880	1	126	조립금속, 전기전자등	정읍시	정읍시
14	1,267	19	238	철강, 기계, 전기, 비금속	정읍시	정읍시
19	61	0	228	기계, 전기, 음식료	고창군	고창군
3	2	0	13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창고및 운송관련서비스업	고창군	고창군
18	57	0	159	기계, 전기, 음식료	고창군	고창군
13	580	1	300	복분자, 신재생에너지	고창군	고창군
1	x	x	x	음식료품제조업 등	무주군	무주군
8	81	0	31	음식료품, 기타제조업 등	무주군	무주군
15	120	0	67	음식료, 조립금속 등	무주군	무주군
25	1,053	2	210	음식료, 석유화학 등	부안군	부안군
6	2,508	4	758	식료품	부안군	부안군
15	723	31	300	음식료, 기계 등	부안군	부안군
2	x	x	x	음식료	순창군	순창군
2	x	x	x	연구개발업, 음·식료품제조업, 기타제조업 등	순창군	순창군
11	558	2	159	음식료품 제조업	순창군	순창군
8	340	0	150	음식료, 조립금속	순창군	순창군
3	364	26	302	섬유제품제조업	완주군	완주군
8	446	0	181	음식료품제조업외5종	임실군	임실군
20	326	1	193	음식료품 제조업 외 4종	임실군	임실군
2	x	x	x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임실군	임실군
11	894	49	393	종이, 전자, 화학, 금속, 비금속, 금속	장수군	장수군
11	261	4	57	섬유·위복,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장수군	장수군
10	380	2	198	전제조업종	진안군	진안군
29	528	3	289	제조업종	진안군	진안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전북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2009-04-01	266	2009~2010	266	191	0	75	0	0
전북	장수농공단지	2011-08-12	139	2009~2014	139	104	2	12	21	0
전북	임피농공단지	2011-06-20	239	2010~2014	239	176	4	33	26	0
전북	임실제2농공단지	2013-05-31	340	2010~2016	340	236	0	45	59	0
전북	백구농공단지	2013-07-26	329	2011~2014	329	264	2	63	0	0
전북	노암제3농공단지	2011-05-20	323	2009~2015	323	212	4	53	54	0
전북	소성특화농공단지	2013-11-25	232	2012~2015	232	164	1	35	32	0
전북	부안제3농공단지	2014-03-26	329	2013~2016	329	234	4	65	26	0
전북	함열농공단지	2014-07-17	329	2013~2016	329	230	8	91	0	0
전북	풍산제2농공단지	2013-09-16	170	2013~2015	170	135	2	33	0	0
전남	금천농공단지	2005-09-07	103	2005~2008	103	53	11	17	22	0
전남	노안농공단지	2009-05-06	125	2008~2011	125	90	2	17	16	0
전남	동수농공단지	1986-12-24	209	1987~1990	209	179	3	27	0	0
전남	문평농공단지	2007-11-16	69	2007~2009	69	56	0	8	5	0
전남	봉황농공단지	1989-05-13	100	1989~1990	100	84	0	16	0	0
전남	오량농공단지	1990-10-23	245	1991~1992	245	207	0	38	0	0
전남	산정농공단지	1987-04-01	530	1987~1990	529	445	7	52	25	0
전남	주암농공단지	1989-12-30	106	1969~1991	105	81	0	18	6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29	297	0	230	운송장비, 기계, 기타제조업 등	진안군	진안군
1	x	x	x	음식료품, 전기, 전자, 기타제조업	장수군	장수군
7	4	0	26	금속가공,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군산시	군산시
0	0	0	0	금속업	임실군	임실군
0	0	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김제시	김제시
1	x	x	x	음식료품, 금속가공제품, 전자컴퓨터부품, 음향통신장비부품, 기타제조업	남원시	남원시
0	0	0	0	음.식료품	정읍시	정읍시
0	0	0	0	식료품, 음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부안군	부안군
0	0	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익산엘이디협동화단 지개발(주)	익산시
0	0	0	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순창군	순창군
1	x	x	x	식료품 제조업	남양유업(주)	나주시
21	511	0	273	비금속 광물제품,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나주시	나주시
46	621	1	407	기계금속, 음식료품, 석유화학 제조업	나주시	나주시
6	67	0	41	정자부품,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나주시	나주시
12	235	0	124	기계, 석유화학, 섬유 의복 제조업	나주시	나주시
36	669	5	475	기계금속, 음식료품 제조업	나주시	나주시
84	1,360	19	856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전기업, 자원비축시설, 물류및창고보관업	목포시	목포시
24	450	10	173	조립금속, 석유화학, 목재, 섬유, 비금속 등	순천시	순천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전남	화양농공단지	1990-12-28	119	1990~1993	119	96	0	23	0	0
전남	마량농공단지	1988-01-27	56	1988~1989	56	41	0	15	0	0
전남	칠량1농공단지	2009-09-16	149	2009~2011	148	109	1	38	0	0
전남	풍양농공단지	1989-06-08	55	1989~1990	50	39	0	11	0	0
전남	청정식품농공단지	2008-09-18	145	2007~2011	140	96	0	7	16	21
전남	겸면농공단지	1990-02-03	301	1990~2000	294	232	0	62	0	0
전남	석곡농공단지	1991-12-31	126	1991~1995	118	91	0	13	14	0
전남	입면농공단지	1987-05-30	522	1987~1989	522	504	0	11	7	0
전남	간전농공단지	1990-07-03	102	1991~1992	101	81	0	20	0	0
전남	자연드림파크	2009-10-22	144	2007~2013	144	80	17	25	22	0
전남	금성농공단지	1990-10-23	233	1991~1992	233	186	10	34	3	0
전남	무정농공단지	1988-01-27	190	1988~1989	187	152	2	27	6	0
전남	एको하이테크농공단지	2005-09-29	329	2006~2009	327	230	0	48	49	0
전남	삼향농공단지	1987-04-03	220	1987~1989	212	166	0	28	18	0
전남	일로농공단지	1990-12-26	164	1990~1992	164	130	5	14	15	0
전남	청계농공단지	1989-12-15	314	1989~1992	314	259	7	26	22	0
전남	청계2농공단지	2005-04-16	304	2004~2011	304	220	0	71	13	0
전남	미력농공단지	1991-01-12	107	1992~1993	106	78	0	28	0	0
전남	벌교농공단지	1988-04-19	145	1989~1990	145	106	0	39	0	0
전남	조성농공단지	2009-11-24	146	2009~2012	146	98	7	41	0	0
전남	지도농공단지	2005-12-02	299	2006~2010	299	228	9	27	35	0
전남	군서농공단지	1990-07-03	118	1991~1992	117	97	0	20	0	0
전남	철곡농공단지	2008-03-20	149	2008~2011	149	64	5	13	14	53
전남	군서농공단지	1990-07-13	128	1990~1991	127	95	0	32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7	529	9	242	기계, 장비, 합성수지 제조업	여수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수시
14	143	1	109	수산물 가공 등	강진군	강진군
13	365	0	120	식품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강진군	강진군
8	165	105	38	제조업	고흥군	고흥군
19	71	0	75	식품제조업(농수축산물 가공업)	고흥군	고흥군
6	617	3	147	금속구조재, 조립금속	곡성군	곡성군
14	457	0	185	조립금속, 석유화학 등	곡성군	곡성군
1	x	x	x	타이어제조	곡성군	곡성군
12	135	0	78	제조업(입주제한업종제외)	구례군	구례군
15	873	0	345	음식료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구례군	구례군
29	184	1	658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업종	담양군	담양군
30	588	1	259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업종	담양군	담양군
36	284	1	518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업종	담양군	담양군
39	435	1	535	제조업	무안군	무안군
24	371	1	256	제조업	무안군	무안군
47	1,916	152	488	제조업	무안군	무안군
14	89	0	74	제조업	무안군	무안군
20	128	6	174	제조업	보성군	보성군
14	154	0	263	제조업	보성군	보성군
6	8	0	30	음료제조업, 식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보성군	보성군
1	x	x	x	금속제작및조립(조선)	신안중공업(주)	신안군
25	120	1	179	식품, 비금속, 전기전자, 철강, 기계	영광군	영광군
1	x	x	x	조선소	(주)TKS	영광군
13	322	0	159	전 제조업 (단,도금,염료안료,피혁,주물등 제외)	영암군	영암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전남	신북농공단지	1986-08-02	132	1986~1988	132	120	0	12	0	0
전남	완도농공단지	1993-07-19	322	1993~1996	322	220	24	74	4	0
전남	죽청농공단지	1995-04-26	241	1995~1998	223	151	24	38	10	0
전남	동화농공단지	1986-12-24	120	1986~1988	120	96	3	14	7	0
전남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2006-02-02	284	2006~2010	282	176	6	51	49	0
전남	삼계농공단지	1989-10-23	88	1989~1992	88	68	0	12	8	0
전남	장평농공단지	1990-12-26	103	1992~1993	102	78	0	24	0	0
전남	고군농공단지	1993-12-28	101	1994~1995	101	69	0	31	1	0
전남	군내농공단지	2010-04-23	257	2010~2014	256	189	4	37	26	0
전남	학교농공단지	1984-09-07	165	1985~1989	165	121	3	41	0	0
전남	함평농공단지	1990-07-13	103	1990~1991	103	86	5	12	0	0
전남	옥천농공단지	1989-07-14	103	1989~1991	103	80	2	15	6	0
전남	화원농공단지	2005-08-17	150	2005~2007	150	106	0	37	7	0
전남	능주농공단지	1988-09-08	109	1988~1989	109	78	0	31	0	0
전남	도곡농공단지	1990-02-16	165	1990~1991	165	145	0	0	0	20
전남	동면농공단지	1991-12-26	258	1992~1994	258	215	0	37	0	6
전남	이양농공단지	1994-12-27	151	1995~1997	151	123	0	0	0	28
전남	영광식품산업특화 농공단지	2012-08-27	109	2012~2014	109	44	9	56	0	0
전남	해보농공단지	2012-02-27	245	2011~2013	245	173	2	70	0	0
전남	남평농공단지	2011-12-13	112	2011~2013	112	69	1	42	0	0
전남	장흥농공단지	2011-05-04	150	2010~2013	149	98	0	29	22	0
전남	송림그린테크단지	2011-05-04	144	2011~2014	144	97	1	46	0	0
전남	장평제2농공단지	2012-09-20	47	2012~2014	47	37	0	10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10	784	2	384	제조업	영암군	영암군
79	1,250	22	447	제조업	완도군	완도군
41	686	29	281	제조업	완도군	완도군
26	2,648	51	1,053	석유화학, 조립금속	장성군	한국산업단지공단
27	888	39	440	전기·전자, 기계·조립금속, 기타제조업 등	장성군	장성군
16	394	0	179	전기전자, 식음료제조업	장성군	한국산업단지공단
14	298	5	10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장흥군	장흥군
17	61	0	66	농수산물가공 및 기타	진도군	진도군
0	0	0	0	조선기자재, 농수산물식품가공업	진도군	진도군
26	442	1	313	석유화학 등	함평군	함평군
10	551	0	132	비금속	함평군	함평군
23	240	1	220	음식료, 금속	해남군	해남군
1	x	x	x	조선업	대한조선 주식회사	해남군
34	612	3	246	제조업	화순군	농주농공단지협의회
34	1,279	10	514	제조업	화순군	도곡농공단지협의회
64	2,940	0	667	제조업	화순군	동면농공단지협의회
13	461	0	158	제조업	화순군	화순군
0	0	0	0	식료업종배치계획	(주)체리부로	영광군
30	0	0	224	식료품, 비금속, 금속가공, 기계기타 제조업	함평군	함평군
0	0	0	0	자동차부품, 농기구자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나주시	나주시
1	x	x	x	농수산물가공 특화단지(음식료품가공)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장흥군
0	0	0	0	식료품, 음료,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및장비 제조업 등	영광군	영광군
0	0	0	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장흥군	장흥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전남	학교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2014-12-11	144	2013~2015	143	96	10	37	0	0
전남	동면제2농공단지	2013-03-21	149	2011~2014	147	106	0	41	0	0
전남	영암특화농공단지	2014-02-20	116	2011~2015	116	80	0	36	0	0
전남	완도해양생물특화단지	2012-10-19	110	2011~2015	110	70	4	36	0	0
전남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2012-08-20	139	2012~2015	139	90	2	47	0	0
전남	칠량2농공단지	2013-08-05	162	2011~2015	160	121	0	39	0	0
경북	건천농공단지	1988-01-28	102	1988~1989	102	86	2	14	0	0
경북	내남농공단지	1988-09-26	90	1989~1990	90	72	2	12	4	0
경북	서면농공단지	1993-01-01	113	1993~1994	113	93	4	12	4	0
경북	안강농공단지	1987-04-02	150	1988~1989	150	113	3	11	23	0
경북	외동농공단지	1987-05-30	109	1987~1988	109	92	1	6	10	0
경북	고아농공단지	1987-07-05	206	1987~1988	206	166	6	34	0	0
경북	산동농공단지	1990-01-31	69	1990~1991	68	53	2	13	0	0
경북	해평농공단지	1987-07-01	62	1990~1991	62	43	0	19	0	0
경북	감문농공단지	1991-09-13	105	1991~1993	105	80	8	9	8	0
경북	대광농공단지	1988-04-09	557	1988~1989	557	361	10	155	31	0
경북	아포농공단지	1996-07-18	190	1998~1999	190	135	4	22	29	0
경북	지례농공단지	1989-04-17	57	1989~1992	57	45	1	6	5	0
경북	가은농공단지	1995-08-24	82	1995~1997	82	67	0	10	5	0
경북	가은제2농공단지	2010-06-22	78	2010~2012	78	57	0	13	8	0
경북	마성농공단지	1990-12-29	264	1990~1993	264	214	6	44	0	0
경북	산양농공단지	1988-01-27	172	1988~1990	172	139	4	29	0	0
경북	영순농공단지	1998-02-12	84	1998~2000	84	63	2	7	12	0
경북	영순제2농공단지	2008-03-17	141	2008~2011	152	122	0	15	15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식품제조업	함평군	함평군
0	0	0	0	섬유, 화학, 금속, 비금속, 기계, 기타 제품	화순군	화순군
0	0	0	0	식품, 음료,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영암군수	영암군청
0	0	0	0	식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완도군	완도군
0	0	0	0	식품 제조업	해남군	해남군
0	0	0	0	식품(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강진군	강진군
7	3,600	116	665	기계, 전자,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경주시	경주시
3	1,439	94	302	자동차부품, 섬유, 목재 제조업 등	경주시	경주시
14	337	6	202	자동차부품, 섬유 제조업 등	경주시	경주시
11	1,580	120	437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 제조업 등	경주시	경주시
5	4,179	113	1,359	자동차부품, 기계 제조업 등	경주시	경주시
45	1,963	13	1,044	전자, 기계, 섬유, 식품, 기타 제조업 등	구미시	구미시
14	409	1	192	전자, 섬유, 화학, 종이 제조업 등	구미시	구미시
10	224	6	161	석유화학, 기계, 전자, 전자제조업 등	구미시	구미시
11	385	7	364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제조업 등	김천시	김천시
26	2,360	39	1,007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제조업 등	김천시	김천시
28	1,600	36	855	기계, 전기전자 제조업 등	김천시	김천시
5	78	0	56	섬유의복, 철강, 기계 제조업 등	김천시	김천시
14	125	0	112	음식료, 기계 제조업 등	문경시	문경시
6	0	0	0	음식료품, 비금속 제조업 등	문경시	문경시
18	3,864	36	633	전 제조업	문경시	문경시
23	1,826	60	580	음식료, 비금속 제조업 등	문경시	문경시
7	408	0	249	음식료, 석유화학 제조업 등	문경시	문경시
7	89	0	95	음식료품, 비금속 제조업 등	문경시	문경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북	공성농공단지	1989-04-17	113	1989~1990	103	81	0	22	0	0
경북	외답농공단지	1986-12-04	235	1986~1992	220	202	0	18	0	0
경북	함창농공단지	1993-05-25	119	1993~1994	119	101	0	18	0	0
경북	함창제2농공단지	2008-12-03	125	2008~2012	123	92	2	17	12	0
경북	화동농공단지	1989-09-13	94	1990~1991	78	68	0	10	0	0
경북	화서농공단지	1991-09-13	105	1991~1993	92	82	0	10	0	0
경북	화서제2농공단지	2008-11-27	140	2008~2013	139	101	1	17	20	0
경북	남선농공단지	1986-11-03	67	1987~1987	66	61	0	5	0	0
경북	남후농공단지	1997-06-30	288	1998~2000	288	201	0	87	0	0
경북	풍산농공단지	1991-09-13	215	1992~1994	215	190	4	21	0	0
경북	문수농공단지	2003-11-11	149	2003~2006	149	105	5	25	14	0
경북	반구전문농공단지	2010-08-03	299	2009~2013	299	212	8	79	0	0
경북	봉현농공단지	1988-06-27	110	1988~1989	110	78	2	23	7	0
경북	장수농공단지	1990-12-29	224	1992~1993	224	155	13	25	31	0
경북	적서농공단지	1990-09-14	308	1990~1991	308	288	0	20	0	0
경북	휴천농공단지	1993-09-02	253	1994~1997	253	196	3	26	28	0
경북	고경농공단지	1984-09-07	57	1984~1986	57	49	0	8	0	0
경북	도남농공단지	1988-12-30	330	1988~1991	330	257	0	52	21	0
경북	본촌농공단지	1988-02-19	152	1988~1992	152	132	0	20	0	0
경북	북안농공단지	1988-04-18	157	1988~1989	157	134	0	23	0	0
경북	화산농공단지	1987-03-16	118	1987~1987	118	103	0	15	0	0
경북	청하농공단지	1989-11-21	196	1989~1990	195	139	5	33	18	0
경북	개진농공단지	1990-12-26	139	1991~1993	139	119	15	5	0	0
경북	쌍림농공단지	1988-06-27	259	1988~1989	259	218	4	34	3	0
경북	군위농공단지	1990-01-24	301	1991~1992	301	222	18	33	28	0
경북	효령농공단지	1987-10-13	113	1988~1990	113	100	4	9	0	0
경북	봉화농공단지	1990-12-29	149	1991~1992	149	117	11	13	8	0
경북	봉화제2농공단지	1996-12-05	135	1997~1998	135	109	9	16	1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9	401	2	155	음식료, 석유화학, 비금속 제조업 등	상주시	상주시
28	3,727	33	368	섬유의복, 석유화학, 전기전자 제조업 등	상주시	상주시
12	526	4	186	음식료, 섬유의복, 비금속 제조업 등	상주시	상주시
11	87	4	87	음식료품, 비금속 제조업 등	상주시	상주시
6	148	0	52	비금속, 철강 제조업 등	상주시	상주시
4	187	0	43	비금속, 기계 제조업 등	상주시	상주시
2	x	x	x	음식료품, 비금속 제조업 등	상주시	상주시
11	189	0	76	목재종이 제조업 등	안동시	안동시
35	1,431	0	392	음식료 제조업 등	안동시	안동시
29	225	4	358	석유화학, 기계 제조업 등	안동시	안동시
13	256	4	90	음식료, 비금속 제조업 등	영주시	영주시
1	x	x	x	기계,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주)오태 외 3개사	영주시
26	410	19	260	음식료, 섬유의복 제조업 등	영주시	영주시
38	565	4	331	섬유의복, 기계 제조업 등	영주시	영주시
1	x	x	x	비금속 제조업 등	영주시	영주시
1	x	x	x	저공해 제조업	영주시	영주시
8	244	3	66	섬유의복, 석유화학 제조업 등	영주시	영천시
17	9,122	175	1,565	철강, 기계 제조업 등	영주시	영천시
13	2,054	116	870	섬유의복, 철강 제조업 등	영주시	영천시
12	1,194	8	353	철강, 기계 제조업 등	영주시	영천시
16	257	3	125	섬유의복, 목재종이 제조업 등	영주시	영천시
22	965	3	289	철강, 기계 제조업 등	포항시	청하농공단지협의회
32	1,249	53	337	섬유의복, 석유화학 제조업 등	고령군	고령군
46	2,520	28	510	식품제조업 등 11개 제조업	고령군	고령군
36	1,895	16	697	섬유의복	군위군	군위군
16	763	17	273	섬유의복, 비금속 제조업 등	군위군	군위군
16	253	4	220	음식료, 섬유, 의복, 석유화학	봉화군	봉화군
15	170	0	156	음식료, 비금속, 전기, 전자 제조업 등	봉화군	봉화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북	선남농공단지	1986-12-24	73	1986~1987	73	56	2	7	0	8
경북	성주농공단지	1989-11-15	146	1989~1991	146	107	7	10	0	22
경북	월항농공단지	1991-09-13	258	1992~1994	258	205	16	37	0	0
경북	영덕농공단지	1996-10-10	150	1997~1999	150	125	0	21	1	3
경북	예천농공단지	1989-01-13	129	1989~1990	129	99	0	30	0	0
경북	울진농공단지	1991-09-13	126	1991~1993	126	92	2	20	12	0
경북	다인농공단지	1990-06-14	206	1990~1991	206	176	5	23	2	0
경북	봉양농공단지	1991-12-30	200	1992~1994	200	155	3	32	10	0
경북	의성농공단지	1988-08-24	162	1989~1989	161	131	3	20	7	0
경북	단밀농공단지	2008-04-10	144	2008~2010	144	105	0	23	16	0
경북	청도농공단지	1989-04-20	139	1987~1991	139	108	0	31	0	0
경북	풍각농공단지	1990-12-29	252	1991~1993	252	200	0	52	0	0
경북	기산농공단지	1989-12-28	176	1990~1991	176	143	3	27	3	0
경북	산양제2농공단지	2010-11-22	134	2009~2013	134	91	0	16	27	0
경북	평해농공단지	2010-09-30	150	2008~2014	149	93	2	38	16	0
경북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2011-06-22	149	2008~2014	149	86	3	31	29	0
경북	예천제2농공단지	2012-11-27	257	2012~2015	257	186	2	69	0	0
경북	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2013-03-21	247	2013~2015	247	172	8	46	21	0
경북	남영양농공단지	2013-11-29	30	2013~2014	30	15	1	14	0	0
경북	영덕로하스특화농공단지	2012-06-18	149	2012~2013	149	104	11	34	0	0
경북	영덕제2농공단지	2012-05-21	328	2012~2016	328	199	3	126	0	0
경북	유곡농공단지	2011-02-23	244	2009~2013	241	139	0	40	62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9	368	9	158	섬유의복 제조업 등	성주군	성주군
19	212	0	385	섬유·의복·목재·종이·철강기계·비 금속 등	성주군	성주군
39	960	40	731	섬유의복, 석유화학, 기계 제조업 등	성주군	성주군
13	302	0	148	음식료, 비금속 제조업 등	영덕군	영덕군
11	447	10	239	음식료, 비금속 제조업 등	예천군	예천군
14	22	1	90	비금속, 기계 제조업 등	울진군	울진군
13	220	0	119	환경성 검토후 적합업종	의성군	의성군
20	1,200	4	315	환경성 검토후 적합업종	의성군	의성군
18	600	1	205	환경성 검토후 적합업종	의성군	의성군
12	240	1	117	기계조립금속, 전기전자 제조업 등	의성군	의성군
14	1,592	138	475	음식료, 섬유의복 제조업 등	청도군	청도군
29	1,240	84	431	섬유의복, 기계 제조업 등	청도군	청도군
21	1,915	5	470	농산물가공업, 자동차부품, 섬유제조, 기타제조업	칠곡군	기산농공단지입주 자협의회
3	0	0	0	기계·전자·섬유·음식료품 제조업 등	문경시	문경시
8	60	0	15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울진군	울진군
0	0	0	0	식료품, 음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울진군	울진군
0	0	0	0	식료품, 음료,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등	예천군	예천군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식료품 제조업	지에스산업개발 외 3개업체	칠곡군
0	0	0	0	식료품,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경북 영양군	영양군
0	0	0	0	음식료품 제조업	영덕군	영덕군
0	0	0	0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영덕군	영덕군
2	x	x	x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제조업	봉화군	봉화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남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2007-08-27	282	2008~2015	282	218	12	30	22	0
경남	나전농공단지	1993-12-14	144	1993~1995	144	94	7	40	3	0
경남	내삼농공단지	1996-07-11	113	1998~2004	113	97	0	16	0	0
경남	병동농공단지	1997-12-31	149	2001~2003	149	96	0	53	0	0
경남	본산농공단지	2005-10-20	147	2007~2011	146	117	0	16	13	0
경남	봉림농공단지	1995-10-31	93	1995~1997	93	66	2	21	4	0
경남	안하농공단지	2004-06-07	127	2004~2007	124	96	1	17	10	0
경남	진영축곡농공단지	1989-03-10	405	1989~1998	405	346	19	39	1	0
경남	하계농공단지	2007-09-20	137	2009~2012	136	99	2	18	17	0
경남	진북농공단지	1989-12-15	133	1990~1991	133	111	17	5	0	0
경남	미전농공단지	2010-09-09	167	2010~2014	167	109	2	56	0	0
경남	부북특별농공단지	1986-07-11	108	1986~1987	108	108	0	0	0	0
경남	상남특별농공단지	1988-11-28	84	1988~1996	84	76	1	0	7	0
경남	제대농공단지	2007-10-05	193	2007~2016	192	99	7	64	22	0
경남	초동특별농공단지	1989-04-19	317	1989~2000	317	263	10	27	17	0
경남	하남농공단지	1989-04-19	179	1989~1990	179	153	2	21	3	0
경남	춘화농공단지	2008-07-02	212	2007~2012	209	143	1	27	38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6	5,100	460	1,211	선박 및 풍력 관련	삼성중공업(주)	거제시
20	1,456	68	666	금속,기계,자동차부품,제어장비, 전자기기	김해시	니전농공단지 협의회
27	2,782	40	490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김해시	내삼농공단지 협의회
16	2,186	140	424	조립기계금속, 자동차부품	김해시	병동농공단지 협의회
11	506	3	335	금속가공, 기타기계 및 장비	가야전기(주)외 7개사	김해시
4	1,760	72	233	기계, 자동차부품	김해시	봉림농공단지 협의회
27	1,695	39	458	전기, 전자, 반도체 등	김해시	안하농공단지 협의회
51	11,915	248	2,425	기계,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김해시	진영죽곡농공단지 협의회
20	771	6	500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김해시	김해시
18	1,421	42	412	비금속, 철강, 기계, 섬유, 플라스틱	창원군	창원시
5	0	7	117	음료,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미전지구농공단지협 동화(주)	밀양시
3	2,370	150	250	유리섬유, 탄소섬유	부북특별농공단지 협의회 대표 주문수	밀양시
2	x	x	x	유리섬유, 탄소섬유	상남특별농공단지협 의회	밀양시
1	x	x	x	식료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농협중앙회	밀양시
37	2,160	28	633	음식료, 기계, 석유화학 제조업 등	농공지구유치 추진위원회	밀양시
26	1,200	140	563	의류, 비금속, 조립금속 제조업 등	밀양시	밀양시
11	20	0	101	자동차부품, 전기기계, 정밀기기, 조립금속, 기계장비 제조업 등	밀양시장	밀양시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남	곤양농공단지	1988-11-28	84	1989~1990	84	59	4	12	9	0
경남	두량전문농공단지	2004-06-10	118	2004~2007	118	90	2	17	9	0
경남	사남농공단지	1989-01-10	568	1990~1992	568	481	12	72	3	0
경남	송포농공단지	1989-12-15	104	1990~1991	104	83	2	19	0	0
경남	축동구호농공단지	2007-12-18	106	2007~2014	106	78	3	15	10	0
경남	향촌농공단지	2007-10-17	260	2007~2013	256	183	7	30	36	0
경남	향촌삼재농공단지	2008-07-02	92	2008~2011	92	64	3	13	12	0
경남	웅상농공단지	1987-11-25	86	1988~1989	86	70	0	16	0	0
경남	금곡농공단지	2009-08-13	94	2009~2014	94	67	1	26	0	0
경남	대곡농공단지	1996-12-27	133	1997~1998	133	95	6	18	14	0
경남	사봉농공단지	1996-12-27	148	1997~2000	148	109	10	13	16	0
경남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2006-03-15	147	2004~2008	147	87	3	35	22	0
경남	실크전문농공단지	2007-06-29	133	2008~2010	132	75	12	26	19	0
경남	이반성농공단지	1993-07-19	141	1994~1996	141	111	7	23	0	0
경남	진성농공단지	1988-05-17	86	1988~1989	86	60	4	22	0	0
경남	남산농공단지	1994-12-29	154	1994~1997	154	120	2	32	0	0
경남	당산농공단지	1991-10-01	103	1991~1993	103	82	3	18	0	0
경남	서울우유농공단지	2002-11-19	93	2002~2005	93	49	7	13	24	0
경남	석강농공단지	1995-12-23	152	1995~2000	152	127	0	25	0	0
경남	정장농공단지	1988-03-25	52	1988~1989	52	45	1	4	2	0
경남	석강제2농공단지	2008-10-22	42	2008~2014	42	34	0	4	4	0
경남	마동농공단지	2007-08-06	288	2007~2009	287	201	8	59	19	0
경남	세송농공단지	2005-01-11	150	2005~2006	150	116	8	14	12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8	643	18	218	기계, 금속	사천시	사천시
24	794	3	414	운송장비, 기계, 금속	사천시	사천시
41	4,201	54	1,483	기계, 금속, 운송장비	사천시	사천시
16	274	6	168	음식료품, 기계	사천시	사천시
5	250	19	53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대한토지신탁(주)	사천시
1	x	x	x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	삼호조선(주)	사천시
28	116	2	116	식품제조업	사천시	사천시
12	1,679	46	369	기계, 금속, 섬유, 화학 제조업 등	양산시	양산시
0	0	0	0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주)테크원에너지	진주시
19	582	4	267	음식료품, 의류, 화학 기타 제조업 등	진주시	진주시
17	1,297	70	380	전 제조업	진주시	진주시
21	216	1	241	음식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진주시	진주시
23	30	0	67	섬유제품, 의복 등	진주시	진주시
8	1,956	12	649	전 제조업	진주시	진주시
19	608	9	290	전 제조업	진주시	진주시
18	189	0	0	석재가공업	거창군	농공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
10	215	0	0	제조업, 보관및창고업, 폐기물재생처리업	거창군	농공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
1	x	x	x	음식료	서울유유희동조합	서울유유희동조합
9	1,110	72	0	음식료, 1차금속, 금속가공 제조업 등	거창군	농공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
7	104	1	0	섬유의복, 비금속, 금속가공, 기타제품, 종이, 1차금속	거창군	농공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
2	x	x	x	식료품, 음료, 1차금속산업, 금속가공	거창군	거창군
12	438	0	311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 비제조업	(주)성광	고성군
7	478	0	607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 비제조업	(주)세송	고성군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남	울대농공단지	1988-05-20	105	1988~1989	105	82	0	23	0	0
경남	회화농공단지	1992-04-27	92	1992~1994	92	74	4	7	7	0
경남	고현농공단지	1989-01-14	59	1989~1990	59	47	1	7	4	0
경남	금서농공단지	1992-04-28	156	1992~1995	156	118	26	4	8	0
경남	금서제2농공단지	2008-04-08	197	2007~2010	197	151	6	18	22	0
경남	산청농공단지	1989-09-04	112	1989~1991	112	84	4	24	0	0
경남	동동농공단지	1987-06-05	291	1988~1991	275	225	16	29	5	0
경남	봉수농공단지	1992-07-14	317	1993~1995	317	277	11	20	9	0
경남	부림농공단지	1991-07-01	148	1992~1993	148	119	4	18	7	0
경남	정곡농공단지	1989-07-08	61	1989~1991	57	47	0	5	5	0
경남	남지농공단지	1987-04-14	44	1987~1989	44	39	0	5	0	0
경남	대지농공단지	2004-12-28	64	2006~2008	64	44	0	12	8	0
경남	대합농공단지	1988-03-09	86	1989~1992	86	75	0	11	0	0
경남	서리전문농공단지	2008-10-17	198	2008~2012	198	156	4	24	14	0
경남	송진전문농공단지	2008-10-13	274	2008~2014	274	195	3	25	51	0
경남	고전농공단지	1988-12-02	76	1989~1990	76	57	1	8	10	0
경남	금성조선농공단지	2009-12-07	146	2009~2016	146	108	5	33	0	0
경남	적량농공단지	1990-01-04	65	1990~1992	65	49	2	8	6	0
경남	진교농공단지	2004-11-30	138	2007~2009	138	96	1	18	23	0
경남	가야농공단지	1992-07-09	77	1994~2007	77	66	1	10	0	0
경남	군북농공단지	1987-05-29	99	1987~1988	99	78	4	17	0	0
경남	모로농공단지	2005-11-18	92	2006~2006	91	77	1	9	4	0
경남	법수농공단지	1989-09-09	226	1990~1991	226	178	10	38	0	0
경남	산인농공단지	1989-09-09	129	1990~1991	129	103	6	20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9	1,376	2	620	전제조업	고성군	고성군
7	337	3	236	전제조업	고성군	고성군
7	31	0	31	조립금속제품,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	남해군	남해군
14	342	3	312	농산물가공업, 공산품제조업	산청군	산청군
6	120	0	32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주)한서	산청군
11	140	4	241	농산물가공업, 공산품제조업	산청군	산청군
26	120	12	304	기계, 조립금속 제조업	의령군	의령군
30	1,930	168	638	조립금속, 기타기계 및 장비	의령군	의령군
8	355	2	123	음식료, 기타 기계 및 장비	의령군	의령군
5	62	0	41	조립금속, 기타 운송 장비	의령군	의령군
6	230	13	56	음식, 섬유, 화학, 금속 제조업 등	창녕군	창녕군
10	414	1	166	기계, 금속, 자동차 관련 제조업 등	창녕군	창녕군
11	1,061	20	321	음식, 섬유, 화학, 금속 제조업 등	창녕군	창녕군
19	2,898	88	804	자동차부품 제조업	창녕군	창녕군
4	865	13	85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에이치케이개발(주)	창녕군
6	147	0	74	전 제조업	하동군	하동군
0	0	0	0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BN금성개발(주)	하동군
7	50	0	20	전 제조업	하동군	하동군
4	200	0	191	기타기계 및 장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하동군	하동군
3	200	2	66	금속가공, 기타기계 제조업 등	(주)산인종합건설	함안군
18	420	34	368	전업종	함안군	군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3	600	12	100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금속가공 제조업 등	함안개발(주)	모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19	180	30	719	전 제조업	함안군	범수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20	1,008	26	469	전 제조업	함안군	산인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2016 산업입지요람

지역	산업단지명	지정일자	지정 면적 (천㎡)	사업기간	관리대상면적현황(천㎡) (2014.12)					
					합계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경남	장암농공단지	2010-05-13	145	2010~2014	144	91	3	50	0	0
경남	칠원용산농공단지	2008-04-28	100	2008~2009	95	73	0	17	5	0
경남	칠원운서농공단지	2010-04-15	95	2010~2012	95	72	1	14	8	0
경남	파수농공단지	1989-09-09	166	1990~1991	166	146	9	11	0	0
경남	황시농공단지	2005-09-20	146	2006~2006	141	128	0	10	3	0
경남	수동농공단지	1991-07-01	102	1992~1993	102	85	6	11	0	0
경남	안의제2농공단지	2008-01-14	275	2007~2011	275	208	3	31	33	0
경남	안의전문농공단지	2006-01-25	147	2006~2007	146	110	0	12	24	0
경남	원평농공단지	2004-03-29	136	2004~2006	136	106	6	1	23	0
경남	이은농공단지	1984-11-15	40	1984~1986	40	34	0	6	0	0
경남	야로농공단지	1990-05-21	114	1990~1991	114	95	2	15	2	0
경남	울곡농공단지	1987-02-02	234	1987~1990	234	190	4	40	0	0
경남	적중농공단지	1993-12-16	94	1994~1995	94	79	2	2	11	0
경남	대미농공단지	2010-12-23	60	2010~2015	44	43	1	0	0	0
경남	중방전문농공단지	2010-09-08	99	2010~2013	99	61	0	11	27	0
경남	제일농공단지	2011-04-12	46	2011~2015	46	20	8	9	9	0
경남	화현농공단지	2013-04-04	88	2012~2014	88	60	1	27	0	0
경남	승강기전문농공단지	2011-08-19	320	2009~2016	320	193	7	120	0	0
제주	대정농공단지	1990-01-12	115	1990~1991	115	94	0	21	0	0
제주	구좌농공단지	1998-08-03	67	1988~1989	67	49	0	18	0	0
제주	금능농공단지	1992-11-11	130	1993~1994	130	97	0	33	0	0

2014년 12월				입주유치업종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업체수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달러)	고용 (명)			
0	0	0	0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주)비앤더블유 외 3개업체	함안군
20	416	4	215	금속가공, 전자부품 등, 기타 기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진우개발(주) 외 2개업체	입주기업체협의회
23	336	2	258	목재 및 나무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운서농공단지(주)	함안군
26	820	12	448	전 제조업	함안군	파수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16	320	2	235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광진금속 대표 황안도	황사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
13	392	22	193	음식료, 기계조립 제조업	함양군	함양군
12	32	0	34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함양군	함양군
4	40	0	47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	(주)세영	함양군
2	x	x	x	비금속 제조업	(주)한국화이바	함양군
7	64	2	84	전자, 기계금속, 목재 제조업	함양군	함양군
19	240	0	231	섬유 의복, 음식료, 기타 제조업	합천군	합천군
20	700	0	404	전 제조업	합천군	합천군
6	131	0	72	전 제조업	합천군	합천군
0	0	0	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주)에이치아이씨	밀양시
6	7	0	25	금속가공제품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주)서동 흥대표	함양군
1	x	x	x	식료품 제조업	제일리버스(주)	고성군
0	0	0	0	섬유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조업	(주)케이와이텍	산청군
0	0	0	0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주)산양종합개발	거창군
22	657	1	198	제조업(농공단지 입주가능 업종)	서귀포시	서귀포시
15	288	0	191	제조업(농공단지 입주가능 업종)	제주시	제주시
20	490	0	219	제조업(농공단지 입주가능 업종)	제주시	제주시

## Ⅱ. 기타 산업집적지 현황

### 1. 자유무역지역

-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계법률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보장과 관세상의 특례를 적용하여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국제 물류기지 육성 등을 목적으로 지정함
- 동북아 경제·물류중심국가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이후 관세자유 구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통합함
  -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중심인 반면,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두 지역이 각각 분리·운영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유사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통합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함
- 통합자유무역지역의 출범으로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등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군산항 등의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하는 내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물류업의 경우 복합 물류관련 사업의 영위가 가능해 다국적 물류기업의 생산·물류복합활동이 가능하고, 수출입 거래 목적 도매업 영위자 등의 입주가 가능함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

구 분	마 산	군 산	대 불	동 해	울 촌	울 산	김 제
지정일	'70.1.1	'00.10.6	'02.11.21	'05.12.12	'05.12.12	'08.12.8	'09.1.6
면적(천㎡)	957	1,256	1,157	248	344	837	991

## &lt;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gt;

구 분	부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1.1	'08.12.8	'09.3.30	'02.1.1	'03.1.1	'05.4.6(1단계) '07.12.31(2단계)
면적(천㎡)	9,363	724	1,429	8,880	2,014	3,015

## 2. 경제자유구역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2002.12)함
  - 국제적으로 경쟁 가능한 공항·항만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적의 경영·생활환경을 제공하고,
  - 동북아 물류중심, 세계 우수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위상을 정립함
- 1차 3개 구역('03년: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차 3개 구역('08년: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3차 2개 구역('13년:동해안, 충북) 등 국제공항·국제항만 등 기반시설을 보유한 8개 지역(323.3km<sup>2</sup>), 총 32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중임
- 경제자유구역에서는 one-stop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교육기관·병원 설립 운영, 외국어서비스, 외국화폐·방송 등의 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우수한 여건에서 해당 개발사업 또는 제조, 물류, 관광업 등의 사업 영위가 가능함

< 경제자유구역 현황 >

명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	충북
위치	인천 (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 (강서구), 경남 (창원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남 (하동군)	경기(평택)	대구, 경북 (경산·영천·포항)	전북 (군산·부안)	강원 (강릉·동해)	충북(청주, 충주)
지정일	'03.08	'03.10		'08.05			'13.02	'13.02
면적	132.91km <sup>2</sup>	52.89km <sup>2</sup>	77.68km <sup>2</sup>	4.39km <sup>2</sup>	19.72km <sup>2</sup>	18.70km <sup>2</sup>	7.96km <sup>2</sup>	9.08km <sup>2</sup>
공항 항만	인천공항· 인천항	김해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구국제공 항	군산·군장 신항	양양공항· 동해항 등	청주공항
추진 기간	'03~'20	'03~'20	'03~'20	'08~'20	'08~'20	'08~'20	'13~'24	'13~'20
지구	3개지구	5개지구	5개지구	2개 지구	8개 지구	2개 지구	4개지구	3개지구
총사 업비	89.1조원	11.6조원	18.9조원	4.7조원	8.0조원	4.2조원	1.3조원	2조원
개발 방향	국제비즈 니스, 항공, 물류, 금융	물류, 첨단생산, R&D	물류, 철강, 조선, 레저 등	첨단성장 산업 클러스터, 유통, 상업 등	자동차, IT, 의료, 첨단부품 등	신재생에너 지, 관광·레저	물류, 관광, 첨단소재 등	바이오 신약, IT기술/융복 합 의료기기 산업 등

자료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www.fez.go.kr)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황 (단위 : 개) >

구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군산	동해안	충북	전체
국내 기업	2,162	3,139	311	5	354	2	68	59	6,100
외국 기업	76	69	50	0	10	2	2	2	211
계	2,238	3,208	361	5	364	4	70	61	6,311

주 : 2014.12월 말 기준

### 3.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함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는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입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당해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결정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일부에 지정
  - 한국내의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조성시점에는 분양가 취득,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물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 취득 또는 실거래가에 상당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에 비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여 산업단지를 확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저렴한 임대료 또는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임
  - 또한, 2005년 3월 이후 일정규모 이상 투자를 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인센티브가 추가 제공되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보다 유리함
  - 2005년 근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전용단지의 지정근거를 외촉법으로 일원화하면서부터 기존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관리하게 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23개)>

구분	최초 지정일	면적 (천㎡)	입주면적 (천㎡)	입주율 (%)	입주 기업수	고용인원 (명)	투자유치액 (백만불)	
천안(충남)	'94.10.13	510.1	480.1	97.7	41	4,357	316.3	
대불(전남)	'98.08.29	1,614.4	1,584.8	98.9	36	3,071	86.3	
사천(경남)	'01.08.17	495.9	495.9	100.0	15	968	67.1	
오창(충북)	'02.11.06	446.3	414.1	92.8	10	2,028	184.1	
구미(경기)	'02.11.06	332.4	174.3	52.4	9	1,712	58.8	
장안1(경기)	'04.09.30	418.2	309.5	74.0	14	1,738	352.4	
인주(충남)	'04.12.21	164.7	159.5	100.0	8	367	59.0	
당동(경기)	'05.09.12	239.5	229.3	95.8	6	775	836.8	
지사(부산)	'05.11.30	298.1	239.5	80.3	10	989	121.0	
장안2(경기)	'06.12.29	368.9	148.5	40.2	4	524	140.5	
달성(대구)	'08.09.10	104.2	104.2	100.0	6	146	23.3	
오성(경기)	'09.09.03	353.9	42.9	12.1	5	162	43.4	
천안5(충남)	'12.12.21	336.2	150.3	44.7	7	20	6.9	
월전(광주)	'13.05.15	99.1	59.4	59.9	3	82	15.0	
문막(강원)	'13.12.10	99.1	35.2	35.5	2	.	.	
진전(충북)	'14.08.20	108.4	108.4	100.0	3	5	0.1	
송산2(충남)	'15.10.12	134.0	.	.	.	.	.	
국가식품(전북)	'15.10.12	116.0	.	.	.	.	.	
부품 소재	구미	'09.03.09	246.3	149.7	60.8	6	333	28.4
	포항	'09.09.03	327.2	129.6	39.6	2	125	135.8
	익산	'10.03.12	319.4	124.9	39.1	3	135	36.0
	창원	'10.10.14	71.3	32.7	45.9	2	181	23.6
	미음	'11.11.28	331.9	151.9	45.8	7	511	112.0
합계		7,535.5	5,324.7	71.0	199	18,229	2,646.8	

\* 천안(19천㎡), 대불 (13천㎡), 인주(5천㎡)의 지원시설 면적 및 분양면적 등 제외

주 : 2015. 12월 기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75개)>

구분	위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사업분야
한국경남태양유전(주)	경남 사천	171.6	'99.10.22	세라믹콘덴서
한국제이에스티(주)	경남 양산	20.2	'00.03.14	커넥터 제조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세종특별시	190.5	'00.12.30	자동차용 안전유리
한국바스프(주)(전남)	전남 여수	678.7	'00.12.30	기초유기화합물
한국바스프(주)(전북)	전북 군산	6.5	'01.01.12	동물용 의약품
동부하이텍	충북 음성	137.2	'01.06.29	반도체 파운드리
동우화인켐(주)(경기)	경기 평택	252.3	'03.12.29	LCD 컬러필터

구 분	위 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사업분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	경북 구미	341.1	'04.12.21	LCD 글라스기판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주)	부산 사하	67.9	'04.12.23	창고, 보관업 등
도레이첨단소재(주)3공장	경북 구미	191.4	'04.12.27	플라스틱필름, 기공플라스틱원료
아반스트레이트	경기 평택	88.8	'04.12.30	LCD 유리기판
한국호아전자주식회사	경기 평택	18.6	'04.12.30	LCD Photo Mask
린텍코리아(주)	충북 청원	49.6	'04.12.31	플라스틱 제품
에이지씨디스플레이 글라스오창(주)	충북 청원	164.8	'05.05.27	판유리 가공품
(주)린데코리아	경기 용인	26.7	'05.11.23	산업용 가스
프락스에어코리아	경기 화성	48.6	'05.11.28	산업용 가스
(유)한국타임즈항공	경기 김포	335.5	'06.03.29	헬리콥터 성능개량
보탈석고보드시스템(주)	충남 당진	17.8	'06.12.26	석고보드 제조판매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	경북 구미	63.9	'06.12.28	플랫판넬, 디스플레이글라스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일렉트로닉스(유)	울산 남구	27.4	'06.12.28	삼불화질소 제조
롯데엠알시(주)	충남 서산	66.6	'07.04.30	석유화학 기초화학 물질 제조
스탠포드호텔코리아(주)	서울 마포	3.4	'07.05.17	호텔업
일상해양산업(주)	전남 여수	115.2	'07.11.20	콘도휴양리조트
태영호라이즌 코리아터미널(주)	울산 울주	43.3	'07.12.06	액체화물 보관
한국쓰리엠하이테크(유)	전남 나주	5.5	'07.12.27	미세유리구슬소자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 필름한국(유)	경북 구미	228.7	'08.03.31	전지 분리막 필름
프렉스에어코리아(주)	충남 아산	15.8	'08.07.30	산업용 가스
파워카본테크놀러지(주)	경북 구미	74.5	'08.12.18	전기용 탄소제품
풀무원다논(주)	전북 무주	119.9	'09.02.27	낙농품제조업
이스트만 화이버코리아(주)	울산 남구	37.7	'09.08.26	아세테이트 토크 제조
버자아제주리조트(주)	제주 서귀포	744.2	'09.11.12	종합 휴양업
징크스코리아(주)	경북 경주	119.1	'15.12.03	아연, 선철재생제조
서한NTN베어링(주)	경북 경주	86.9	'10.01.29	풍력,베어링제조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충남 천안	50.1	'10.09.30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에드워드코리아(주)	충남 천안	40.0	'10.09.30	반도체 장비 제조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경기 부천	6.6	'10.12.29	반도체소자 제조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전남 여수	284.3	'10.12.30	액체화물, 파이프 라인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충남 당진	55.8	'10.12.30	배합사료 제조업
카길유지(유)	충남 당진	52.1	'10.12.30	식물성 유지 제조업
현대코스모(주)	충남 서산	103.4	'10.12.30	석유화학
다우케미컬오엘이디(유)	충남 천안	39.5	'11.05.20	사진용화학제품제조업
롯데엠알시	전남 여수	70.6	'11.05.20	기초화학물질제조

구 분	위 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사업분야
현대아반시스(주)	충북 청원	145.3	'11.05.20	태양전지모듈 제조업
한국몰렉스(주)	경기 안산	13.9	'11.05.26	전자커넥터 제조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주)	경기 의왕	20.6	'11.07.20	자동차부품 R&D
태평양에어콘트롤공업(주)	충남 아산	10.1	'11.07.20	자동차 부품
대구텍유한회사	대구 달성	57.8	'11.08.01	금속절삭기계
에스에스엘엠주식회사	대구 달성	110.4	'11.08.0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한국유미코아신소재(유)	충남 천안	31.7	'11.12.20	양극재료 전구체
동서석유화학(주)	울산 남구	28.7	'11.12.22	아크릴로 니트릴 제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	충남 아산	8.0	'12.03.12	산업용 가스
굴드펌프(주)	충북 청원	47.0	'12.09.21	유압기기 제조
동우화인켄주식회사	전북 익산	38.7	'12.09.28	내화요업제품제조업
에이에스이코리아(주)	경기 파주	27.4	'12.09.28	시스템반도체패키징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유)	충남 아산	131.3	'12.10.02	제조업
아드반테스트코리아(주)	충남 천안	39.6	'12.10.02	제조업
현대셀베이스오일(주)	충남 서산	19.0	'12.10.02	제조업
닛소남해아그로(주)	전남 여수	8.6	'12.10.05	농약제조
울산아로마틱스(주)	울산 남구	168.4	'12.10.11	파라자일렌 제조
백통신원(주)	제주 서귀포	549.4	'13.10.08	전문휴양업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주)	전남 여수	150.0	'13.12.12	합성고무
도레이첨단소재	전북 군산	215.0	'13.12.13	합성수지 및 기타제품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	경기 화성	5.9	'13.12.20	고순도질소 및 수소 제조
한국니토포티칼(주)	경기 평택	13.2	'13.12.24	ITO 필름 제조
레고랜드코리아유한회사	강원 춘천	281.1	'14.04.29	레고랜드 테마파크
이니츠(주)	울산 남구	22.1	'14.06.26	PPS 화합물
엔알지(주)	충남 예산	32.6	'15.04.30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
에스케이 어드밴스드(주)	울산	104.4	'14.11.13	프로필렌(Propylene)
도레이첨단소재(주) 4공장	경북 구미	269.7	'14.12.16	탄소섬유복합재료, 필름, 섬유
스미토모세이카	전남 여수	41	'15.04.09	고흡수성수지
타이코에이애플(주)	경북 경산	81.3	'15.11.30	전자터미널, 커넥터 등
한국에이에스엠지니텍	경기 화성	7.2	'15.12.03	반도체중착설비제조
에어프로덕트	경기 평택	34.1	'15.12.03	산업용 가스
람정제주개발(주)	제주 서귀포	1,158	'15.12.04	복합리조트
녹지제주웰스케이(유)	제주 서귀포	224.7	'15.12.	복합리조트

주 : 2015. 12월 기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1개)>

구 분	위 치	건물(㎡)	최초지정일	사업분야
IDS-K	대전 유성	347.99	'15.11.20	R&D센터설립, 모형시험장 구축

주 : 2015. 12월 기준

## &lt; 외국인투자자유치 지원제도 비교 &gt;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항만형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
지정 목적	외자유치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보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지정 위치	산업단지	제한없음	항만 또는 공항주변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등	국제공항, 항만 주변지역
지역 특성	임대단지운영 원칙	개별사업장 단위	비관세지역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등)
지정 권자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관리 권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외: 시·도지사		산업통상부장관	·공항 및 물류: 국토교통부장관 ·항만형: 해양수산부장관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지역	·23개 :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1, 인주, 당동, 지사, 장안2, 달성, 오성, 천안 5산단, 월전, 문막, 진천, 송산2, 국가식품, 부품소재(구미, 포항, 익산,청원,미음)	·75개 개별 사업장	·산단형 7개 : 미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항만형 5개 : 부산, 광양, 인천, 포항, 평택·당진 ·공항형 1개 : 인천공항	·8개 : 인천, 부산-진해, 광양-반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 충북
입주 자격		·외투기업 ·제조업: 3천만\$ ↑ ·관광업: 2천만\$ ↑ ·물류업: 1천만\$ ↑ ·R&D: 2백만\$ ↑ (연구전문인력 10명 ↑)	·외투기업 ·수출주목적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입주기업지원업		·외투기업-내국기업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항만형	
조세 감면 요건	·제조업:1천만\$ ↑ ·물류업:5백만\$ ↑	지정요건(입주자 격)과 동일	·제조업:1천만\$ ↑ ·물류업:5백만\$ ↑		·제조업:1천만\$ ↑ ·관광업:1천만\$ ↑ ·물류업:5백만\$ ↑ ·의료기관:5백만\$ ↑ ·R&D:1백만\$ ↑ ·서비스업:1천만\$ ↑ (5년형 조세감면 기준)
관세	자본재 5년간 면제		관세유보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5년간 면제 (수입자본재)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	부지가액 10/1000 ↑	부지가액 10/1000		분양 (제도상 임대도 가능 : 부지가액10/1000)
임대료 감면	·고도기술수반사 업, 산업지원사 비스업 : 100% (1백만\$ ↑) ·부품소재: 100%, 그 외 제조 : 75% (5백만\$ ↑)	100%감면	·외투기업 -임대료 100%/75% 감면		지자체 조례 의거 50~100% 감면
비고	일원화('04.12.3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일원화('04.6.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 한법률」 개정(04.3.22)		

#### 4. 기업도시

- 기업도시는 2003년 전경련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됨
- 정부입장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종합제도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 기업입장에서는 복합개발을 통한 투자비 절감과 기업이 원하는 위치에 도시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함

- 제조업·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다목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임

## &lt; 기업도시 현황 &gt;

구분	면적 (만㎡)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사업자	출자사	주요시설	소관부처	
충주	701	'07.'12	5,966	충주기업도시(주)	포스코건설, NH공사, 임광토건, 엠코 등	산업용지, 연구시설, 연수원 등	국토 교통부	
원주	529	'07.'15	9,437	원주기업도시(주)	롯데건설, 경남기업, 강원도, 원주시 등	산업용지, 연구시설, 기업지원센터 등		
태안	1,464	'07.'14	1조 1,462	현대도시개발(주)	현대건설	골프장,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등	문화 체육 관광부	
영 암 · 해 남	삼 호	920	'06.'25	5,505	서남해안레저(주)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관광공사, 전라남도		골프장, 리조트단지, 마리나, 승마장 등
	구 성	2,096	'06.'20	1조 1,038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주)	보성건설, 한양, 전라남도, 전남도개공		골프장, 테마파크,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등
	삼 포	429	'07.'21	4,402	1단계: KAVO, 전남도개공  2단계: 사업자 물색중	전라남도, SJ건설, 전남도개공	1단계 F1경기장	

주 : 2015.5월 말 기준

## 5.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정됨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 '97년 12월에 선발 테크노파크 6개를 지정하고, '00년 이후 후발 테크노파크 9개를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민간 테크노파크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18개의 테크노파크를 지정함
- '07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기획단, 특화센터를 통합하여 중소기업 지원이외에 지역산업 육성 기획 및 평가기능까지 수행하고,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산업체 등이 참여함
- 주요 사업은 크게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지역연구사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RIC)사업,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등이 있음

< 전국 테크노파크 지정현황 >

구분	대상지역	지정시기	지원기간	예산지원(5년간)
1단계	경기, 경북, 광주, 대구, 인천(구 송도), 충남	'97.12	'98~'03	각 250억원
2단계	부산, 포항	'00.12	'03~'07	각 125억원
	강원, 충북, 전북, 전남	'03.12		
	경남, 울산	'04.12	'04~'08	

\* 경기북부(대전)('05.3), 서울('05.9), 대전('08.1), 제주('10.8)는 민간주도형(국비지원 全無)으로 지정

## &lt; 전국 테크노파크 현황 &gt;

## ○ 국비지원형

구분	법인설립	부지	특화분야	주요시설
인천 (구송도)	'98.6	453천㎡	자동차부품,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 나노기술, 디지털설계가공	미추홀타워, 미추홀타워 별관, 갯벌타워, 시험생산동, 인천자동차부품기술센터
경기	'98.9	178천㎡	전자·정보통신, 자동차부품, 바이오, 로봇	기술고도화동, 시험생산동, RIT Center
대구	'98.12	57천㎡	나노, 바이오, 한방, 모바일, IT융복합, 그린에너지	대구벤처센터·공장, 테크노빌딩, 신기술산업지원센터, 한방산업지원센터
경북	'98.8	153천㎡	기계·자동차, IT융복합, 정보통신, 에너지, 생명자원(한방)	본부동, 제1·2·3시험생산공장, 글로벌벤처동, R&DB센터
광주	'98.12	99천㎡	LED·LD, 광통신·광응용, 정보기전부품, 자동차부품	본부동, 생산동, 사업화동 4개, 시험생산동, 물류센터, 벤처지원센터, 과학기술교육협력센터
충남	'98.12	253천㎡	전자·정보기기, 첨단문화, 자동차부품, 농축산 바이오	종합지원관, 벤처관, 물류지원센터, 정밀가공지원센터
부산	'99.12	296천㎡	해양, 기계부품소재, 영상·IT, 첨단·미래	과학기술진흥센터, POST BI동, 시험생산동
포항	'00.2	181천㎡	나노전자소재, 바이오의료소재, 철강신소재, 에너지소재	본부동, 제1·2·3·4벤처동, 바이오 정보지원센터, 테크노빌
충북	'03.12	303천㎡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바이오, 차세대전지	미래융합기술관, 한방산업관, 생명산업관, 첨단IT산업관
전북	'03.12	511천㎡	자동차/기계, 생물, 문화, 영상, 관광, 신재생 에너지 및 RFT	본부동, 생산지원동, 벤처지원동,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연구개발지원센터

구분	법인설립	부지	특화분야	주요시설
전남	'03.12	154천㎡	신소재(마그네슘, 세라믹 등), 조선, 생물, 문화관광, 물류	본부동, 벤처동, 생산동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등
강원	'03.12	222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플라즈마, 해양바이오	본부동(기술혁신센터), 창업보육시설, 벤처공장, 세라믹신소재 지원센터, 반도체부재공장 등
경남	'00.6	165천㎡	지식기반기계(항공우주, 메카트 로닉스, 정밀기계, 조선해양), 로봇, IT융합, 바이오	경남테크노파크(본부동, 벤처동, 시험생산공장) 특화센터(로봇, 메카트로닉스센 터, 항공우주센터 등)
울산	'03.6	168천㎡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본부동, 시험평가센터, 기술혁신 센터, 정밀화학센터, 안전시험센터 등

○ 민간주도형

구분	법인설립	부지	특화분야	주요시설
대전	'05.1	106천㎡	신·재생바이오에너지, 영상·미디어문화콘텐츠, 섬유소재 , 가구디자인, LED 디스플레이, 친환경생물소재	종합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기 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1,2동
서울	'04.12	83천㎡	NIT인력양성, IT융합전문인력양성, BT	연구본부동, FAB, MSP, NIT제조장비
대전	'08.3	53천㎡	정보통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및소재	본부동,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IT전용벤처타운, 지능로봇산업화 센터
제주	'10.8	117천㎡	지역전략산업, 지식기반산업, 광 역경제권선도산업	제주벤처마루, 제주생물자원산업 화지원센터, 제주바이오산업센터

## 6. 연구개발(R&D)특구

- 연구개발로 신기술을 창조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함
  - \* 舊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자체의 장과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 수립배경: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역할 강화 요구,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11~'15) 만료에 따른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 필요, 연구성과 활용 강화 및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계획 기간은 2016~2020년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하고 대덕특구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함
    - \* 16.1.4 현재 제3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011~2016) 수립 행정예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여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혁신주체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속발전 능력을 극대화하고 기술 창업과 기업 성장을 통한 역동적인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며, 특구별 특성화(차별화) 및 특구간 협력·경쟁을 유도함

< 연구개발특구 현황 >

구분	지정일자	지정목적	면적	범위	특화분야
대덕	'06.6.30	미래 첨단융합산업 허브(HUB)구축	67.8km <sup>2</sup>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복합, 정밀기기
광주	'11.1.24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18.73km <sup>2</sup>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광기반 융복합, 디자인문화 컨텐츠, 친환경 자동차부품,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 소재
대구	'11.1.24	IT기반 소재부품 융복합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22.253 km <sup>2</sup>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스마트IT융합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소재,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부산	'12.11.12	R&D 기반 조선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 구축	14.104 km <sup>2</sup>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 구·영도구·사하구· 부산진구·연제구 일원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그린해양기계
전북	'15.7.13	그린 융복합산업의 세계적 거점화	15.3km <sup>2</sup>	전주시, 완주군, 정읍시 일원	농생명 융복합산업, 탄소 등 친환경 복합소재산업

## 7. 과학연구단지

-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유기적인 협력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 유치·육성을 위해 과학연구단지를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지원함
  - － 지정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지역 특화분야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연구개발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및 지역발전을 선도할 목적임
- 전국 13개 산업단지(수도권제외) 중 연구개발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하는데,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대해 단지별 5년간 지원
  - － 중앙정부 출연 150억이내, 지자체 및 기업 등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 2년간 사업수행 후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 R&D 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 공동 활용장비 및 R&D 과제 지원 등 5년간 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교류 촉진 및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거점 제공

### < 과학연구단지 지정현황 >

명칭	위치	지정시기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지정목적
광주과학 연구단지	북구 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단지 내)	'06. 5. 22 과학기술부 고시	11천㎡	'04.10 ~'08.10	240억원	지역과학기술 진흥 및 혁신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
전북과학 연구단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용암리 일원	'06. 5. 22 과학기술부 고시	6,433천㎡	'04.10 ~'09.9	266억원	지역과학기술의 혁신 R&D 클러스터로 조성
충북과학 연구단지	청원군 옥산면, 오창읍 일원	'06. 5. 22 과학기술부 고시	1,391천㎡	'05.3 ~'09.12	150억원	연구개발 거점단지 육성 및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조성

명칭	위치	지정시기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지정목적
강릉과학 연구단지	대전동 (강릉과학일반산 업단지)	'06. 9. 1 과학기술부 고시	1,497천㎡	'06.11 ~'11.11	291억원	동해안 지역의 성장거점도시 및 환동해권 과학기관 R&D Hub단지 구축
부산과학 연구단지	강서구 송정동 일원 (녹산국가산업단 지)	'07. 1. 22 과학기술부 고시	6,972천㎡	'07.12 ~'11.12	300억원	연구기관 유치공간 확보, 사업화시설 구축 및 과학기술 R&D클러스터 기술교류의 장 마련
대구과학 연구단지	달서구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07. 1. 22 과학기술부 고시	3.3천㎡	'07.4 ~'11.12	300억원	혁신클러스터 조성촉진, R&BD환경과 과학기술정보교류 거점 조성
전남과학 연구단지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08. 1. 11 과학기술부 고시	19.8천㎡	'08.5 ~'12.12	300억원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R&D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R&D혁신역량 강화
구미과학 연구단지	산동면 봉산리 (구미국가산업 단지)	'08. 1. 11 과학기술부 고시	12.1천㎡	'08.6 ~'12.12	310억원	연구개발거점센터 확보, R&DB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지역과학기술진흥거점 구축
경남과학 연구단지	창원시 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부지 내)	'09. 1. 16 지정 확정	8.7천㎡	'09.2 ~'13.12	450억원	기초원천 R&D 역량강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과학 기술혁신 거점구축
울산과학 연구단지	북구, 동구, 남구 일원	'09. 1. 16 지정 확정	46,746천㎡	'09.2 ~'14.1	430억원	자동차·조선·기계 부분의 R&D 통해 글로벌 융·복합 기술 선도

## 8.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업단지로 지역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추진
  - 1999년 2월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둬
- 문화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가 산업입지법에 의해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구분되어, 입지수요 등 지식산업의 특성이 미 반영된 한계가 존재해오에 따라, 2006년 4월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해 “문화산업진흥지구”제도를 추가 도입
  - 대상은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음악 등 문화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이나 문화산업적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며, 기획·제작·생산·유통관련 시설 및 대학, 연구소 등을 집적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장르를 집중 육성

<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

구분	지역 (지정시기)	유치업종	면적(㎡)	위치
산업 단지	청주 (2002.3)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50,637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1.31 일원
	춘천 (2008.1)	에듀테인먼트	186,943	춘천시 서면 현암리, 금산리 일원
문화산업 진흥지구	부산 (2008.2.29)	영상, 게임	343,959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일원
	대구 (2008.2.29)	게임, 모바일콘텐츠, 캐릭터, 뉴미디어콘텐츠	117,667	대구 남구 대명동
	대전 (2008.2.29)	첨단영상(영화), 게임	338,570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공원 일부)
	부천 (2008.2.29)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600,263	부천시 원미구 상동 (영상문화단지 일원)
	전주 (2008.2.29)	디지털영상, 소리문화	472,13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동·고사동·중노송동 일원
	천안 (2008.2.29)	문화디자인	306,782	천안 동남구 문화동·대흥동 ·성황동·오룡동·원선동 일원
	제주 (2008.2.29)	디지털영상, 문화콘텐츠	127,657	제주시 이도2동 벤처종합지원센터 인근
	인천 (2008.12.2)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263,164	인천시 남구
	고양 (2008.12.2)	방송·영상 콘텐츠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664,710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일원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주변)
	성남 (2010.2.17)	게임 및 IPTV 산업	1,246,826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정자동 일원
	안동 (2010.1.21)	영상, 공예, 공연산업	512,581	안동시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자료 : 2011년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12

주 : 2010년 성남, 안동 문화진흥지구 지정 이후 변동사항 없음

## 9. 물류단지

- 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공동집배송단지·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물류단지시설」과 정보·금융·입주자 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임
-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류산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물류터미널·집배송단지·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각종 물류시설의 설치가 미흡하고, 물류시설들이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분산·설치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물류시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One-Stop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욕구의 충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효과의 저하와 교통량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95.12.29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물류단지개발제도를 도입('96.06.30 시행) 하였고,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07.8.3 공포)』로 일원화함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물류시설개발에 관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서,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의 실제 공급이 본 계획상의 권역별 공급규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계획기간 : 2008~2012)을 '08.6.30 수립·고시하였고,
  - 1차 계획 수립 이후 표출된 새로운 국가, 경제, 사회의 다양한 변화 및 상황을 반영하고,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기본방향을 재정비하고, 추진정책의 주요내용 및 사업발굴을 위한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계획기간 : 2013~2017)을 '13.1.7에 고시함

< 물류단지 공급 현황 >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	사업기간
운영중 (18)	부산 감천항	부산 서구	206,408	'91~'14
	대 전	대전 유성구	463,887	'98~'03
	울산 진장(1단계)	울산 북구	457,151	'00~'07
	음 성	충북 음성군	283,934	'98~'07
	안 동	경북 안동시	225,411	'05~'07
	전주 장동	전북 전주시	189,151	'04~'07
	평택 도일	경기 평택시	486,062	'03~'08
	여 주	경기 여주군	264,242	'99~'10
	광 주	경기 광주시	278,016	'03~'09
	서울 동남권	서울 송파구	560,694	'04~'14
	천 안	충북 천안시	451,182	'00~'11
	남대전 종합	대전 동구	558,868	'08~'13
	김포 고촌	경기 김포시	894,454	'10~'13
	이천 패션	경기 이천시	796,706	'09~'13
	경인아라뱃길 인천	인천 서구	1,145,026	'10~'14
	안성 원곡	경기 안성시	682,398	'09~'14
	광주 초월	경기 광주시	264,529	'09~'14
	영동 황간	충북 영동군	263,179	'09~'15
공사중 (8)	강 릉	강원 강릉시	173,883	'99~'14
	제 천	충북 제천시	161,578	'03~'12
	화성 동탄	경기 화성시	473,913	'10~'15
	부천 오정	경기 부천시	459,987	'08~'16
	울산 진장(2단계)	경기 평택시	206,427	'11~'15
	무 등	경남 고성군	273,209	'13~'15
	안성 미양	경기 안성시	136,942	'14~'15
	김해 풍유 (주)김해풍유물류	경남 김해시	323,490	'14~'15
합계		26개소	10,680,727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10

## 10. 첨단의료복합단지

-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로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내 의료산업을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를 말함
  - 2038년까지 첨단신약, 의료기기 등 국내 의료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국책사업
  - 국가차원에서 신약과 첨단의료기기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의료산업의 취약부분 해소와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첨단화의 중심 기지화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단지조성 추진을 결정하였고, 2009년 8월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2곳이 선정되었음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현황 >

명칭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일원 (오송단지 내)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지정시기	2009.12.30	2009.12.16
면적	1,131천㎡	1,030천㎡
사업기간	2009년~2038년 (단지조성 2009년~2013년)	
지정목적	첨단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	
주요 시설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주 : 2015.12월 말 기준